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 부 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

국 토 교 통 부
한 국 부 동 산 원

목 차 _ Contents

I.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
(법률 제17459호)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29
(국토교통부 훈령 제1593호)	
III.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147
(국토교통부 훈령 제1594호)	
IV.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19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75호)	
V.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19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호)	
VI. 특수토지의 평가방법	205
VII. 토지특성 주요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224
VIII.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257
IX. 2023년 시·군·구별 표준지 수	265
X.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2022, 2023, 2024)	273

I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
제2장 지가의 공시	3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11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16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1
제6장 보칙	24

법령 제17453호(2020.06.0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공시법)

- 제정 1989. 4. 1. 법률 제4120호
개정 1995.12.29. 법률 제5108호
19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999. 3.31. 법률 제5954호
2000. 1.28. 법률 제6237호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 1.14. 법률 제7335호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12. 7. 법률 제 7707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 4.27. 법률 제 8409 호
2008. 2.29. 법률 제 8852 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2008. 3.28. 법률 제 9055 호
2010. 3.17. 법률 제10136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2013. 8. 6. 법률 제12018호
2016. 1.19. 법률 제13796호
2016. 1.19.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2020. 4. 7. 법률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 4. 7. 법률 제17233호
2020. 6. 9. 법률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4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이용상황이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

정 2020. 4. 7.>

1. 지가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지가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 4. 7.>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절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개정 2020. 6. 9.>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제3조제2항·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6조”로 본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개정 2020. 6. 9.>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②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0조”로 본다.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절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⑧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21조”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 (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 6. 9.>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2조”로 본다.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①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4. 7., 2020. 6. 9.>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8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제20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제22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9.>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제목개정 2020. 4. 7.]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

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4. 7.]

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6. 9.>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나.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 다.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 라.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 마.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 작성·공급
3. 제3조제8항,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등) ①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부칙 <제17459호, 2020. 6. 9.> (한국부동산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본문·단서, 제18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II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31
제2장 지역분석	32
제3장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35
제4장 표준지의 선정심사	38
[별표1] 표준지의 분포기준	41
[별표2] 표준지 위치 표시부호	139

국토교통부훈령 제1593호(2023.01.30.)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정	1996.12.28.	건설교통부훈령	제164호
개정	2003. 2.24.	건설교통부훈령	제402호
	2005. 9.27.	건설교통부훈령	제564호
	2006.12.28.	건설교통부훈령	제650호
	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 49호
	2009. 8.24.	국토해양부훈령	제337호
	2010. 8.23.	국토해양부훈령	제618호
	2012. 8.20.	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2012. 9.21.	국토해양부훈령	제886호
	2013. 5. 3.	국토교통부훈령	제187호
	2016. 8.18.	국토교통부훈령	제575호
	2016. 9. 1.	국토교통부훈령	제745호
	2017.10.25.	국토교통부훈령	제926호
	2019.10.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6호
	2023. 1.30.	국토교통부훈령	제159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분석”이란 지역의 지가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 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 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가수준 및 그 변동추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격형성요인”이란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한다.
3. “지역요인”이란 그 지역의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한다.
4. “개별요인”이란 해당 토지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치·면적·형상·이용상황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
5.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주택지대·공업지대·농경지대·임야지대·후보지대·기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6. “해당지역”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조사·평가의 의뢰 대상이 되는 각각의 시·군·구 또는 이를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7. “표준지선정단위구역”이란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가격수준 및 토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의 선정범위를 구획한 구역을 말한다.

제2장 지역분석

제3조(지역분석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준지의 선정·교체·조사 등을 의뢰받은 자(이하 “표준지 선정자”라 한다)가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의 선정·교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분석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지역분석은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대를 적절하게 세분하여 실시하며, 인접한 지역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역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요인의 분석
2.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대별로 구분하여 이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세분
3. 제2호에 따라 세분된 지역(이하 “세분된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요인의 변동추이 및 주요 변동원인과 지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4. 세분된 지역 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 및 가격수준을 다음 각목에 따라 판정
 - 가. 표준적인 이용의 판정은 감정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르되 개발현황, 토지수급의 변동현황, 인접지역간의 대체관계 등을 고려
 - 나. 가격수준의 판정 시에는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상급지, 중급지 및 하급지로 구분하여 가격수준을 판정
5. 기존 표준지의 활용실적을 분석하고 지역요인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인근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적절하게 조정

제5조(지역분석조서의 작성) ① 표준지 선정자는 지역분석결과를 인접한

지역의 지역분석결과와 비교·검토하고 가격수준을 협의하여 이를 지역분석조서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분석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역개황, 세분된 지역의

지역요인 분석내용, 표준적인 이용 및 가격수준의 판정과 가격수준 검토 결과, 표준지의 교체 및 분포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황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요인의 분석내용과 전반적인 지가수준의 현황 및 변동추이
2. 토지용도별 수급의 변화 및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지가변동원인
3. 지역의 세분에 관한 사항

제6조(가격수준 협의) ① 표준지 선정자는 제5조에 따른 지역분석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분된 지역별로 가격수준을 상급지, 중급지 및 하급지로 분류하고, 인접한 지역의 표준지 선정자와 지역분석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지역간의 적정한 가격수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 선정자가 제1항에 따른 가격수준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의 표준지 선정자와 사전 및 수시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가격수준을 판정하되, 협의 시에는 평가선례·거래사례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와 지역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용도지역별·토지용도별·유형별로 가격수준을 협의한다.

제3장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제7조(표준지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①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 ②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 ③ 표준지 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 상황별로 표준지를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인근토지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제8조(표준지의 분포기준) ① 지역별·용도지역별 및 토지이용상황별로 전체적인 표준지 수를 배분하기 위한 표준지의 일반적인 분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토지의 가격산정에의 비교가능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분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표준지 선정자는 지역분석을 토대로 용도지역·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 상황별 표준지 분포 및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지가분포가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표준지가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표준지 분포의 조정) ① 지역요인의 변동이 현저한 지역 또는 조세부과 등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분포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기존 표준지의 활용실적을 분석하여 과소 또는 과다하게 활용한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간 표준지의

분포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표준지의 선정기준) ① 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가의 대표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충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2. 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 상황·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3. 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 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4. 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② 특수토지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토지형상·위치 등이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특정지역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지의 교체 등) ①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한다.

② 표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형질변경이나 지번, 지목, 면적 등 지적사항 등의 변경
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시에 비교표준지로의 활용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기준성을 상실한 경우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표준지 수가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지가 인근토지의 가격비교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시에 비교표준지로의 활용실적 분석결과
2. 지역분석에 의한 표준지 분포조정 검토결과
3.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형질의 변경 등

제12조(표준지 선정의 제외대상) ① 국·공유의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인 경우와 국·공유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단의 넓은 지역을 이루고 있어 그 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표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수적인 용도의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로의 활용목적은 고려하여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3조(표준지의 선정 등에 관한 협의)**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에 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할 수 있다.
- ②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지역분석의 결과에 따른 표준지 분포조정 필요성, 표준지의 활용도 및 신규 표준지의 표준지선정 단위구역 등을 검토한다.

제4장 표준지의 선정 심사

제14조(표준지 선정에 대한 심사)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표준지 선정에 대한 심사는 지역분석조서,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역분석내용
2. 현장조사의 성실한 이행여부 및 표준지의 조사사항
3. 표준지 과소·과다 활용의 원인 분석 및 분포조정 내용
4. 표준지 선정협의 여부
5. 표준지 선정(안) 위치 표시 도면의 작성내용
6. 표준지의 선정, 교체(삭제·신규를 포함한다) 및 분포조정의 타당성
7. 그 밖의 가격충화 반영의 적정성

제15조(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처리)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표준지 내역의 변경 등의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감정원은 제14조에 따른 표준지 선정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전산입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6조(표준지의 확정) 제14조에 따른 표준지 선정 심사가 완료된 때에 표준지는 확정된다. 다만, 표준지 선정심사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지의 교체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선정을 재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표준지의 위치 표시) 표준지의 위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에 별표 2에서 정한 기호로 표시하고 기호 밑에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전자도면일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기호 외의 방법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34호, 2023. 1.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표준지 분포기준

(단위:필지)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전국	합계	560,000	1,608	270	34,135	70,156	13,530	12,121	2,023	31,333	1,523
	주거용	148,986	1,357	239	21,410	41,349	7,183	3,765	254	5,064	193
	상업업무용	53,502	37	2	2,450	10,457	3,511	5,307	1,630	21,286	1,161
	주상복합용	35,937	109	4	6,248	15,854	2,627	2,519	121	4,536	148
	공업용	12,626	2	2	415	281	35	203	8	30	5
	전	140,558	58	14	2,335	1,415	104	213	2	138	10
	답	96,027	16	4	744	479	38	72	-	65	5
	임야	70,174	27	4	497	304	28	23	-	17	-
	특수토지	1,570	-	-	1	4	1	14	7	183	1
공공용지	620	2	1	35	13	3	5	1	14	-	
서울특별시	합계	30,934	372	7	2,343	15,620	5,353	1,837	84	3,141	174
	주거용	14,782	321	5	1,827	9,548	1,994	505	-	146	28
	상업업무용	9,065	14	1	136	2,236	2,321	975	84	2,801	120
	주상복합용	5,812	18	-	206	3,805	1,028	352	-	184	26
	공업용	230	2	1	2	9	4	3	-	3	-
	전	389	2	-	4	6	3	1	-	-	-
	답	19	-	-	-	-	-	-	-	-	-
	임야	510	14	-	141	9	1	-	-	-	-
	특수토지	13	-	-	-	-	-	1	-	4	-
공공용지	114	1	-	27	7	2	-	-	3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합계	2,026	97	-	383	570	117	30	-	759	-
	주거용	862	89	-	288	383	39	4	-	38	-
	상업업무용	897	1	-	42	104	55	14	-	681	-
	주상복합용	201	2	-	42	82	23	12	-	39	-
	공업용	1	-	-	1	-	-	-	-	-	-
	전	10	1	-	-	-	-	-	-	-	-
	임야	48	4	-	7	-	-	-	-	-	-
공공용지	7	-	-	3	1	-	-	-	1	-	
서울특별시 중구	합계	1,646	-	-	117	404	166	67	84	807	-
	주거용	316	-	-	59	194	43	9	-	11	-
	상업업무용	1,174	-	-	35	140	101	51	84	763	-
	주상복합용	149	-	-	17	70	22	7	-	33	-
	임야	4	-	-	4	-	-	-	-	-	-
공공용지	3	-	-	2	-	-	-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합계	1,220	14	-	238	614	138	96	-	115	-
	주거용	693	14	-	192	378	65	38	-	4	-
	상업업무용	369	-	-	17	137	58	49	-	108	-
	주상복합용	152	-	-	27	98	15	9	-	3	-
	임야	2	-	-	2	-	-	-	-	-	-
공공용지	4	-	-	-	1	-	-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합계	950	-	-	19	496	184	43	-	36	4
	주거용	414	-	-	12	271	84	7	-	3	-
	상업업무용	232	-	-	-	70	57	23	-	27	4
	주상복합용	251	-	-	2	154	43	13	-	6	-
	공업용	45	-	-	-	1	-	-	-	-	-
	전	1	-	-	1	-	-	-	-	-	-
임야	1	-	-	1	-	-	-	-	-	-	
공공용지	6	-	-	3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200	152	4,743	3,691	5,094	8,981	49,326	17,934	143	58	33,549	44,355	130,982	80,531	8,612
5	8	253	686	462	724	10,145	983	19	3	3,215	3,988	43,576	3,230	875
150	4	227	946	80	252	2,243	226	13	-	148	132	3,026	93	121
3	1	55	355	15	69	723	136	2	-	80	57	2,185	30	60
12	111	3,251	1,382	14	194	1,301	89	8	2	254	553	4,040	397	37
7	6	398	180	1,717	1,738	18,823	8,128	40	29	17,000	22,146	48,670	14,210	3,177
16	8	311	82	504	5,874	7,871	4,118	44	18	4,759	11,809	15,801	41,958	1,431
5	7	217	50	2,253	116	7,677	4,115	17	6	13,019	5,583	12,848	20,579	2,782
1	6	23	1	19	8	285	72	-	-	47	73	763	24	37
1	1	8	9	30	6	258	67	-	-	27	14	23	10	92
10	-	-	887	1	4	311	790	-	-	-	-	-	-	-
-	-	-	231	1	1	44	131	-	-	-	-	-	-	-
10	-	-	288	-	-	39	40	-	-	-	-	-	-	-
-	-	-	167	-	-	6	20	-	-	-	-	-	-	-
-	-	-	195	-	1	7	3	-	-	-	-	-	-	-
-	-	-	2	-	-	51	320	-	-	-	-	-	-	-
-	-	-	-	-	-	2	17	-	-	-	-	-	-	-
-	-	-	2	-	-	101	242	-	-	-	-	-	-	-
-	-	-	-	-	-	3	5	-	-	-	-	-	-	-
-	-	-	2	-	2	58	12	-	-	-	-	-	-	-
-	-	-	-	-	-	15	55	-	-	-	-	-	-	-
-	-	-	-	-	-	4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9	28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163	-	-	4	-	-	-	-	-	-	-	-
-	-	-	37	-	-	-	-	-	-	-	-	-	-	-
1	-	-	49	-	-	1	-	-	-	-	-	-	-	-
-	-	-	33	-	-	-	-	-	-	-	-	-	-	-
-	-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합계	1,074	1	-	127	617	180	89	-	41	-
	주거용	566	-	-	113	341	76	30	-	1	-
	상업업무용	252	-	-	1	107	73	36	-	34	-
	주상복합용	235	-	-	10	166	31	22	-	6	-
	임야	14	-	-	2	1	-	-	-	-	-
	특수토지	1	-	-	-	-	-	1	-	-	-
	공공용지	6	1	-	1	2	-	-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합계	1,375	-	-	55	765	321	97	-	120	15
	주거용	609	-	-	46	402	127	26	-	5	3
	상업업무용	420	-	-	3	123	118	58	-	108	9
	주상복합용	341	-	-	3	239	76	13	-	7	3
	임야	3	-	-	3	-	-	-	-	-	-
	공공용지	2	-	-	-	1	-	-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합계	1,136	-	-	31	707	202	104	-	24	19
	주거용	629	-	-	26	460	85	42	-	6	5
	상업업무용	213	-	-	1	71	74	43	-	14	10
	주상복합용	255	-	-	4	176	43	19	-	3	4
	전	19	-	-	-	-	-	-	-	-	-
	임야	16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1	-
	공공용지	3	-	-	-	-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합계	1,963	63	-	235	1,142	245	156	-	88	12
	주거용	1,181	51	-	198	737	118	50	-	17	5
	상업업무용	288	-	-	6	96	52	69	-	60	4
	주상복합용	455	4	-	18	307	74	37	-	11	3
	전	1	-	-	-	-	-	-	-	-	-
	임야	29	8	-	7	2	-	-	-	-	-
	공공용지	9	-	-	6	-	1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합계	1,293	-	-	102	781	223	98	-	50	-
	주거용	779	-	-	74	558	100	33	-	6	-
	상업업무용	232	-	-	3	62	69	48	-	41	-
	주상복합용	248	-	-	11	161	54	17	-	3	-
	전	5	-	-	-	-	-	-	-	-	-
	임야	27	-	-	13	-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공공용지	1	-	-	1	-	-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합계	780	-	-	74	388	101	47	-	28	2
	주거용	363	-	-	53	218	33	12	-	3	-
	상업업무용	131	-	-	2	32	45	18	-	18	2
	주상복합용	231	-	-	13	138	23	17	-	7	-
	공업용	2	-	-	-	-	-	-	-	-	-
	전	19	-	-	1	-	-	-	-	-	-
	답	1	-	-	-	-	-	-	-	-	-
	임야	31	-	-	5	-	-	-	-	-	-
공공용지	2	-	-	-	-	-	-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합계	783	2	1	48	446	151	35	-	20	-
	주거용	376	2	1	38	252	59	5	-	1	-
	상업업무용	172	-	-	1	62	53	28	-	16	-
	주상복합용	184	-	-	8	130	39	2	-	3	-
	전	7	-	-	-	-	-	-	-	-	-
	임야	37	-	-	-	2	-	-	-	-	-
공공용지	7	-	-	1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	-	-	-	11	8	-	-	-	-	-	-	-
-	-	-	-	-	-	2	3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1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8	31	-	-	-	-	-	-	-
-	-	-	-	-	-	2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	-	-	-	-	-	-
-	-	-	-	-	-	5	14	-	-	-	-	-	-	-
-	-	-	-	-	-	7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	-	-	-	-	-	-
-	-	-	-	-	-	13	9	-	-	-	-	-	-	-
-	-	-	-	-	-	2	3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8	4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6	33	-	-	-	-	-	-	-
-	-	-	-	-	-	1	7	-	-	-	-	-	-	-
-	-	-	-	-	-	1	8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1	4	-	-	-	-	-	-	-
-	-	-	-	-	-	2	12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	-	12	45	-	-	-	-	-	-	-
-	-	-	38	-	-	1	5	-	-	-	-	-	-	-
-	-	-	12	-	-	-	2	-	-	-	-	-	-	-
-	-	-	31	-	-	1	1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4	14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5	21	-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41	39	-	-	-	-	-	-	-
-	-	-	-	-	-	7	11	-	-	-	-	-	-	-
-	-	-	-	-	-	10	2	-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3	4	-	-	-	-	-	-	-
-	-	-	-	-	-	14	21	-	-	-	-	-	-	-
-	-	-	-	-	-	6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합계	1,435	7	3	124	728	253	129	-	73	15
	주거용	845	6	3	102	523	120	51	-	12	5
	상업업무용	281	-	-	1	58	100	53	-	52	8
	주상복합용	228	1	-	5	147	33	25	-	9	2
	전	31	-	-	-	-	-	-	-	-	-
	임야	48	-	-	16	-	-	-	-	-	-
공공용지	2	-	-	-	-	-	-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계	1,361	40	-	166	648	297	100	-	92	3
	주거용	824	37	-	133	459	163	22	-	5	-
	상업업무용	329	1	-	4	79	92	69	-	81	3
	주상복합용	172	1	-	7	108	41	9	-	6	-
	임야	32	1	-	20	1	1	-	-	-	-
	공공용지	4	-	-	2	1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계	1,343	-	-	17	879	245	95	-	71	21
	주거용	629	-	-	12	505	83	19	-	8	-
	상업업무용	358	-	-	-	124	96	58	-	57	20
	주상복합용	343	-	-	1	250	66	18	-	6	1
	전	1	-	-	-	-	-	-	-	-	-
	임야	6	-	-	4	-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공공용지	5	-	-	-	-	-	-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합계	777	-	-	39	420	201	64	-	17	14
	주거용	387	-	-	35	259	73	17	-	-	2
	상업업무용	196	-	-	-	37	99	33	-	16	7
	주상복합용	176	-	-	3	124	29	14	-	-	5
	공업용	2	-	-	-	-	-	-	-	-	-
	전	2	-	-	-	-	-	-	-	-	-
	임야	12	-	-	1	-	-	-	-	-	-
	공공용지	2	-	-	-	-	-	-	-	1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합계	1,304	17	-	51	661	218	42	-	99	25
	주거용	610	15	-	39	426	77	9	-	12	3
	상업업무용	373	-	-	1	98	100	25	-	71	20
	주상복합용	216	2	-	5	137	41	8	-	16	2
	공업용	10	-	-	-	-	-	-	-	-	-
	전	45	-	-	-	-	-	-	-	-	-
	답	18	-	-	-	-	-	-	-	-	-
	임야	22	-	-	6	-	-	-	-	-	-
	특수토지	5	-	-	-	-	-	-	-	-	-
	공공용지	5	-	-	-	-	-	-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합계	1,116	-	-	41	630	214	21	-	40	-
	주거용	601	-	-	30	424	102	5	-	3	-
	상업업무용	246	-	-	-	89	61	13	-	33	-
	주상복합용	181	-	-	5	113	47	1	-	4	-
	공업용	52	-	-	1	3	4	2	-	-	-
	전	11	-	-	-	-	-	-	-	-	-
	임야	20	-	-	5	1	-	-	-	-	-
공공용지	5	-	-	-	-	-	-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합계	751	-	-	59	446	42	48	-	26	8
	주거용	403	-	-	53	278	17	22	-	1	1
	상업업무용	146	-	-	-	53	18	18	-	25	5
	주상복합용	144	-	-	2	114	7	7	-	-	2
	공업용	44	-	-	-	-	-	1	-	-	-
	임야	10	-	-	4	1	-	-	-	-	-
공공용지	2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	-	-	-	4	99	-	-	-	-	-	-	-
-	-	-	-	-	-	2	21	-	-	-	-	-	-	-
-	-	-	-	-	-	1	8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32	-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2	13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	-	-	-	-	-	-	-
-	-	-	-	-	-	1	-	-	-	-	-	-	-	-
3	-	-	-	-	-	11	1	-	-	-	-	-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4	1	-	-	-	-	-	-	-
-	-	-	2	-	-	14	6	-	-	-	-	-	-	-
-	-	-	-	-	-	1	-	-	-	-	-	-	-	-
-	-	-	1	-	-	2	1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8	3	-	-	-	-	-	-	-
-	-	-	-	-	-	1	-	-	-	-	-	-	-	-
1	-	-	77	-	1	34	78	-	-	-	-	-	-	-
-	-	-	20	-	1	5	3	-	-	-	-	-	-	-
1	-	-	43	-	-	9	5	-	-	-	-	-	-	-
-	-	-	5	-	-	-	-	-	-	-	-	-	-	-
-	-	-	8	-	-	1	1	-	-	-	-	-	-	-
-	-	-	-	-	-	9	36	-	-	-	-	-	-	-
-	-	-	-	-	-	2	16	-	-	-	-	-	-	-
-	-	-	1	-	-	7	8	-	-	-	-	-	-	-
-	-	-	-	-	-	1	4	-	-	-	-	-	-	-
-	-	-	-	-	-	-	5	-	-	-	-	-	-	-
-	-	-	129	-	1	8	32	-	-	-	-	-	-	-
-	-	-	30	-	-	1	6	-	-	-	-	-	-	-
-	-	-	49	-	-	-	1	-	-	-	-	-	-	-
-	-	-	11	-	-	-	-	-	-	-	-	-	-	-
-	-	-	37	-	1	2	2	-	-	-	-	-	-	-
-	-	-	1	-	-	-	10	-	-	-	-	-	-	-
-	-	-	1	-	-	1	12	-	-	-	-	-	-	-
-	-	-	-	-	-	4	1	-	-	-	-	-	-	-
-	-	-	113	-	-	3	6	-	-	-	-	-	-	-
-	-	-	30	-	-	1	-	-	-	-	-	-	-	-
-	-	-	27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43	-	-	-	-	-	-	-	-	-	-	-
-	-	-	-	-	-	1	4	-	-	-	-	-	-	-
-	-	-	1	-	-	1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합계	1,248	-	-	2	555	94	146	-	115	13
	주거용	487	-	-	1	341	33	30	-	3	3
	상업업무용	429	-	-	-	68	44	94	-	107	9
	주상복합용	257	-	-	-	141	17	22	-	2	1
	공업용	68	-	-	-	4	-	-	-	3	-
	공공용지	7	-	-	1	1	-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합계	1,204	-	-	92	668	330	45	-	54	10
	주거용	706	-	-	79	463	145	18	-	1	-
	상업업무용	229	-	-	-	50	104	19	-	45	9
	주상복합용	253	-	-	1	155	81	8	-	7	1
	임야	12	-	-	10	-	-	-	-	-	-
	공공용지	4	-	-	2	-	-	-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합계	1,337	-	-	146	693	254	137	-	80	-
	주거용	741	-	-	125	481	96	32	-	1	-
	상업업무용	295	-	-	-	53	104	65	-	72	-
	주상복합용	261	-	-	1	159	54	40	-	7	-
	전	7	-	-	1	-	-	-	-	-	-
	임야	33	-	-	19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합계	1,376	80	3	74	569	306	13	-	114	-
	주거용	507	67	1	54	296	56	1	-	2	-
	상업업무용	526	4	1	5	172	216	12	-	108	-
	주상복합용	142	6	-	4	99	31	-	-	1	-
	공업용	3	2	1	-	-	-	-	-	-	-
	전	126	-	-	-	2	3	-	-	-	-
	임야	59	1	-	9	-	-	-	-	-	-
	특수토지	4	-	-	-	-	-	-	-	3	-
공공용지	9	-	-	2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합계	1,348	46	-	80	494	444	32	-	168	-
	주거용	381	35	-	50	208	78	2	-	-	-
	상업업무용	744	8	-	14	196	327	25	-	168	-
	주상복합용	145	2	-	13	85	39	4	-	-	-
	공업용	2	-	-	-	-	-	-	-	-	-
	전	44	1	-	-	4	-	1	-	-	-
	임야	26	-	-	2	1	-	-	-	-	-
	공공용지	6	-	-	1	-	-	-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합계	1,065	2	-	19	684	228	55	-	44	1
	주거용	402	2	-	12	327	52	8	-	-	-
	상업업무용	330	-	-	-	108	138	34	-	44	1
	주상복합용	303	-	-	4	248	37	13	-	-	-
	공업용	1	-	-	-	1	-	-	-	-	-
	전	15	-	-	-	-	-	-	-	-	-
	임야	4	-	-	1	-	-	-	-	-	-
공공용지	10	-	-	2	-	1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합계	1,023	3	-	4	615	199	48	-	60	12
	주거용	471	3	-	3	364	70	13	-	3	1
	상업업무용	203	-	-	-	47	67	20	-	52	9
	주상복합용	289	-	-	-	204	62	15	-	5	2
	전	43	-	-	1	-	-	-	-	-	-
	임야	14	-	-	-	-	-	-	-	-	-
	공공용지	3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	319	-	-	4	-	-	-	-	-	-	-	-
-	-	-	76	-	-	-	-	-	-	-	-	-	-	-
-	-	-	107	-	-	-	-	-	-	-	-	-	-	-
-	-	-	74	-	-	-	-	-	-	-	-	-	-	-
-	-	-	61	-	-	-	-	-	-	-	-	-	-	-
-	-	-	1	-	-	4	-	-	-	-	-	-	-	-
1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23	4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	-	-	-	-	-	-
-	-	-	-	-	-	11	3	-	-	-	-	-	-	-
-	-	-	-	-	-	33	184	-	-	-	-	-	-	-
-	-	-	-	-	-	6	24	-	-	-	-	-	-	-
-	-	-	-	-	-	5	3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13	-	-	-	-	-	-	-
-	-	-	-	-	-	8	41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6	1	-	-	-	-	-	-	-
-	-	-	-	-	1	30	53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4	2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3	25	-	-	-	-	-	-	-
-	-	-	-	-	-	7	16	-	-	-	-	-	-	-
-	-	-	-	-	1	4	-	-	-	-	-	-	-	-
3	-	-	-	-	1	10	18	-	-	-	-	-	-	-
-	-	-	-	-	-	-	1	-	-	-	-	-	-	-
3	-	-	-	-	-	2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3	-	-	-	-	-	-	-
-	-	-	-	-	-	-	3	-	-	-	-	-	-	-
-	-	-	-	-	1	6	-	-	-	-	-	-	-	-
-	-	-	1	-	-	5	76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1	7	-	-	-	-	-	-	-
-	-	-	-	-	-	-	1	-	-	-	-	-	-	-
-	-	-	1	-	-	-	41	-	-	-	-	-	-	-
-	-	-	-	-	-	2	12	-	-	-	-	-	-	-
-	-	-	-	-	-	2	1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부산광역시	합계	19,499	20	-	1,276	6,527	2,810	1,373	19	3,822	76
	주거용	8,386	20	-	704	4,237	1,882	426	1	758	11
	상업업무용	4,069	-	-	43	630	249	573	17	2,351	52
	주상복합용	3,558	-	-	180	1,539	659	367	-	690	12
	공업용	695	-	-	117	36	8	5	-	7	1
	전	1,331	-	-	173	37	8	1	1	10	-
	답	527	-	-	36	8	1	1	-	-	-
	임야	871	-	-	21	39	2	-	-	1	-
	특수토지	30	-	-	-	1	1	-	-	5	-
공공용지	32	-	-	2	-	-	-	-	-	-	
부산광역시 중구	합계	954	-	-	-	141	130	18	-	657	-
	주거용	299	-	-	-	108	112	10	-	68	-
	상업업무용	497	-	-	-	4	1	-	-	492	-
	주상복합용	149	-	-	-	28	17	8	-	96	-
	공업용	2	-	-	-	-	-	-	-	1	-
	임야	1	-	-	-	1	-	-	-	-	-
공공용지	6	-	-	-	-	-	-	-	-	-	
부산광역시 서구	합계	1,143	-	-	20	487	172	86	-	287	-
	주거용	637	-	-	13	365	128	32	-	85	-
	상업업무용	195	-	-	-	16	11	32	-	128	-
	주상복합용	231	-	-	4	98	30	22	-	74	-
	공업용	8	-	-	-	-	-	-	-	-	-
	전	26	-	-	1	2	2	-	-	-	-
	임야	44	-	-	2	6	1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부산광역시 동구	합계	1,354	-	-	10	265	504	19	-	508	-
	주거용	774	-	-	8	199	418	10	-	133	-
	상업업무용	307	-	-	-	11	7	3	-	285	-
	주상복합용	224	-	-	2	51	79	6	-	86	-
	공업용	9	-	-	-	-	-	-	-	3	-
	전	7	-	-	-	1	-	-	-	-	-
임야	33	-	-	-	3	-	-	-	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합계	1,134	-	-	23	430	170	67	-	282	-
	주거용	614	-	-	17	308	128	28	-	86	-
	상업업무용	142	-	-	-	7	2	15	-	107	-
	주상복합용	296	-	-	6	111	40	24	-	86	-
	공업용	43	-	-	-	-	-	-	-	3	-
	전	17	-	-	-	-	-	-	-	-	-
임야	22	-	-	-	4	-	-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계	2,109	-	-	11	688	395	138	-	817	12
	주거용	913	-	-	9	461	241	36	-	151	3
	상업업무용	693	-	-	-	86	36	50	-	512	8
	주상복합용	463	-	-	-	140	116	51	-	154	1
	공업용	3	-	-	-	-	1	1	-	-	-
	전	7	-	-	-	-	-	-	-	-	-
	임야	29	-	-	2	1	1	-	-	-	-
공공용지	1	-	-	-	-	-	-	-	-	-	
부산광역시 동래구	합계	1,088	-	-	3	442	191	188	-	185	14
	주거용	490	-	-	1	264	113	69	-	30	3
	상업업무용	262	-	-	-	43	19	66	-	127	7
	주상복합용	279	-	-	-	134	58	53	-	27	4
	공업용	2	-	-	-	1	1	-	-	-	-
	전	15	-	-	-	-	-	-	-	-	-
	임야	35	-	-	1	-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공공용지	3	-	-	1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5	51	198	467	150	3	1,290	1,405	-	-	-	-	-	-	7
-	3	2	60	8	-	181	88	-	-	-	-	-	-	5
5	1	5	97	1	-	37	8	-	-	-	-	-	-	-
-	-	2	60	-	-	32	17	-	-	-	-	-	-	-
-	47	182	244	-	-	25	23	-	-	-	-	-	-	-
-	-	2	3	35	1	440	618	-	-	-	-	-	-	2
-	-	2	-	15	2	118	344	-	-	-	-	-	-	-
-	-	3	1	90	-	426	288	-	-	-	-	-	-	-
-	-	-	-	1	-	14	8	-	-	-	-	-	-	-
-	-	-	2	-	-	17	11	-	-	-	-	-	-	-
-	-	-	2	-	-	6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5	-	-	-	-	-	-	-	-
-	-	6	11	4	-	70	-	-	-	-	-	-	-	-
-	-	-	-	-	-	14	-	-	-	-	-	-	-	-
-	-	1	5	-	-	2	-	-	-	-	-	-	-	-
-	-	-	1	-	-	2	-	-	-	-	-	-	-	-
-	-	4	4	-	-	-	-	-	-	-	-	-	-	-
-	-	-	1	1	-	19	-	-	-	-	-	-	-	-
-	-	1	-	3	-	31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	-	-	11	-	-	37	-	-	-	-	-	-	-	-
-	-	-	4	-	-	2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29	-	-	-	-	-	-	-	-
-	22	-	89	-	-	51	-	-	-	-	-	-	-	-
-	3	-	32	-	-	12	-	-	-	-	-	-	-	-
-	1	-	8	-	-	2	-	-	-	-	-	-	-	-
-	-	-	28	-	-	1	-	-	-	-	-	-	-	-
-	18	-	21	-	-	1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48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1	-	-	-	-	-	-	-	-
-	-	-	1	-	-	56	8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	-	-	-	-	-	-	-
-	-	-	-	-	-	28	6	-	-	-	-	-	-	-
-	-	-	-	-	-	1	-	-	-	-	-	-	-	-
-	-	-	1	-	-	1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부산광역시 남구	합계	1,170	-	-	50	512	291	68	-	170	1
	주거용	637	-	-	30	336	209	18	-	37	-
	상업업무용	224	-	-	9	63	20	32	-	96	1
	주상복합용	235	-	-	9	107	62	18	-	37	-
	공업용	21	-	-	-	-	-	-	-	-	-
	전	6	-	-	-	1	-	-	-	-	-
	임야	46	-	-	2	5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부산광역시 북구	합계	839	-	-	14	429	87	77	-	102	-
	주거용	347	-	-	3	259	53	15	-	12	-
	상업업무용	174	-	-	-	44	15	36	-	74	-
	주상복합용	193	-	-	8	122	19	26	-	16	-
	전	57	-	-	2	1	-	-	-	-	-
	임야	63	-	-	1	2	-	-	-	-	-
	특수토지	1	-	-	-	1	-	-	-	-	-
공공용지	4	-	-	-	-	-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합계	1,271	-	-	53	675	60	63	16	210	7
	주거용	560	-	-	32	412	38	22	-	42	-
	상업업무용	316	-	-	6	97	11	29	16	143	7
	주상복합용	216	-	-	6	159	10	12	-	22	-
	공업용	11	-	-	1	-	1	-	-	-	-
	전	64	-	-	6	2	-	-	-	-	-
	답	18	-	-	-	-	-	-	-	-	-
	임야	83	-	-	2	5	-	-	-	-	-
특수토지	3	-	-	-	-	-	-	-	3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합계	1,177	-	-	30	511	202	109	-	101	18
	주거용	598	-	-	25	351	132	39	-	26	4
	상업업무용	199	-	-	-	54	11	45	-	57	10
	주상복합용	219	-	-	4	98	58	25	-	18	4
	공업용	92	-	-	-	3	1	-	-	-	-
	전	15	-	-	-	2	-	-	-	-	-
	임야	54	-	-	1	3	-	-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합계	1,312	-	-	84	565	157	115	-	102	-
	주거용	568	-	-	48	345	84	37	-	26	-
	상업업무용	225	-	-	4	69	25	55	-	63	-
	주상복합용	260	-	-	11	145	47	23	-	13	-
	공업용	24	-	-	2	1	1	-	-	-	-
	전	151	-	-	18	1	-	-	-	-	-
	답	10	-	-	-	-	-	-	-	-	-
	임야	66	-	-	1	4	-	-	-	-	-
	특수토지	3	-	-	-	-	-	-	-	-	-
공공용지	5	-	-	-	-	-	-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합계	1,816	18	-	567	165	11	36	3	66	17
	주거용	539	18	-	313	85	5	7	1	3	1
	상업업무용	137	-	-	14	6	2	15	1	54	14
	주상복합용	132	-	-	73	38	-	12	-	-	2
	공업용	246	-	-	113	12	-	1	-	-	-
	전	412	-	-	40	18	4	1	1	9	-
	답	259	-	-	13	4	-	-	-	-	-
	임야	84	-	-	1	2	-	-	-	-	-
	특수토지	6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11	-	15	8	-	44	-	-	-	-	-	-	-	-
-	-	-	-	-	-	7	-	-	-	-	-	-	-	-
-	-	-	2	-	-	1	-	-	-	-	-	-	-	-
-	-	-	2	-	-	-	-	-	-	-	-	-	-	-
-	11	-	10	-	-	-	-	-	-	-	-	-	-	-
-	-	-	1	-	-	4	-	-	-	-	-	-	-	-
-	-	-	-	8	-	31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51	79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15	39	-	-	-	-	-	-	-
-	-	-	-	-	-	24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	-	-	-	-	-	-
-	-	4	24	-	-	57	102	-	-	-	-	-	-	-
-	-	-	9	-	-	4	1	-	-	-	-	-	-	-
-	-	-	5	-	-	2	-	-	-	-	-	-	-	-
-	-	-	6	-	-	1	-	-	-	-	-	-	-	-
-	-	4	4	-	-	1	-	-	-	-	-	-	-	-
-	-	-	-	-	-	26	30	-	-	-	-	-	-	-
-	-	-	-	-	-	2	16	-	-	-	-	-	-	-
-	-	-	-	-	-	21	55	-	-	-	-	-	-	-
-	-	-	-	-	-	-	-	-	-	-	-	-	-	-
-	18	19	79	6	-	84	-	-	-	-	-	-	-	-
-	-	1	9	-	-	11	-	-	-	-	-	-	-	-
-	-	1	15	-	-	6	-	-	-	-	-	-	-	-
-	-	-	11	-	-	1	-	-	-	-	-	-	-	-
-	18	17	42	-	-	11	-	-	-	-	-	-	-	-
-	-	-	1	1	-	11	-	-	-	-	-	-	-	-
-	-	-	1	5	-	44	-	-	-	-	-	-	-	-
-	-	1	32	-	-	83	173	-	-	-	-	-	-	-
-	-	-	1	-	-	17	10	-	-	-	-	-	-	-
-	-	-	7	-	-	2	-	-	-	-	-	-	-	-
-	-	-	6	-	-	12	3	-	-	-	-	-	-	-
-	-	1	18	-	-	-	1	-	-	-	-	-	-	-
-	-	-	-	-	-	29	103	-	-	-	-	-	-	-
-	-	-	-	-	-	5	5	-	-	-	-	-	-	-
-	-	-	-	-	-	17	44	-	-	-	-	-	-	-
-	-	-	-	-	-	1	2	-	-	-	-	-	-	-
-	-	-	-	-	-	-	5	-	-	-	-	-	-	-
5	-	94	29	9	-	218	571	-	-	-	-	-	-	7
-	-	-	-	-	-	39	62	-	-	-	-	-	-	5
5	-	1	19	-	-	1	5	-	-	-	-	-	-	-
-	-	-	-	-	-	1	6	-	-	-	-	-	-	-
-	-	92	10	-	-	-	18	-	-	-	-	-	-	-
-	-	-	-	2	-	132	203	-	-	-	-	-	-	2
-	-	-	-	-	-	8	234	-	-	-	-	-	-	-
-	-	1	-	7	-	34	39	-	-	-	-	-	-	-
-	-	-	-	-	-	2	4	-	-	-	-	-	-	-
-	-	-	-	-	-	1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합계	803	-	-	9	354	144	173	-	103	-
	주거용	407	-	-	7	239	79	54	-	26	-
	상업업무용	158	-	-	-	10	21	73	-	54	-
	주상복합용	220	-	-	1	105	44	46	-	23	-
	공업용	1	-	-	-	-	-	-	-	-	-
	전 임야	1 16	- -	- -	- 1	- -	- -	- -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합계	689	-	-	16	379	68	112	-	95	-
	주거용	347	-	-	13	254	38	27	-	11	-
	상업업무용	173	-	-	1	29	14	59	-	69	-
	주상복합용	152	-	-	-	95	16	26	-	15	-
	공업용	2	-	-	-	-	-	-	-	-	-
	전 임야	2 12	- -	- -	1 -	- 1	- -	- -	- -	- -	- -
	공공용지	1	-	-	1	-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합계	842	-	-	6	270	194	61	-	60	-
	주거용	256	-	-	3	124	92	18	-	11	-
	상업업무용	204	-	-	2	53	46	29	-	37	-
	주상복합용	159	-	-	1	76	52	11	-	11	-
	공업용	167	-	-	-	17	3	3	-	-	-
	전 임야	21 31	- -	- -	- -	- -	1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1	-
	공공용지	3	-	-	-	-	-	-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합계	1,798	2	-	380	214	34	43	-	77	7
	주거용	400	2	-	182	127	12	4	-	11	-
	상업업무용	163	-	-	7	38	8	34	-	53	5
	주상복합용	130	-	-	55	32	11	4	-	12	1
	공업용	64	-	-	1	2	-	-	-	-	1
	전 답	530 240	- -	- -	105 23	9 4	1 1	- 1	- -	1 -	- -
	임야	252	-	-	7	2	-	-	-	-	-
	특수토지	12	-	-	-	-	1	-	-	-	-
	공공용지	7	-	-	-	-	-	-	-	-	-
대구광역시	합계	14,049	29	4	2,024	3,692	1,253	946	1,059	512	621
	주거용	5,528	29	4	1,217	2,278	805	485	192	145	74
	상업업무용	2,931	-	-	179	532	186	225	791	299	515
	주상복합용	1,910	-	-	550	799	254	112	74	58	32
	공업용	584	-	-	5	56	6	107	1	3	-
	전 답	1,596 746	- -	- -	56 13	15 6	2 -	13 1	- -	3 -	- -
	임야	715	-	-	3	5	-	3	-	-	-
	특수토지	17	-	-	-	-	-	-	1	3	-
	공공용지	22	-	-	1	1	-	-	-	1	-
대구광역시 중구	합계	1,417	-	-	17	219	270	131	677	-	101
	주거용	461	-	-	7	104	176	76	87	-	11
	상업업무용	762	-	-	7	50	40	33	548	-	84
	주상복합용	192	-	-	3	65	54	22	42	-	6
공공용지	2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	1	-	-	19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5	-	-	-	-	-	-	-	-
-	-	-	3	-	-	16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27	166	-	-	58	-	-	-	-	-	-	-	-
-	-	-	5	-	-	3	-	-	-	-	-	-	-	-
-	-	2	34	-	-	1	-	-	-	-	-	-	-	-
-	-	2	6	-	-	-	-	-	-	-	-	-	-	-
-	-	23	121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47	4	123	3	392	472	-	-	-	-	-	-	-
-	-	1	-	8	-	38	15	-	-	-	-	-	-	-
-	-	-	-	1	-	14	3	-	-	-	-	-	-	-
-	-	-	-	-	-	8	7	-	-	-	-	-	-	-
-	-	41	4	-	-	11	4	-	-	-	-	-	-	-
-	-	2	-	31	1	139	241	-	-	-	-	-	-	-
-	-	2	-	15	2	103	89	-	-	-	-	-	-	-
-	-	1	-	67	-	67	108	-	-	-	-	-	-	-
-	-	-	-	1	-	8	2	-	-	-	-	-	-	-
-	-	-	-	-	-	4	3	-	-	-	-	-	-	-
29	-	348	158	130	144	1,305	1,661	-	-	-	-	-	26	108
-	-	13	15	13	3	174	74	-	-	-	-	-	-	7
29	-	31	52	1	6	64	5	-	-	-	-	-	-	16
-	-	7	11	-	1	8	4	-	-	-	-	-	-	-
-	-	268	74	-	3	60	1	-	-	-	-	-	-	-
-	-	12	3	58	15	544	828	-	-	-	-	-	4	43
-	-	12	2	4	115	259	333	-	-	-	-	-	1	-
-	-	4	-	54	1	177	407	-	-	-	-	-	21	40
-	-	-	1	-	-	8	2	-	-	-	-	-	-	2
-	-	1	-	-	-	11	7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대구광역시 동구	합계	2,626	11	1	286	429	404	303	197	76	86
	주거용	1,215	11	1	213	308	282	224	72	31	10
	상업업무용	410	-	-	13	51	45	36	109	34	71
	주상복합용	269	-	-	57	70	76	29	15	11	5
	공업용	35	-	-	-	-	1	14	-	-	-
	전	481	-	-	3	-	-	-	-	-	-
	답	71	-	-	-	-	-	-	-	-	-
	임야	136	-	-	-	-	-	-	-	-	-
	특수토지	5	-	-	-	-	-	-	1	-	-
공공용지	4	-	-	-	-	-	-	-	-	-	
대구광역시 서구	합계	1,262	-	-	25	680	118	79	-	72	125
	주거용	734	-	-	20	506	88	53	-	19	27
	상업업무용	249	-	-	2	69	10	13	-	41	96
	주상복합용	153	-	-	2	102	18	13	-	9	2
	공업용	70	-	-	1	1	2	-	-	2	-
	전	27	-	-	-	1	-	-	-	-	-
	답	1	-	-	-	-	-	-	-	-	-
	임야	20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1	-
공공용지	7	-	-	-	1	-	-	-	-	-	
대구광역시 남구	합계	1,000	-	-	196	525	59	8	-	70	126
	주거용	571	-	-	136	332	44	1	-	41	14
	상업업무용	177	-	-	13	36	1	7	-	18	101
	주상복합용	238	-	-	46	157	14	-	-	10	11
	전	2	-	-	1	-	-	-	-	-	-
	임야	11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1	-
대구광역시 북구	합계	1,807	15	1	281	535	155	181	92	77	36
	주거용	672	15	1	136	301	83	64	13	21	2
	상업업무용	392	-	-	21	103	28	52	68	47	34
	주상복합용	331	-	-	121	118	40	29	10	7	-
	공업용	159	-	-	1	12	2	35	1	-	-
	전	144	-	-	2	1	2	1	-	2	-
	답	28	-	-	-	-	-	-	-	-	-
	임야	79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합계	1,516	-	-	521	370	137	25	30	59	87
	주거용	660	-	-	327	204	75	3	7	10	10
	상업업무용	316	-	-	64	68	22	12	20	41	70
	주상복합용	285	-	-	127	95	40	4	3	8	7
	공업용	6	-	-	-	-	-	6	-	-	-
	전	159	-	-	3	1	-	-	-	-	-
	답	2	-	-	-	-	-	-	-	-	-
	임야	86	-	-	-	2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합계	1,483	-	-	370	554	94	56	63	96	48
	주거용	583	-	-	191	301	43	12	13	17	-
	상업업무용	413	-	-	46	94	38	39	46	69	47
	주상복합용	325	-	-	133	159	12	5	4	10	1
	공업용	80	-	-	-	-	1	-	-	-	-
	전	34	-	-	-	-	-	-	-	-	-
	답	9	-	-	-	-	-	-	-	-	-
	임야	36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8	-	21	4	73	10	232	399	-	-	-	-	-	-	86
-	-	1	-	10	-	32	17	-	-	-	-	-	-	3
8	-	3	-	1	-	22	3	-	-	-	-	-	-	14
-	-	2	1	-	-	3	-	-	-	-	-	-	-	-
-	-	15	3	-	1	-	1	-	-	-	-	-	-	-
-	-	-	-	40	3	156	242	-	-	-	-	-	-	37
-	-	-	-	3	6	7	55	-	-	-	-	-	-	-
-	-	-	-	19	-	10	77	-	-	-	-	-	-	30
-	-	-	-	-	-	-	2	-	-	-	-	-	-	2
-	-	-	-	-	-	2	2	-	-	-	-	-	-	-
-	-	59	40	-	-	54	10	-	-	-	-	-	-	-
-	-	4	9	-	-	8	-	-	-	-	-	-	-	-
-	-	5	12	-	-	1	-	-	-	-	-	-	-	-
-	-	1	6	-	-	-	-	-	-	-	-	-	-	-
-	-	48	13	-	-	3	-	-	-	-	-	-	-	-
-	-	1	-	-	-	22	3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3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19	-	84	55	1	1	84	190	-	-	-	-	-	-	-
-	-	8	4	-	-	13	11	-	-	-	-	-	-	-
19	-	8	7	-	-	4	1	-	-	-	-	-	-	-
-	-	3	3	-	-	-	-	-	-	-	-	-	-	-
-	-	61	35	-	-	12	-	-	-	-	-	-	-	-
-	-	4	3	-	-	38	91	-	-	-	-	-	-	-
-	-	-	2	-	-	4	22	-	-	-	-	-	-	-
-	-	-	-	1	1	13	64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1	-	-	-	-	-	-	-
1	-	-	-	-	6	66	214	-	-	-	-	-	-	-
-	-	-	-	-	1	9	14	-	-	-	-	-	-	-
1	-	-	-	-	3	14	1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3	130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19	65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1	-	-	-	-	-	-	-
-	-	83	29	1	-	45	44	-	-	-	-	-	-	-
-	-	-	-	1	-	5	-	-	-	-	-	-	-	-
-	-	14	17	-	-	3	-	-	-	-	-	-	-	-
-	-	-	1	-	-	-	-	-	-	-	-	-	-	-
-	-	68	11	-	-	-	-	-	-	-	-	-	-	-
-	-	-	-	-	-	13	21	-	-	-	-	-	-	-
-	-	-	-	-	-	3	6	-	-	-	-	-	-	-
-	-	-	-	-	-	19	17	-	-	-	-	-	-	-
-	-	-	-	-	-	2	-	-	-	-	-	-	-	-
-	-	1	-	-	-	-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합계	2,938	3	2	328	380	16	163	-	62	12
	주거용	632	3	2	187	222	14	52	-	6	-
	상업업무용	212	-	-	13	61	2	33	-	49	12
	주상복합용	117	-	-	61	33	-	10	-	3	-
	공업용	234	-	-	3	43	-	52	-	1	-
	전	749	-	-	47	12	-	12	-	1	-
	답	635	-	-	13	6	-	1	-	-	-
	임야	347	-	-	3	3	-	3	-	-	-
	특수토지	6	-	-	-	-	-	-	-	1	-
공공용지	6	-	-	1	-	-	-	-	1	-	
인천광역시	합계	12,893	71	76	838	2,850	560	909	36	1,680	18
	주거용	4,207	71	75	417	1,500	375	399	-	370	-
	상업업무용	2,556	-	-	79	658	80	313	34	1,080	17
	주상복합용	1,605	-	-	314	674	99	176	1	221	1
	공업용	495	-	-	8	9	1	6	-	1	-
	전	1,664	-	1	14	4	2	10	-	3	-
	답	1,102	-	-	2	3	2	1	-	2	-
	임야	1,191	-	-	3	1	-	-	-	-	-
	특수토지	30	-	-	-	-	-	1	1	-	-
공공용지	43	-	-	1	1	1	3	-	3	-	
인천광역시 중구	합계	1,536	28	73	112	154	17	21	13	463	-
	주거용	436	28	73	29	101	14	8	-	92	-
	상업업무용	446	-	-	15	21	3	7	13	308	-
	주상복합용	206	-	-	68	31	-	5	-	62	-
	공업용	46	-	-	-	1	-	-	-	1	-
	전	187	-	-	-	-	-	-	-	-	-
	답	81	-	-	-	-	-	-	-	-	-
	임야	114	-	-	-	-	-	-	-	-	-
	특수토지	14	-	-	-	-	-	-	-	-	-
공공용지	6	-	-	-	-	-	1	-	-	-	
인천광역시 동구	합계	565	-	-	-	135	200	47	2	136	-
	주거용	300	-	-	-	83	138	29	-	44	-
	상업업무용	117	-	-	-	20	18	2	2	67	-
	주상복합용	121	-	-	-	32	44	16	-	25	-
	공업용	26	-	-	-	-	-	-	-	-	-
	임야	1	-	-	-	-	-	-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합계	1,709	-	-	68	762	84	310	1	405	1
	주거용	840	-	-	42	419	55	197	-	116	-
	상업업무용	459	-	-	3	161	10	55	-	226	1
	주상복합용	343	-	-	23	180	18	56	-	63	-
	공업용	34	-	-	-	2	-	1	-	-	-
	전	10	-	-	-	-	-	-	-	-	-
	임야	16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1	-	-
	공공용지	6	-	-	-	-	1	1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합계	476	-	-	62	186	28	62	16	29	13
	주거용	162	-	-	43	78	22	11	-	-	-
	상업업무용	128	-	-	8	19	4	36	15	26	12
	주상복합용	115	-	-	11	89	2	9	1	1	1
	공업용	10	-	-	-	-	-	5	-	-	-
	전	24	-	-	-	-	-	1	-	-	-
	임야	22	-	-	-	-	-	-	-	-	-
	특수토지	4	-	-	-	-	-	-	-	-	-
	공공용지	11	-	-	-	-	-	-	-	2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1	-	101	30	55	127	806	804	-	-	-	-	-	26	22
-	-	-	2	2	2	104	32	-	-	-	-	-	-	4
1	-	1	16	-	3	19	-	-	-	-	-	-	-	2
-	-	1	-	-	1	5	3	-	-	-	-	-	-	-
-	-	76	12	-	2	45	-	-	-	-	-	-	-	-
-	-	7	-	18	10	291	341	-	-	-	-	-	4	6
-	-	12	-	1	109	244	248	-	-	-	-	-	1	-
-	-	4	-	34	-	92	177	-	-	-	-	-	21	10
-	-	-	-	-	-	5	-	-	-	-	-	-	-	-
-	-	-	-	-	-	1	3	-	-	-	-	-	-	-
12	2	247	241	149	105	950	541	3	1	489	231	2,094	789	1
-	-	11	36	8	13	175	27	-	-	75	32	589	34	-
10	-	15	52	4	17	91	11	-	-	2	2	90	1	-
-	-	6	13	-	8	38	3	-	-	1	-	48	2	-
2	1	215	133	1	5	94	2	1	1	2	-	10	3	-
-	-	-	5	21	20	292	308	1	-	130	74	699	80	-
-	-	-	-	-	42	93	81	1	-	35	65	298	477	-
-	-	-	1	110	-	127	98	-	-	244	57	357	192	1
-	1	-	-	-	-	21	2	-	-	-	1	3	-	-
-	-	-	1	5	-	19	9	-	-	-	-	-	-	-
-	-	8	43	80	48	476	-	-	-	-	-	-	-	-
-	-	-	-	4	6	81	-	-	-	-	-	-	-	-
-	-	-	7	3	11	58	-	-	-	-	-	-	-	-
-	-	-	-	-	7	33	-	-	-	-	-	-	-	-
-	-	8	35	-	-	1	-	-	-	-	-	-	-	-
-	-	-	-	7	9	171	-	-	-	-	-	-	-	-
-	-	-	-	-	15	66	-	-	-	-	-	-	-	-
-	-	-	-	65	-	49	-	-	-	-	-	-	-	-
-	-	-	-	-	-	14	-	-	-	-	-	-	-	-
-	-	-	1	1	-	3	-	-	-	-	-	-	-	-
-	-	31	12	-	-	2	-	-	-	-	-	-	-	-
-	-	4	1	-	-	1	-	-	-	-	-	-	-	-
-	-	4	4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19	7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27	12	13	-	24	2	-	-	-	-	-	-	-
-	-	5	1	1	-	4	-	-	-	-	-	-	-	-
-	-	1	2	-	-	-	-	-	-	-	-	-	-	-
-	-	2	-	-	-	1	-	-	-	-	-	-	-	-
-	-	19	9	-	-	3	-	-	-	-	-	-	-	-
-	-	-	-	5	-	5	-	-	-	-	-	-	-	-
-	-	-	-	7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	-	-	-	-	-	-
-	-	-	4	28	-	34	14	-	-	-	-	-	-	-
-	-	-	-	3	-	4	1	-	-	-	-	-	-	-
-	-	-	-	-	-	7	1	-	-	-	-	-	-	-
-	-	-	-	-	-	1	-	-	-	-	-	-	-	-
-	-	-	4	-	-	1	-	-	-	-	-	-	-	-
-	-	-	-	5	-	6	12	-	-	-	-	-	-	-
-	-	-	-	17	-	5	-	-	-	-	-	-	-	-
-	-	-	-	-	-	4	-	-	-	-	-	-	-	-
-	-	-	-	3	-	6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합계	1,245	11	1	120	500	42	176	-	101	-
	주거용	417	11	1	62	240	30	48	-	7	-
	상업업무용	345	-	-	10	147	6	80	-	89	-
	주상복합용	218	-	-	46	113	6	47	-	4	-
	공업용	77	-	-	1	-	-	-	-	-	-
	전	150	-	-	1	-	-	1	-	1	-
	답	6	-	-	-	-	-	-	-	-	-
	임야	26	-	-	-	-	-	-	-	-	-
공공용지	6	-	-	-	-	-	-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합계	1,312	-	-	45	483	102	174	-	358	-
	주거용	541	-	-	23	252	60	93	-	93	-
	상업업무용	434	-	-	1	122	17	47	-	217	-
	주상복합용	241	-	-	21	106	24	34	-	48	-
	공업용	57	-	-	-	2	1	-	-	-	-
	전	7	-	-	-	-	-	-	-	-	-
	답	5	-	-	-	-	-	-	-	-	-
	임야	19	-	-	-	-	-	-	-	-	-
공공용지	8	-	-	-	1	-	-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합계	720	-	-	72	232	42	53	-	42	-
	주거용	215	-	-	41	106	25	11	-	3	-
	상업업무용	156	-	-	7	62	11	32	-	32	-
	주상복합용	90	-	-	15	61	2	4	-	4	-
	공업용	34	-	-	7	2	-	-	-	-	-
	전	122	-	-	1	1	2	5	-	1	-
	답	62	-	-	-	-	2	1	-	2	-
	임야	39	-	-	1	-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합계	1,405	32	2	303	335	45	62	4	95	4
	주거용	432	32	1	142	178	31	2	-	8	-
	상업업무용	304	-	-	30	92	11	51	4	79	4
	주상복합용	203	-	-	128	57	3	5	-	6	-
	공업용	198	-	-	-	2	-	-	-	-	-
	전	123	-	1	2	2	-	3	-	1	-
	답	56	-	-	-	3	-	-	-	-	-
	임야	80	-	-	-	1	-	-	-	-	-
특수토지	3	-	-	-	-	-	-	-	-	-	
공공용지	6	-	-	1	-	-	1	-	1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합계	2,841	-	-	55	63	-	4	-	51	-
	주거용	662	-	-	34	43	-	-	-	7	-
	상업업무용	135	-	-	5	14	-	3	-	36	-
	주상복합용	40	-	-	2	5	-	-	-	8	-
	공업용	13	-	-	-	-	-	-	-	-	-
	전	721	-	-	10	1	-	-	-	-	-
	답	689	-	-	2	-	-	-	-	-	-
	임야	577	-	-	2	-	-	-	-	-	-
특수토지	4	-	-	-	-	-	1	-	-	-	
인천광역시 옹진군	합계	1,084	-	-	1	-	-	-	-	-	-
	주거용	202	-	-	1	-	-	-	-	-	-
	상업업무용	32	-	-	-	-	-	-	-	-	-
	주상복합용	28	-	-	-	-	-	-	-	-	-
	전	320	-	-	-	-	-	-	-	-	-
	답	203	-	-	-	-	-	-	-	-	-
	임야	297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1	48	37	2	-	17	189	-	-	-	-	-	-	-
-	-	1	4	-	-	4	9	-	-	-	-	-	-	-
-	-	1	6	-	-	1	5	-	-	-	-	-	-	-
-	-	-	1	-	-	-	1	-	-	-	-	-	-	-
-	1	46	23	-	-	6	-	-	-	-	-	-	-	-
-	-	-	3	-	-	2	142	-	-	-	-	-	-	-
-	-	-	-	-	-	1	5	-	-	-	-	-	-	-
-	-	-	-	2	-	-	24	-	-	-	-	-	-	-
-	-	-	-	-	-	3	3	-	-	-	-	-	-	-
-	-	22	64	2	9	29	24	-	-	-	-	-	-	-
-	-	-	15	-	-	5	-	-	-	-	-	-	-	-
-	-	4	19	-	1	4	2	-	-	-	-	-	-	-
-	-	-	8	-	-	-	-	-	-	-	-	-	-	-
-	-	18	22	-	1	13	-	-	-	-	-	-	-	-
-	-	-	-	-	2	-	5	-	-	-	-	-	-	-
-	-	-	-	-	5	-	-	-	-	-	-	-	-	-
-	-	-	-	2	-	4	13	-	-	-	-	-	-	-
-	-	-	-	-	-	3	4	-	-	-	-	-	-	-
-	-	2	31	6	-	40	200	-	-	-	-	-	-	-
-	-	-	8	-	-	7	14	-	-	-	-	-	-	-
-	-	-	6	-	-	4	2	-	-	-	-	-	-	-
-	-	-	3	-	-	-	1	-	-	-	-	-	-	-
-	-	2	14	-	-	9	-	-	-	-	-	-	-	-
-	-	-	-	1	-	13	98	-	-	-	-	-	-	-
-	-	-	-	-	-	3	54	-	-	-	-	-	-	-
-	-	-	-	5	-	3	30	-	-	-	-	-	-	-
-	-	-	-	-	-	1	1	-	-	-	-	-	-	-
12	-	106	30	18	13	183	112	-	1	10	2	4	32	-
-	-	1	4	-	1	27	3	-	-	1	-	-	1	-
10	-	5	6	1	1	9	1	-	-	-	-	-	-	-
-	-	-	1	-	-	2	1	-	-	-	-	-	-	-
2	-	100	19	1	4	61	2	-	1	1	-	2	3	-
-	-	-	-	3	1	48	51	-	-	2	1	1	7	-
-	-	-	-	-	6	9	22	-	-	1	-	-	15	-
-	-	-	-	12	-	23	31	-	-	5	1	1	6	-
-	-	-	-	-	-	2	1	-	-	-	-	-	-	-
-	-	-	-	1	-	2	-	-	-	-	-	-	-	-
-	-	3	8	-	35	145	-	1	-	291	151	1,354	680	-
-	-	-	3	-	6	42	-	-	-	65	27	403	32	-
-	-	-	2	-	4	8	-	-	-	2	2	58	1	-
-	-	-	-	-	1	1	-	-	-	1	-	20	2	-
-	-	3	-	-	-	-	-	1	-	1	-	8	-	-
-	-	-	2	-	8	47	-	-	-	86	49	453	65	-
-	-	-	-	-	16	14	-	-	-	24	46	180	407	-
-	-	-	1	-	-	33	-	-	-	112	27	229	173	-
-	-	-	-	-	-	-	-	-	-	-	-	3	-	-
-	1	-	-	-	-	-	-	2	-	188	78	736	77	1
-	-	-	-	-	-	-	-	-	-	9	5	186	1	-
-	-	-	-	-	-	-	-	-	-	-	-	32	-	-
-	-	-	-	-	-	-	-	-	-	-	-	28	-	-
-	-	-	-	-	-	-	-	1	-	42	24	245	8	-
-	-	-	-	-	-	-	-	1	-	10	19	118	55	-
-	-	-	-	-	-	-	-	-	-	127	29	127	13	1
-	1	-	-	-	-	-	-	-	-	-	1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광주광역시	합계	9,405	12	6	1,691	2,516	413	707	378	647	80
	주거용	3,496	11	6	1,346	1,305	214	228	56	129	16
	상업업무용	1,800	-	-	42	404	116	348	286	423	54
	주상복합용	1,400	-	-	245	790	79	130	36	93	10
	공업용	224	-	-	5	9	3	-	-	-	-
	전	743	1	-	38	2	1	-	-	1	-
	답	1,162	-	-	14	5	-	1	-	-	-
	임야	567	-	-	1	1	-	-	-	-	-
	특수토지	7	-	-	-	-	-	-	-	1	-
광주광역시 동구	합계	1,474	-	-	173	411	56	165	265	117	20
	주거용	607	-	-	145	260	38	65	33	34	8
	상업업무용	442	-	-	6	62	5	68	208	70	7
	주상복합용	200	-	-	21	88	13	32	24	13	5
	공업용	2	-	-	-	-	-	-	-	-	-
	전	106	-	-	1	-	-	-	-	-	-
	답	21	-	-	-	-	-	-	-	-	-
	임야	96	-	-	-	1	-	-	-	-	-
	특수토지	1	-	-	-	-	-	-	-	1	-
광주광역시 서구	합계	1,258	-	-	205	390	116	113	19	122	3
	주거용	470	-	-	153	183	65	26	-	18	-
	상업업무용	302	-	-	8	53	36	69	19	82	3
	주상복합용	250	-	-	41	154	15	18	-	21	-
	공업용	31	-	-	-	-	-	-	-	-	-
	전	66	-	-	2	-	-	-	-	-	-
	답	100	-	-	1	-	-	-	-	-	-
	임야	38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1	-
광주광역시 남구	합계	1,379	4	-	315	427	82	124	-	55	4
	주거용	599	4	-	262	234	39	35	-	14	-
	상업업무용	203	-	-	3	61	26	66	-	36	4
	주상복합용	230	-	-	50	132	17	23	-	5	-
	공업용	16	-	-	-	-	-	-	-	-	-
	전	104	-	-	-	-	-	-	-	-	-
	답	148	-	-	-	-	-	-	-	-	-
	임야	75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광주광역시 북구	합계	2,514	-	3	471	756	75	229	72	216	45
	주거용	962	-	3	368	377	36	82	23	46	6
	상업업무용	531	-	-	15	167	24	102	37	135	36
	주상복합용	399	-	-	82	204	13	44	12	34	3
	공업용	44	-	-	1	2	1	-	-	-	-
	전	171	-	-	4	2	1	-	-	1	-
	답	274	-	-	1	4	-	1	-	-	-
	임야	129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합계	2,780	8	3	527	532	84	76	22	137	8
	주거용	858	7	3	418	251	36	20	-	17	2
	상업업무용	322	-	-	10	61	25	43	22	100	4
	주상복합용	321	-	-	51	212	21	13	-	20	2
	공업용	131	-	-	4	7	2	-	-	-	-
	전	296	1	-	31	-	-	-	-	-	-
	답	619	-	-	12	1	-	-	-	-	-
	임야	229	-	-	1	-	-	-	-	-	-
	특수토지	4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02	83	100	256	602	1,643	-	-	31	51	76	11	-
-	-	-	18	7	6	97	32	-	-	1	2	22	-	-
-	-	3	22	1	27	67	6	-	-	-	-	1	-	-
-	-	-	2	-	1	11	3	-	-	-	-	-	-	-
-	-	99	26	-	44	30	1	-	-	1	2	4	-	-
-	-	-	7	28	18	185	427	-	-	11	3	21	-	-
-	-	-	3	3	160	106	803	-	-	1	44	22	-	-
-	-	-	5	61	-	100	365	-	-	17	-	6	11	-
-	-	-	-	-	-	3	3	-	-	-	-	-	-	-
-	-	-	-	-	-	3	3	-	-	-	-	-	-	-
-	-	-	2	46	-	64	155	-	-	-	-	-	-	-
-	-	-	-	3	-	16	5	-	-	-	-	-	-	-
-	-	-	1	1	-	13	1	-	-	-	-	-	-	-
-	-	-	-	-	-	4	-	-	-	-	-	-	-	-
-	-	-	1	-	-	1	-	-	-	-	-	-	-	-
-	-	-	-	12	-	18	75	-	-	-	-	-	-	-
-	-	-	-	2	-	3	16	-	-	-	-	-	-	-
-	-	-	-	28	-	9	58	-	-	-	-	-	-	-
-	-	1	16	5	82	111	75	-	-	-	-	-	-	-
-	-	-	-	-	3	17	5	-	-	-	-	-	-	-
-	-	-	7	-	11	14	-	-	-	-	-	-	-	-
-	-	-	-	-	-	-	1	-	-	-	-	-	-	-
-	-	1	8	-	17	5	-	-	-	-	-	-	-	-
-	-	-	-	1	8	39	16	-	-	-	-	-	-	-
-	-	-	-	-	43	16	40	-	-	-	-	-	-	-
-	-	-	1	4	-	20	13	-	-	-	-	-	-	-
-	-	-	-	-	-	-	-	-	-	-	-	-	-	-
-	-	12	5	32	1	51	267	-	-	-	-	-	-	-
-	-	-	-	3	-	7	1	-	-	-	-	-	-	-
-	-	-	-	-	-	7	-	-	-	-	-	-	-	-
-	-	-	2	-	-	1	-	-	-	-	-	-	-	-
-	-	12	3	-	-	1	-	-	-	-	-	-	-	-
-	-	-	-	10	-	19	75	-	-	-	-	-	-	-
-	-	-	-	-	1	8	139	-	-	-	-	-	-	-
-	-	-	-	19	-	7	49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3	-	-	-	-	-	-	-
-	-	20	5	17	65	171	369	-	-	-	-	-	-	-
-	-	-	-	1	-	15	5	-	-	-	-	-	-	-
-	-	-	-	-	5	8	2	-	-	-	-	-	-	-
-	-	-	-	-	-	5	2	-	-	-	-	-	-	-
-	-	20	3	-	10	7	-	-	-	-	-	-	-	-
-	-	-	1	5	-	52	105	-	-	-	-	-	-	-
-	-	-	-	1	50	37	180	-	-	-	-	-	-	-
-	-	-	1	10	-	43	75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3	-	-	-	-	-	-	-	-
-	-	69	55	-	108	205	777	-	-	31	51	76	11	-
-	-	-	18	-	3	42	16	-	-	1	2	22	-	-
-	-	3	14	-	11	25	3	-	-	-	-	1	-	-
-	-	-	-	-	1	1	-	-	-	-	-	-	-	-
-	-	66	11	-	17	16	1	-	-	1	2	4	-	-
-	-	-	6	-	10	57	156	-	-	11	3	21	-	-
-	-	-	3	-	66	42	428	-	-	1	44	22	-	-
-	-	-	3	-	-	21	170	-	-	17	-	6	11	-
-	-	-	-	-	-	1	3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대전광역시	합계	7,607	8	-	586	2,490	868	199	35	737	47
	주거용	2,533	8	-	414	1,216	405	17	-	41	2
	상업업무용	1,662	-	-	10	438	275	141	35	610	43
	주상복합용	1,282	-	-	142	796	183	40	-	81	2
	공업용	172	-	-	-	23	2	-	-	1	-
	전	1,109	-	-	16	15	2	1	-	-	-
	답	391	-	-	-	-	1	-	-	-	-
	임야	443	-	-	3	2	-	-	-	-	-
	특수토지	9	-	-	-	-	-	-	-	4	-
	공공용지	6	-	-	1	-	-	-	-	-	-
대전광역시 동구	합계	1,855	-	-	142	522	259	24	-	227	10
	주거용	665	-	-	113	289	142	3	-	2	1
	상업업무용	412	-	-	2	85	64	18	-	221	9
	주상복합용	227	-	-	22	139	52	3	-	2	-
	공업용	21	-	-	-	7	1	-	-	-	-
	전	357	-	-	5	2	-	-	-	-	-
	답	52	-	-	-	-	-	-	-	-	-
	임야	117	-	-	-	-	-	-	-	-	-
	특수토지	3	-	-	-	-	-	-	-	2	-
	공공용지	1	-	-	-	-	-	-	-	-	-
대전광역시 중구	합계	1,592	-	-	151	586	242	28	-	333	10
	주거용	640	-	-	124	347	96	5	-	30	-
	상업업무용	498	-	-	4	119	97	17	-	250	9
	주상복합용	238	-	-	16	114	49	6	-	52	1
	공업용	7	-	-	-	1	-	-	-	-	-
	전	139	-	-	5	5	-	-	-	-	-
	답	22	-	-	-	-	-	-	-	-	-
	임야	45	-	-	2	-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대전광역시 서구	합계	1,549	2	-	124	559	219	68	34	27	6
	주거용	530	2	-	84	227	109	5	-	1	-
	상업업무용	289	-	-	-	105	53	54	34	24	5
	주상복합용	332	-	-	38	224	56	9	-	2	1
	공업용	14	-	-	-	-	1	-	-	-	-
	전	183	-	-	-	2	-	-	-	-	-
	답	111	-	-	-	-	-	-	-	-	-
	임야	89	-	-	1	1	-	-	-	-	-
	공공용지	1	-	-	1	-	-	-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계	1,519	6	-	120	387	49	63	1	94
주거용		354	6	-	49	167	14	-	-	3	-
상업업무용		235	-	-	3	26	20	43	1	79	7
주상복합용		316	-	-	63	193	12	19	-	11	-
공업용		31	-	-	-	-	-	-	-	-	-
전		292	-	-	5	1	2	1	-	-	-
답		170	-	-	-	-	1	-	-	-	-
임야		116	-	-	-	-	-	-	-	-	-
특수토지		3	-	-	-	-	-	-	-	1	-
공공용지		2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11	-	115	46	63	11	716	1,408	-	-	103	30	71	45	18
-	-	10	3	6	2	269	84	-	-	20	6	28	-	2
7	-	3	24	-	3	62	10	-	-	-	-	1	-	-
-	-	1	2	-	-	23	9	-	-	-	-	2	1	-
4	-	97	13	-	-	24	1	-	-	3	-	4	-	-
-	-	3	3	28	2	222	699	-	-	62	10	23	15	8
-	-	-	1	-	4	29	321	-	-	7	13	13	-	2
-	-	1	-	29	-	80	281	-	-	11	1	-	29	6
-	-	-	-	-	-	4	1	-	-	-	-	-	-	-
-	-	-	-	-	-	3	2	-	-	-	-	-	-	-
7	-	5	3	3	-	164	401	-	-	35	5	21	9	18
-	-	-	-	-	-	78	20	-	-	4	2	9	-	2
3	-	1	3	-	-	5	-	-	-	-	-	1	-	-
-	-	-	-	-	-	5	3	-	-	-	-	1	-	-
4	-	4	-	-	-	2	-	-	-	1	-	2	-	-
-	-	-	-	2	-	51	250	-	-	26	3	7	3	8
-	-	-	-	-	-	4	45	-	-	-	-	1	-	2
-	-	-	-	1	-	19	81	-	-	4	-	-	6	6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	-	-	26	-	75	115	-	-	17	-	6	3	-
-	-	-	-	4	-	19	10	-	-	3	-	2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2	-	1	-	-
-	-	-	-	15	-	32	69	-	-	10	-	2	1	-
-	-	-	-	-	-	4	17	-	-	-	-	1	-	-
-	-	-	-	7	-	13	19	-	-	2	-	-	2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	-	7	5	10	7	105	223	-	-	51	25	44	33	-
-	-	-	-	1	1	48	18	-	-	13	4	17	-	-
-	-	-	3	-	-	11	-	-	-	-	-	-	-	-
-	-	-	-	-	-	-	-	-	-	-	-	1	1	-
-	-	7	2	-	-	3	-	-	-	-	-	1	-	-
-	-	-	-	1	2	22	98	-	-	26	7	14	11	-
-	-	-	-	-	4	9	67	-	-	7	13	11	-	-
-	-	-	-	8	-	12	40	-	-	5	1	-	21	-
-	-	-	-	-	-	-	-	-	-	-	-	-	-	-
4	-	21	29	8	4	242	484	-	-	-	-	-	-	-
-	-	-	1	-	1	87	26	-	-	-	-	-	-	-
4	-	-	17	-	3	25	7	-	-	-	-	-	-	-
-	-	-	1	-	-	12	5	-	-	-	-	-	-	-
-	-	21	8	-	-	2	-	-	-	-	-	-	-	-
-	-	-	1	4	-	84	194	-	-	-	-	-	-	-
-	-	-	1	-	-	9	159	-	-	-	-	-	-	-
-	-	-	-	4	-	20	92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1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합계	1,092	-	-	49	436	99	16	-	56	14
	주거용	344	-	-	44	186	44	4	-	5	1
	상업업무용	228	-	-	1	103	41	9	-	36	13
	주상복합용	169	-	-	3	126	14	3	-	14	-
	공업용	99	-	-	-	15	-	-	-	1	-
	전	138	-	-	1	5	-	-	-	-	-
	답	36	-	-	-	-	-	-	-	-	-
	임야	76	-	-	-	1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울산광역시	합계	9,261	27	-	547	2,457	181	520	17	784	15
	주거용	2,691	26	-	293	1,382	108	140	3	128	4
	상업업무용	1,243	-	-	17	323	22	227	6	506	7
	주상복합용	1,141	-	-	68	707	32	142	-	145	4
	공업용	315	-	-	4	3	-	1	7	1	-
	전	1,370	1	-	102	25	10	7	1	3	-
	답	1,385	-	-	47	11	7	2	-	1	-
	임야	1,090	-	-	16	6	2	1	-	-	-
	특수토지	13	-	-	-	-	-	-	-	-	-
공공용지	13	-	-	-	-	-	-	-	-	-	
울산광역시 중구	합계	1,286	16	-	33	708	65	78	2	236	-
	주거용	630	16	-	18	460	41	48	-	36	-
	상업업무용	261	-	-	-	82	8	10	2	157	-
	주상복합용	241	-	-	8	165	7	18	-	42	-
	전	82	-	-	7	-	5	2	-	1	-
	답	23	-	-	-	1	3	-	-	-	-
	임야	49	-	-	-	-	1	-	-	-	-
울산광역시 남구	합계	1,651	-	-	29	625	63	311	-	294	-
	주거용	470	-	-	11	277	39	71	-	35	-
	상업업무용	519	-	-	3	116	7	156	-	199	-
	주상복합용	410	-	-	11	232	17	84	-	60	-
	공업용	92	-	-	-	-	-	-	-	-	-
	전	73	-	-	3	-	-	-	-	-	-
	답	9	-	-	-	-	-	-	-	-	-
	임야	65	-	-	1	-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공공용지	12	-	-	-	-	-	-	-	-	-	
울산광역시 동구	합계	687	-	-	29	357	14	19	-	115	-
	주거용	285	-	-	8	213	8	7	-	40	-
	상업업무용	104	-	-	-	30	-	6	-	46	-
	주상복합용	170	-	-	14	113	6	6	-	29	-
	공업용	6	-	-	-	-	-	-	-	-	-
	전	73	-	-	6	-	-	-	-	-	-
답	6	-	-	1	-	-	-	-	-	-	
임야	43	-	-	-	1	-	-	-	-	-	
울산광역시 북구	합계	1,397	10	-	130	339	19	52	15	35	15
	주거용	384	10	-	74	184	11	3	3	2	4
	상업업무용	154	-	-	5	49	6	30	4	30	7
	주상복합용	146	-	-	19	90	2	17	-	3	4
	공업용	61	-	-	-	2	-	-	7	-	-
	전	252	-	-	27	11	-	2	1	-	-
	답	197	-	-	4	2	-	-	-	-	-
	임야	199	-	-	1	1	-	-	-	-	-
	특수토지	3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82	9	16	-	130	185	-	-	-	-	-	-	-
-	-	10	2	1	-	37	10	-	-	-	-	-	-	-
-	-	2	1	-	-	19	3	-	-	-	-	-	-	-
-	-	1	1	-	-	6	1	-	-	-	-	-	-	-
-	-	65	3	-	-	14	1	-	-	-	-	-	-	-
-	-	3	2	6	-	33	88	-	-	-	-	-	-	-
-	-	-	-	-	-	3	33	-	-	-	-	-	-	-
-	-	1	-	9	-	16	49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22	-	211	108	96	196	1,942	1,176	-	-	189	205	199	309	60
-	-	3	19	7	8	379	59	-	-	17	19	84	7	5
22	-	2	26	-	-	65	5	-	-	1	-	3	-	11
-	-	1	3	-	-	27	8	-	-	1	-	2	-	1
-	-	181	48	5	-	45	3	-	-	2	-	12	3	-
-	-	5	11	20	14	537	423	-	-	59	71	48	24	9
-	-	9	1	22	173	544	341	-	-	41	92	33	56	5
-	-	9	-	42	1	323	334	-	-	68	23	17	219	29
-	-	-	-	-	-	11	2	-	-	-	-	-	-	-
-	-	1	-	-	-	11	1	-	-	-	-	-	-	-
-	-	-	4	-	-	23	121	-	-	-	-	-	-	-
-	-	-	-	-	-	3	8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	-	-	-	-	-	-	-
-	-	-	4	-	-	10	53	-	-	-	-	-	-	-
-	-	-	-	-	-	1	18	-	-	-	-	-	-	-
-	-	-	-	-	-	6	42	-	-	-	-	-	-	-
22	-	74	32	-	1	140	60	-	-	-	-	-	-	-
-	-	-	9	-	1	21	6	-	-	-	-	-	-	-
22	-	1	7	-	-	7	1	-	-	-	-	-	-	-
-	-	-	-	-	-	2	4	-	-	-	-	-	-	-
-	-	69	16	-	-	7	-	-	-	-	-	-	-	-
-	-	1	-	-	-	51	18	-	-	-	-	-	-	-
-	-	-	-	-	-	2	7	-	-	-	-	-	-	-
-	-	2	-	-	-	39	23	-	-	-	-	-	-	-
-	-	-	-	-	-	1	-	-	-	-	-	-	-	-
-	-	1	-	-	-	10	1	-	-	-	-	-	-	-
-	-	4	3	-	-	70	76	-	-	-	-	-	-	-
-	-	-	-	-	-	6	3	-	-	-	-	-	-	-
-	-	-	2	-	-	20	-	-	-	-	-	-	-	-
-	-	-	1	-	-	1	-	-	-	-	-	-	-	-
-	-	4	-	-	-	1	1	-	-	-	-	-	-	-
-	-	-	-	-	-	23	44	-	-	-	-	-	-	-
-	-	-	-	-	-	1	4	-	-	-	-	-	-	-
-	-	-	-	-	-	18	24	-	-	-	-	-	-	-
-	-	26	43	-	29	208	319	-	-	38	31	28	60	-
-	-	-	7	-	2	51	14	-	-	3	3	12	1	-
-	-	-	8	-	-	13	1	-	-	-	-	1	-	-
-	-	-	1	-	-	8	2	-	-	-	-	-	-	-
-	-	23	23	-	-	2	2	-	-	1	-	1	-	-
-	-	-	4	-	11	64	103	-	-	7	9	7	6	-
-	-	2	-	-	16	32	107	-	-	7	14	3	10	-
-	-	1	-	-	-	36	88	-	-	20	5	4	43	-
-	-	-	-	-	-	1	2	-	-	-	-	-	-	-
-	-	-	-	-	-	1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합계	4,240	1	-	326	428	20	60	-	104	-
	주거용	922	-	-	182	248	9	11	-	15	-
	상업업무용	205	-	-	9	46	1	25	-	74	-
	주상복합용	174	-	-	16	107	-	17	-	11	-
	공업용	156	-	-	4	1	-	1	-	1	-
	전	890	1	-	59	14	5	3	-	2	-
	답	1,150	-	-	42	8	4	2	-	1	-
	임야	734	-	-	14	4	1	1	-	-	-
특수토지	9	-	-	-	-	-	-	-	-	-	
세종특별 자치시	합계	2,594	75	1	60	228	-	32	10	74	8
	주거용	657	52	-	35	131	-	8	-	3	-
	상업업무용	178	11	-	-	37	-	15	9	55	8
	주상복합용	92	-	-	7	38	-	5	1	15	-
	공업용	81	-	-	-	1	-	2	-	1	-
	전	690	5	1	11	13	-	1	-	-	-
	답	574	4	-	6	5	-	1	-	-	-
	임야	304	2	-	1	3	-	-	-	-	-
특수토지	6	-	-	-	-	-	-	-	-	-	
공공용지	12	1	-	-	-	-	-	-	-	-	
경기도	합계	69,145	305	56	7,856	6,940	1,095	1,703	204	3,371	180
	주거용	18,202	279	54	4,385	3,533	728	340	-	454	8
	상업업무용	8,087	7	-	826	1,350	148	908	195	2,399	152
	주상복합용	5,231	7	1	1,969	1,798	148	269	6	443	14
	공업용	3,605	-	-	211	34	6	42	-	4	3
	전	15,800	10	1	351	157	52	111	-	38	2
	답	9,701	1	-	55	37	7	23	-	11	-
	임야	8,004	1	-	59	30	6	5	-	1	-
특수토지	310	-	-	-	-	-	3	3	16	1	
공공용지	205	-	-	-	1	-	2	-	5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합계	735	-	-	234	248	7	19	-	51	-
	주거용	332	-	-	150	135	5	1	-	11	-
	상업업무용	120	-	-	32	39	1	13	-	26	-
	주상복합용	152	-	-	51	74	1	5	-	14	-
	공업용	5	-	-	-	-	-	-	-	-	-
	전	68	-	-	-	-	-	-	-	-	-
	답	14	-	-	-	-	-	-	-	-	-
	임야	43	-	-	1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합계	884	9	-	226	310	13	29	10	35	2
	주거용	305	7	-	135	123	11	5	-	5	-
	상업업무용	200	-	-	28	78	2	18	10	24	2
	주상복합용	181	-	-	59	108	-	5	-	4	-
	공업용	20	-	-	2	-	-	1	-	-	-
	전	83	2	-	2	1	-	-	-	-	-
	답	76	-	-	-	-	-	-	-	-	-
	임야	16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2	-	
공공용지	1	-	-	-	-	-	-	-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합계	773	-	-	224	221	6	12	32	264	1
	주거용	321	-	-	156	114	4	3	-	44	-
	상업업무용	299	-	-	18	52	1	5	32	188	1
	주상복합용	141	-	-	49	55	1	4	-	32	-
	전	3	-	-	1	-	-	-	-	-	-
	답	1	-	-	-	-	-	-	-	-	-
임야	1	-	-	-	-	-	-	-	-	-	
공공용지	7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07	26	96	166	1,501	600	-	-	151	174	171	249	60
-	-	3	3	7	5	298	28	-	-	14	16	72	6	5
-	-	1	9	-	-	23	3	-	-	1	-	2	-	11
-	-	1	1	-	-	15	2	-	-	1	-	2	-	1
-	-	85	9	5	-	35	-	-	-	1	-	11	3	-
-	-	4	3	20	3	389	205	-	-	52	62	41	18	9
-	-	7	1	22	157	508	205	-	-	34	78	30	46	5
-	-	6	-	42	1	224	157	-	-	48	18	13	176	29
-	-	-	-	-	-	9	-	-	-	-	-	-	-	-
1	-	30	7	14	16	174	169	9	-	201	235	915	329	6
-	-	1	-	-	1	50	14	2	-	25	22	296	16	1
1	-	1	4	-	3	7	1	-	-	2	-	23	1	-
-	-	1	1	-	-	4	-	-	-	1	-	19	-	-
-	-	19	2	-	-	2	-	-	-	1	2	50	1	-
-	-	3	-	2	3	67	57	3	-	61	121	304	35	3
-	-	4	-	-	9	20	70	4	-	16	83	161	190	1
-	-	1	-	8	-	16	27	-	-	95	7	57	86	1
-	-	-	-	-	-	1	-	-	-	-	-	5	-	-
-	-	-	-	4	-	7	-	-	-	-	-	-	-	-
57	2	781	280	751	1,590	8,218	5,314	41	2	3,917	4,004	14,998	7,176	304
4	-	37	34	109	174	1,828	347	8	-	535	481	4,389	448	27
26	-	56	83	39	79	720	123	7	-	51	47	830	32	9
3	-	15	11	5	14	152	60	1	-	8	5	288	5	9
6	2	591	129	6	78	556	49	3	-	52	117	1,607	109	-
3	-	37	15	197	389	2,549	2,791	14	-	1,360	1,732	4,726	1,198	67
10	-	20	5	13	830	1,088	658	4	1	350	1,208	1,467	3,864	49
4	-	18	3	379	19	1,209	1,229	4	1	1,528	405	1,536	1,511	56
-	-	7	-	2	6	60	40	-	-	17	5	148	2	-
1	-	-	-	1	1	56	17	-	-	16	4	7	7	87
-	-	3	-	1	-	75	97	-	-	-	-	-	-	-
-	-	1	-	-	-	17	12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5	2	-	-	-	-	-	-	-
-	-	2	-	-	-	3	-	-	-	-	-	-	-	-
-	-	-	-	-	-	27	41	-	-	-	-	-	-	-
-	-	-	-	-	-	6	8	-	-	-	-	-	-	-
-	-	-	-	1	-	7	34	-	-	-	-	-	-	-
-	-	-	-	-	-	1	-	-	-	-	-	-	-	-
-	-	8	-	-	58	83	101	-	-	-	-	-	-	-
-	-	-	-	-	2	11	6	-	-	-	-	-	-	-
-	-	1	-	-	11	25	1	-	-	-	-	-	-	-
-	-	-	-	-	1	2	2	-	-	-	-	-	-	-
-	-	7	-	-	2	8	-	-	-	-	-	-	-	-
-	-	-	-	-	17	22	39	-	-	-	-	-	-	-
-	-	-	-	-	25	12	39	-	-	-	-	-	-	-
-	-	-	-	-	-	2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7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합계	358	-	-	53	151	12	40	6	5	11
	주거용	94	-	-	18	50	7	3	-	-	-
	상업업무용	108	-	-	6	31	5	31	6	3	11
	주상복합용	111	-	-	29	66	-	6	-	2	-
	공업용	21	-	-	-	2	-	-	-	-	-
	전	5	-	-	-	1	-	-	-	-	-
	답	2	-	-	-	-	-	-	-	-	-
	임야	10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공공용지	6	-	-	-	1	-	-	-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합계	1,041	7	-	76	280	242	74	-	105	7
	주거용	464	7	-	50	185	158	21	-	18	-
	상업업무용	181	-	-	6	22	19	34	-	75	5
	주상복합용	180	-	-	20	68	62	10	-	12	1
	공업용	5	-	-	-	-	-	-	-	-	-
	전	148	-	-	-	5	3	9	-	-	1
	답	1	-	-	-	-	-	-	-	-	-
	임야	60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합계	717	3	-	22	255	119	98	-	102	5
	주거용	268	3	-	4	141	79	31	-	5	-
	상업업무용	172	-	-	1	29	7	50	-	79	4
	주상복합용	171	-	-	17	85	33	17	-	18	1
	공업용	12	-	-	-	-	-	-	-	-	-
	전	41	-	-	-	-	-	-	-	-	-
	답	1	-	-	-	-	-	-	-	-	-
	임야	44	-	-	-	-	-	-	-	-	-
공공용지	8	-	-	-	-	-	-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합계	667	64	7	171	16	18	24	40	13	37
	주거용	210	62	7	64	10	18	2	-	-	-
	상업업무용	134	-	-	-	2	-	16	37	13	35
	주상복합용	128	-	-	106	2	-	5	2	-	1
	공업용	1	-	-	-	-	-	-	-	-	1
	전	108	1	-	1	-	-	-	-	-	-
	답	5	-	-	-	1	-	1	-	-	-
	임야	77	1	-	-	1	-	-	-	-	-
특수토지	3	-	-	-	-	-	-	1	-	-	
공공용지	1	-	-	-	-	-	-	-	-	-	
경기도 의정부시	합계	1,216	7	-	145	557	27	15	-	169	-
	주거용	446	7	-	86	266	22	1	-	24	-
	상업업무용	260	-	-	13	104	2	11	-	115	-
	주상복합용	279	-	-	46	186	3	3	-	29	-
	공업용	5	-	-	-	1	-	-	-	-	-
	전	129	-	-	-	-	-	-	-	-	-
	답	7	-	-	-	-	-	-	-	-	-
	임야	74	-	-	-	-	-	-	-	-	-
특수토지	3	-	-	-	-	-	-	-	1	-	
공공용지	13	-	-	-	-	-	-	-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합계	690	4	-	188	181	27	20	-	130	-
	주거용	287	4	-	127	89	19	6	-	22	-
	상업업무용	156	-	-	15	33	2	6	-	89	-
	주상복합용	133	-	-	42	56	6	5	-	19	-
	공업용	28	-	-	2	2	-	3	-	-	-
	전	37	-	-	1	1	-	-	-	-	-
	답	3	-	-	-	-	-	-	-	-	-
임야	46	-	-	1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47	2	1	3	26	1	-	-	-	-	-	-	-
-	-	11	-	1	-	4	-	-	-	-	-	-	-	-
-	-	10	-	-	-	5	-	-	-	-	-	-	-	-
-	-	8	-	-	-	-	-	-	-	-	-	-	-	-
-	-	17	2	-	-	-	-	-	-	-	-	-	-	-
-	-	-	-	-	1	3	-	-	-	-	-	-	-	-
-	-	-	-	-	1	1	-	-	-	-	-	-	-	-
-	-	1	-	-	-	8	1	-	-	-	-	-	-	-
-	-	-	-	-	-	1	-	-	-	-	-	-	-	-
-	-	-	-	-	1	4	-	-	-	-	-	-	-	-
-	-	-	5	35	-	42	167	1	-	-	-	-	-	-
-	-	-	-	6	-	13	5	1	-	-	-	-	-	-
-	-	-	-	8	-	8	4	-	-	-	-	-	-	-
-	-	-	-	1	-	5	1	-	-	-	-	-	-	-
-	-	-	5	-	-	-	-	-	-	-	-	-	-	-
-	-	-	-	13	-	9	108	-	-	-	-	-	-	-
-	-	-	-	-	-	-	1	-	-	-	-	-	-	-
-	-	-	-	7	-	7	46	-	-	-	-	-	-	-
-	-	-	-	-	-	-	2	-	-	-	-	-	-	-
-	-	11	1	1	-	19	81	-	-	-	-	-	-	-
-	-	-	-	-	-	3	2	-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	-	-	-	-	-	-	-	-	-	-
-	-	-	-	-	-	2	39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7	37	-	-	-	-	-	-	-
-	-	-	-	1	-	6	1	-	-	-	-	-	-	-
-	-	-	-	195	-	66	16	-	-	-	-	-	-	-
-	-	-	-	24	-	22	1	-	-	-	-	-	-	-
-	-	-	-	19	-	12	-	-	-	-	-	-	-	-
-	-	-	-	2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	17	7	-	-	-	-	-	-	-
-	-	-	-	3	-	-	-	-	-	-	-	-	-	-
-	-	-	-	63	-	4	8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1	-	-	-	-	-	-	-	-
1	-	-	5	-	-	68	222	-	-	-	-	-	-	-
-	-	-	-	-	-	19	21	-	-	-	-	-	-	-
-	-	-	1	-	-	5	9	-	-	-	-	-	-	-
-	-	-	-	-	-	8	4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19	110	-	-	-	-	-	-	-
-	-	-	-	-	-	1	6	-	-	-	-	-	-	-
-	-	-	-	-	-	10	64	-	-	-	-	-	-	-
-	-	-	-	-	-	1	1	-	-	-	-	-	-	-
1	-	-	-	-	-	5	7	-	-	-	-	-	-	-
-	-	10	17	7	-	34	72	-	-	-	-	-	-	-
-	-	-	6	1	-	6	7	-	-	-	-	-	-	-
-	-	1	3	1	-	2	4	-	-	-	-	-	-	-
-	-	-	2	1	-	-	2	-	-	-	-	-	-	-
-	-	9	6	-	-	4	2	-	-	-	-	-	-	-
-	-	-	-	2	-	7	26	-	-	-	-	-	-	-
-	-	-	-	-	-	2	1	-	-	-	-	-	-	-
-	-	-	-	2	-	13	30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합계	441	2	-	89	145	17	41	16	36	-
	주거용	151	2	-	45	66	17	11	-	1	-
	상업업무용	140	-	-	5	51	-	24	16	30	-
	주상복합용	79	-	-	39	27	-	6	-	5	-
	공업용	27	-	-	-	-	-	-	-	-	-
	전	20	-	-	-	-	-	-	-	-	-
	임야	22	-	-	-	1	-	-	-	-	-
	공공용지	2	-	-	-	-	-	-	-	-	-
경기도 부천시	합계	1,502	7	-	132	810	66	63	12	149	2
	주거용	617	6	-	79	443	29	18	-	13	-
	상업업무용	379	-	-	3	157	24	16	12	126	-
	주상복합용	286	-	-	47	205	12	11	-	8	-
	공업용	85	-	-	-	-	1	3	-	-	2
	전	67	-	-	1	2	-	4	-	-	-
	답	29	1	-	1	3	-	9	-	1	-
	임야	36	-	-	1	-	-	1	-	-	-
경기도 광명시	합계	827	9	1	127	281	40	21	-	107	-
	주거용	319	9	1	62	185	29	7	-	15	-
	상업업무용	144	-	-	8	23	4	11	-	79	-
	주상복합용	122	-	-	30	66	7	3	-	13	-
	공업용	38	-	-	20	1	-	-	-	-	-
	전	138	-	-	4	6	-	-	-	-	-
	답	13	-	-	-	-	-	-	-	-	-
	임야	53	-	-	3	-	-	-	-	-	-
경기도 평택시	합계	5,053	-	2	753	112	23	189	5	348	13
	주거용	1,271	-	2	439	47	15	32	-	56	-
	상업업무용	669	-	-	70	31	4	103	5	216	13
	주상복합용	411	-	-	221	26	-	49	-	68	-
	공업용	279	-	-	3	-	-	-	-	-	-
	전	912	-	-	13	4	-	2	-	1	-
	답	1,059	-	-	2	2	1	3	-	4	-
	임야	430	-	-	5	2	3	-	-	-	-
경기도 동두천시	합계	1,002	1	-	110	193	5	44	-	211	-
	주거용	395	1	-	57	145	4	22	-	57	-
	상업업무용	170	-	-	12	19	-	13	-	111	-
	주상복합용	100	-	-	25	21	1	8	-	42	-
	공업용	26	-	-	2	1	-	-	-	-	-
	전	193	-	-	12	6	-	-	-	1	-
	답	26	-	-	2	-	-	-	-	-	-
	임야	88	-	-	-	1	-	-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합계	903	-	3	81	430	12	22	-	36	-
	주거용	298	-	2	53	226	2	1	-	1	-
	상업업무용	70	-	-	1	25	-	10	-	31	-
	주상복합용	185	-	-	17	165	-	2	-	1	-
	공업용	22	-	-	1	-	-	-	-	-	-
	전	191	-	1	9	13	9	9	-	-	-
	답	61	-	-	-	1	1	-	-	1	-
	임야	63	-	-	-	-	-	-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특수토지	3	-	-	-	-	-	-	-	1	-
	공공용지	10	-	-	-	-	-	-	-	1	-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33	7	-	-	20	35	-	-	-	-	-	-	-
-	-	-	2	-	-	3	4	-	-	-	-	-	-	-
-	-	8	3	-	-	2	1	-	-	-	-	-	-	-
-	-	-	-	-	-	-	2	-	-	-	-	-	-	-
-	-	25	2	-	-	-	-	-	-	-	-	-	-	-
-	-	-	-	-	-	7	13	-	-	-	-	-	-	-
-	-	-	-	-	-	7	14	-	-	-	-	-	-	-
-	-	-	-	-	-	1	1	-	-	-	-	-	-	-
5	-	69	45	-	3	33	106	-	-	-	-	-	-	-
-	-	-	8	-	-	11	10	-	-	-	-	-	-	-
4	-	15	16	-	1	2	3	-	-	-	-	-	-	-
-	-	-	1	-	-	1	1	-	-	-	-	-	-	-
1	-	54	20	-	2	-	2	-	-	-	-	-	-	-
-	-	-	-	-	-	7	53	-	-	-	-	-	-	-
-	-	-	-	-	-	4	10	-	-	-	-	-	-	-
-	-	-	-	-	-	8	26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11	-	8	11	3	-	128	80	-	-	-	-	-	-	-
-	-	-	-	-	-	6	5	-	-	-	-	-	-	-
11	-	-	4	-	-	1	3	-	-	-	-	-	-	-
-	-	-	-	-	-	2	1	-	-	-	-	-	-	-
-	-	7	3	-	-	4	3	-	-	-	-	-	-	-
-	-	1	3	1	-	90	33	-	-	-	-	-	-	-
-	-	-	-	-	-	13	-	-	-	-	-	-	-	-
-	-	-	1	2	-	12	35	-	-	-	-	-	-	-
18	-	66	23	20	127	636	-	1	-	165	308	1,435	784	25
3	-	1	1	4	15	124	-	-	-	25	41	406	57	3
2	-	6	12	-	10	75	-	-	-	6	9	103	4	-
-	-	3	1	-	2	12	-	-	-	1	-	26	2	-
3	-	50	8	-	5	26	-	1	-	3	15	149	16	-
2	-	2	-	5	24	176	-	-	-	43	92	458	82	8
7	-	1	-	1	71	121	-	-	-	15	98	117	604	12
1	-	1	1	10	-	98	-	-	-	64	53	174	18	-
-	-	2	-	-	-	1	-	-	-	-	-	-	-	-
-	-	-	-	-	-	3	-	-	-	8	-	2	1	2
-	-	17	2	-	-	184	-	-	-	62	30	111	32	-
-	-	2	-	-	-	57	-	-	-	7	2	40	1	-
-	-	1	-	-	-	9	-	-	-	1	-	4	-	-
-	-	-	-	-	-	1	-	-	-	-	-	2	-	-
-	-	8	1	-	-	5	-	-	-	-	-	9	-	-
-	-	4	1	-	-	68	-	-	-	34	19	46	2	-
-	-	1	-	-	-	9	-	-	-	1	7	3	3	-
-	-	-	-	-	-	35	-	-	-	18	2	6	26	-
-	-	1	-	-	-	-	-	-	-	1	-	1	-	-
-	-	10	9	27	-	30	243	-	-	-	-	-	-	-
-	-	-	-	1	-	3	9	-	-	-	-	-	-	-
-	-	-	-	1	-	-	2	-	-	-	-	-	-	-
-	-	-	-	-	-	-	-	-	-	-	-	-	-	-
-	-	10	9	-	-	-	2	-	-	-	-	-	-	-
-	-	-	-	8	-	12	130	-	-	-	-	-	-	-
-	-	-	-	1	-	-	57	-	-	-	-	-	-	-
-	-	-	-	16	-	6	41	-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8	1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합계	977	2	-	158	151	3	31	7	24	3
	주거용	224	2	-	73	60	1	3	-	-	-
	상업업무용	93	-	-	8	14	1	15	7	23	3
	주상복합용	135	-	-	41	72	1	11	-	-	-
	공업용	60	-	-	-	-	-	-	-	-	-
	전	240	-	-	28	3	-	1	-	-	-
	답	86	-	-	2	1	-	1	-	-	-
	임야	122	-	-	6	1	-	-	-	-	-
	특수토지	8	-	-	-	-	-	-	-	-	-
공공용지	9	-	-	-	-	-	-	-	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합계	1,495	6	-	454	168	38	42	12	80	2
	주거용	464	5	-	286	67	18	3	-	3	-
	상업업무용	235	-	-	39	69	9	16	11	67	2
	주상복합용	148	1	-	115	19	-	1	-	3	-
	공업용	31	-	-	2	2	-	-	-	-	-
	전	439	-	-	8	9	9	21	-	7	-
	답	49	-	-	-	-	1	-	-	-	-
	임야	118	-	-	4	2	1	1	-	-	-
	특수토지	8	-	-	-	-	-	-	1	-	-
공공용지	3	-	-	-	-	-	-	-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합계	690	18	-	115	30	7	14	13	28	1
	주거용	175	15	-	50	10	6	-	-	1	-
	상업업무용	106	3	-	5	15	1	9	13	22	1
	주상복합용	76	-	-	60	4	-	4	-	-	-
	공업용	81	-	-	-	-	-	1	-	-	-
	전	169	-	-	-	1	-	-	-	4	-
	답	28	-	-	-	-	-	-	-	-	-
	임야	50	-	-	-	-	-	-	-	-	-
	특수토지	3	-	-	-	-	-	-	-	1	-
공공용지	2	-	-	-	-	-	-	-	-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합계	488	-	-	75	38	11	9	-	37	2
	주거용	108	-	-	32	14	7	-	-	3	-
	상업업무용	97	-	-	11	23	4	1	-	29	2
	주상복합용	37	-	-	31	-	-	3	-	3	-
	공업용	40	-	-	-	1	-	-	-	-	-
	전	85	-	-	1	-	-	1	-	1	-
	답	108	-	-	-	-	-	4	-	1	-
	임야	12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경기도 과천시	합계	272	8	6	75	17	4	17	-	9	-
	주거용	74	7	6	43	6	3	-	-	-	-
	상업업무용	37	-	-	8	2	1	9	-	7	-
	주상복합용	26	-	-	23	1	-	-	-	-	-
	전	93	1	-	1	7	-	8	-	2	-
	답	1	-	-	-	-	-	-	-	-	-
	임야	36	-	-	-	1	-	-	-	-	-
	특수토지	3	-	-	-	-	-	-	-	-	-
	공공용지	2	-	-	-	-	-	-	-	-	-
경기도 구리시	합계	503	-	-	160	97	30	17	-	55	1
	주거용	190	-	-	99	48	23	3	-	5	-
	상업업무용	101	-	-	7	27	6	13	-	41	1
	주상복합용	89	-	-	54	22	-	1	-	9	-
	공업용	3	-	-	-	-	1	-	-	-	-
	전	96	-	-	-	-	-	-	-	-	-
	임야	23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55	5	78	95	274	90	-	-	-	-	-	-	1
-	-	-	-	2	19	62	2	-	-	-	-	-	-	-
-	-	1	2	1	1	14	3	-	-	-	-	-	-	-
-	-	-	-	-	1	6	3	-	-	-	-	-	-	-
-	-	54	3	-	-	1	2	-	-	-	-	-	-	-
-	-	-	-	25	34	103	46	-	-	-	-	-	-	-
-	-	-	-	2	33	31	16	-	-	-	-	-	-	-
-	-	-	-	48	1	50	16	-	-	-	-	-	-	-
-	-	-	-	-	6	1	1	-	-	-	-	-	-	-
-	-	-	-	-	-	6	1	-	-	-	-	-	-	1
-	-	-	-	-	-	81	501	-	-	10	21	62	18	-
-	-	-	-	-	-	14	31	-	-	3	1	31	2	-
-	-	-	-	-	-	8	9	-	-	-	-	5	-	-
-	-	-	-	-	-	2	6	-	-	-	-	1	-	-
-	-	-	-	-	-	6	6	-	-	-	2	12	1	-
-	-	-	-	-	-	33	323	-	-	1	10	11	7	-
-	-	-	-	-	-	3	34	-	-	-	7	-	4	-
-	-	-	-	-	-	13	85	-	-	5	1	2	4	-
-	-	-	-	-	-	1	5	-	-	1	-	-	-	-
-	-	-	-	-	-	1	2	-	-	-	-	-	-	-
-	-	-	-	-	-	26	51	-	-	36	32	241	78	-
-	-	-	-	-	-	7	4	-	-	3	3	66	10	-
-	-	-	-	-	-	9	-	-	-	-	1	27	-	-
-	-	-	-	-	-	-	1	-	-	-	-	7	-	-
-	-	-	-	-	-	1	-	-	-	5	3	69	2	-
-	-	-	-	-	-	7	39	-	-	8	11	54	45	-
-	-	-	-	-	-	-	1	-	-	-	12	2	13	-
-	-	-	-	-	-	1	5	-	-	19	2	15	8	-
-	-	-	-	-	-	-	1	-	-	1	-	-	-	-
-	-	-	-	-	-	1	-	-	-	-	-	1	-	-
-	-	-	2	-	-	14	-	-	-	8	10	130	152	-
-	-	-	-	-	-	2	-	-	-	-	1	40	9	-
-	-	-	-	-	-	4	-	-	-	-	-	22	1	-
-	-	-	-	-	-	-	-	-	-	-	-	-	-	-
-	-	-	-	-	-	1	-	-	-	2	2	34	-	-
-	-	-	1	-	-	4	-	-	-	2	4	29	42	-
-	-	-	1	-	-	-	-	-	-	-	1	1	100	-
-	-	-	-	-	-	2	-	-	-	4	2	4	-	-
-	-	-	-	-	-	1	-	-	-	-	-	-	-	-
-	-	-	-	-	-	19	117	-	-	-	-	-	-	-
-	-	-	-	-	-	2	7	-	-	-	-	-	-	-
-	-	-	-	-	-	2	8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10	64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4	31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1	1	-	-	-	-	-	-	-
1	-	-	-	-	-	12	130	-	-	-	-	-	-	-
-	-	-	-	-	-	4	8	-	-	-	-	-	-	-
1	-	-	-	-	-	1	4	-	-	-	-	-	-	-
-	-	-	-	-	-	1	2	-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4	92	-	-	-	-	-	-	-
-	-	-	-	-	-	1	22	-	-	-	-	-	-	-
-	-	-	-	-	-	-	1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기도 남양주시	합계	2,888	16	2	681	119	81	100	-	72	3
	주거용	864	15	2	395	57	42	20	-	8	-
	상업업무용	265	-	-	84	21	8	53	-	40	2
	주상복합용	179	-	-	125	12	2	6	-	7	1
	공업용	173	-	-	41	3	1	-	-	1	-
	전	949	1	-	29	24	25	20	-	14	-
	답	66	-	-	1	1	1	-	-	1	-
	임야	380	-	-	6	1	2	1	-	1	-
	특수토지	11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경기도 오산시	합계	659	13	-	147	50	9	48	-	98	1
	주거용	201	13	-	88	24	7	19	-	10	-
	상업업무용	172	-	-	22	18	2	16	-	80	1
	주상복합용	56	-	-	27	7	-	13	-	8	-
	공업용	40	-	-	-	-	-	-	-	-	-
	전	80	-	-	8	-	-	-	-	-	-
	답	70	-	-	1	1	-	-	-	-	-
	임야	38	-	-	1	-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경기도 시흥시	합계	1,403	9	5	403	165	18	49	13	72	-
	주거용	315	8	4	197	66	12	1	-	3	-
	상업업무용	197	1	-	29	33	5	38	12	60	-
	주상복합용	175	-	1	114	47	-	2	-	5	-
	공업용	143	-	-	58	6	1	6	-	-	-
	전	324	-	-	4	8	-	1	-	2	-
	답	112	-	-	1	5	-	1	-	-	-
	임야	124	-	-	-	-	-	-	-	-	-
	특수토지	9	-	-	-	-	-	-	1	-	-
	공공용지	4	-	-	-	-	-	-	-	2	-
경기도 군포시	합계	555	-	-	58	164	30	33	7	56	1
	주거용	133	-	-	27	73	18	5	-	6	-
	상업업무용	112	-	-	-	39	6	16	7	37	1
	주상복합용	106	-	-	26	52	6	8	-	13	-
	공업용	66	-	-	-	-	-	4	-	-	-
	전	85	-	-	5	-	-	-	-	-	-
	답	13	-	-	-	-	-	-	-	-	-
	임야	37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경기도 의왕시	합계	519	10	-	111	42	35	29	-	29	-
	주거용	156	9	-	63	23	26	9	-	4	-
	상업업무용	68	-	-	7	5	4	13	-	22	-
	주상복합용	74	1	-	36	11	5	5	-	3	-
	공업용	23	-	-	3	1	-	-	-	-	-
	전	126	-	-	2	2	-	2	-	-	-
	답	8	-	-	-	-	-	-	-	-	-
	임야	61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3	4	15	4	181	716	-	-	108	141	527	102	13
-	-	-	-	4	1	51	67	-	-	9	17	171	5	-
-	-	-	2	-	-	13	18	-	-	2	-	22	-	-
-	-	-	-	1	-	2	6	-	-	-	1	16	-	-
-	-	3	2	-	-	4	2	-	-	1	2	109	4	-
-	-	-	-	5	3	84	452	-	-	34	85	157	12	4
-	-	-	-	-	-	2	26	-	-	2	16	11	5	-
-	-	-	-	5	-	24	144	-	-	59	20	32	76	9
-	-	-	-	-	-	1	1	-	-	1	-	8	-	-
-	-	-	-	-	-	-	-	-	-	-	-	1	-	-
-	-	16	3	15	41	218	-	-	-	-	-	-	-	-
-	-	-	1	1	2	36	-	-	-	-	-	-	-	-
-	-	-	1	-	4	28	-	-	-	-	-	-	-	-
-	-	-	-	-	-	1	-	-	-	-	-	-	-	-
-	-	16	1	-	-	23	-	-	-	-	-	-	-	-
-	-	-	-	4	11	57	-	-	-	-	-	-	-	-
-	-	-	-	-	24	44	-	-	-	-	-	-	-	-
-	-	-	-	10	-	27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	-	47	8	2	-	60	552	-	-	-	-	-	-	-
-	-	-	-	1	-	6	17	-	-	-	-	-	-	-
-	-	-	1	-	-	3	15	-	-	-	-	-	-	-
-	-	-	-	-	-	1	5	-	-	-	-	-	-	-
-	-	47	6	-	-	1	18	-	-	-	-	-	-	-
-	-	-	1	-	-	36	272	-	-	-	-	-	-	-
-	-	-	-	-	-	8	97	-	-	-	-	-	-	-
-	-	-	-	1	-	5	118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2	-	-	-	-	-	-	-
-	-	54	8	-	-	8	136	-	-	-	-	-	-	-
-	-	-	-	-	-	2	2	-	-	-	-	-	-	-
-	-	3	-	-	-	2	1	-	-	-	-	-	-	-
-	-	1	-	-	-	-	-	-	-	-	-	-	-	-
-	-	50	8	-	-	2	2	-	-	-	-	-	-	-
-	-	-	-	-	-	1	79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1	36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	-	-	-	-	-	-
-	-	22	3	-	-	16	222	-	-	-	-	-	-	-
-	-	2	1	-	-	2	17	-	-	-	-	-	-	-
-	-	2	1	-	-	2	12	-	-	-	-	-	-	-
-	-	1	-	-	-	1	11	-	-	-	-	-	-	-
-	-	17	1	-	-	-	1	-	-	-	-	-	-	-
-	-	-	-	-	-	6	114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4	57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1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기도 하남시	합계	895	15	-	281	83	33	91	7	41	10
	주거용	275	11	-	153	41	20	22	-	5	-
	상업업무용	143	1	-	46	4	4	33	7	27	9
	주상복합용	107	2	-	73	15	2	7	-	5	-
	공업용	13	-	-	1	1	2	-	-	-	-
	전	245	1	-	8	17	4	27	-	3	1
	답	4	-	-	-	1	1	-	-	1	-
	임야	103	-	-	-	4	-	2	-	-	-
	특수토지	3	-	-	-	-	-	-	-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합계	2,826	-	-	101	180	8	22	10	67	2
	주거용	691	-	-	60	99	8	3	-	9	-
	상업업무용	191	-	-	11	42	-	10	8	50	2
	주상복합용	72	-	-	12	24	-	5	2	8	-
	공업용	165	-	-	2	2	-	2	-	-	-
	전	601	-	-	9	5	-	-	-	-	-
	답	624	-	-	5	4	-	2	-	-	-
	임야	443	-	-	2	4	-	-	-	-	-
	특수토지	39	-	-	-	-	-	-	-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합계	703	7	7	105	122	30	28	-	33	3
	주거용	253	7	7	54	54	23	1	-	3	-
	상업업무용	149	-	-	18	31	6	22	-	25	3
	주상복합용	70	-	-	22	36	-	3	-	4	-
	공업용	48	-	-	5	-	-	2	-	1	-
	전	98	-	-	5	1	1	-	-	-	-
	답	9	-	-	-	-	-	-	-	-	-
	임야	64	-	-	1	-	-	-	-	-	-
	특수토지	12	-	-	-	-	-	-	-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합계	399	4	8	24	66	35	18	1	19	4
	주거용	160	4	8	14	19	25	2	-	-	-
	상업업무용	90	-	-	5	21	9	12	1	16	4
	주상복합용	45	-	-	4	26	-	3	-	3	-
	공업용	3	-	-	-	-	-	1	-	-	-
	전	46	-	-	1	-	1	-	-	-	-
	답	4	-	-	-	-	-	-	-	-	-
	임야	49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경기도 파주시	합계	3,827	-	2	227	139	19	32	1	146	4
	주거용	847	-	2	133	73	12	7	-	31	-
	상업업무용	308	-	-	38	40	6	20	1	94	4
	주상복합용	182	-	-	52	25	1	3	-	21	-
	공업용	249	-	-	1	-	-	2	-	-	-
	전	936	-	-	1	-	-	-	-	-	-
	답	830	-	-	1	-	-	-	-	-	-
	임야	423	-	-	1	1	-	-	-	-	-
	특수토지	11	-	-	-	-	-	-	-	-	-
경기도 이천시	합계	3,113	3	-	104	105	12	27	-	78	-
	주거용	602	2	-	49	49	6	2	-	1	-
	상업업무용	194	-	-	11	26	2	18	-	65	-
	주상복합용	95	1	-	22	27	4	5	-	11	-
	공업용	118	-	-	2	-	-	1	-	-	-
	전	914	-	-	14	1	-	1	-	-	-
	답	720	-	-	2	1	-	-	-	-	-
	임야	448	-	-	4	1	-	-	-	-	-
	특수토지	20	-	-	-	-	-	-	-	1	-
공공용지	2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6	5	-	-	30	293	-	-	-	-	-	-	-
-	-	-	-	-	-	6	17	-	-	-	-	-	-	-
-	-	-	2	-	-	2	8	-	-	-	-	-	-	-
-	-	-	-	-	-	1	2	-	-	-	-	-	-	-
-	-	6	3	-	-	-	-	-	-	-	-	-	-	-
-	-	-	-	-	-	16	168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3	94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2	-	-	-	-	-	-	-	-
9	-	33	2	95	133	1,206	-	-	-	83	128	503	244	-
1	-	4	-	13	10	300	-	-	-	6	15	146	17	-
1	-	1	-	-	2	54	-	-	-	-	1	9	-	-
-	-	-	-	-	1	16	-	-	-	-	-	4	-	-
1	-	12	2	1	5	100	-	-	-	-	2	34	2	-
1	-	6	-	9	32	314	-	-	-	16	49	141	19	-
2	-	5	-	3	82	215	-	-	-	9	45	103	149	-
3	-	5	-	69	1	178	-	-	-	51	16	57	57	-
-	-	-	-	-	-	29	-	-	-	1	-	9	-	-
-	-	7	4	29	5	323	-	-	-	-	-	-	-	-
-	-	-	-	10	-	94	-	-	-	-	-	-	-	-
-	-	1	1	1	-	41	-	-	-	-	-	-	-	-
-	-	-	-	-	-	5	-	-	-	-	-	-	-	-
-	-	5	3	-	-	32	-	-	-	-	-	-	-	-
-	-	-	-	5	4	82	-	-	-	-	-	-	-	-
-	-	-	-	-	1	8	-	-	-	-	-	-	-	-
-	-	1	-	13	-	49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36	-	173	11	-	-	-	-	-	-	-
-	-	-	-	17	-	71	-	-	-	-	-	-	-	-
-	-	-	-	1	-	21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36	5	-	-	-	-	-	-	-
-	-	-	-	-	-	4	-	-	-	-	-	-	-	-
-	-	-	-	15	-	28	6	-	-	-	-	-	-	-
-	-	-	-	-	-	2	-	-	-	-	-	-	-	-
-	-	43	23	6	56	282	-	8	-	285	419	1,404	635	96
-	-	1	3	-	2	56	-	3	-	27	39	435	17	6
-	-	-	8	-	1	14	-	-	-	1	2	76	3	-
-	-	-	6	-	-	7	-	1	-	1	1	59	-	5
-	-	32	6	-	3	13	-	-	-	1	12	177	2	-
-	-	6	-	1	6	90	-	1	-	99	177	440	93	22
-	-	1	-	-	44	52	-	2	-	37	164	91	418	20
-	-	2	-	5	-	50	-	1	-	116	23	116	97	11
-	-	1	-	-	-	-	-	-	-	-	-	10	-	-
-	-	-	-	-	-	-	-	-	-	3	1	-	5	32
-	-	16	-	17	196	395	-	-	-	252	294	1,027	587	-
-	-	-	-	2	17	87	-	-	-	28	25	306	28	-
-	-	1	-	-	3	29	-	-	-	-	2	36	1	-
-	-	-	-	-	1	5	-	-	-	-	-	19	-	-
-	-	12	-	-	3	14	-	-	-	4	14	60	8	-
-	-	2	-	1	50	136	-	-	-	98	147	337	127	-
-	-	-	-	-	116	43	-	-	-	23	74	115	346	-
-	-	1	-	14	6	78	-	-	-	97	32	138	77	-
-	-	-	-	-	-	1	-	-	-	2	-	16	-	-
-	-	-	-	-	-	2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기도 안성시	합계	3,443	13	-	208	86	4	34	-	81	27
	주거용	754	10	-	141	42	4	10	-	8	4
	상업업무용	293	1	-	32	25	-	17	-	70	18
	주상복합용	71	2	-	26	18	-	5	-	3	4
	공업용	166	-	-	1	-	-	-	-	-	-
	전	795	-	-	6	-	-	1	-	-	-
	답	962	-	-	1	1	-	-	-	-	-
	임야	381	-	-	1	-	-	-	-	-	-
특수토지	21	-	-	-	-	-	1	-	-	1	
경기도 김포시	합계	2,276	12	2	216	68	9	46	-	55	2
	주거용	467	10	2	92	30	9	3	-	3	-
	상업업무용	268	1	-	37	27	-	38	-	44	2
	주상복합용	107	-	-	73	6	-	-	-	5	-
	공업용	294	-	-	11	1	-	3	-	1	-
	전	461	1	-	3	1	-	1	-	1	-
	답	453	-	-	-	2	-	1	-	1	-
	임야	225	-	-	-	1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경기도 화성시	합계	5,423	32	10	420	187	29	103	10	97	24
	주거용	1,068	30	10	251	75	26	14	-	8	-
	상업업무용	466	-	-	45	29	-	68	8	76	21
	주상복합용	247	-	-	110	67	1	10	2	10	3
	공업용	448	-	-	9	2	-	10	-	1	-
	전	1,173	2	-	3	7	-	-	-	1	-
	답	1,330	-	-	-	6	2	1	-	-	-
	임야	674	-	-	2	1	-	-	-	-	-
	특수토지	15	-	-	-	-	-	-	-	-	-
공공용지	2	-	-	-	-	-	-	-	1	-	
경기도 광주시	합계	2,456	-	-	274	63	5	49	-	33	-
	주거용	645	-	-	153	33	4	12	-	5	-
	상업업무용	253	-	-	46	16	1	31	-	28	-
	주상복합용	57	-	-	19	3	-	3	-	-	-
	공업용	306	-	-	10	4	-	2	-	-	-
	전	639	-	-	33	4	-	-	-	-	-
	답	185	-	-	5	-	-	-	-	-	-
	임야	352	-	-	8	3	-	-	-	-	-
특수토지	19	-	-	-	-	-	1	-	-	-	
경기도 양주시	합계	2,231	22	1	375	135	8	60	2	28	2
	주거용	536	22	1	131	63	6	11	-	3	-
	상업업무용	208	-	-	34	35	2	31	2	21	2
	주상복합용	132	-	-	64	24	-	14	-	4	-
	공업용	243	-	-	29	2	-	1	-	-	-
	전	621	-	-	93	8	-	2	-	-	-
	답	245	-	-	15	2	-	-	-	-	-
	임야	235	-	-	9	1	-	-	-	-	-
	특수토지	8	-	-	-	-	-	-	-	-	-
공공용지	3	-	-	-	-	-	1	-	-	-	
경기도 포천시	합계	3,398	-	-	145	134	2	30	-	113	-
	주거용	683	-	-	71	70	2	7	-	22	-
	상업업무용	294	-	-	20	33	-	16	-	75	-
	주상복합용	65	-	-	10	17	-	6	-	14	-
	공업용	215	-	-	6	2	-	-	-	-	-
	전	1,170	-	-	28	7	-	1	-	-	-
	답	469	-	-	8	3	-	-	-	1	-
	임야	474	-	-	2	2	-	-	-	-	-
특수토지	28	-	-	-	-	-	-	-	1	-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 부록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1	-	33	7	73	115	876	-	-	1	283	364	607	628	2
-	-	1	2	11	12	184	-	-	-	39	52	200	34	-
1	-	2	1	1	3	68	-	-	-	6	8	32	8	-
-	-	-	-	-	-	7	-	-	-	-	-	5	1	-
-	-	26	3	-	2	53	-	-	-	8	7	58	8	-
-	-	2	-	16	6	266	-	-	-	106	149	150	91	2
-	-	2	1	3	92	221	-	-	1	35	131	100	374	-
-	-	-	-	42	-	73	-	-	-	88	17	48	112	-
-	-	-	-	-	-	4	-	-	-	1	-	14	-	-
5	-	31	14	39	136	372	122	-	-	87	159	588	311	2
-	-	2	2	8	16	75	9	-	-	12	26	143	25	-
5	-	-	7	3	6	46	5	-	-	5	2	39	1	-
-	-	-	-	-	-	7	1	-	-	-	-	15	-	-
-	-	24	3	1	15	67	3	-	-	3	10	134	18	-
-	-	4	1	8	32	98	54	-	-	19	56	158	23	1
-	-	1	1	-	66	43	34	-	-	10	48	47	199	-
-	-	-	-	19	1	36	16	-	-	38	17	51	45	1
-	-	-	-	-	-	-	-	-	-	-	-	1	-	-
3	-	48	16	24	250	716	523	5	1	195	508	1,587	614	21
-	-	2	-	1	22	131	36	-	-	16	70	356	18	2
-	-	2	11	2	14	71	1	1	-	8	9	91	2	7
3	-	1	-	-	1	15	2	-	-	1	1	19	-	1
-	-	42	5	1	19	94	2	1	-	3	19	233	7	-
-	-	-	-	2	46	202	177	-	-	37	173	447	71	5
-	-	-	-	-	142	96	202	2	-	15	175	231	455	3
-	-	1	-	18	6	104	99	1	1	115	60	202	61	3
-	-	-	-	-	-	2	4	-	-	-	1	8	-	-
-	-	-	-	-	-	1	-	-	-	-	-	-	-	-
2	-	7	-	22	18	184	299	16	-	93	182	1,031	178	-
-	-	1	-	2	1	44	17	2	-	10	14	337	10	-
1	-	-	-	1	2	29	2	5	-	3	7	79	2	-
-	-	-	-	-	-	2	1	-	-	-	-	29	-	-
1	-	6	-	2	2	24	1	-	-	5	9	224	16	-
-	-	-	-	6	9	49	146	8	-	17	73	267	27	-
-	-	-	-	-	4	13	43	-	-	-	55	37	28	-
-	-	-	-	11	-	23	89	1	-	52	23	48	94	-
-	-	-	-	-	-	-	-	-	-	6	1	10	1	-
-	-	53	19	8	170	325	226	8	-	91	81	415	202	-
-	-	8	1	-	24	86	17	2	-	20	17	103	21	-
-	-	1	2	-	12	25	9	1	-	-	-	30	1	-
-	-	1	-	-	5	8	3	-	-	-	-	8	1	-
-	-	23	11	1	19	57	2	1	-	2	4	87	4	-
-	-	10	5	-	59	94	108	3	-	32	41	124	42	-
-	-	5	-	-	51	19	39	-	-	2	16	24	72	-
-	-	5	-	7	-	34	44	1	-	34	2	37	61	-
-	-	-	-	-	-	-	4	-	-	1	1	2	-	-
-	-	-	-	-	-	2	-	-	-	-	-	-	-	-
-	2	12	4	1	68	194	-	2	-	334	319	1,323	713	2
-	-	-	-	-	12	35	-	-	-	44	39	334	47	-
-	-	-	1	-	4	26	-	-	-	12	1	102	4	-
-	-	-	-	-	-	1	-	-	-	1	-	16	-	-
-	2	10	3	-	1	8	-	-	-	7	6	152	18	-
-	-	-	-	-	23	73	-	2	-	172	175	512	177	-
-	-	-	-	-	25	21	-	-	-	21	65	115	209	1
-	-	-	-	1	3	30	-	-	-	75	33	70	257	1
-	-	2	-	-	-	-	-	-	-	2	-	22	1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기도 여주시	합계	2,910	-	-	69	78	1	11	-	28	-
	주거용	558	-	-	36	30	1	2	-	1	-
	상업업무용	137	-	-	15	21	-	6	-	23	-
	주상복합용	69	-	-	16	26	-	3	-	2	-
	공업용	69	-	-	-	-	-	-	-	-	-
	전	780	-	-	-	1	-	-	-	-	-
	답	822	-	-	2	-	-	-	-	-	-
	임야	444	-	-	-	-	-	-	-	-	-
	특수토지	31	-	-	-	-	-	-	-	2	-
경기도 연천군	합계	2,078	-	-	156	13	-	6	-	89	10
	주거용	421	-	-	113	12	-	2	-	19	4
	상업업무용	116	-	-	20	-	-	2	-	60	3
	주상복합용	45	-	-	11	-	-	2	-	9	3
	공업용	24	-	-	-	-	-	-	-	-	-
	전	668	-	-	9	1	-	-	-	-	-
	답	423	-	-	2	-	-	-	-	-	-
	임야	311	-	-	1	-	-	-	-	-	-
	특수토지	7	-	-	-	-	-	-	-	1	-
경기도 가평군	합계	2,319	2	-	40	164	-	9	-	77	-
	주거용	655	1	-	27	119	-	4	-	12	-
	상업업무용	123	-	-	4	18	-	3	-	50	-
	주상복합용	58	-	-	2	18	-	2	-	14	-
	공업용	8	-	-	-	-	-	-	-	-	-
	전	677	1	-	4	5	-	-	-	-	-
	답	243	-	-	3	2	-	-	-	-	-
	임야	544	-	-	-	2	-	-	-	-	-
	특수토지	11	-	-	-	-	-	-	-	1	-
경기도 양평군	합계	3,590	-	-	43	86	-	37	-	65	-
	주거용	905	-	-	29	51	-	11	-	9	-
	상업업무용	169	-	-	6	20	-	21	-	42	-
	주상복합용	49	-	-	3	9	-	5	-	12	-
	공업용	2	-	-	-	-	-	-	-	-	-
	전	1,147	-	-	4	6	-	-	-	1	-
	답	539	-	-	1	-	-	-	-	-	-
	임야	770	-	-	-	-	-	-	-	-	-
	특수토지	8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1	-	3	20	-	26	124	-	-	-	490	404	999	642	14
-	-	-	6	-	4	24	-	-	-	60	39	308	44	3
-	-	-	2	-	4	17	-	-	-	3	4	40	2	-
-	-	-	1	-	1	1	-	-	-	1	-	17	1	-
-	-	2	7	-	-	1	-	-	-	5	10	41	3	-
-	-	-	2	-	7	39	-	-	-	151	185	299	93	3
1	-	-	1	-	10	21	-	-	-	61	135	156	430	5
-	-	-	1	-	-	21	-	-	-	209	29	112	69	3
-	-	1	-	-	-	-	-	-	-	-	2	26	-	-
-	-	9	4	-	36	124	-	-	-	154	254	783	382	58
-	-	1	-	-	3	24	-	-	-	10	18	192	23	-
-	-	-	2	-	-	5	-	-	-	-	-	24	-	-
-	-	-	-	-	1	1	-	-	-	-	-	18	-	-
-	-	3	1	-	-	1	-	-	-	2	-	17	-	-
-	-	-	-	-	12	63	-	-	-	50	137	340	55	1
-	-	4	1	-	20	13	-	-	-	9	80	100	191	3
-	-	1	-	-	-	15	-	-	-	78	16	86	112	2
-	-	-	-	-	-	2	-	-	-	-	-	4	-	-
-	-	-	-	-	-	-	-	-	-	5	3	2	1	52
-	-	1	-	-	21	306	-	-	-	339	126	958	255	21
-	-	-	-	-	6	72	-	-	-	59	21	311	18	5
-	-	-	-	-	1	12	-	-	-	-	1	34	-	-
-	-	-	-	-	-	6	-	-	-	-	1	13	-	2
-	-	1	-	-	-	-	-	-	-	1	-	6	-	-
-	-	-	-	-	5	90	-	-	-	141	52	342	30	7
-	-	-	-	-	9	26	-	-	-	13	35	109	45	1
-	-	-	-	-	-	100	-	-	-	125	16	133	162	6
-	-	-	-	-	-	-	-	-	-	-	-	10	-	-
-	-	-	2	-	29	223	104	-	-	842	224	1,267	619	49
-	-	-	1	-	6	52	14	-	-	157	41	464	62	8
-	-	-	-	-	-	16	-	-	-	4	-	55	3	2
-	-	-	-	-	-	1	-	-	-	3	1	14	-	1
-	-	-	-	-	-	-	-	-	-	-	-	2	-	-
-	-	-	1	-	8	89	53	-	-	300	97	414	160	14
-	-	-	-	-	14	35	20	-	-	97	44	105	219	4
-	-	-	-	-	1	30	17	-	-	281	41	205	175	20
-	-	-	-	-	-	-	-	-	-	-	-	7	-	-
-	-	-	-	-	-	-	-	-	-	-	-	1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강원도	합계	36,398	12	5	1,339	3,435	129	653	5	2,274	34
	주거용	8,803	12	5	848	2,361	91	282	-	396	8
	상업업무용	2,578	-	-	97	333	19	215	4	1,414	21
	주상복합용	1,644	-	-	213	519	17	142	-	417	5
	공업용	426	-	-	2	2	-	1	-	1	-
	전	12,258	-	-	131	166	2	11	-	14	-
	답	3,900	-	-	17	12	-	-	-	3	-
	임야	6,573	-	-	31	40	-	1	-	2	-
	특수토지	186	-	-	-	1	-	1	-	25	-
공공용지	30	-	-	-	1	-	-	1	2	-	
강원도 춘천시	합계	3,490	1	-	169	600	20	64	-	260	-
	주거용	1,014	1	-	136	380	17	22	-	41	-
	상업업무용	277	-	-	9	51	1	21	-	159	-
	주상복합용	315	-	-	21	168	2	21	-	59	-
	공업용	33	-	-	1	-	-	-	-	-	-
	전	1,082	-	-	-	-	-	-	-	-	-
	답	248	-	-	-	-	-	-	-	-	-
	임야	495	-	-	2	1	-	-	-	-	-
	특수토지	24	-	-	-	-	-	-	-	1	-
공공용지	2	-	-	-	-	-	-	-	-	-	
강원도 원주시	합계	3,456	5	5	233	309	45	89	5	199	2
	주거용	839	5	5	101	209	35	19	-	19	-
	상업업무용	409	-	-	37	76	7	60	4	174	2
	주상복합용	162	-	-	92	22	2	9	-	3	-
	공업용	63	-	-	1	-	-	1	-	-	-
	전	956	-	-	-	1	1	-	-	-	-
	답	471	-	-	-	-	-	-	-	-	-
	임야	532	-	-	2	1	-	-	-	-	-
	특수토지	20	-	-	-	-	-	-	-	2	-
공공용지	4	-	-	-	-	-	-	1	1	-	
강원도 강릉시	합계	3,651	3	-	148	508	19	98	-	226	18
	주거용	1,056	3	-	76	356	12	44	-	31	4
	상업업무용	379	-	-	12	61	2	40	-	170	12
	주상복합용	153	-	-	17	71	4	12	-	23	2
	공업용	62	-	-	-	2	-	-	-	-	-
	전	1,021	-	-	34	11	1	2	-	-	-
	답	359	-	-	1	-	-	-	-	-	-
	임야	606	-	-	8	7	-	-	-	-	-
	특수토지	10	-	-	-	-	-	-	-	2	-
공공용지	5	-	-	-	-	-	-	-	-	-	
강원도 동해시	합계	1,216	3	-	68	407	3	39	-	146	-
	주거용	429	3	-	41	247	-	22	-	23	-
	상업업무용	182	-	-	2	57	2	9	-	93	-
	주상복합용	68	-	-	5	37	1	2	-	21	-
	공업용	32	-	-	-	-	-	-	-	-	-
	전	280	-	-	14	54	-	5	-	5	-
	답	44	-	-	2	4	-	-	-	3	-
	임야	175	-	-	4	8	-	1	-	-	-
	특수토지	4	-	-	-	-	-	-	-	1	-
공공용지	2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22	174	147	395	381	3,317	-	3	4	2,245	3,375	12,233	5,532	664
-	1	11	51	41	41	665	-	1	1	208	386	3,023	317	54
-	1	15	15	3	6	115	-	-	-	10	7	292	3	8
-	1	6	6	2	4	45	-	-	-	13	5	241	5	3
-	15	116	44	-	1	30	-	-	-	13	22	162	17	-
-	3	13	21	138	145	1,439	-	-	3	831	2,005	5,887	1,238	211
-	-	6	1	22	182	355	-	1	-	116	490	949	1,719	27
-	1	2	8	177	2	636	-	1	-	1,051	458	1,571	2,231	361
-	-	5	-	2	-	21	-	-	-	2	2	125	2	-
-	-	-	1	10	-	11	-	-	-	1	-	3	-	-
-	-	25	3	214	158	836	-	3	-	149	142	591	170	85
-	-	2	-	24	25	188	-	1	-	20	15	123	8	11
-	-	4	-	-	2	19	-	-	-	2	-	9	-	-
-	-	-	-	2	1	16	-	-	-	2	2	21	-	-
-	-	18	3	-	-	5	-	-	-	1	-	5	-	-
-	-	1	-	81	75	411	-	-	-	64	100	291	31	28
-	-	-	-	5	53	79	-	1	-	5	19	58	25	3
-	-	-	-	98	2	114	-	1	-	55	6	67	106	43
-	-	-	-	2	-	4	-	-	-	-	-	17	-	-
-	-	-	-	2	-	-	-	-	-	-	-	-	-	-
-	-	20	16	9	32	307	-	-	-	144	328	1,188	470	50
-	-	1	3	2	2	63	-	-	-	18	23	302	28	4
-	-	-	2	-	-	16	-	-	-	2	-	29	-	-
-	-	1	-	-	-	7	-	-	-	1	-	23	-	2
-	-	14	7	-	-	4	-	-	-	1	1	30	4	-
-	-	1	2	1	8	96	-	-	-	27	202	483	117	17
-	-	1	-	-	22	52	-	-	-	6	80	127	182	1
-	-	2	2	6	-	67	-	-	-	89	21	177	139	26
-	-	-	-	-	-	1	-	-	-	-	1	16	-	-
-	-	-	-	-	-	1	-	-	-	-	-	1	-	-
-	-	29	11	88	36	411	-	-	-	127	203	1,255	437	34
-	-	-	3	7	2	114	-	-	-	13	25	335	29	2
-	-	3	1	2	1	20	-	-	-	-	2	52	-	1
-	-	-	-	-	-	7	-	-	-	-	2	14	1	-
-	-	19	6	-	1	3	-	-	-	1	3	24	3	-
-	-	4	-	25	13	168	-	-	-	44	116	527	64	12
-	-	2	-	2	19	42	-	-	-	7	30	104	150	2
-	-	-	1	51	-	53	-	-	-	62	25	192	190	17
-	-	1	-	-	-	1	-	-	-	-	-	6	-	-
-	-	-	-	1	-	3	-	-	-	-	-	1	-	-
-	19	16	21	15	-	357	-	-	-	28	9	14	46	25
-	-	-	13	2	-	65	-	-	-	5	1	3	1	3
-	1	2	2	-	-	12	-	-	-	1	-	1	-	-
-	1	-	1	-	-	-	-	-	-	-	-	-	-	-
-	14	13	1	-	-	4	-	-	-	-	-	-	-	-
-	2	1	2	5	-	146	-	-	-	12	5	9	4	16
-	-	-	1	-	-	28	-	-	-	2	2	-	1	1
-	1	-	1	8	-	97	-	-	-	8	1	1	40	5
-	-	-	-	-	-	3	-	-	-	-	-	-	-	-
-	-	-	-	-	-	2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강원도 태백시	합계	739	-	-	62	142	-	69	-	140	-
	주거용	261	-	-	39	97	-	31	-	40	-
	상업업무용	76	-	-	1	6	-	7	-	51	-
	주상복합용	108	-	-	5	29	-	31	-	41	-
	공업용	19	-	-	-	-	-	-	-	-	-
	전	169	-	-	15	7	-	-	-	6	-
	임야	98	-	-	2	3	-	-	-	1	-
	특수토지	6	-	-	-	-	-	-	-	1	-
공공용지	2	-	-	-	-	-	-	-	-	-	
강원도 속초시	합계	973	-	-	134	178	15	47	-	280	2
	주거용	359	-	-	81	138	9	30	-	64	-
	상업업무용	239	-	-	13	18	4	8	-	175	2
	주상복합용	99	-	-	26	19	2	9	-	35	-
	공업용	11	-	-	-	-	-	-	-	-	-
	전	128	-	-	9	2	-	-	-	2	-
	답	56	-	-	3	-	-	-	-	-	-
	임야	69	-	-	2	1	-	-	-	-	-
특수토지	12	-	-	-	-	-	-	-	4	-	
강원도 삼척시	합계	2,458	-	-	57	296	14	39	-	130	-
	주거용	580	-	-	24	186	10	18	-	32	-
	상업업무용	95	-	-	-	10	1	9	-	59	-
	주상복합용	103	-	-	5	29	3	11	-	35	-
	공업용	28	-	-	-	-	-	-	-	1	-
	전	879	-	-	23	55	-	1	-	-	-
	답	188	-	-	3	3	-	-	-	-	-
	임야	569	-	-	2	13	-	-	-	1	-
	특수토지	15	-	-	-	-	-	-	-	2	-
공공용지	1	-	-	-	-	-	-	-	-	-	
강원도 홍천군	합계	2,729	-	-	43	110	-	11	-	65	-
	주거용	529	-	-	27	62	-	3	-	1	-
	상업업무용	94	-	-	1	7	-	7	-	49	-
	주상복합용	103	-	-	8	41	-	1	-	14	-
	공업용	17	-	-	-	-	-	-	-	-	-
	전	1,099	-	-	5	-	-	-	-	-	-
	답	342	-	-	2	-	-	-	-	-	-
	임야	529	-	-	-	-	-	-	-	-	-
특수토지	16	-	-	-	-	-	-	-	1	-	
강원도 횡성군	합계	2,174	-	-	44	26	-	25	-	46	-
	주거용	432	-	-	34	16	-	11	-	-	-
	상업업무용	83	-	-	2	2	-	10	-	42	-
	주상복합용	33	-	-	6	8	-	4	-	3	-
	공업용	27	-	-	-	-	-	-	-	-	-
	전	888	-	-	-	-	-	-	-	-	-
	답	292	-	-	-	-	-	-	-	-	-
	임야	405	-	-	2	-	-	-	-	-	-
특수토지	13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강원도 영월군	합계	2,136	-	-	110	57	2	17	-	92	-
	주거용	482	-	-	94	45	1	7	-	22	-
	상업업무용	93	-	-	8	4	1	6	-	53	-
	주상복합용	63	-	-	8	7	-	4	-	16	-
	공업용	16	-	-	-	-	-	-	-	-	-
	전	1,080	-	-	-	-	-	-	-	-	-
	답	70	-	-	-	-	-	-	-	-	-
	임야	324	-	-	-	1	-	-	-	-	-
특수토지	7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1	18	4	-	71	-	-	-	29	34	92	57	10
-	-	2	7	-	-	11	-	-	-	3	5	21	5	-
-	-	-	1	1	-	3	-	-	-	-	1	4	-	1
-	-	-	2	-	-	-	-	-	-	-	-	-	-	-
-	-	8	5	-	-	2	-	-	-	-	-	4	-	-
-	-	1	2	1	-	30	-	-	-	12	21	45	23	6
-	-	-	1	-	-	25	-	-	-	14	7	13	29	3
-	-	-	-	-	-	-	-	-	-	-	-	5	-	-
-	-	-	-	2	-	-	-	-	-	-	-	-	-	-
-	-	15	5	25	18	220	-	-	-	-	-	4	-	30
-	-	1	-	2	-	33	-	-	-	-	-	1	-	-
-	-	1	2	-	1	13	-	-	-	-	-	-	-	2
-	-	2	-	-	2	4	-	-	-	-	-	-	-	-
-	-	10	1	-	-	-	-	-	-	-	-	-	-	-
-	-	1	1	10	9	86	-	-	-	-	-	1	-	7
-	-	-	-	10	6	37	-	-	-	-	-	-	-	-
-	-	-	1	3	-	41	-	-	-	-	-	-	-	21
-	-	-	-	-	-	6	-	-	-	-	-	2	-	-
-	3	25	34	10	14	309	-	-	-	99	271	812	289	56
-	1	4	16	2	-	41	-	-	-	5	35	196	6	4
-	-	2	1	-	-	6	-	-	-	-	-	7	-	-
-	-	2	2	-	-	5	-	-	-	-	-	10	-	1
-	1	11	2	-	-	5	-	-	-	-	-	8	-	-
-	1	2	11	3	2	145	-	-	-	45	147	391	25	28
-	-	1	-	2	12	14	-	-	-	5	29	69	48	2
-	-	-	2	2	-	90	-	-	-	44	60	125	209	21
-	-	3	-	-	-	3	-	-	-	-	-	6	1	-
-	-	-	-	1	-	-	-	-	-	-	-	-	-	-
-	-	11	-	3	25	126	-	-	-	137	441	1,104	643	10
-	-	1	-	-	4	24	-	-	-	7	64	281	54	1
-	-	-	-	-	-	5	-	-	-	-	1	24	-	-
-	-	-	-	-	-	-	-	-	-	-	-	37	2	-
-	-	8	-	-	-	1	-	-	-	2	1	5	-	-
-	-	-	-	1	7	48	-	-	-	29	293	528	182	6
-	-	2	-	2	14	25	-	-	-	-	46	75	176	-
-	-	-	-	-	-	23	-	-	-	98	36	140	229	3
-	-	-	-	-	-	-	-	-	-	1	-	14	-	-
-	-	5	6	-	16	44	-	-	-	74	274	1,137	424	53
-	-	-	1	-	-	8	-	-	-	10	39	285	21	7
-	-	-	-	-	2	4	-	-	-	-	-	21	-	-
-	-	-	-	-	1	-	-	-	-	-	-	11	-	-
-	-	4	2	-	-	1	-	-	-	1	1	17	1	-
-	-	1	3	-	5	15	-	-	-	30	147	567	108	12
-	-	-	-	-	8	7	-	-	-	4	35	95	137	6
-	-	-	-	-	-	9	-	-	-	29	52	128	157	28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	-	-
-	-	5	9	5	10	71	-	-	-	200	252	951	353	2
-	-	-	4	-	1	13	-	-	-	13	38	223	21	-
-	-	-	2	-	-	2	-	-	-	2	2	13	-	-
-	-	-	-	-	-	2	-	-	-	4	-	22	-	-
-	-	3	3	-	-	3	-	-	-	-	-	7	-	-
-	-	1	-	3	9	35	-	-	-	109	179	596	146	2
-	-	-	-	-	-	2	-	-	-	3	9	20	36	-
-	-	-	-	1	-	14	-	-	-	69	24	66	149	-
-	-	1	-	-	-	-	-	-	-	-	-	4	1	-
-	-	-	-	1	-	-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강원도 평창군	합계	2,248	-	-	23	86	-	24	-	66	1
	주거용	478	-	-	15	69	-	12	-	9	1
	상업업무용	104	-	-	3	8	-	7	-	39	-
	주상복합용	38	-	-	-	7	-	4	-	15	-
	공업용	8	-	-	-	-	-	-	-	-	-
	전	1,054	-	-	5	1	-	-	-	-	-
	답	31	-	-	-	-	-	-	-	-	-
	임야	512	-	-	-	-	-	-	-	-	-
	특수토지	22	-	-	-	1	-	1	-	3	-
공공용지	1	-	-	-	-	-	-	-	-	-	
강원도 정선군	합계	2,106	-	-	34	166	2	25	-	181	2
	주거용	481	-	-	20	116	2	13	-	51	-
	상업업무용	96	-	-	1	2	-	1	-	68	2
	주상복합용	103	-	-	2	17	-	8	-	59	-
	공업용	17	-	-	-	-	-	-	-	-	-
	전	911	-	-	10	25	-	3	-	-	-
	답	39	-	-	-	3	-	-	-	-	-
	임야	440	-	-	1	2	-	-	-	-	-
	특수토지	10	-	-	-	-	-	-	-	2	-
공공용지	9	-	-	-	1	-	-	-	1	-	
강원도 철원군	합계	2,124	-	-	65	207	-	15	-	118	6
	주거용	467	-	-	48	171	-	8	-	28	3
	상업업무용	98	-	-	2	13	-	2	-	70	1
	주상복합용	72	-	-	9	20	-	5	-	19	2
	공업용	28	-	-	-	-	-	-	-	-	-
	전	458	-	-	4	3	-	-	-	-	-
	답	679	-	-	2	-	-	-	-	-	-
	임야	319	-	-	-	-	-	-	-	-	-
	특수토지	3	-	-	-	-	-	-	-	1	-
강원도 화천군	합계	1,071	-	-	28	47	-	12	-	51	-
	주거용	202	-	-	12	36	-	3	-	7	-
	상업업무용	49	-	-	1	5	-	3	-	33	-
	주상복합용	29	-	-	1	4	-	6	-	10	-
	공업용	8	-	-	-	-	-	-	-	-	-
	전	448	-	-	10	2	-	-	-	1	-
	답	84	-	-	3	-	-	-	-	-	-
	임야	251	-	-	1	-	-	-	-	-	-
강원도 양구군	합계	1,176	-	-	3	51	-	15	-	40	-
	주거용	217	-	-	2	36	-	7	-	2	-
	상업업무용	55	-	-	-	2	-	7	-	33	-
	주상복합용	32	-	-	1	12	-	1	-	4	-
	공업용	14	-	-	-	-	-	-	-	-	-
	전	452	-	-	-	-	-	-	-	-	-
	답	175	-	-	-	-	-	-	-	-	-
	임야	230	-	-	-	1	-	-	-	-	-
특수토지	1	-	-	-	-	-	-	-	1	-	
강원도 인제군	합계	1,458	-	-	20	134	8	29	-	106	3
	주거용	347	-	-	15	105	4	16	-	13	-
	상업업무용	99	-	-	2	4	1	5	-	61	2
	주상복합용	79	-	-	1	19	3	8	-	31	1
	공업용	16	-	-	-	-	-	-	-	-	-
	전	541	-	-	1	5	-	-	-	-	-
	답	118	-	-	1	1	-	-	-	-	-
	임야	253	-	-	-	-	-	-	-	-	-
특수토지	5	-	-	-	-	-	-	-	1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	-	2	4	62	-	-	-	236	335	1,052	336	21
-	-	-	-	-	-	14	-	-	-	27	55	246	29	1
-	-	-	-	-	-	2	-	-	-	2	1	42	-	-
-	-	-	-	-	-	-	-	-	-	1	-	11	-	-
-	-	-	-	-	-	-	-	-	-	-	1	7	-	-
-	-	-	-	1	4	34	-	-	-	101	219	557	125	7
-	-	-	-	-	-	4	-	-	-	4	2	1	20	-
-	-	-	-	-	-	8	-	-	-	101	56	172	162	13
-	-	-	-	-	-	-	-	-	-	-	1	16	-	-
-	-	-	-	1	-	-	-	-	-	-	-	-	-	-
-	-	4	12	5	14	148	-	-	-	204	159	728	388	34
-	-	-	3	1	2	30	-	-	-	25	18	167	27	6
-	-	-	2	-	-	6	-	-	-	-	-	14	-	-
-	-	-	1	-	-	1	-	-	-	-	-	15	-	-
-	-	4	5	-	-	-	-	-	-	1	1	5	1	-
-	-	-	-	1	5	72	-	-	-	85	100	461	129	20
-	-	-	-	-	7	3	-	-	-	2	-	2	22	-
-	-	-	-	2	-	30	-	-	-	89	40	59	209	8
-	-	-	-	-	-	2	-	-	-	1	-	5	-	-
-	-	-	1	1	-	4	-	-	-	1	-	-	-	-
-	-	3	2	6	28	113	-	-	-	108	203	452	674	124
-	-	-	-	1	3	18	-	-	-	8	9	147	23	-
-	-	-	-	-	-	1	-	-	-	-	-	9	-	-
-	-	-	-	-	-	2	-	-	-	3	1	10	1	-
-	-	3	2	-	-	1	-	-	-	1	3	16	2	-
-	-	-	-	3	6	48	-	-	-	38	95	153	107	1
-	-	-	-	-	19	30	-	-	-	12	65	74	472	5
-	-	-	-	2	-	13	-	-	-	46	30	41	69	118
-	-	-	-	-	-	-	-	-	-	-	-	2	-	-
-	-	-	2	-	8	46	-	-	-	94	128	425	180	50
-	-	-	-	-	2	9	-	-	-	12	10	90	14	7
-	-	-	-	-	-	1	-	-	-	-	-	4	-	2
-	-	-	-	-	-	-	-	-	-	1	-	7	-	-
-	-	-	2	-	-	-	-	-	-	-	-	6	-	-
-	-	-	-	-	2	22	-	-	-	20	90	237	41	23
-	-	-	-	-	4	6	-	-	-	5	6	23	34	3
-	-	-	-	-	-	8	-	-	-	56	22	58	91	15
-	-	-	4	-	-	19	-	-	-	118	148	506	252	20
-	-	-	1	-	-	3	-	-	-	7	18	120	19	2
-	-	-	1	-	-	-	-	-	-	1	-	11	-	-
-	-	-	-	-	-	-	-	-	-	-	-	14	-	-
-	-	-	2	-	-	-	-	-	-	1	4	7	-	-
-	-	-	-	-	-	10	-	-	-	44	87	235	71	5
-	-	-	-	-	-	2	-	-	-	8	27	57	79	2
-	-	-	-	-	-	4	-	-	-	57	12	62	83	11
-	-	-	-	-	-	-	-	-	-	-	-	-	-	-
-	-	-	3	1	2	55	-	-	-	112	134	626	200	25
-	-	-	-	-	-	12	-	-	-	6	15	144	14	3
-	-	-	-	-	-	4	-	-	-	-	-	18	1	1
-	-	-	-	-	-	-	-	-	-	-	-	16	-	-
-	-	-	3	-	-	1	-	-	-	-	4	7	1	-
-	-	-	-	-	-	27	-	-	-	41	87	337	36	7
-	-	-	-	1	2	4	-	-	-	5	14	46	44	-
-	-	-	-	-	-	7	-	-	-	60	14	54	104	14
-	-	-	-	-	-	-	-	-	-	-	-	4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강원도 고성군	합계	1,477	-	-	86	28	1	20	-	63	-
	주거용	312	-	-	75	22	1	10	-	8	-
	상업업무용	56	-	-	2	1	-	6	-	30	-
	주상복합용	57	-	-	4	4	-	4	-	24	-
	공업용	19	-	-	-	-	-	-	-	-	-
	전	320	-	-	1	-	-	-	-	-	-
	답	376	-	-	-	-	-	-	-	-	-
	임야	325	-	-	4	1	-	-	-	-	-
	특수토지	11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강원도 양양군	합계	1,716	-	-	12	83	-	15	-	65	-
	주거용	318	-	-	8	70	-	6	-	5	-
	상업업무용	94	-	-	1	6	-	7	-	55	-
	주상복합용	27	-	-	2	5	-	2	-	5	-
	공업용	8	-	-	-	-	-	-	-	-	-
	전	492	-	-	-	-	-	-	-	-	-
	답	328	-	-	-	1	-	-	-	-	-
	임야	441	-	-	1	1	-	-	-	-	-
	특수토지	7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충청북도	합계	30,363	9	2	1,241	2,213	19	382	14	1,304	39
	주거용	7,000	9	2	712	1,300	16	93	-	163	-
	상업업무용	2,088	-	-	146	318	3	203	13	929	33
	주상복합용	1,198	-	-	284	478	-	71	-	180	3
	공업용	614	-	-	2	1	-	1	-	2	-
	전	10,603	-	-	67	77	-	5	-	14	2
	답	4,695	-	-	24	25	-	6	-	5	1
	임야	4,053	-	-	5	14	-	3	-	1	-
	특수토지	88	-	-	1	-	-	-	1	10	-
공공용지	24	-	-	-	-	-	-	-	-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합계	2,129	1	-	170	237	-	48	-	206	13
	주거용	574	1	-	102	136	-	14	-	23	-
	상업업무용	285	-	-	22	40	-	21	-	159	13
	주상복합용	141	-	-	41	57	-	12	-	23	-
	공업용	13	-	-	-	-	-	-	-	-	-
	전	474	-	-	4	1	-	-	-	1	-
	답	380	-	-	1	3	-	1	-	-	-
	임야	258	-	-	-	-	-	-	-	-	-
	특수토지	4	-	-	-	-	-	-	-	-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합계	1,284	-	-	175	199	8	56	-	54	-
	주거용	391	-	-	99	112	5	15	-	11	-
	상업업무용	172	-	-	26	31	3	36	-	37	-
	주상복합용	120	-	-	45	53	-	4	-	5	-
	공업용	42	-	-	-	-	-	-	-	1	-
	전	221	-	-	1	1	-	-	-	-	-
	답	213	-	-	4	1	-	-	-	-	-
	임야	122	-	-	-	1	-	1	-	-	-
	특수토지	3	-	-	-	-	-	-	-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합계	1,781	-	-	218	154	2	60	8	77	-
	주거용	429	-	-	88	76	2	6	-	8	-
	상업업무용	206	-	-	27	35	-	36	7	57	-
	주상복합용	164	-	-	94	37	-	10	-	1	-
	공업용	66	-	-	1	1	-	-	-	1	-
	전	319	-	-	6	4	-	2	-	6	-
	답	431	-	-	2	1	-	4	-	4	-
	임야	156	-	-	-	-	-	2	-	-	-
	특수토지	4	-	-	-	-	-	-	1	-	-
공공용지	6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5	-	4	11	60	-	-	4	140	147	606	289	13
-	-	-	-	-	-	7	-	-	1	6	6	166	8	2
-	-	3	-	-	-	1	-	-	-	-	-	13	-	-
-	-	1	-	-	-	1	-	-	-	1	-	17	1	-
-	-	1	-	-	-	-	-	-	-	2	3	9	4	-
-	-	-	-	2	-	21	-	-	3	38	48	193	11	3
-	-	-	-	-	11	9	-	-	-	13	75	93	173	2
-	-	-	-	2	-	20	-	-	-	80	15	105	92	6
-	-	-	-	-	-	-	-	-	-	-	-	10	-	-
-	-	-	-	-	-	1	-	-	-	-	-	-	-	-
-	-	-	1	4	5	62	-	-	-	246	167	710	324	22
-	-	-	-	-	-	12	-	-	-	23	10	173	10	1
-	-	-	1	-	-	-	-	-	-	-	-	21	2	1
-	-	-	-	-	-	-	-	-	-	-	-	13	-	-
-	-	-	-	-	-	-	-	-	-	2	-	5	1	-
-	-	-	-	1	-	25	-	-	-	92	69	276	18	11
-	-	-	-	-	5	11	-	-	-	35	51	105	120	-
-	-	-	-	2	-	13	-	-	-	94	37	111	173	9
-	-	-	-	-	-	1	-	-	-	-	-	6	-	-
-	-	-	-	1	-	-	-	-	-	-	-	-	-	-
10	-	273	108	265	530	2,762	274	9	1	3,416	3,163	8,743	4,725	861
-	-	17	13	31	41	628	12	2	-	285	298	3,016	240	122
4	-	8	28	3	10	130	6	-	-	16	15	207	8	8
-	-	-	17	-	2	36	-	-	-	6	2	108	2	9
-	-	158	35	2	2	50	-	-	-	13	21	310	17	-
3	-	40	8	74	121	1,090	112	5	1	1,904	1,944	3,492	1,266	378
2	-	24	3	25	352	454	88	-	-	226	572	822	1,975	91
-	-	26	4	123	2	358	56	2	-	962	308	722	1,215	252
1	-	-	-	-	-	8	-	-	-	2	-	62	2	1
-	-	-	-	7	-	8	-	-	-	2	3	4	-	-
1	-	-	-	116	67	259	-	-	-	75	162	349	233	192
-	-	-	-	17	1	68	-	-	-	5	20	138	13	36
1	-	-	-	2	2	10	-	-	-	2	1	12	-	-
-	-	-	-	-	-	3	-	-	-	-	-	5	-	-
-	-	-	-	-	-	-	-	-	-	-	1	11	1	-
-	-	-	-	32	8	94	-	-	-	26	83	121	41	63
-	-	-	-	12	56	56	-	-	-	1	31	36	127	56
-	-	-	-	53	-	27	-	-	-	41	26	23	51	37
-	-	-	-	-	-	1	-	-	-	-	-	3	-	-
-	-	6	2	39	20	286	148	-	-	35	48	156	43	9
-	-	-	-	8	3	78	9	-	-	3	5	40	2	1
-	-	-	-	1	1	22	5	-	-	-	1	9	-	-
-	-	-	-	-	1	11	-	-	-	-	-	1	-	-
-	-	6	2	-	-	5	-	-	-	1	2	25	-	-
-	-	-	-	9	3	87	42	-	-	10	18	42	5	3
-	-	-	-	1	12	56	63	-	-	3	21	28	21	3
-	-	-	-	20	-	27	29	-	-	18	1	8	15	2
-	-	-	-	-	-	-	-	-	-	-	-	3	-	-
4	-	44	52	47	94	417	-	9	-	56	73	255	211	-
-	-	6	8	4	3	102	-	2	-	5	8	94	17	-
1	-	2	19	-	1	10	-	-	-	-	-	11	-	-
-	-	-	12	-	-	4	-	-	-	-	-	6	-	-
-	-	19	9	1	-	20	-	-	-	-	-	13	1	-
1	-	7	3	9	15	114	-	5	-	17	27	67	36	-
2	-	5	-	4	74	117	-	-	-	6	32	44	136	-
-	-	5	1	26	1	47	-	2	-	28	6	17	21	-
-	-	-	-	-	-	-	-	-	-	-	-	3	-	-
-	-	-	-	3	-	3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합계	1,755	7	-	193	157	4	36	6	61	8
	주거용	463	7	-	118	88	4	13	-	9	-
	상업업무용	198	-	-	30	47	-	21	6	47	8
	주상복합용	72	-	-	40	21	-	2	-	5	-
	공업용	68	-	-	1	-	-	-	-	-	-
	전	399	-	-	3	1	-	-	-	-	-
	답	354	-	-	-	-	-	-	-	-	-
	임야	195	-	-	1	-	-	-	-	-	-
특수토지	6	-	-	-	-	-	-	-	-	-	
충청북도 충주시	합계	4,022	-	2	109	432	2	22	-	263	10
	주거용	990	-	2	67	251	2	6	-	30	-
	상업업무용	285	-	-	6	41	-	7	-	185	8
	주상복합용	225	-	-	21	137	-	7	-	44	-
	공업용	77	-	-	-	-	-	1	-	-	-
	전	1,358	-	-	10	2	-	1	-	2	2
	답	604	-	-	5	-	-	-	-	-	-
	임야	459	-	-	-	1	-	-	-	-	-
	특수토지	21	-	-	-	-	-	-	-	2	-
공공용지	3	-	-	-	-	-	-	-	-	-	
충청북도 제천시	합계	2,889	-	-	29	292	-	29	-	150	3
	주거용	681	-	-	15	171	-	7	-	13	-
	상업업무용	228	-	-	1	40	-	20	-	113	2
	주상복합용	134	-	-	10	75	-	2	-	22	1
	공업용	35	-	-	-	-	-	-	-	-	-
	전	1,073	-	-	2	5	-	-	-	-	-
	답	276	-	-	-	-	-	-	-	-	-
	임야	448	-	-	1	1	-	-	-	-	-
	특수토지	9	-	-	-	-	-	-	-	2	-
공공용지	5	-	-	-	-	-	-	-	-	-	
충청북도 보은군	합계	2,063	-	-	17	113	-	11	-	63	-
	주거용	403	-	-	8	71	-	1	-	10	-
	상업업무용	57	-	-	-	5	-	3	-	37	-
	주상복합용	42	-	-	1	12	-	7	-	14	-
	공업용	19	-	-	-	-	-	-	-	-	-
	전	756	-	-	6	16	-	-	-	2	-
	답	394	-	-	1	9	-	-	-	-	-
	임야	389	-	-	1	-	-	-	-	-	-
특수토지	3	-	-	-	-	-	-	-	-	-	
충청북도 옥천군	합계	2,407	-	-	27	125	-	9	-	66	-
	주거용	485	-	-	16	88	-	3	-	15	-
	상업업무용	61	-	-	1	8	-	3	-	31	-
	주상복합용	55	-	-	6	9	-	2	-	20	-
	공업용	42	-	-	-	-	-	-	-	-	-
	전	1,014	-	-	3	18	-	1	-	-	-
	답	325	-	-	1	1	-	-	-	-	-
	임야	419	-	-	-	1	-	-	-	-	-
	특수토지	3	-	-	-	-	-	-	-	-	-
공공용지	3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34	4	41	64	269	-	-	-	70	135	486	180	-
-	-	1	-	1	2	61	-	-	-	7	6	138	8	-
-	-	-	1	-	1	20	-	-	-	-	-	17	-	-
-	-	-	-	-	-	4	-	-	-	-	-	-	-	-
-	-	11	1	1	-	15	-	-	-	1	2	35	1	-
-	-	12	-	15	3	94	-	-	-	20	57	163	31	-
-	-	4	1	4	58	43	-	-	-	5	54	64	121	-
-	-	6	1	20	-	32	-	-	-	37	16	63	19	-
-	-	-	-	-	-	-	-	-	-	-	-	6	-	-
1	-	26	9	2	84	384	-	-	-	353	603	1,154	533	33
-	-	-	-	-	6	87	-	-	-	23	76	407	28	5
1	-	-	1	-	1	13	-	-	-	1	1	18	-	2
-	-	-	-	-	1	2	-	-	-	-	-	12	1	-
-	-	22	8	-	1	1	-	-	-	-	4	39	1	-
-	-	2	-	2	24	183	-	-	-	157	378	474	103	18
-	-	1	-	-	51	45	-	-	-	21	107	121	253	-
-	-	1	-	-	-	49	-	-	-	148	37	68	147	8
-	-	-	-	-	-	3	-	-	-	1	-	15	-	-
-	-	-	-	-	-	1	-	-	-	2	-	-	-	-
-	-	20	16	1	46	318	-	-	1	157	468	956	350	53
-	-	1	3	-	9	64	-	-	-	10	51	307	26	4
-	-	-	4	-	2	21	-	-	-	1	3	19	1	1
-	-	-	3	-	-	9	-	-	-	-	1	9	1	1
-	-	15	5	-	-	1	-	-	-	1	1	12	-	-
-	-	3	-	1	16	124	-	-	1	85	288	439	84	25
-	-	-	1	-	18	41	-	-	-	1	38	74	101	2
-	-	1	-	-	1	55	-	-	-	59	83	90	137	20
-	-	-	-	-	-	2	-	-	-	-	-	5	-	-
-	-	-	-	-	-	1	-	-	-	-	3	1	-	-
-	-	9	4	3	28	63	-	-	-	342	157	629	499	125
-	-	-	1	-	3	22	-	-	-	23	9	228	13	14
-	-	-	-	-	-	-	-	-	-	2	-	10	-	-
-	-	-	1	-	-	-	-	-	-	-	-	6	-	1
-	-	8	2	-	-	1	-	-	-	1	-	7	-	-
-	-	-	-	-	5	26	-	-	-	193	97	233	120	58
-	-	-	-	2	20	4	-	-	-	34	30	55	230	9
-	-	1	-	1	-	10	-	-	-	89	21	87	136	43
-	-	-	-	-	-	-	-	-	-	-	-	3	-	-
-	-	21	2	2	27	148	126	-	-	514	97	529	375	339
-	-	1	1	-	2	35	3	-	-	30	7	221	9	54
-	-	1	-	-	-	7	1	-	-	2	-	6	1	-
-	-	-	-	-	-	1	-	-	-	1	-	9	-	7
-	-	14	1	-	1	1	-	-	-	3	1	21	-	-
-	-	3	-	-	15	68	70	-	-	324	61	189	100	162
-	-	1	-	-	9	15	25	-	-	53	16	44	141	19
-	-	1	-	-	-	20	27	-	-	101	12	37	124	96
-	-	-	-	-	-	-	-	-	-	-	-	2	-	1
-	-	-	-	2	-	1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충청북도 영동군	합계	2,814	-	-	45	111	-	25	-	67	-
	주거용	528	-	-	35	79	-	9	-	9	-
	상업업무용	87	-	-	2	7	-	5	-	55	-
	주상복합용	48	-	-	2	22	-	11	-	3	-
	공업용	22	-	-	-	-	-	-	-	-	-
	전	1,456	-	-	4	2	-	-	-	-	-
	답	288	-	-	1	1	-	-	-	-	-
	임야	382	-	-	1	-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충청북도 증평군	합계	728	-	-	7	122	1	10	-	46	-
	주거용	185	-	-	2	69	1	3	-	2	-
	상업업무용	91	-	-	1	29	-	6	-	42	-
	주상복합용	26	-	-	3	20	-	1	-	1	-
	공업용	21	-	-	-	-	-	-	-	-	-
	전	193	-	-	-	3	-	-	-	-	-
	답	144	-	-	1	1	-	-	-	-	-
	임야	64	-	-	-	-	-	-	-	-	-
	특수토지	3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충청북도 진천군	합계	1,805	1	-	63	44	1	18	-	64	1
	주거용	409	1	-	43	28	1	2	-	9	-
	상업업무용	111	-	-	8	8	-	13	-	47	1
	주상복합용	31	-	-	10	6	-	3	-	7	-
	공업용	67	-	-	-	-	-	-	-	-	-
	전	489	-	-	2	1	-	-	-	-	-
	답	476	-	-	-	1	-	-	-	-	-
	임야	214	-	-	-	-	-	-	-	-	-
	특수토지	7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충청북도 괴산군	합계	2,321	-	-	35	43	-	17	-	37	-
	주거용	515	-	-	27	27	-	4	-	3	-
	상업업무용	97	-	-	3	6	-	12	-	31	-
	주상복합용	31	-	-	1	8	-	1	-	2	-
	공업용	28	-	-	-	-	-	-	-	-	-
	전	1,043	-	-	2	1	-	-	-	-	-
	답	265	-	-	2	1	-	-	-	-	-
	임야	340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충청북도 음성군	합계	2,536	-	-	143	93	1	33	-	97	1
	주거용	552	-	-	85	43	1	8	-	15	-
	상업업무용	161	-	-	19	19	-	17	-	63	-
	주상복합용	50	-	-	9	9	-	6	-	14	-
	공업용	90	-	-	-	-	-	-	-	-	-
	전	866	-	-	22	13	-	1	-	1	-
	답	498	-	-	6	6	-	1	-	1	1
	임야	303	-	-	1	3	-	-	-	-	-
	특수토지	14	-	-	1	-	-	-	-	3	-
	공공용지	2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8	2	8	21	182	-	-	-	600	387	744	603	1
-	-	-	-	1	-	33	-	-	-	33	22	286	21	-
-	-	-	1	-	-	4	-	-	-	1	1	9	2	-
-	-	-	-	-	-	2	-	-	-	-	-	8	-	-
-	-	11	1	-	-	1	-	-	-	-	-	8	1	-
-	-	6	-	5	10	105	-	-	-	411	303	331	278	1
-	-	-	-	1	11	17	-	-	-	42	31	52	132	-
-	-	1	-	1	-	20	-	-	-	113	30	47	169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	-
-	-	9	1	-	2	106	-	-	-	57	73	183	111	-
-	-	-	-	-	1	20	-	-	-	4	7	68	8	-
-	-	1	-	-	-	6	-	-	-	-	2	4	-	-
-	-	-	-	-	-	-	-	-	-	-	-	1	-	-
-	-	8	1	-	-	1	-	-	-	1	2	8	-	-
-	-	-	-	-	-	44	-	-	-	28	43	56	19	-
-	-	-	-	-	1	24	-	-	-	6	15	21	75	-
-	-	-	-	-	-	11	-	-	-	18	4	22	9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	-
-	-	21	2	1	31	101	-	-	-	215	135	698	409	-
-	-	2	-	-	3	20	-	-	-	28	22	224	26	-
-	-	1	1	-	1	8	-	-	-	3	1	17	2	-
-	-	-	1	-	-	-	-	-	-	1	-	3	-	-
-	-	13	-	-	-	1	-	-	-	4	3	42	4	-
-	-	1	-	-	3	41	-	-	-	107	57	215	62	-
-	-	3	-	-	24	19	-	-	-	25	45	120	239	-
-	-	1	-	-	-	12	-	-	-	47	7	71	76	-
-	-	-	-	-	-	-	-	-	-	-	-	6	-	-
-	-	-	-	1	-	-	-	-	-	-	-	-	-	-
-	-	6	-	1	12	43	-	-	-	393	263	919	509	43
-	-	-	-	-	3	11	-	-	-	45	33	321	37	4
-	-	1	-	-	1	1	-	-	-	1	3	34	-	4
-	-	-	-	-	-	-	-	-	-	1	1	17	-	-
-	-	5	-	-	-	-	-	-	-	-	1	20	2	-
-	-	-	-	-	5	22	-	-	-	226	156	413	199	19
-	-	-	-	-	3	3	-	-	-	16	39	46	154	1
-	-	-	-	1	-	6	-	-	-	104	30	67	117	15
-	-	-	-	-	-	-	-	-	-	-	-	1	-	-
4	-	52	11	1	32	86	-	-	-	147	412	947	476	-
-	-	6	-	-	5	17	-	-	-	7	15	324	26	-
1	-	2	-	-	-	4	-	-	-	-	2	32	2	-
-	-	-	-	-	-	-	-	-	-	-	-	12	-	-
-	-	20	3	-	-	1	-	-	-	-	4	57	5	-
2	-	6	5	1	13	36	-	-	-	52	250	328	136	-
-	-	10	1	-	14	11	-	-	-	5	110	104	228	-
-	-	8	2	-	-	15	-	-	-	82	31	82	79	-
1	-	-	-	-	-	-	-	-	-	1	-	8	-	-
-	-	-	-	-	-	2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충청북도 단양군	합계	1,829	-	-	10	91	-	8	-	53	3
	주거용	395	-	-	7	61	-	2	-	6	-
	상업업무용	49	-	-	-	2	-	3	-	25	1
	주상복합용	59	-	-	1	12	-	3	-	19	2
	공업용	24	-	-	-	-	-	-	-	-	-
	전	942	-	-	2	9	-	-	-	2	-
	답	47	-	-	-	-	-	-	-	-	-
	임야	304	-	-	-	7	-	-	-	1	-
	특수토지	7	-	-	-	-	-	-	-	-	-
	공공용지	2	-	-	-	-	-	-	-	-	-
충청남도	합계	46,106	13	3	681	3,387	31	369	13	1,392	44
	주거용	10,424	12	3	358	1,708	24	66	-	198	8
	상업업무용	2,703	-	-	54	655	2	206	13	1,000	27
	주상복합용	1,417	-	-	143	674	4	86	-	166	8
	공업용	800	-	-	1	15	-	1	-	-	-
	전	12,329	-	-	82	233	1	2	-	1	1
	답	12,293	1	-	35	70	-	6	-	10	-
	임야	6,003	-	-	6	31	-	-	-	-	-
	특수토지	123	-	-	-	1	-	2	-	17	-
	공공용지	14	-	-	2	-	-	-	-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합계	2,375	-	-	68	441	9	6	-	182	12
	주거용	620	-	-	32	212	5	-	-	36	3
	상업업무용	284	-	-	6	100	-	4	-	126	4
	주상복합용	156	-	-	13	97	4	1	-	19	5
	공업용	66	-	-	-	3	-	-	-	-	-
	전	516	-	-	13	17	-	-	-	-	-
	답	471	-	-	3	8	-	1	-	-	-
	임야	247	-	-	1	4	-	-	-	-	-
	특수토지	12	-	-	-	-	-	-	-	1	-
	공공용지	3	-	-	-	-	-	-	-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합계	1,686	-	-	25	413	4	35	-	83	1
	주거용	382	-	-	9	140	3	3	-	8	1
	상업업무용	238	-	-	2	106	1	21	-	67	-
	주상복합용	182	-	-	9	140	-	11	-	8	-
	공업용	83	-	-	-	8	-	-	-	-	-
	전	438	-	-	4	14	-	-	-	-	-
	답	264	-	-	1	4	-	-	-	-	-
	임야	97	-	-	-	1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공공용지	-	-	-	-	-	-	-	-	-	-
충청남도 공주시	합계	3,853	2	-	10	260	1	48	-	100	7
	주거용	817	1	-	9	159	1	9	-	12	3
	상업업무용	199	-	-	1	34	-	29	-	82	3
	주상복합용	88	-	-	-	47	-	9	-	4	1
	공업용	42	-	-	-	-	-	-	-	-	-
	전	1,114	-	-	-	13	-	-	-	-	-
	답	1,075	1	-	-	5	-	1	-	-	-
	임야	510	-	-	-	2	-	-	-	-	-
특수토지	8	-	-	-	-	-	-	-	2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7	3	3	2	100	-	-	-	402	150	738	193	66
-	-	-	-	-	-	10	-	-	-	62	17	220	6	4
-	-	-	1	-	-	4	-	-	-	3	-	9	-	1
-	-	-	-	-	-	-	-	-	-	3	-	19	-	-
-	-	6	2	-	-	2	-	-	-	1	-	12	1	-
-	-	-	-	-	1	52	-	-	-	248	126	421	52	29
-	-	-	-	1	1	3	-	-	-	8	3	13	17	1
-	-	1	-	1	-	27	-	-	-	77	4	40	115	31
-	-	-	-	-	-	2	-	-	-	-	-	3	2	-
-	-	-	-	1	-	-	-	-	-	-	-	1	-	-
4	32	261	118	281	499	3,874	78	50	-	3,100	5,490	15,822	10,301	263
-	4	14	21	27	42	927	2	4	-	308	750	5,318	606	24
2	1	14	30	3	17	179	-	4	-	7	14	453	19	3
-	-	2	-	-	5	49	2	1	-	6	4	263	4	-
-	7	155	36	-	2	62	-	1	-	20	53	392	54	1
-	3	31	14	78	53	1,292	35	13	-	1,081	2,396	5,554	1,368	91
2	8	28	13	26	377	914	23	22	-	439	1,718	2,182	6,376	43
-	5	13	4	147	3	425	16	5	-	1,233	541	1,604	1,871	99
-	3	2	-	-	-	19	-	-	-	6	14	54	3	2
-	1	2	-	-	-	7	-	-	-	-	-	2	-	-
-	-	24	4	17	13	180	-	-	-	168	82	793	370	6
-	-	1	-	-	1	39	-	-	-	12	6	254	18	1
-	-	1	3	-	-	19	-	-	-	-	-	21	-	-
-	-	-	-	-	-	3	-	-	-	-	-	13	1	-
-	-	11	1	-	-	3	-	-	-	1	-	40	7	-
-	-	4	-	3	1	48	-	-	-	86	33	254	56	1
-	-	4	-	4	11	46	-	-	-	31	39	129	191	4
-	-	3	-	10	-	19	-	-	-	36	4	73	97	-
-	-	-	-	-	-	1	-	-	-	2	-	8	-	-
-	-	-	-	-	-	2	-	-	-	-	-	1	-	-
1	-	52	10	13	36	420	-	-	-	26	15	336	214	2
-	-	5	3	-	2	93	-	-	-	3	1	101	10	-
1	-	4	3	-	2	20	-	-	-	1	-	9	1	-
-	-	2	-	-	1	5	-	-	-	1	-	4	1	-
-	-	25	3	-	1	20	-	-	-	-	1	25	-	-
-	-	10	1	2	7	165	-	-	-	10	8	139	76	2
-	-	5	-	-	23	77	-	-	-	4	5	30	115	-
-	-	1	-	11	-	39	-	-	-	7	-	27	11	-
-	-	-	-	-	-	1	-	-	-	-	-	1	-	-
-	-	12	12	18	2	226	30	-	-	368	395	1,529	783	50
-	-	-	2	1	-	63	1	-	-	31	12	480	28	5
-	-	-	-	-	-	8	-	-	-	1	-	40	1	-
-	-	-	-	-	-	4	2	-	-	-	-	21	-	-
-	-	3	9	-	-	2	-	-	-	2	3	21	2	-
-	-	2	-	9	1	74	13	-	-	177	173	536	92	24
-	-	5	1	-	1	51	8	-	-	93	170	284	452	3
-	-	2	-	8	-	24	6	-	-	64	36	142	208	18
-	-	-	-	-	-	-	-	-	-	-	1	5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충청남도 보령시	합계	3,431	-	-	2	217	-	24	-	81	1
	주거용	794	-	-	2	117	-	3	-	10	-
	상업업무용	224	-	-	-	51	-	19	-	66	1
	주상복합용	85	-	-	-	33	-	1	-	5	-
	공업용	39	-	-	-	1	-	-	-	-	-
	전	791	-	-	-	10	-	-	-	-	-
	답	1,011	-	-	-	4	-	-	-	-	-
	임야	478	-	-	-	1	-	-	-	-	-
	특수토지	9	-	-	-	-	-	1	-	-	-
충청남도 아산시	합계	3,965	10	1	83	429	6	61	-	186	4
	주거용	989	10	1	29	193	5	8	-	24	-
	상업업무용	331	-	-	7	75	-	29	-	134	3
	주상복합용	190	-	-	33	90	-	20	-	20	-
	공업용	122	-	-	-	3	-	-	-	-	-
	전	1,000	-	-	10	53	1	1	-	1	1
	답	917	-	-	4	8	-	3	-	4	-
	임야	407	-	-	-	7	-	-	-	-	-
	특수토지	8	-	-	-	-	-	-	-	3	-
충청남도 서산시	합계	4,133	-	-	21	298	-	46	-	101	4
	주거용	824	-	-	5	146	-	13	-	16	1
	상업업무용	218	-	-	2	48	-	31	-	72	3
	주상복합용	68	-	-	14	31	-	2	-	10	-
	공업용	45	-	-	-	-	-	-	-	-	-
	전	1,100	-	-	-	39	-	-	-	-	-
	답	1,246	-	-	-	23	-	-	-	2	-
	임야	616	-	-	-	11	-	-	-	-	-
	특수토지	13	-	-	-	-	-	-	-	1	-
충청남도 논산시	합계	3,569	1	-	154	211	2	29	-	154	1
	주거용	935	1	-	89	106	2	11	-	23	-
	상업업무용	226	-	-	9	44	-	12	-	108	1
	주상복합용	131	-	-	29	45	-	5	-	19	-
	공업용	74	-	-	1	-	-	1	-	-	-
	전	955	-	-	16	13	-	-	-	-	-
	답	935	-	-	8	2	-	-	-	2	-
	임야	304	-	-	2	-	-	-	-	-	-
	특수토지	7	-	-	-	1	-	-	-	2	-
충청남도 계룡시	합계	330	-	-	53	54	2	9	9	6	-
	주거용	91	-	-	32	27	2	1	-	-	-
	상업업무용	30	-	-	-	2	-	5	9	6	-
	주상복합용	27	-	-	6	16	-	3	-	-	-
	공업용	5	-	-	-	-	-	-	-	-	-
	전	74	-	-	10	6	-	-	-	-	-
	답	55	-	-	5	2	-	-	-	-	-
	임야	46	-	-	-	1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5	16	8	14	59	138	-	2	-	345	433	1,126	950	10
-	-	-	3	1	4	32	-	1	-	70	90	412	48	1
-	-	-	1	-	4	5	-	-	-	1	1	73	2	-
-	-	-	-	-	2	4	-	-	-	1	-	39	-	-
-	2	12	2	-	-	2	-	-	-	3	2	11	4	-
-	-	3	-	1	2	40	-	1	-	114	173	350	94	3
-	-	-	2	-	47	44	-	-	-	63	104	134	610	3
-	1	1	-	12	-	9	-	-	-	93	63	103	192	3
-	2	-	-	-	-	2	-	-	-	-	-	4	-	-
-	-	40	11	53	60	372	-	47	-	215	408	1,183	783	13
-	-	3	1	9	8	87	-	3	-	32	57	465	51	3
-	-	3	4	2	3	17	-	4	-	2	3	41	4	-
-	-	-	-	-	1	7	-	1	-	1	1	16	-	-
-	-	20	3	-	-	10	-	1	-	2	2	74	7	-
-	-	4	-	19	9	142	-	11	-	79	172	377	119	1
-	-	7	3	1	39	72	-	22	-	27	141	110	468	8
-	-	3	-	22	-	36	-	5	-	72	32	96	133	1
-	-	-	-	-	-	-	-	-	-	-	-	4	1	-
-	-	-	-	-	-	1	-	-	-	-	-	-	-	-
-	25	30	11	57	56	616	-	-	-	251	448	1,113	1,056	-
-	4	3	2	6	8	116	-	-	-	37	76	285	106	-
-	1	3	2	1	1	29	-	-	-	-	-	24	1	-
-	-	-	-	-	-	3	-	-	-	-	-	8	-	-
-	4	12	-	-	-	3	-	-	-	-	8	15	3	-
-	3	3	3	7	4	161	-	-	-	77	193	427	183	-
-	8	5	2	13	42	196	-	-	-	24	115	192	624	-
-	4	2	2	30	1	100	-	-	-	112	55	160	139	-
-	-	-	-	-	-	8	-	-	-	1	1	2	-	-
-	1	2	-	-	-	-	-	-	-	-	-	-	-	-
1	-	9	7	5	73	418	-	-	-	174	361	1,146	813	10
-	-	-	-	-	7	123	-	-	-	11	27	499	36	-
1	-	-	1	-	2	26	-	-	-	-	1	19	2	-
-	-	-	-	-	-	8	-	-	-	-	-	25	-	-
-	-	9	3	-	1	9	-	-	-	-	10	34	6	-
-	-	-	1	1	11	121	-	-	-	54	177	349	209	3
-	-	-	1	1	51	98	-	-	-	23	124	159	466	-
-	-	-	1	3	1	31	-	-	-	85	22	58	94	7
-	-	-	-	-	-	-	-	-	-	1	-	3	-	-
-	-	-	-	-	-	2	-	-	-	-	-	-	-	-
-	-	3	1	34	6	144	7	-	-	-	-	-	-	2
-	-	-	-	3	-	26	-	-	-	-	-	-	-	-
-	-	1	-	-	-	7	-	-	-	-	-	-	-	-
-	-	-	-	-	1	1	-	-	-	-	-	-	-	-
-	-	2	1	-	-	2	-	-	-	-	-	-	-	-
-	-	-	-	10	3	42	3	-	-	-	-	-	-	-
-	-	-	-	3	2	41	2	-	-	-	-	-	-	-
-	-	-	-	18	-	23	2	-	-	-	-	-	-	2
-	-	-	-	-	-	2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충청남도 당진시	합계	3,889	-	-	49	210	1	41	-	82	7
	주거용	857	-	-	24	111	1	5	-	7	-
	상업업무용	194	-	-	2	39	-	16	-	57	5
	주상복합용	132	-	-	19	46	-	20	-	16	2
	공업용	85	-	-	-	-	-	-	-	-	-
	전	896	-	-	1	11	-	-	-	-	-
	답	1,167	-	-	2	1	-	-	-	-	-
	임야	548	-	-	1	2	-	-	-	-	-
	특수토지	8	-	-	-	-	-	-	-	2	-
	공공용지	2	-	-	-	-	-	-	-	-	-
충청남도 금산군	합계	2,573	-	-	28	130	1	14	-	58	-
	주거용	513	-	-	16	82	1	6	-	11	-
	상업업무용	107	-	-	1	31	-	5	-	41	-
	주상복합용	31	-	-	2	14	-	2	-	5	-
	공업용	52	-	-	-	-	-	-	-	-	-
	전	933	-	-	7	2	-	1	-	-	-
	답	557	-	-	1	1	-	-	-	-	-
	임야	375	-	-	1	-	-	-	-	-	-
특수토지	5	-	-	-	-	-	-	-	1	-	
충청남도 부여군	합계	3,085	-	-	79	65	-	3	-	89	-
	주거용	660	-	-	56	37	-	-	-	13	-
	상업업무용	111	-	-	17	11	-	3	-	58	-
	주상복합용	45	-	-	2	8	-	-	-	16	-
	공업용	43	-	-	-	-	-	-	-	-	-
	전	698	-	-	2	6	-	-	-	-	-
	답	1,130	-	-	2	3	-	-	-	1	-
	임야	392	-	-	-	-	-	-	-	-	-
특수토지	6	-	-	-	-	-	-	-	1	-	
충청남도 서천군	합계	2,534	-	-	4	178	-	11	-	82	-
	주거용	602	-	-	4	88	-	2	-	12	-
	상업업무용	132	-	-	-	30	-	7	-	60	-
	주상복합용	68	-	-	-	35	-	2	-	10	-
	공업용	26	-	-	-	-	-	-	-	-	-
	전	640	-	-	-	21	-	-	-	-	-
	답	690	-	-	-	4	-	-	-	-	-
	임야	368	-	-	-	-	-	-	-	-	-
특수토지	8	-	-	-	-	-	-	-	-	-	
충청남도 청양군	합계	1,956	-	-	-	51	-	3	-	18	-
	주거용	406	-	-	-	35	-	-	-	-	-
	상업업무용	46	-	-	-	8	-	2	-	14	-
	주상복합용	27	-	-	-	8	-	1	-	3	-
	공업용	18	-	-	-	-	-	-	-	-	-
	전	544	-	-	-	-	-	-	-	-	-
	답	580	-	-	-	-	-	-	-	-	-
	임야	334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1	-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2	2	30	12	1	20	293	-	-	-	124	530	1,716	768	1
-	-	-	-	-	1	77	-	-	-	9	82	489	51	-
-	-	1	7	-	1	11	-	-	-	-	-	55	-	-
-	-	-	-	-	-	6	-	-	-	1	-	22	-	-
-	1	29	3	-	-	4	-	-	-	1	4	39	4	-
-	-	-	-	-	-	97	-	-	-	17	177	571	22	-
2	-	-	2	-	18	56	-	-	-	6	199	288	592	1
-	-	-	-	1	-	39	-	-	-	90	68	249	98	-
-	1	-	-	-	-	1	-	-	-	-	-	3	1	-
-	-	-	-	-	-	2	-	-	-	-	-	-	-	-
-	-	1	6	16	24	165	41	-	-	310	232	1,071	469	7
-	-	-	1	1	3	26	1	-	-	15	7	315	27	1
-	-	-	2	-	-	5	-	-	-	1	-	20	1	-
-	-	-	-	-	-	-	-	-	-	1	-	7	-	-
-	-	1	-	-	-	4	-	-	-	3	2	36	6	-
-	-	-	3	5	6	80	19	-	-	174	119	436	78	3
-	-	-	-	-	15	33	13	-	-	62	72	126	234	-
-	-	-	-	10	-	17	8	-	-	54	32	127	123	3
-	-	-	-	-	-	-	-	-	-	-	-	4	-	-
-	-	-	3	17	60	198	-	-	-	231	306	1,191	841	2
-	-	-	1	4	1	59	-	-	-	11	25	435	17	1
-	-	-	-	-	-	4	-	-	-	-	-	17	1	-
-	-	-	-	-	-	1	-	-	-	-	-	18	-	-
-	-	-	-	-	-	-	-	-	-	5	5	28	5	-
-	-	-	1	6	1	61	-	-	-	75	120	377	49	-
-	-	-	-	4	58	55	-	-	-	37	141	198	631	-
-	-	-	1	3	-	18	-	-	-	103	15	114	137	1
-	-	-	-	-	-	-	-	-	-	-	-	4	1	-
-	-	15	15	2	38	105	-	-	-	223	312	889	660	-
-	-	2	4	-	6	30	-	-	-	19	59	333	43	-
-	-	-	4	-	3	3	-	-	-	-	1	23	1	-
-	-	-	-	-	-	1	-	-	-	1	1	16	2	-
-	-	12	3	-	-	-	-	-	-	-	2	7	2	-
-	-	-	4	-	3	35	-	-	-	73	143	290	71	-
-	-	-	-	-	25	22	-	-	-	22	91	112	414	-
-	-	-	-	2	1	14	-	-	-	107	13	104	127	-
-	-	1	-	-	-	-	-	-	-	1	2	4	-	-
-	-	1	-	-	5	37	-	-	-	125	357	778	557	24
-	-	-	-	-	-	8	-	-	-	8	39	294	22	-
-	-	-	-	-	1	3	-	-	-	-	1	15	2	-
-	-	-	-	-	-	-	-	-	-	-	-	15	-	-
-	-	1	-	-	-	-	-	-	-	-	2	13	2	-
-	-	-	-	-	-	12	-	-	-	23	155	310	34	10
-	-	-	-	-	4	11	-	-	-	6	117	96	344	2
-	-	-	-	-	-	3	-	-	-	88	43	35	153	12
-	-	-	-	-	-	-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충청남도 홍성군	합계	3,151	-	1	27	225	1	20	2	96	5
	주거용	758	-	1	16	143	1	2	-	13	-
	상업업무용	142	-	-	1	29	-	13	2	60	5
	주상복합용	83	-	-	7	27	-	5	-	21	-
	공업용	44	-	-	-	-	-	-	-	-	-
	전	918	-	-	2	24	-	-	-	-	-
	답	766	-	-	-	-	-	-	-	-	-
	임야	436	-	-	-	2	-	-	-	-	-
	특수토지	3	-	-	-	-	-	-	-	2	-
	공공용지	1	-	-	1	-	-	-	-	-	-
충청남도 예산군	합계	2,776	-	1	38	140	4	17	2	52	2
	주거용	652	-	1	16	83	3	3	-	12	-
	상업업무용	126	-	-	1	27	1	9	2	33	2
	주상복합용	58	-	-	5	23	-	4	-	7	-
	공업용	42	-	-	-	-	-	-	-	-	-
	전	785	-	-	10	4	-	-	-	-	-
	답	754	-	-	5	3	-	-	-	-	-
	임야	354	-	-	-	-	-	-	-	-	-
	특수토지	4	-	-	-	-	-	1	-	-	-
	공공용지	1	-	-	1	-	-	-	-	-	-
충청남도 태안군	합계	2,800	-	-	40	65	-	2	-	22	-
	주거용	524	-	-	19	29	-	-	-	1	-
	상업업무용	95	-	-	5	20	-	1	-	16	-
	주상복합용	46	-	-	4	14	-	-	-	3	-
	공업용	14	-	-	-	-	-	-	-	-	-
	전	927	-	-	7	-	-	-	-	-	-
	답	675	-	-	4	2	-	1	-	1	-
	임야	491	-	-	1	-	-	-	-	-	-
	특수토지	27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전라북도	합계	46,374	13	2	2,291	3,407	64	253	24	2,124	6
	주거용	10,959	13	2	1,441	1,803	38	62	-	398	1
	상업업무용	3,079	-	-	167	820	15	126	23	1,385	5
	주상복합용	1,803	-	-	401	707	11	63	1	307	-
	공업용	859	-	-	2	5	-	-	-	1	-
	전	12,206	-	-	147	36	-	2	-	3	-
	답	11,447	-	-	87	21	-	-	-	5	-
	임야	5,912	-	-	46	14	-	-	-	1	-
	특수토지	94	-	-	-	-	-	-	-	24	-
	공공용지	15	-	-	-	1	-	-	-	-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합계	1,864	5	-	448	558	19	22	21	321	-
	주거용	647	5	-	220	251	13	-	-	52	-
	상업업무용	545	-	-	62	175	5	22	20	236	-
	주상복합용	338	-	-	162	132	1	-	1	33	-
	공업용	1	-	-	-	-	-	-	-	-	-
	전	151	-	-	1	-	-	-	-	-	-
	답	84	-	-	-	-	-	-	-	-	-
임야	98	-	-	3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4	10	18	17	266	-	1	-	192	659	961	642	4
-	-	-	2	1	-	74	-	-	-	18	116	328	42	1
-	-	-	1	-	-	8	-	-	-	-	4	18	1	-
-	-	-	-	-	-	5	-	-	-	-	1	17	-	-
-	-	4	6	-	-	3	-	-	-	2	6	21	2	-
-	-	-	-	8	2	102	-	1	-	53	297	349	79	1
-	-	-	1	-	15	53	-	-	-	18	154	109	416	-
-	-	-	-	9	-	21	-	-	-	101	81	118	102	2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22	5	5	29	180	-	-	-	136	392	936	784	31
-	-	-	1	1	1	51	-	-	-	12	60	339	66	3
-	-	1	2	-	-	11	-	-	-	-	-	35	1	1
-	-	-	-	-	-	1	-	-	-	-	-	18	-	-
-	-	13	2	-	-	-	-	-	-	1	3	20	3	-
-	-	5	-	3	3	65	-	-	-	36	193	339	120	7
-	-	2	-	-	25	32	-	-	-	14	106	99	462	6
-	-	1	-	1	-	20	-	-	-	72	30	84	132	14
-	-	-	-	-	-	-	-	-	-	1	-	2	-	-
-	-	-	-	-	-	-	-	-	-	-	-	-	-	-
-	-	2	3	11	1	116	-	-	-	212	560	1,054	611	101
-	-	-	1	-	-	23	-	-	-	20	93	289	41	8
-	-	-	-	-	-	3	-	-	-	1	3	43	1	2
-	-	-	-	-	-	-	-	-	-	-	1	24	-	-
-	-	1	-	-	-	-	-	-	-	-	3	8	1	1
-	-	-	1	4	-	47	-	-	-	33	263	450	86	36
-	-	-	1	-	1	27	-	-	-	9	140	116	357	16
-	-	-	-	7	-	12	-	-	-	149	47	114	125	36
-	-	1	-	-	-	4	-	-	-	-	10	9	-	2
-	-	-	-	-	-	-	-	-	-	-	-	1	-	-
5	24	193	150	300	1,116	3,896	-	3	5	3,981	6,545	12,696	8,676	600
1	-	12	45	26	87	942	-	-	-	248	415	5,098	259	68
3	1	13	39	1	39	133	-	2	-	10	10	259	6	22
-	-	1	12	1	9	61	-	-	-	7	5	204	2	11
-	23	127	40	-	36	44	-	-	-	49	182	286	64	-
-	-	18	5	105	145	1,377	-	1	2	1,836	3,145	4,182	978	224
1	-	17	7	32	796	844	-	-	1	634	1,807	1,540	5,613	42
-	-	5	2	135	4	482	-	-	2	1,193	979	1,072	1,749	228
-	-	-	-	-	-	8	-	-	-	1	2	53	2	4
-	-	-	-	-	-	5	-	-	-	3	-	2	3	1
-	-	2	-	75	61	332	-	-	-	-	-	-	-	-
-	-	-	-	8	8	90	-	-	-	-	-	-	-	-
-	-	1	-	1	6	17	-	-	-	-	-	-	-	-
-	-	-	-	1	2	6	-	-	-	-	-	-	-	-
-	-	-	-	-	1	-	-	-	-	-	-	-	-	-
-	-	-	-	23	9	118	-	-	-	-	-	-	-	-
-	-	-	-	8	35	41	-	-	-	-	-	-	-	-
-	-	1	-	34	-	60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합계	1,882	5	2	305	501	19	27	1	222	-
	주거용	654	5	2	196	219	10	-	-	27	-
	상업업무용	431	-	-	19	171	3	24	1	173	-
	주상복합용	246	-	-	86	108	6	3	-	21	-
	공업용	59	-	-	-	-	-	-	-	-	-
	전	202	-	-	1	2	-	-	-	-	-
	답	225	-	-	2	-	-	-	-	-	-
	임야	62	-	-	1	-	-	-	-	-	-
	특수토지	1	-	-	-	-	-	-	-	1	-
	공공용지	2	-	-	-	1	-	-	-	-	-
전라북도 군산시	합계	3,670	-	-	182	667	8	50	-	512	-
	주거용	1,196	-	-	131	380	7	14	-	132	-
	상업업무용	520	-	-	7	141	1	19	-	291	-
	주상복합용	271	-	-	23	130	-	17	-	83	-
	공업용	71	-	-	-	4	-	-	-	1	-
	전	499	-	-	4	-	-	-	-	1	-
	답	773	-	-	5	1	-	-	-	1	-
	임야	331	-	-	12	11	-	-	-	1	-
	특수토지	7	-	-	-	-	-	-	-	2	-
	공공용지	2	-	-	-	-	-	-	-	-	-
전라북도 익산시	합계	5,096	2	-	271	577	2	53	-	283	2
	주거용	1,382	2	-	188	285	1	16	-	56	-
	상업업무용	448	-	-	17	144	-	26	-	196	2
	주상복합용	250	-	-	36	143	1	11	-	29	-
	공업용	137	-	-	1	-	-	-	-	-	-
	전	997	-	-	17	4	-	-	-	-	-
	답	1,460	-	-	9	1	-	-	-	-	-
	임야	414	-	-	3	-	-	-	-	-	-
	특수토지	7	-	-	-	-	-	-	-	2	-
	공공용지	1	-	-	-	-	-	-	-	-	-
전라북도 정읍시	합계	4,758	-	-	200	270	14	8	-	177	1
	주거용	1,062	-	-	108	154	5	4	-	34	-
	상업업무용	219	-	-	12	53	6	-	-	112	1
	주상복합용	134	-	-	10	57	3	3	-	28	-
	공업용	89	-	-	-	-	-	-	-	-	-
	전	1,366	-	-	40	5	-	1	-	-	-
	답	1,329	-	-	24	1	-	-	-	1	-
	임야	551	-	-	6	-	-	-	-	-	-
	특수토지	7	-	-	-	-	-	-	-	2	-
	공공용지	1	-	-	-	-	-	-	-	-	-
전라북도 남원시	합계	3,958	-	-	42	255	-	4	-	99	-
	주거용	756	-	-	23	151	-	1	-	16	-
	상업업무용	159	-	-	4	56	-	1	-	63	-
	주상복합용	90	-	-	4	31	-	2	-	16	-
	공업용	68	-	-	-	1	-	-	-	-	-
	전	908	-	-	7	9	-	-	-	-	-
	답	1,370	-	-	2	5	-	-	-	1	-
	임야	596	-	-	2	2	-	-	-	-	-
	특수토지	11	-	-	-	-	-	-	-	3	-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2	4	57	53	23	145	446	-	-	-	1	13	31	25	-
-	-	7	32	1	14	123	-	-	-	-	-	17	1	-
2	-	4	7	-	6	21	-	-	-	-	-	-	-	-
-	-	1	5	-	4	11	-	-	-	-	-	1	-	-
-	4	34	8	-	9	1	-	-	-	-	2	1	-	-
-	-	2	-	6	16	157	-	-	-	-	6	9	3	-
-	-	8	1	1	96	89	-	-	-	1	4	2	21	-
-	-	1	-	15	-	43	-	-	-	-	1	1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2	20	2	56	10	259	289	-	1	-	238	303	604	465	2
1	-	-	12	3	31	78	-	-	-	16	48	318	24	1
-	1	-	22	-	16	10	-	-	-	-	1	11	-	-
-	-	-	6	-	-	-	-	-	-	1	-	11	-	-
-	19	2	13	-	9	1	-	-	-	1	5	13	3	-
-	-	-	2	3	13	88	-	1	-	83	127	173	4	-
1	-	-	-	1	189	47	-	-	-	5	111	40	372	-
-	-	-	1	3	1	63	-	-	-	131	11	35	61	1
-	-	-	-	-	-	-	-	-	-	1	-	3	1	-
-	-	-	-	-	-	2	-	-	-	-	-	-	-	-
1	-	51	17	12	98	577	-	-	-	154	789	1,426	719	62
-	-	2	-	1	3	158	-	-	-	9	32	594	24	11
1	-	3	4	-	4	21	-	-	-	-	2	26	2	-
-	-	-	-	-	-	11	-	-	-	-	-	19	-	-
-	-	45	13	-	3	9	-	-	-	-	20	44	2	-
-	-	1	-	5	7	206	-	-	-	41	294	360	51	11
-	-	-	-	1	81	107	-	-	-	13	374	265	600	9
-	-	-	-	5	-	62	-	-	-	91	67	115	40	31
-	-	-	-	-	-	2	-	-	-	-	-	3	-	-
-	-	-	-	-	-	1	-	-	-	-	-	-	-	-
-	-	15	6	-	56	326	-	-	-	504	780	1,438	940	23
-	-	1	-	-	2	67	-	-	-	43	56	568	20	-
-	-	1	-	-	1	8	-	-	-	1	-	24	-	-
-	-	-	1	-	1	6	-	-	-	-	-	25	-	-
-	-	9	2	-	-	8	-	-	-	8	27	31	4	-
-	-	4	1	-	1	133	-	-	-	256	368	496	52	9
-	-	-	2	-	51	61	-	-	-	90	226	180	693	-
-	-	-	-	-	-	41	-	-	-	106	103	110	171	14
-	-	-	-	-	-	1	-	-	-	-	-	4	-	-
-	-	-	-	-	-	1	-	-	-	-	-	-	-	-
-	-	8	-	-	9	209	-	-	5	366	503	1,350	1,064	44
-	-	-	-	-	-	28	-	-	-	23	26	460	24	4
-	-	-	-	-	-	12	-	-	-	3	-	19	1	-
-	-	-	-	-	-	5	-	-	-	2	1	25	-	4
-	-	6	-	-	-	3	-	-	-	8	10	30	10	-
-	-	1	-	-	1	44	-	-	2	143	195	377	112	17
-	-	1	-	-	8	80	-	-	1	103	165	263	738	3
-	-	-	-	-	-	35	-	-	2	84	106	170	179	16
-	-	-	-	-	-	2	-	-	-	-	-	6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전라북도 김제시	합계	3,946	1	-	121	189	-	35	-	115	3
	주거용	1,009	1	-	97	125	-	12	-	31	1
	상업업무용	155	-	-	8	25	-	14	-	64	2
	주상복합용	94	-	-	10	34	-	9	-	18	-
	공업용	140	-	-	-	-	-	-	-	-	-
	전	959	-	-	2	2	-	-	-	-	-
	답	1,215	-	-	1	3	-	-	-	-	-
	임야	368	-	-	3	-	-	-	-	-	-
	특수토지	6	-	-	-	-	-	-	-	2	-
전라북도 완주군	합계	3,062	-	-	139	82	2	17	2	81	-
	주거용	762	-	-	95	46	2	4	-	22	-
	상업업무용	103	-	-	4	11	-	8	2	44	-
	주상복합용	89	-	-	30	15	-	5	-	14	-
	공업용	44	-	-	-	-	-	-	-	-	-
	전	1,010	-	-	7	6	-	-	-	-	-
	답	671	-	-	2	3	-	-	-	-	-
	임야	379	-	-	1	1	-	-	-	-	-
	특수토지	4	-	-	-	-	-	-	-	1	-
전라북도 진안군	합계	2,496	-	-	53	1	-	2	-	28	-
	주거용	404	-	-	35	-	-	-	-	2	-
	상업업무용	56	-	-	7	1	-	1	-	21	-
	주상복합용	12	-	-	3	-	-	1	-	4	-
	공업용	14	-	-	-	-	-	-	-	-	-
	전	1,059	-	-	6	-	-	-	-	-	-
	답	424	-	-	1	-	-	-	-	-	-
	임야	523	-	-	1	-	-	-	-	-	-
	특수토지	4	-	-	-	-	-	-	-	1	-
전라북도 무주군	합계	2,138	-	-	81	35	-	10	-	56	-
	주거용	403	-	-	68	28	-	2	-	3	-
	상업업무용	62	-	-	1	2	-	5	-	34	-
	주상복합용	38	-	-	4	4	-	3	-	17	-
	공업용	10	-	-	-	-	-	-	-	-	-
	전	1,017	-	-	5	-	-	-	-	-	-
	답	257	-	-	2	1	-	-	-	-	-
	임야	336	-	-	1	-	-	-	-	-	-
	특수토지	13	-	-	-	-	-	-	-	2	-
전라북도 장수군	합계	2,038	-	-	50	6	-	8	-	30	-
	주거용	341	-	-	41	4	-	2	-	2	-
	상업업무용	39	-	-	2	-	-	1	-	18	-
	주상복합용	31	-	-	7	-	-	5	-	8	-
	공업용	31	-	-	-	-	-	-	-	-	-
	전	623	-	-	-	1	-	-	-	-	-
	답	500	-	-	-	1	-	-	-	-	-
	임야	468	-	-	-	-	-	-	-	-	-
	특수토지	5	-	-	-	-	-	-	-	2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3	-	9	36	277	-	1	-	185	775	1,268	852	66
-	-	-	-	-	1	59	-	-	-	24	62	551	27	18
-	-	1	-	-	1	12	-	1	-	-	2	20	-	5
-	-	-	-	-	-	5	-	-	-	1	-	16	-	1
-	-	5	-	-	4	6	-	-	-	2	46	65	12	-
-	-	4	-	1	3	90	-	-	-	75	348	373	35	26
-	-	1	-	-	27	68	-	-	-	28	195	147	742	3
-	-	2	-	8	-	36	-	-	-	55	122	93	36	13
-	-	-	-	-	-	1	-	-	-	-	-	3	-	-
-	-	16	3	110	277	471	-	-	-	191	293	757	565	56
-	-	-	-	8	15	147	-	-	-	29	26	325	33	10
-	-	2	3	-	2	7	-	-	-	2	1	13	-	4
-	-	-	-	-	2	4	-	-	-	-	-	17	-	2
-	-	14	-	-	9	5	-	-	-	1	4	10	1	-
-	-	-	-	36	77	172	-	-	-	87	176	289	144	16
-	-	-	-	17	170	104	-	-	-	26	62	63	215	9
-	-	-	-	49	2	32	-	-	-	46	23	38	172	15
-	-	-	-	-	-	-	-	-	-	-	1	2	-	-
-	-	-	3	5	8	63	-	-	-	413	428	878	579	35
-	-	-	-	-	-	7	-	-	-	17	17	304	21	1
-	-	-	2	-	-	1	-	-	-	1	2	13	1	6
-	-	-	-	-	-	-	-	-	-	-	-	4	-	-
-	-	-	-	-	-	-	-	-	-	1	2	10	1	-
-	-	-	1	4	4	36	-	-	-	238	257	377	126	10
-	-	-	-	-	4	9	-	-	-	42	74	89	203	2
-	-	-	-	1	-	10	-	-	-	114	76	78	227	16
-	-	-	-	-	-	-	-	-	-	-	-	3	-	-
-	-	-	3	2	17	97	-	-	-	387	357	647	338	108
-	-	-	1	-	2	14	-	-	-	16	13	238	14	4
-	-	-	-	-	-	3	-	-	-	-	-	17	-	-
-	-	-	-	-	-	1	-	-	-	1	-	8	-	-
-	-	-	2	-	-	-	-	-	-	2	1	5	-	-
-	-	-	-	2	5	53	-	-	-	244	261	274	116	57
-	-	-	-	-	10	17	-	-	-	40	42	37	103	5
-	-	-	-	-	-	9	-	-	-	84	40	58	105	39
-	-	-	-	-	-	-	-	-	-	-	-	8	-	3
-	-	-	-	-	-	-	-	-	-	-	-	2	-	-
-	-	-	4	4	11	52	-	-	-	274	494	632	457	16
-	-	-	-	-	1	7	-	-	-	6	12	252	11	3
-	-	-	1	-	-	1	-	-	-	-	-	16	-	-
-	-	-	-	-	-	3	-	-	-	-	-	8	-	-
-	-	-	2	-	-	-	-	-	-	6	13	9	1	-
-	-	-	-	3	-	14	-	-	-	122	240	182	52	9
-	-	-	1	-	10	22	-	-	-	39	130	81	216	-
-	-	-	-	1	-	5	-	-	-	101	99	81	177	4
-	-	-	-	-	-	-	-	-	-	-	-	3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전라북도 임실군	합계	2,515	-	-	52	43	-	12	-	35	-
	주거용	413	-	-	31	30	-	5	-	6	-
	상업업무용	42	-	-	5	2	-	5	-	16	-
	주상복합용	40	-	-	2	10	-	1	-	10	-
	공업용	66	-	-	-	-	-	-	-	-	-
	전	735	-	-	6	-	-	1	-	-	-
	답	648	-	-	7	1	-	-	-	1	-
	임야	558	-	-	1	-	-	-	-	-	-
	특수토지	7	-	-	-	-	-	-	-	2	-
	공공용지	6	-	-	-	-	-	-	-	-	-
전라북도 순창군	합계	2,096	-	-	38	26	-	-	-	18	-
	주거용	360	-	-	22	14	-	-	-	1	-
	상업업무용	63	-	-	10	6	-	-	-	15	-
	주상복합용	23	-	-	6	4	-	-	-	1	-
	공업용	25	-	-	-	-	-	-	-	-	-
	전	624	-	-	-	1	-	-	-	-	-
	답	610	-	-	-	1	-	-	-	-	-
	임야	387	-	-	-	-	-	-	-	-	-
특수토지	4	-	-	-	-	-	-	-	1	-	
전라북도 고창군	합계	3,600	-	-	110	61	-	1	-	65	-
	주거용	766	-	-	80	29	-	-	-	6	-
	상업업무용	92	-	-	6	12	-	-	-	46	-
	주상복합용	71	-	-	12	19	-	1	-	10	-
	공업용	36	-	-	-	-	-	-	-	-	-
	전	1,066	-	-	9	-	-	-	-	-	-
	답	1,012	-	-	3	1	-	-	-	1	-
	임야	544	-	-	-	-	-	-	-	-	-
특수토지	13	-	-	-	-	-	-	-	2	-	
전라북도 부안군	합계	3,255	-	-	199	136	-	4	-	82	-
	주거용	804	-	-	106	87	-	2	-	8	-
	상업업무용	145	-	-	3	21	-	-	-	56	-
	주상복합용	76	-	-	6	20	-	2	-	15	-
	공업용	68	-	-	1	-	-	-	-	-	-
	전	990	-	-	42	6	-	-	-	2	-
	답	869	-	-	29	2	-	-	-	-	-
	임야	297	-	-	12	-	-	-	-	-	-
	특수토지	5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전라남도	합계	71,150	97	49	4,265	2,920	82	655	86	2,423	46
	주거용	15,385	55	37	2,896	1,642	44	139	-	355	9
	상업업무용	3,083	2	-	178	428	8	272	84	1,597	21
	주상복합용	2,340	1	1	539	640	6	214	1	411	15
	공업용	936	-	-	13	15	1	2	-	1	-
	전	21,058	28	8	441	113	9	17	-	22	1
	답	17,154	5	1	133	54	3	7	-	9	-
	임야	10,933	6	2	65	27	11	1	-	3	-
	특수토지	240	-	-	-	1	-	3	1	25	-
공공용지	21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9	-	14	8	143	-	-	-	516	273	772	636	2
-	-	1	-	2	-	26	-	-	-	3	2	297	9	1
-	-	-	-	-	-	4	-	-	-	-	-	9	1	-
-	-	-	-	-	-	3	-	-	-	-	-	14	-	-
-	-	4	-	-	-	3	-	-	-	11	17	21	10	-
-	-	2	-	7	1	52	-	-	-	219	106	279	61	1
-	-	1	-	2	7	39	-	-	-	99	86	82	323	-
-	-	1	-	3	-	15	-	-	-	181	62	66	229	-
-	-	-	-	-	-	1	-	-	-	-	-	4	-	-
-	-	-	-	-	-	-	-	-	-	3	-	-	3	-
-	-	-	-	-	22	66	-	-	-	218	362	627	702	17
-	-	-	-	-	2	11	-	-	-	13	11	271	15	-
-	-	-	-	-	-	1	-	-	-	3	1	25	-	2
-	-	-	-	-	-	1	-	-	-	1	-	10	-	-
-	-	-	-	-	-	2	-	-	-	3	5	11	4	-
-	-	-	-	-	2	19	-	-	-	108	194	198	98	4
-	-	-	-	-	17	22	-	-	-	33	83	54	399	1
-	-	-	-	-	1	9	-	-	-	57	68	56	186	10
-	-	-	-	-	-	1	-	-	-	-	-	2	-	-
-	-	1	3	-	11	221	-	-	-	444	681	1,182	765	55
-	-	-	-	-	1	42	-	-	-	38	50	497	17	6
-	-	-	-	-	1	6	-	-	-	-	1	14	1	5
-	-	-	-	-	-	1	-	-	-	-	2	21	2	3
-	-	1	-	-	-	-	-	-	-	3	10	18	4	-
-	-	-	1	-	-	75	-	-	-	176	319	385	88	13
-	-	-	1	-	9	69	-	-	-	105	159	132	525	7
-	-	-	1	-	-	28	-	-	-	122	139	107	127	20
-	-	-	-	-	-	-	-	-	-	-	1	8	1	1
-	-	19	2	36	98	327	-	1	-	90	494	1,084	569	114
-	-	1	-	3	7	85	-	-	-	11	60	406	19	9
-	-	1	-	-	2	9	-	1	-	-	-	52	-	-
-	-	-	-	-	-	4	-	-	-	1	2	25	-	1
-	-	7	-	-	1	6	-	-	-	3	20	18	12	-
-	-	4	-	15	6	120	-	-	-	44	254	410	36	51
-	-	6	2	2	82	69	-	-	-	10	96	105	463	3
-	-	-	-	16	-	34	-	-	-	21	62	64	39	49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1
1	-	423	253	363	1,172	6,160	1,273	17	40	6,511	7,811	18,188	15,682	2,633
-	-	32	23	10	72	1,181	38	-	2	473	595	7,120	417	245
1	-	19	43	2	12	131	3	-	-	20	13	232	6	11
-	-	4	14	-	10	54	-	-	-	15	16	386	5	8
-	-	226	102	-	7	82	1	1	1	44	95	261	65	19
-	-	67	36	127	145	2,569	426	3	21	2,849	4,010	6,426	2,753	987
-	-	46	26	25	915	1,048	548	11	14	833	2,189	2,121	8,566	600
-	-	25	8	199	10	1,072	256	2	2	2,265	850	1,530	3,861	738
-	-	3	-	-	1	14	-	-	-	8	43	110	9	22
-	-	1	1	-	-	9	1	-	-	4	-	2	-	3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전라남도 목포시	합계	1,727	1	3	652	323	3	87	21	286	-
	주거용	705	1	3	437	163	1	13	-	37	-
	상업업무용	394	-	-	33	69	1	43	21	212	-
	주상복합용	302	-	-	159	76	1	27	-	35	-
	공업용	66	-	-	2	5	-	1	-	-	-
	전	168	-	-	17	8	-	3	-	-	-
	답	26	-	-	3	1	-	-	-	1	-
	임야	58	-	-	1	1	-	-	-	-	-
	특수토지	4	-	-	-	-	-	-	-	1	-
	공공용지	4	-	-	-	-	-	-	-	-	-
전라남도 여수시	합계	5,144	42	-	735	599	2	100	41	349	-
	주거용	1,431	20	-	484	357	2	28	-	37	-
	상업업무용	535	1	-	32	78	-	49	40	277	-
	주상복합용	319	-	-	81	147	-	22	1	30	-
	공업용	139	-	-	1	1	-	-	-	-	-
	전	1,319	16	-	88	8	-	1	-	1	-
	답	555	2	-	26	1	-	-	-	1	-
	임야	834	3	-	23	7	-	-	-	-	-
	특수토지	10	-	-	-	-	-	-	-	3	-
	공공용지	2	-	-	-	-	-	-	-	-	-
전라남도 순천시	합계	5,318	10	22	270	560	6	76	-	338	6
	주거용	1,107	8	16	157	287	5	15	-	55	2
	상업업무용	399	-	-	14	77	-	41	-	217	2
	주상복합용	295	-	-	46	150	-	18	-	62	2
	공업용	65	-	-	1	-	-	-	-	-	-
	전	1,270	2	4	33	23	-	1	-	2	-
	답	1,339	-	1	13	16	1	1	-	1	-
	임야	830	-	1	6	7	-	-	-	-	-
	특수토지	13	-	-	-	-	-	-	-	1	-
	전라남도 나주시	합계	4,560	12	19	346	151	13	45	-	127
주거용		1,161	11	17	243	106	10	5	-	22	-
상업업무용		185	1	-	9	19	1	32	-	90	1
주상복합용		131	-	-	56	21	2	6	-	14	-
공업용		76	-	-	1	3	-	1	-	-	-
전		1,280	-	2	28	1	-	-	-	-	-
답		1,217	-	-	5	1	-	-	-	-	-
임야		501	-	-	4	-	-	-	-	-	-
특수토지		9	-	-	-	-	-	1	-	1	-
전라남도 광양시		합계	3,039	-	5	234	379	28	78	19	137
	주거용	597	-	1	136	118	10	9	-	15	3
	상업업무용	319	-	-	16	108	1	24	18	105	5
	주상복합용	203	-	1	29	98	-	40	-	7	6
	공업용	71	-	-	2	2	-	-	-	-	-
	전	992	-	2	40	26	6	4	-	4	1
	답	271	-	-	1	16	2	-	-	2	-
	임야	573	-	1	10	11	9	1	-	3	-
	특수토지	6	-	-	-	-	-	-	1	1	-
	공공용지	7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35	31	56	-	229	-	-	-	-	-	-	-	-
-	-	-	1	5	-	44	-	-	-	-	-	-	-	-
-	-	5	2	1	-	7	-	-	-	-	-	-	-	-
-	-	-	1	-	-	3	-	-	-	-	-	-	-	-
-	-	25	25	-	-	8	-	-	-	-	-	-	-	-
-	-	5	-	30	-	105	-	-	-	-	-	-	-	-
-	-	-	1	-	-	20	-	-	-	-	-	-	-	-
-	-	-	-	20	-	36	-	-	-	-	-	-	-	-
-	-	-	-	-	-	3	-	-	-	-	-	-	-	-
-	-	-	1	-	-	3	-	-	-	-	-	-	-	-
-	-	176	43	107	76	1,245	-	-	-	196	288	446	246	453
-	-	18	4	4	-	175	-	-	-	18	78	155	14	37
-	-	6	11	-	1	30	-	-	-	1	1	7	-	1
-	-	-	6	-	-	9	-	-	-	1	3	17	-	2
-	-	83	19	-	-	21	-	-	-	1	2	5	4	2
-	-	25	2	24	4	448	-	-	-	117	140	186	42	217
-	-	28	-	12	70	248	-	-	-	10	26	35	60	36
-	-	13	1	67	1	309	-	-	-	48	38	40	126	158
-	-	2	-	-	-	4	-	-	-	-	-	1	-	-
-	-	1	-	-	-	1	-	-	-	-	-	-	-	-
1	-	18	9	76	229	1,064	-	-	39	478	643	755	637	81
-	-	-	1	-	11	213	-	-	2	10	19	288	11	7
1	-	-	2	-	4	26	-	-	-	3	2	8	-	2
-	-	-	-	-	1	7	-	-	-	1	-	8	-	-
-	-	11	1	-	2	18	-	-	1	4	7	15	5	-
-	-	4	2	31	25	440	-	-	21	225	217	182	36	22
-	-	2	2	6	185	186	-	-	14	76	350	186	284	15
-	-	1	1	39	1	173	-	-	1	156	46	63	300	35
-	-	-	-	-	-	1	-	-	-	3	2	5	1	-
-	-	18	5	-	60	332	255	-	-	521	537	1,118	999	1
-	-	-	-	-	1	75	9	-	-	40	42	540	40	-
-	-	-	3	-	1	11	3	-	-	3	2	8	1	-
-	-	-	-	-	1	1	-	-	-	-	-	28	2	-
-	-	18	2	-	2	5	1	-	-	7	11	20	5	-
-	-	-	-	-	6	135	104	-	-	213	285	329	176	1
-	-	-	-	-	49	54	97	-	-	84	146	125	656	-
-	-	-	-	-	-	51	41	-	-	174	51	62	118	-
-	-	-	-	-	-	-	-	-	-	-	-	6	1	-
-	-	57	61	51	41	544	-	-	-	413	160	445	356	16
-	-	6	8	1	1	80	-	-	-	28	15	149	16	1
-	-	4	13	-	-	17	-	-	-	3	-	4	-	1
-	-	3	1	-	-	4	-	-	-	6	2	6	-	-
-	-	22	14	-	-	12	-	-	-	4	1	12	2	-
-	-	11	9	14	10	234	-	-	-	258	90	173	100	10
-	-	6	13	3	30	50	-	-	-	19	18	40	71	-
-	-	5	3	33	-	141	-	-	-	92	34	59	167	4
-	-	-	-	-	-	2	-	-	-	-	-	2	-	-
-	-	-	-	-	-	4	-	-	-	3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전라남도 담양군	합계	2,601	7	-	244	89	3	10	-	38	9
	주거용	582	7	-	157	51	2	4	-	8	2
	상업업무용	48	-	-	4	6	-	-	-	20	1
	주상복합용	93	-	-	13	24	1	6	-	10	6
	공업용	33	-	-	3	1	-	-	-	-	-
	전	583	-	-	43	2	-	-	-	-	-
	답	846	-	-	19	4	-	-	-	-	-
	임야	410	-	-	5	-	-	-	-	-	-
	특수토지	5	-	-	-	1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전라남도 곡성군	합계	2,386	-	-	91	16	-	8	-	48	-
	주거용	460	-	-	64	8	-	4	-	12	-
	상업업무용	59	-	-	12	3	-	1	-	26	-
	주상복합용	35	-	-	5	3	-	3	-	9	-
	공업용	22	-	-	-	-	-	-	-	-	-
	전	680	-	-	5	2	-	-	-	-	-
	답	711	-	-	5	-	-	-	-	-	-
	임야	414	-	-	-	-	-	-	-	-	-
	특수토지	5	-	-	-	-	-	-	-	1	-
전라남도 구례군	합계	1,843	-	-	99	47	-	6	-	57	-
	주거용	385	-	-	64	30	-	1	-	11	-
	상업업무용	51	-	-	-	2	-	-	-	32	-
	주상복합용	73	-	-	17	15	-	5	-	11	-
	공업용	12	-	-	-	-	-	-	-	-	-
	전	625	-	-	11	-	-	-	-	1	-
	답	390	-	-	7	-	-	-	-	1	-
	임야	303	-	-	-	-	-	-	-	-	-
	특수토지	4	-	-	-	-	-	-	-	1	-
전라남도 고흥군	합계	4,478	-	-	130	51	1	9	-	95	-
	주거용	883	-	-	90	35	1	3	-	16	-
	상업업무용	76	-	-	10	5	-	2	-	42	-
	주상복합용	92	-	-	16	10	-	4	-	34	-
	공업용	36	-	-	-	-	-	-	-	1	-
	전	1,494	-	-	9	1	-	-	-	-	-
	답	1,173	-	-	4	-	-	-	-	-	-
	임야	719	-	-	1	-	-	-	-	-	-
	특수토지	5	-	-	-	-	-	-	-	2	-
전라남도 보성군	합계	3,408	-	-	127	20	-	15	-	96	-
	주거용	737	-	-	107	17	-	3	-	14	-
	상업업무용	109	-	-	5	1	-	6	-	70	-
	주상복합용	38	-	-	8	1	-	6	-	10	-
	공업용	18	-	-	-	-	-	-	-	-	-
	전	861	-	-	3	1	-	-	-	-	-
	답	1,022	-	-	3	-	-	-	-	-	-
	임야	616	-	-	1	-	-	-	-	-	-
특수토지	7	-	-	-	-	-	-	-	2	-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 부록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3	1	-	50	128	498	-	-	174	264	604	479	-
-	-	-	-	-	6	33	17	-	-	13	30	237	15	-
-	-	-	-	-	-	2	-	-	-	-	1	14	-	-
-	-	-	-	-	4	8	-	-	-	2	5	13	1	-
-	-	3	1	-	-	1	-	-	-	-	2	19	3	-
-	-	-	-	-	1	38	134	-	-	53	99	164	49	-
-	-	-	-	-	39	32	245	-	-	18	111	103	275	-
-	-	-	-	-	-	14	101	-	-	88	16	50	136	-
-	-	-	-	-	-	-	-	-	-	-	-	4	-	-
-	-	-	-	-	-	-	1	-	-	-	-	-	-	-
-	-	5	-	1	25	133	-	-	-	281	261	837	678	2
-	-	-	-	-	2	38	-	-	-	10	16	292	14	-
-	-	-	-	-	1	1	-	-	-	1	1	13	-	-
-	-	-	-	-	-	1	-	-	-	-	-	14	-	-
-	-	1	-	-	-	1	-	-	-	1	3	14	2	-
-	-	4	-	-	2	53	-	-	-	129	128	282	74	1
-	-	-	-	-	20	25	-	-	-	40	102	149	370	-
-	-	-	-	1	-	14	-	-	-	100	11	69	218	1
-	-	-	-	-	-	-	-	-	-	-	-	4	-	-
-	-	-	6	8	48	75	-	-	-	273	198	600	394	32
-	-	-	-	-	4	13	-	-	-	17	10	222	13	-
-	-	-	-	-	-	2	-	-	-	-	1	14	-	-
-	-	-	-	-	-	-	-	-	-	2	2	21	-	-
-	-	-	4	-	-	-	-	-	-	2	-	3	3	-
-	-	-	2	3	16	35	-	-	-	157	113	198	74	15
-	-	-	-	2	26	20	-	-	-	30	44	70	189	1
-	-	-	-	3	2	5	-	-	-	65	28	69	115	16
-	-	-	-	-	-	-	-	-	-	-	-	3	-	-
-	-	1	4	2	51	204	-	9	-	265	732	1,390	1,022	512
-	-	-	-	-	3	44	-	-	-	19	50	525	21	76
-	-	-	-	-	-	1	-	-	-	-	-	15	-	1
-	-	-	-	-	-	-	-	-	-	-	-	25	-	3
-	-	-	4	-	-	-	-	-	-	2	9	14	2	4
-	-	-	-	1	14	100	-	3	-	111	389	552	149	165
-	-	1	-	-	32	31	-	4	-	34	190	135	580	162
-	-	-	-	1	2	28	-	2	-	99	93	123	270	100
-	-	-	-	-	-	-	-	-	-	-	1	1	-	1
-	-	1	-	14	52	167	-	-	-	514	500	902	964	36
-	-	-	-	-	3	40	-	-	-	116	84	327	24	2
-	-	-	-	-	2	5	-	-	-	2	-	17	1	-
-	-	-	-	-	-	1	-	-	-	1	-	11	-	-
-	-	1	-	-	-	-	-	-	-	2	4	8	3	-
-	-	-	-	8	2	69	-	-	-	166	192	306	102	12
-	-	-	-	1	45	31	-	-	-	70	152	128	573	19
-	-	-	-	5	-	21	-	-	-	156	67	102	261	3
-	-	-	-	-	-	-	-	-	-	1	1	3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전라남도 화순군	합계	3,394	1	-	142	77	6	18	-	57	-
	주거용	671	1	-	104	48	4	5	-	15	-
	상업업무용	70	-	-	5	11	-	5	-	23	-
	주상복합용	64	-	-	7	14	1	6	-	16	-
	공업용	30	-	-	-	-	1	-	-	-	-
	전	987	-	-	20	2	-	-	-	2	-
	답	798	-	-	4	2	-	2	-	-	-
	임야	766	-	-	2	-	-	-	-	-	-
	특수토지	8	-	-	-	-	-	-	-	1	-
전라남도 장흥군	합계	2,916	-	-	129	27	1	17	-	79	-
	주거용	671	-	-	84	18	1	3	-	13	-
	상업업무용	69	-	-	3	1	-	8	-	41	-
	주상복합용	81	-	-	17	5	-	6	-	24	-
	공업용	24	-	-	-	-	-	-	-	-	-
	전	659	-	-	18	3	-	-	-	-	-
	답	856	-	-	5	-	-	-	-	-	-
	임야	547	-	-	2	-	-	-	-	-	-
	특수토지	6	-	-	-	-	-	-	-	1	-
공공용지	3	-	-	-	-	-	-	-	-	-	
전라남도 강진군	합계	2,450	1	-	126	56	-	4	-	86	-
	주거용	544	1	-	92	41	-	1	-	15	-
	상업업무용	77	-	-	3	3	-	2	-	58	-
	주상복합용	50	-	-	11	4	-	1	-	12	-
	공업용	26	-	-	-	1	-	-	-	-	-
	전	551	-	-	11	5	-	-	-	-	-
	답	807	-	-	6	1	-	-	-	-	-
	임야	392	-	-	3	1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전라남도 해남군	합계	4,480	9	-	96	110	8	41	-	98	2
	주거용	816	-	-	65	81	3	10	-	10	1
	상업업무용	126	-	-	7	13	-	13	-	62	1
	주상복합용	86	-	-	9	11	-	11	-	19	-
	공업용	61	-	-	-	-	-	-	-	-	-
	전	1,436	5	-	12	3	3	4	-	4	-
	답	1,299	3	-	2	2	-	3	-	2	-
	임야	643	1	-	1	-	2	-	-	-	-
	특수토지	12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전라남도 영암군	합계	3,281	-	-	176	34	1	10	-	66	-
	주거용	624	-	-	102	17	1	2	-	5	-
	상업업무용	76	-	-	5	2	-	3	-	43	-
	주상복합용	56	-	-	21	5	-	3	-	12	-
	공업용	55	-	-	1	1	-	-	-	-	-
	전	923	-	-	32	6	-	1	-	5	-
	답	1,123	-	-	11	3	-	1	-	-	-
	임야	420	-	-	4	-	-	-	-	-	-
	특수토지	3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3	-	-	85	205	123	-	-	634	75	1,090	858	10
-	-	1	-	-	7	50	1	-	-	43	2	366	23	1
-	-	-	-	-	1	5	-	-	-	2	-	18	-	-
-	-	-	-	-	1	4	-	-	-	1	-	14	-	-
-	-	5	-	-	1	1	-	-	-	2	1	18	1	-
-	-	6	-	-	13	82	54	-	-	289	37	359	120	3
-	-	-	-	-	61	36	26	-	-	120	31	155	357	4
-	-	1	-	-	1	27	42	-	-	176	4	154	357	2
-	-	-	-	-	-	-	-	-	-	1	-	6	-	-
-	-	12	2	-	92	197	-	-	-	389	156	886	889	40
-	-	2	-	-	6	65	-	-	-	27	4	420	28	-
-	-	-	-	-	-	1	-	-	-	1	-	14	-	-
-	-	-	-	-	2	-	-	-	-	-	-	26	-	1
-	-	8	2	-	-	-	-	-	-	1	1	10	2	-
-	-	-	-	-	5	67	-	-	-	139	68	233	117	9
-	-	1	-	-	79	33	-	-	-	85	48	84	510	11
-	-	1	-	-	-	31	-	-	-	134	35	96	231	17
-	-	-	-	-	-	-	-	-	-	1	-	3	1	-
-	-	-	-	-	-	-	-	-	-	1	-	-	-	2
-	-	12	5	1	54	143	-	-	-	214	205	622	767	154
-	-	-	-	-	5	30	-	-	-	13	20	295	20	11
-	-	2	1	-	-	1	-	-	-	-	1	5	-	1
-	-	-	1	-	-	2	-	-	-	-	-	17	1	1
-	-	10	2	-	1	-	-	-	-	1	2	7	1	1
-	-	-	1	-	-	57	-	-	-	80	88	170	104	35
-	-	-	-	-	48	27	-	-	-	41	69	63	482	70
-	-	-	-	1	-	26	-	-	-	79	25	64	159	34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1
-	-	10	4	4	48	121	-	-	-	456	436	1,259	1,632	146
-	-	1	-	-	2	17	-	-	-	21	22	529	40	14
-	-	-	-	-	-	3	-	-	-	2	-	24	1	-
-	-	-	-	-	-	4	-	-	-	1	-	31	-	-
-	-	-	3	-	-	1	-	-	-	11	14	20	9	3
-	-	6	1	2	10	59	-	-	-	182	252	445	406	42
-	-	2	-	-	34	20	-	-	-	54	118	91	906	62
-	-	1	-	2	2	16	-	-	-	183	29	112	270	24
-	-	-	-	-	-	1	-	-	-	2	1	6	-	1
-	-	-	-	-	-	-	-	-	-	-	-	1	-	-
-	-	19	26	13	69	311	-	8	-	231	419	978	893	27
-	-	1	5	-	5	61	-	-	-	6	22	381	15	1
-	-	1	5	-	-	7	-	-	-	-	-	9	-	1
-	-	-	1	-	-	1	-	-	-	-	-	13	-	-
-	-	14	5	-	-	5	-	1	-	1	9	12	2	4
-	-	-	5	2	11	127	-	-	-	83	179	361	110	1
-	-	3	5	1	52	69	-	7	-	44	148	131	641	7
-	-	-	-	10	1	39	-	-	-	97	61	70	125	13
-	-	-	-	-	-	1	-	-	-	-	-	1	-	-
-	-	-	-	-	-	1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전라남도 무안군	합계	3,129	5	-	81	76	10	38	5	66	-
	주거용	600	5	-	56	52	4	11	-	12	-
	상업업무용	83	-	-	2	9	5	11	5	38	-
	주상복합용	61	-	-	11	11	1	16	-	15	-
	공업용	44	-	-	-	-	-	-	-	-	-
	전	1,306	-	-	11	3	-	-	-	-	-
	답	692	-	-	1	1	-	-	-	-	-
	임야	329	-	-	-	-	-	-	-	-	-
	특수토지	14	-	-	-	-	-	-	-	1	-
전라남도 함평군	합계	2,421	-	-	84	52	-	20	-	65	-
	주거용	482	-	-	61	35	-	5	-	11	-
	상업업무용	60	-	-	1	4	-	8	-	37	-
	주상복합용	55	-	-	7	7	-	7	-	16	-
	공업용	32	-	-	-	1	-	-	-	-	-
	전	745	-	-	9	4	-	-	-	-	-
	답	701	-	-	6	1	-	-	-	-	-
	임야	336	-	-	-	-	-	-	-	-	-
	특수토지	9	-	-	-	-	-	-	-	1	-
전라남도 영광군	합계	2,829	-	-	88	94	-	24	-	97	6
	주거용	628	-	-	50	56	-	2	-	21	-
	상업업무용	104	-	-	8	8	-	8	-	59	6
	주상복합용	78	-	-	9	19	-	13	-	15	-
	공업용	22	-	-	1	-	-	-	-	-	-
	전	899	-	-	16	7	-	1	-	-	-
	답	725	-	-	4	4	-	-	-	-	-
	임야	359	-	-	-	-	-	-	-	-	-
	특수토지	14	-	-	-	-	-	-	-	2	-
전라남도 장성군	합계	2,777	9	-	227	52	-	24	-	74	2
	주거용	680	1	-	201	42	-	9	-	16	-
	상업업무용	66	-	-	1	2	-	9	-	37	2
	주상복합용	42	1	-	6	3	-	4	-	17	-
	공업용	36	-	-	1	-	-	-	-	-	-
	전	810	5	-	13	4	-	2	-	1	-
	답	721	-	-	3	1	-	-	-	1	-
	임야	417	2	-	2	-	-	-	-	-	-
	특수토지	5	-	-	-	-	-	-	-	2	-
전라남도 완도군	합계	3,028	-	-	92	61	-	16	-	105	-
	주거용	657	-	-	64	46	-	5	-	3	-
	상업업무용	97	-	-	5	2	-	4	-	71	-
	주상복합용	92	-	-	4	11	-	7	-	28	-
	공업용	34	-	-	-	-	-	-	-	-	-
	전	1,112	-	-	16	2	-	-	-	2	-
	답	477	-	-	3	-	-	-	-	-	-
	임야	529	-	-	-	-	-	-	-	-	-
특수토지	30	-	-	-	-	-	-	-	1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4	3	4	28	141	-	-	-	205	314	987	1,019	143
-	-	1	1	-	4	25	-	-	-	13	28	341	38	9
-	-	-	1	-	1	1	-	-	-	-	1	9	-	-
-	-	-	-	-	-	1	-	-	-	-	-	6	-	-
-	-	1	-	-	-	1	-	-	-	2	9	19	10	2
-	-	1	1	2	2	84	-	-	-	79	195	467	383	78
-	-	1	-	-	21	16	-	-	-	9	54	63	486	40
-	-	-	-	2	-	12	-	-	-	102	25	74	102	12
-	-	-	-	-	-	1	-	-	-	-	2	8	-	2
-	-	15	13	-	60	161	-	-	1	198	261	725	675	91
-	-	-	-	-	1	34	-	-	-	6	11	295	14	9
-	-	-	4	-	1	-	-	-	-	1	-	4	-	-
-	-	1	-	-	-	-	-	-	-	-	-	17	-	-
-	-	14	3	-	-	1	-	-	-	1	1	10	1	-
-	-	-	4	-	7	78	-	-	-	84	147	251	122	39
-	-	-	1	-	51	24	-	-	-	16	66	91	412	33
-	-	-	1	-	-	24	-	-	1	90	36	49	125	10
-	-	-	-	-	-	-	-	-	-	-	-	7	1	-
-	-	-	-	-	-	-	-	-	-	-	-	1	-	-
-	-	5	5	16	22	228	-	-	-	241	316	870	761	56
-	-	-	1	-	2	54	-	-	-	35	37	347	21	2
-	-	1	-	-	-	6	-	-	-	-	-	7	1	-
-	-	-	-	-	1	4	-	-	-	-	1	16	-	-
-	-	3	2	-	-	2	-	-	-	-	2	11	1	-
-	-	-	1	8	1	105	-	-	-	115	158	331	137	19
-	-	-	1	-	18	36	-	-	-	24	82	97	441	18
-	-	-	-	8	-	21	-	-	-	67	32	58	160	13
-	-	1	-	-	-	-	-	-	-	-	4	3	-	4
-	-	19	15	-	29	161	397	-	-	160	395	633	551	29
-	-	2	-	-	6	37	11	-	-	12	35	290	17	1
-	-	-	1	-	-	2	-	-	-	1	2	7	2	-
-	-	-	2	-	-	-	-	-	-	-	-	9	-	-
-	-	7	4	-	1	1	-	-	-	2	2	18	-	-
-	-	5	4	-	4	52	134	-	-	64	216	210	81	15
-	-	2	3	-	18	49	180	-	-	8	86	67	303	-
-	-	3	1	-	-	20	72	-	-	73	54	30	147	13
-	-	-	-	-	-	-	-	-	-	-	-	2	1	-
-	-	-	8	6	19	173	-	-	-	79	630	907	359	573
-	-	-	1	-	2	25	-	-	-	-	30	420	10	51
-	-	-	-	-	-	-	-	-	-	-	-	13	-	2
-	-	-	-	-	-	3	-	-	-	-	1	37	-	1
-	-	-	3	-	-	2	-	-	-	-	8	15	3	3
-	-	-	3	1	4	96	-	-	-	43	396	310	32	207
-	-	-	-	-	12	15	-	-	-	4	138	73	121	111
-	-	-	1	5	-	31	-	-	-	32	53	29	193	185
-	-	-	-	-	1	1	-	-	-	-	4	10	-	13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전라남도 진도군	합계	2,327	-	-	85	38	-	7	-	45	5
	주거용	445	-	-	69	27	-	1	-	4	1
	상업업무용	55	-	-	3	5	-	3	-	34	3
	주상복합용	28	-	-	6	4	-	2	-	7	1
	공업용	20	-	-	-	-	-	-	-	-	-
	전	855	-	-	6	2	-	-	-	-	-
	답	528	-	-	1	-	-	-	-	-	-
	임야	387	-	-	-	-	-	-	-	-	-
	특수토지	9	-	-	-	-	-	1	-	-	-
전라남도 신안군	합계	3,614	-	-	11	8	-	2	-	14	-
	주거용	519	-	-	9	7	-	-	-	3	-
	상업업무용	25	-	-	-	-	-	-	-	3	-
	주상복합용	66	-	-	1	1	-	1	-	8	-
	공업용	14	-	-	-	-	-	-	-	-	-
	전	1,503	-	-	-	-	-	-	-	-	-
	답	877	-	-	1	-	-	-	-	-	-
	임야	550	-	-	-	-	-	-	-	-	-
특수토지	60	-	-	-	-	-	1	-	-	-	
경상북도	합계	75,822	9	-	3,550	4,131	257	627	1	3,356	54
	주거용	16,808	7	-	2,325	2,592	149	268	-	610	5
	상업업무용	4,011	-	-	275	661	37	182	1	2,157	38
	주상복합용	2,160	-	-	454	601	42	134	-	534	6
	공업용	1,125	-	-	15	6	2	19	-	-	1
	전	24,930	-	-	302	146	9	15	-	16	3
	답	15,894	1	-	127	85	14	2	-	8	1
	임야	10,744	1	-	52	40	4	6	-	7	-
	특수토지	140	-	-	-	-	-	1	-	24	-
공공용지	10	-	-	-	-	-	-	-	-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합계	2,995	-	-	135	635	47	178	-	213	-
	주거용	1,045	-	-	91	439	32	95	-	36	-
	상업업무용	333	-	-	16	85	7	51	-	144	-
	주상복합용	184	-	-	16	82	8	31	-	29	-
	공업용	93	-	-	-	-	-	-	-	-	-
	전	444	-	-	6	9	-	1	-	-	-
	답	514	-	-	3	9	-	-	-	-	-
	임야	378	-	-	3	11	-	-	-	3	-
	특수토지	2	-	-	-	-	-	-	-	1	-
공공용지	2	-	-	-	-	-	-	-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합계	3,655	-	-	122	420	150	63	-	428	-
	주거용	953	-	-	74	229	83	18	-	60	-
	상업업무용	487	-	-	15	75	30	21	-	304	-
	주상복합용	242	-	-	28	79	32	21	-	61	-
	공업용	27	-	-	-	-	-	-	-	-	-
	전	738	-	-	4	10	2	-	-	-	-
	답	753	-	-	1	17	-	1	-	2	-
	임야	451	-	-	-	10	3	2	-	1	-
특수토지	4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	10	2	26	151	-	-	-	166	309	715	632	136
-	-	-	1	-	1	23	-	-	-	4	5	277	14	18
-	-	-	-	1	-	2	-	-	-	-	-	2	-	2
-	-	-	2	-	-	-	-	-	-	-	-	6	-	-
-	-	-	7	-	-	2	-	-	-	-	2	5	4	-
-	-	-	-	-	4	79	-	-	-	64	221	312	112	55
-	-	-	-	-	21	20	-	-	-	20	56	76	326	8
-	-	-	-	1	-	25	-	-	-	78	24	32	175	52
-	-	-	-	-	-	-	-	-	-	-	1	5	1	1
-	-	-	2	2	8	47	-	-	-	423	712	1,419	871	95
-	-	-	-	-	-	5	-	-	-	22	35	424	9	5
-	-	-	-	-	-	1	-	-	-	-	1	20	-	-
-	-	-	-	-	-	1	-	-	-	-	2	51	1	-
-	-	-	1	-	-	-	-	-	-	-	5	6	2	-
-	-	-	1	1	4	26	-	-	-	198	400	605	227	41
-	-	-	-	-	4	6	-	-	-	27	154	159	523	3
-	-	-	-	1	-	8	-	-	-	176	88	125	106	46
-	-	-	-	-	-	-	-	-	-	-	27	29	3	-
3	19	646	266	791	1,496	5,524	474	2	1	7,849	6,193	23,029	16,227	1,317
-	-	45	57	97	111	1,076	22	1	-	575	450	7,678	593	147
2	-	21	53	5	18	195	1	-	-	14	8	316	9	18
-	-	4	15	3	3	54	1	-	-	9	5	280	2	13
-	16	355	106	-	1	61	-	1	-	29	21	456	34	2
-	-	78	18	229	325	2,109	258	-	1	4,125	3,468	9,084	4,196	548
1	-	78	9	239	1,028	1,090	127	-	-	1,027	1,558	3,165	7,179	155
-	1	62	7	217	10	914	63	-	-	2,063	683	1,971	4,211	432
-	2	2	-	-	-	19	2	-	-	7	-	78	3	2
-	-	1	1	1	-	6	-	-	-	-	-	1	-	-
-	17	70	83	17	78	628	-	-	-	111	128	430	164	61
-	-	9	24	1	4	112	-	-	-	10	3	185	2	2
-	-	1	10	-	-	11	-	-	-	-	1	7	-	-
-	-	-	6	-	-	3	-	-	-	-	-	9	-	-
-	16	28	38	-	-	8	-	-	-	1	-	2	-	-
-	-	6	-	10	7	199	-	-	-	30	56	89	14	17
-	-	12	4	4	67	153	-	-	-	23	54	101	74	10
-	1	13	1	2	-	140	-	-	-	47	14	37	74	32
-	-	-	-	-	-	1	-	-	-	-	-	-	-	-
-	-	1	-	-	-	1	-	-	-	-	-	-	-	-
-	-	23	7	1	92	411	-	-	-	116	326	902	565	29
-	-	5	2	-	3	77	-	-	-	1	12	367	21	1
-	-	1	1	1	1	16	-	-	-	-	-	19	-	3
-	-	-	-	-	-	4	-	-	-	-	-	13	-	4
-	-	4	3	-	-	1	-	-	-	-	-	14	4	1
-	-	6	-	-	5	117	-	-	-	50	173	272	91	8
-	-	2	1	-	82	86	-	-	-	13	88	134	324	2
-	-	5	-	-	1	109	-	-	-	52	53	80	125	10
-	-	-	-	-	-	1	-	-	-	-	-	3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상북도 경주시	합계	6,696	2	-	266	592	4	18	-	405	-
	주거용	1,715	-	-	168	375	1	2	-	102	-
	상업업무용	453	-	-	31	92	-	7	-	246	-
	주상복합용	212	-	-	32	82	-	8	-	52	-
	공업용	124	-	-	1	2	-	-	-	-	-
	전	1,508	-	-	21	23	1	1	-	2	-
	답	1,823	1	-	11	15	2	-	-	1	-
	임야	830	1	-	2	3	-	-	-	-	-
	특수토지	29	-	-	-	-	-	-	-	2	-
	공공용지	2	-	-	-	-	-	-	-	-	-
경상북도 김천시	합계	4,684	-	-	181	203	3	43	1	201	-
	주거용	874	-	-	107	98	3	15	-	37	-
	상업업무용	230	-	-	11	29	-	22	1	132	-
	주상복합용	110	-	-	26	39	-	3	-	25	-
	공업용	52	-	-	1	-	-	-	-	-	-
	전	1,851	-	-	27	25	-	3	-	5	-
	답	759	-	-	7	8	-	-	-	1	-
	임야	799	-	-	2	4	-	-	-	-	-
	특수토지	6	-	-	-	-	-	-	-	1	-
	공공용지	3	-	-	-	-	-	-	-	-	-
경상북도 안동시	합계	5,430	2	-	47	527	2	6	-	317	3
	주거용	1,216	2	-	32	348	2	1	-	80	-
	상업업무용	303	-	-	-	65	-	5	-	184	3
	주상복합용	153	-	-	5	79	-	-	-	52	-
	공업용	40	-	-	-	-	-	-	-	-	-
	전	1,880	-	-	7	18	-	-	-	-	-
	답	948	-	-	-	9	-	-	-	1	-
	임야	880	-	-	3	8	-	-	-	-	-
	특수토지	9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경상북도 구미시	합계	3,349	-	-	339	415	11	67	-	195	35
	주거용	787	-	-	187	228	4	28	-	21	5
	상업업무용	353	-	-	30	90	-	12	-	145	24
	주상복합용	200	-	-	45	87	1	26	-	22	3
	공업용	86	-	-	-	-	-	1	-	-	-
	전	631	-	-	29	7	1	-	-	2	2
	답	906	-	-	36	2	5	-	-	2	1
	임야	378	-	-	12	1	-	-	-	1	-
	특수토지	8	-	-	-	-	-	-	-	2	-
경상북도 영주시	합계	2,943	-	-	246	123	2	18	-	193	-
	주거용	696	-	-	148	78	1	7	-	33	-
	상업업무용	208	-	-	32	24	-	4	-	133	-
	주상복합용	80	-	-	31	19	-	4	-	24	-
	공업용	24	-	-	-	-	1	-	-	-	-
	전	1,046	-	-	30	1	-	1	-	2	-
	답	505	-	-	2	-	-	-	-	-	-
	임야	383	-	-	3	1	-	1	-	1	-
	특수토지	1	-	-	-	-	-	1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2	105	17	697	486	1,008	-	-	-	358	534	1,276	886	40
-	-	2	2	89	45	324	-	-	-	29	42	496	34	4
-	-	2	1	3	6	38	-	-	-	1	1	22	3	-
-	-	1	1	3	-	20	-	-	-	-	1	12	-	-
-	-	68	10	-	-	7	-	-	-	1	1	34	-	-
-	-	9	2	187	70	285	-	-	-	131	256	391	118	11
-	-	13	-	224	359	224	-	-	-	70	190	227	480	6
-	-	10	1	191	6	99	-	-	-	125	43	79	251	19
-	2	-	-	-	-	9	-	-	-	1	-	15	-	-
-	-	-	-	-	-	2	-	-	-	-	-	-	-	-
-	-	27	8	6	43	209	-	-	-	405	618	1,678	1,054	4
-	-	1	1	-	2	21	-	-	-	12	16	530	31	-
-	-	5	1	-	4	8	-	-	-	-	1	16	-	-
-	-	-	-	-	-	4	-	-	-	-	-	13	-	-
-	-	19	2	-	1	1	-	-	-	-	3	25	-	-
-	-	2	3	4	23	110	-	-	-	199	377	745	327	1
-	-	-	-	-	13	22	-	-	-	38	125	172	370	3
-	-	-	1	1	-	42	-	-	-	156	96	171	326	-
-	-	-	-	-	-	-	-	-	-	-	-	5	-	-
-	-	-	-	1	-	1	-	-	-	-	-	1	-	-
-	-	23	6	-	35	287	-	-	-	378	699	1,651	996	451
-	-	1	1	-	5	54	-	-	-	42	78	471	24	75
-	-	1	2	-	1	17	-	-	-	1	2	19	1	2
-	-	1	-	-	1	2	-	-	-	-	-	12	-	1
-	-	11	2	-	-	1	-	-	-	-	4	20	2	-
-	-	4	1	-	9	109	-	-	-	207	378	673	272	202
-	-	2	-	-	19	42	-	-	-	44	124	267	375	65
-	-	2	-	-	-	59	-	-	-	84	113	183	322	106
-	-	1	-	-	-	2	-	-	-	-	-	6	-	-
-	-	-	-	-	-	1	-	-	-	-	-	-	-	-
-	-	90	54	17	99	467	-	-	-	277	86	545	612	40
-	-	4	14	-	6	65	-	-	-	18	3	186	17	1
-	-	2	20	-	-	25	-	-	-	-	-	4	-	1
-	-	-	4	-	-	6	-	-	-	1	-	5	-	-
-	-	39	16	-	-	12	-	-	-	2	1	14	1	-
-	-	10	-	6	11	141	-	-	-	123	39	173	75	12
-	-	24	-	9	82	122	-	-	-	81	33	105	400	4
-	-	11	-	2	-	94	-	-	-	51	10	56	118	22
-	-	-	-	-	-	2	-	-	-	1	-	2	1	-
-	-	32	4	-	28	272	-	-	-	436	194	795	540	60
-	-	4	-	-	4	62	-	-	-	53	29	245	30	2
-	-	-	-	-	-	7	-	-	-	-	-	8	-	-
-	-	-	-	-	-	-	-	-	-	-	-	2	-	-
-	-	14	1	-	-	2	-	-	-	1	-	3	2	-
-	-	8	1	-	11	133	-	-	-	231	97	349	154	28
-	-	4	1	-	13	36	-	-	-	26	49	115	258	1
-	-	2	1	-	-	32	-	-	-	125	19	73	96	29
-	-	-	-	-	-	-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상북도 영천시	합계	4,331	-	-	93	264	3	5	-	136	-
	주거용	833	-	-	44	170	2	1	-	40	-
	상업업무용	183	-	-	7	47	-	2	-	85	-
	주상복합용	38	-	-	4	16	-	2	-	10	-
	공업용	77	-	-	-	-	-	-	-	-	-
	전	1,971	-	-	27	21	-	-	-	-	-
	답	625	-	-	9	10	-	-	-	-	-
	임야	595	-	-	2	-	1	-	-	-	-
	특수토지	9	-	-	-	-	-	-	-	1	-
경상북도 상주시	합계	4,868	-	-	211	173	-	9	-	183	-
	주거용	1,080	-	-	122	103	-	3	-	33	-
	상업업무용	178	-	-	15	29	-	3	-	113	-
	주상복합용	135	-	-	30	35	-	3	-	35	-
	공업용	37	-	-	-	-	-	-	-	-	-
	전	1,467	-	-	26	2	-	-	-	1	-
	답	1,382	-	-	13	4	-	-	-	-	-
	임야	585	-	-	5	-	-	-	-	-	-
	특수토지	4	-	-	-	-	-	-	-	1	-
경상북도 문경시	합계	3,025	-	-	340	17	3	7	-	168	-
	주거용	743	-	-	236	13	3	5	-	14	-
	상업업무용	163	-	-	23	1	-	-	-	112	-
	주상복합용	110	-	-	43	3	-	1	-	41	-
	공업용	26	-	-	-	-	-	-	-	-	-
	전	989	-	-	27	-	-	1	-	-	-
	답	593	-	-	6	-	-	-	-	-	-
	임야	397	-	-	5	-	-	-	-	-	-
	특수토지	4	-	-	-	-	-	-	-	1	-
경상북도 경산시	합계	2,891	5	-	293	330	26	30	-	150	5
	주거용	715	5	-	171	185	13	2	-	26	-
	상업업무용	292	-	-	20	96	-	14	-	106	3
	주상복합용	141	-	-	60	40	-	8	-	14	-
	공업용	115	-	-	5	2	1	-	-	-	1
	전	1,163	-	-	32	7	5	6	-	2	1
	답	202	-	-	4	-	7	-	-	1	-
	임야	253	-	-	1	-	-	-	-	-	-
	특수토지	8	-	-	-	-	-	-	-	1	-
경상북도 군위군	합계	2,372	-	-	31	11	-	2	-	22	-
	주거용	322	-	-	20	9	-	1	-	4	-
	상업업무용	40	-	-	1	-	-	1	-	14	-
	주상복합용	9	-	-	4	-	-	-	-	3	-
	공업용	18	-	-	-	-	-	-	-	-	-
	전	1,080	-	-	4	-	-	-	-	-	-
	답	459	-	-	2	2	-	-	-	-	-
	임야	434	-	-	-	-	-	-	-	-	-
	특수토지	10	-	-	-	-	-	-	-	1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49	18	-	126	235	-	-	-	591	95	1,356	1,302	58
-	-	3	2	-	6	34	-	-	-	51	6	402	68	4
-	-	2	-	-	2	11	-	-	-	1	1	22	3	-
-	-	-	-	-	1	-	-	-	-	-	-	4	-	1
-	-	19	6	-	-	4	-	-	-	5	-	38	5	-
-	-	12	7	-	63	119	-	-	-	395	62	665	568	32
-	-	5	-	-	54	39	-	-	-	28	23	111	346	-
-	-	8	3	-	-	28	-	-	-	111	3	107	311	21
-	-	-	-	-	-	-	-	-	-	-	-	7	1	-
2	-	15	7	-	65	245	-	-	1	404	505	1,694	1,337	17
-	-	2	1	-	3	43	-	-	-	19	35	678	37	1
1	-	1	1	-	-	8	-	-	-	-	-	7	-	-
-	-	-	-	-	-	3	-	-	-	-	-	28	1	-
-	-	8	3	-	-	1	-	-	-	1	3	20	1	-
-	-	2	1	-	10	90	-	-	1	173	264	565	327	5
1	-	2	1	-	52	74	-	-	-	81	156	259	737	2
-	-	-	-	-	-	26	-	-	-	130	47	134	234	9
-	-	-	-	-	-	-	-	-	-	-	-	3	-	-
-	-	29	4	2	36	187	-	-	-	183	366	1,008	612	63
-	-	2	-	-	2	34	-	-	-	8	20	381	16	9
-	-	-	-	-	2	8	-	-	-	-	-	13	-	4
-	-	-	-	-	1	-	-	-	-	1	2	15	-	3
-	-	8	3	-	-	1	-	-	-	-	1	13	-	-
-	-	8	1	1	4	84	-	-	-	66	242	346	177	32
-	-	7	-	-	27	31	-	-	-	15	86	140	281	-
-	-	4	-	1	-	29	-	-	-	93	15	97	138	15
-	-	-	-	-	-	-	-	-	-	-	-	3	-	-
-	-	37	23	11	65	327	126	-	-	97	145	657	557	7
-	-	-	1	-	2	45	8	-	-	2	6	221	28	-
-	-	-	14	-	1	16	-	-	-	-	-	20	2	-
-	-	-	3	-	-	6	-	-	-	-	-	9	-	1
-	-	31	4	-	-	9	-	-	-	-	1	54	7	-
-	-	4	-	5	45	187	94	-	-	35	118	292	328	2
-	-	1	-	1	17	14	15	-	-	5	7	16	114	-
-	-	1	-	5	-	47	9	-	-	54	13	41	78	4
-	-	-	-	-	-	2	-	-	-	1	-	4	-	-
-	-	-	1	-	-	1	-	-	-	-	-	-	-	-
1	-	-	-	-	24	38	-	-	-	451	110	942	722	18
-	-	-	-	-	2	4	-	-	-	20	2	231	28	1
1	-	-	-	-	1	-	-	-	-	-	-	22	-	-
-	-	-	-	-	-	-	-	-	-	-	-	2	-	-
-	-	-	-	-	-	1	-	-	-	-	-	14	3	-
-	-	-	-	-	1	20	-	-	-	277	68	474	228	8
-	-	-	-	-	20	8	-	-	-	39	22	100	264	2
-	-	-	-	-	-	5	-	-	-	114	18	91	199	7
-	-	-	-	-	-	-	-	-	-	1	-	8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상북도 의성군	합계	3,968	-	-	125	6	-	17	-	89	-
	주거용	705	-	-	105	5	-	12	-	5	-
	상업업무용	82	-	-	4	-	-	1	-	59	-
	주상복합용	64	-	-	12	1	-	4	-	24	-
	공업용	29	-	-	-	-	-	-	-	-	-
	전	1,349	-	-	1	-	-	-	-	-	-
	답	1,106	-	-	3	-	-	-	-	-	-
	임야	627	-	-	-	-	-	-	-	-	-
	특수토지	6	-	-	-	-	-	-	-	1	-
경상북도 청송군	합계	2,068	-	-	61	8	-	-	-	37	-
	주거용	409	-	-	45	6	-	-	-	6	-
	상업업무용	28	-	-	-	-	-	-	-	13	-
	주상복합용	43	-	-	5	-	-	-	-	16	-
	공업용	4	-	-	-	-	-	-	-	-	-
	전	1,137	-	-	7	1	-	-	-	-	-
	답	183	-	-	4	1	-	-	-	-	-
	임야	260	-	-	-	-	-	-	-	-	-
특수토지	4	-	-	-	-	-	-	-	2	-	
경상북도 영양군	합계	1,657	-	-	61	28	-	-	-	48	-
	주거용	347	-	-	39	17	-	-	-	19	-
	상업업무용	10	-	-	2	-	-	-	-	6	-
	주상복합용	45	-	-	12	2	-	-	-	22	-
	공업용	8	-	-	-	-	-	-	-	-	-
	전	790	-	-	6	9	-	-	-	-	-
	답	142	-	-	2	-	-	-	-	-	-
	임야	314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1	-	
경상북도 영덕군	합계	2,420	-	-	143	36	-	17	-	73	-
	주거용	570	-	-	112	30	-	4	-	13	-
	상업업무용	75	-	-	7	5	-	7	-	41	-
	주상복합용	58	-	-	17	1	-	6	-	17	-
	공업용	21	-	-	-	-	-	-	-	-	-
	전	794	-	-	2	-	-	-	-	-	-
	답	450	-	-	1	-	-	-	-	-	-
	임야	450	-	-	4	-	-	-	-	1	-
특수토지	2	-	-	-	-	-	-	-	1	-	
경상북도 청도군	합계	3,335	-	-	27	78	-	10	-	48	-
	주거용	591	-	-	18	67	-	3	-	9	-
	상업업무용	60	-	-	4	2	-	5	-	21	-
	주상복합용	37	-	-	4	3	-	2	-	17	-
	공업용	9	-	-	-	-	-	-	-	-	-
	전	1,531	-	-	1	3	-	-	-	-	-
	답	592	-	-	-	3	-	-	-	-	-
	임야	509	-	-	-	-	-	-	-	-	-
특수토지	6	-	-	-	-	-	-	-	1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3	3	-	31	159	-	-	-	387	434	1,268	1,420	16
-	-	-	-	-	1	20	-	-	-	22	17	484	33	1
-	-	-	-	-	-	3	-	-	-	-	-	15	-	-
-	-	-	-	-	-	-	-	-	-	-	-	23	-	-
-	-	13	2	-	-	-	-	-	-	2	-	10	2	-
-	-	-	-	-	2	74	-	-	-	194	279	442	348	9
-	-	-	1	-	28	49	-	-	-	48	62	178	732	5
-	-	-	-	-	-	13	-	-	-	120	76	112	305	1
-	-	-	-	-	-	-	-	-	-	1	-	4	-	-
-	-	2	-	-	14	29	-	-	-	415	147	771	545	39
-	-	-	-	-	2	5	-	-	-	45	22	247	27	4
-	-	-	-	-	-	-	-	-	-	4	-	10	-	1
-	-	-	-	-	-	-	-	-	-	-	1	21	-	-
-	-	1	-	-	-	-	-	-	-	1	-	2	-	-
-	-	1	-	-	8	15	-	-	-	299	105	408	269	24
-	-	-	-	-	4	5	-	-	-	9	10	33	117	-
-	-	-	-	-	-	4	-	-	-	57	9	48	132	10
-	-	-	-	-	-	-	-	-	-	-	-	2	-	-
-	-	3	-	-	27	59	-	-	-	324	85	606	414	2
-	-	-	-	-	3	8	-	-	-	31	9	207	14	-
-	-	-	-	-	-	-	-	-	-	-	-	2	-	-
-	-	-	-	-	-	1	-	-	-	1	-	7	-	-
-	-	2	-	-	-	1	-	-	-	-	-	5	-	-
-	-	-	-	-	14	38	-	-	-	202	58	325	137	1
-	-	1	-	-	8	2	-	-	-	4	5	15	104	1
-	-	-	-	-	2	9	-	-	-	86	13	45	159	-
-	-	-	-	-	-	-	-	-	-	-	-	-	-	-
-	-	11	5	-	22	92	-	1	-	338	151	864	527	140
-	-	2	3	-	3	18	-	1	-	22	4	335	13	10
-	-	2	-	-	-	1	-	-	-	-	-	10	-	2
-	-	-	-	-	-	-	-	-	-	-	-	14	-	3
-	-	6	2	-	-	-	-	-	-	3	1	7	1	1
-	-	-	-	-	3	36	-	-	-	181	84	310	119	59
-	-	1	-	-	16	17	-	-	-	46	41	89	216	23
-	-	-	-	-	-	20	-	-	-	86	21	98	178	42
-	-	-	-	-	-	-	-	-	-	-	-	1	-	-
-	-	1	1	-	43	132	-	-	-	550	192	1,199	968	86
-	-	-	-	-	2	22	-	-	-	38	12	365	43	12
-	-	-	-	-	-	5	-	-	-	1	-	20	-	2
-	-	-	-	-	-	1	-	-	-	-	-	10	-	-
-	-	1	1	-	-	1	-	-	-	1	-	3	2	-
-	-	-	-	-	8	67	-	-	-	346	138	619	308	41
-	-	-	-	-	32	20	-	-	-	47	26	91	370	3
-	-	-	-	-	1	16	-	-	-	116	16	88	244	28
-	-	-	-	-	-	-	-	-	-	1	-	3	1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상북도 고령군	합계	1,942	-	-	54	35	-	42	-	33	-
	주거용	406	-	-	39	31	-	27	-	4	-
	상업업무용	47	-	-	7	-	-	5	-	20	-
	주상복합용	29	-	-	3	4	-	1	-	8	-
	공업용	73	-	-	1	-	-	7	-	-	-
	전	497	-	-	2	-	-	-	-	-	-
	답	579	-	-	2	-	-	-	-	-	-
	임야	305	-	-	-	-	-	2	-	-	-
	특수토지	6	-	-	-	-	-	-	-	1	-
경상북도 성주군	합계	2,672	-	-	76	11	-	10	-	40	-
	주거용	469	-	-	52	6	-	3	-	3	-
	상업업무용	49	-	-	9	-	-	1	-	23	-
	주상복합용	54	-	-	13	5	-	5	-	14	-
	공업용	66	-	-	-	-	-	1	-	-	-
	전	652	-	-	1	-	-	-	-	-	-
	답	940	-	-	1	-	-	-	-	-	-
	임야	440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경상북도 칠곡군	합계	2,353	-	-	303	75	4	21	-	92	8
	주거용	589	-	-	218	55	3	10	-	25	-
	상업업무용	115	-	-	23	10	-	-	-	51	5
	주상복합용	88	-	-	39	8	1	2	-	15	3
	공업용	133	-	-	5	2	-	9	-	-	-
	전	708	-	-	11	-	-	-	-	-	-
	답	463	-	-	3	-	-	-	-	-	-
	임야	249	-	-	4	-	-	-	-	-	-
	특수토지	8	-	-	-	-	-	-	-	1	-
경상북도 예천군	합계	2,863	-	-	40	88	2	13	-	78	3
	주거용	537	-	-	19	54	2	2	-	7	-
	상업업무용	96	-	-	1	9	-	8	-	59	3
	주상복합용	50	-	-	7	11	-	2	-	10	-
	공업용	23	-	-	2	-	-	1	-	-	-
	전	827	-	-	3	8	-	-	-	1	-
	답	957	-	-	6	4	-	-	-	-	-
	임야	371	-	-	2	2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경상북도 봉화군	합계	2,299	-	-	84	6	-	1	-	38	-
	주거용	441	-	-	77	6	-	1	-	2	-
	상업업무용	56	-	-	4	-	-	-	-	32	-
	주상복합용	18	-	-	3	-	-	-	-	3	-
	공업용	13	-	-	-	-	-	-	-	-	-
	전	1,035	-	-	-	-	-	-	-	-	-
	답	350	-	-	-	-	-	-	-	-	-
	임야	384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31	6	-	26	35	94	1	-	260	63	740	518	4
-	-	-	-	-	6	3	2	-	-	16	4	254	19	1
-	-	1	1	-	-	1	-	-	-	2	-	10	-	-
-	-	-	-	-	-	-	-	-	-	3	-	9	1	-
-	-	20	5	-	-	-	-	1	-	3	1	34	1	-
-	-	3	-	-	1	14	37	-	-	121	25	256	36	2
-	-	3	-	-	19	4	43	-	-	55	32	115	306	-
-	-	4	-	-	-	12	12	-	-	60	1	58	155	1
-	-	-	-	-	-	1	-	-	-	-	-	4	-	-
-	-	9	-	-	30	36	-	-	-	281	404	1,095	661	19
-	-	1	-	-	3	8	-	-	-	14	32	312	35	-
-	-	-	-	-	-	1	-	-	-	1	-	14	-	-
-	-	-	-	-	-	1	-	-	-	1	-	15	-	-
-	-	8	-	-	-	-	-	-	-	1	1	55	-	-
-	-	-	-	-	2	12	-	-	-	120	152	333	27	5
-	-	-	-	-	25	10	-	-	-	57	167	255	423	2
-	-	-	-	-	-	4	-	-	-	86	52	110	176	12
-	-	-	-	-	-	-	-	-	-	1	-	1	-	-
-	-	43	7	2	69	258	254	-	-	148	115	706	226	22
-	-	3	-	-	4	41	12	-	-	8	12	189	8	1
-	-	3	-	-	-	9	1	-	-	-	1	12	-	-
-	-	-	-	-	-	2	1	-	-	1	-	16	-	-
-	-	36	7	-	-	8	-	-	-	2	1	62	1	-
-	-	-	-	1	20	92	127	-	-	56	60	277	62	2
-	-	-	-	1	45	64	69	-	-	30	34	116	98	3
-	-	1	-	-	-	41	42	-	-	51	7	30	57	16
-	-	-	-	-	-	1	2	-	-	-	-	4	-	-
-	-	7	-	-	7	72	-	-	-	409	374	1,048	722	-
-	-	2	-	-	1	19	-	-	-	21	21	355	34	-
-	-	-	-	-	-	3	-	-	-	-	-	13	-	-
-	-	-	-	-	-	-	-	-	-	-	1	19	-	-
-	-	2	-	-	-	1	-	-	-	3	2	10	2	-
-	-	2	-	-	2	23	-	-	-	182	203	339	64	-
-	-	1	-	-	4	14	-	-	-	93	135	219	481	-
-	-	-	-	-	-	12	-	-	-	110	12	92	141	-
-	-	-	-	-	-	-	-	-	-	-	-	1	-	-
-	-	4	-	-	8	48	-	-	-	379	267	890	515	59
-	-	1	-	-	1	10	-	-	-	39	41	234	22	7
-	-	-	-	-	-	2	-	-	-	2	1	15	-	-
-	-	-	-	-	-	-	-	-	-	-	-	12	-	-
-	-	3	-	-	-	-	-	-	-	2	1	7	-	-
-	-	-	-	-	4	23	-	-	-	259	167	436	122	24
-	-	-	-	-	3	3	-	-	-	21	35	128	159	1
-	-	-	-	-	-	10	-	-	-	56	22	57	212	27
-	-	-	-	-	-	-	-	-	-	-	-	1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상북도 울진군	합계	2,624	-	-	236	49	-	23	-	128	-
	주거용	646	-	-	170	39	-	12	-	27	-
	상업업무용	124	-	-	13	2	-	5	-	82	-
	주상복합용	50	-	-	14	5	-	5	-	16	-
	공업용	22	-	-	-	-	-	-	-	-	-
	전	717	-	-	24	2	-	-	-	-	-
	답	663	-	-	11	1	-	1	-	-	-
	임야	396	-	-	4	-	-	-	-	-	-
	특수토지	6	-	-	-	-	-	-	-	3	-
경상북도 울릉군	합계	382	-	-	36	1	-	27	-	41	-
	주거용	119	-	-	31	1	-	16	-	4	-
	상업업무용	46	-	-	-	-	-	8	-	32	-
	주상복합용	10	-	-	1	-	-	-	-	4	-
	공업용	5	-	-	-	-	-	-	-	-	-
	전	125	-	-	4	-	-	2	-	1	-
	임야	76	-	-	-	-	-	1	-	-	-
	특수토지	1	-	-	-	-	-	-	-	-	-
경상남도	합계	67,144	533	59	3,077	5,992	414	661	38	3,047	72
	주거용	16,183	429	46	1,857	3,767	309	178	2	634	18
	상업업무용	3,620	3	1	180	586	30	285	35	1,856	41
	주상복합용	2,909	83	2	494	1,156	65	144	1	510	9
	공업용	1,364	-	1	27	55	2	13	-	4	-
	전	17,541	11	3	328	248	3	15	-	8	1
	답	15,009	4	3	148	137	3	21	-	11	3
	임야	10,354	3	2	43	42	2	3	-	1	-
	특수토지	122	-	-	-	-	-	2	-	23	-
공공용지	42	-	1	-	1	-	-	-	-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합계	1,932	239	14	374	43	2	34	-	45	12
	주거용	601	196	8	212	17	2	3	-	1	5
	상업업무용	146	1	-	43	5	-	27	-	42	3
	주상복합용	111	35	-	62	6	-	2	-	-	3
	공업용	63	-	1	3	-	-	-	-	-	-
	전	490	3	2	36	13	-	1	-	-	-
	답	333	3	2	15	-	-	1	-	1	1
	임야	185	1	1	3	2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합계	656	276	32	26	9	3	27	18	48	1
	주거용	280	225	28	12	3	3	-	-	-	-
	상업업무용	111	2	1	3	1	-	27	18	47	1
	주상복합용	55	47	2	3	1	-	-	-	1	-
	공업용	42	-	-	-	-	-	-	-	-	-
	전	90	1	-	7	2	-	-	-	-	-
	답	3	-	-	-	-	-	-	-	-	-
	임야	71	1	-	1	2	-	-	-	-	-
공공용지	4	-	1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9	13	12	42	256	-	-	-	497	155	803	330	61
-	-	3	6	3	1	40	-	-	-	45	24	258	9	9
-	-	-	2	1	-	4	-	-	-	1	-	11	-	3
-	-	2	1	-	-	1	-	-	-	-	-	6	-	-
-	-	11	1	-	-	2	-	-	-	-	-	8	-	-
-	-	1	2	3	2	103	-	-	-	213	67	261	23	16
-	-	-	1	-	39	51	-	-	-	154	54	179	150	22
-	-	1	-	5	-	55	-	-	-	84	10	79	148	10
-	-	1	-	-	-	-	-	-	-	-	-	1	-	1
-	-	3	-	26	-	34	-	-	-	54	-	105	34	21
-	-	-	-	4	-	7	-	-	-	9	-	45	-	2
-	-	-	-	-	-	1	-	-	-	-	-	5	-	-
-	-	-	-	-	-	-	-	-	-	1	-	4	-	-
-	-	3	-	-	-	-	-	-	-	-	-	2	-	-
-	-	-	-	12	-	18	-	-	-	35	-	44	2	7
-	-	-	-	10	-	8	-	-	-	9	-	5	32	11
-	-	-	-	-	-	-	-	-	-	-	-	-	-	1
30	-	729	341	968	1,252	5,189	1,728	2	4	6,121	6,267	18,197	10,685	1,728
-	-	43	58	58	101	1,004	53	-	-	425	499	6,241	293	168
28	-	20	87	4	14	113	7	-	-	15	15	277	8	15
-	-	4	20	-	9	63	9	-	-	11	14	307	2	6
-	-	457	130	-	13	118	5	1	-	22	30	441	30	15
1	-	88	29	446	202	2,047	826	-	1	2,609	2,838	6,187	1,055	595
-	-	65	11	77	883	897	364	1	2	1,033	1,965	3,023	5,942	416
1	-	48	5	378	27	891	453	-	1	2,002	898	1,682	3,364	508
-	-	2	-	5	-	35	7	-	-	3	1	39	1	4
-	-	2	1	-	3	21	4	-	-	1	7	-	-	1
18	-	30	13	7	7	124	336	-	-	65	77	219	273	-
-	-	1	2	1	-	17	11	-	-	2	5	107	11	-
18	-	-	2	-	-	2	1	-	-	-	-	2	-	-
-	-	-	-	-	-	1	-	-	-	-	-	2	-	-
-	-	25	8	-	-	9	1	-	-	-	-	11	5	-
-	-	3	1	1	7	60	161	-	-	38	55	70	39	-
-	-	1	-	-	-	10	89	-	-	1	10	15	184	-
-	-	-	-	5	-	24	72	-	-	24	7	12	34	-
-	-	-	-	-	-	-	1	-	-	-	-	-	-	-
-	-	-	-	-	-	1	-	-	-	-	-	-	-	-
1	-	51	11	-	-	49	104	-	-	-	-	-	-	-
-	-	-	4	-	-	3	2	-	-	-	-	-	-	-
1	-	-	6	-	-	3	1	-	-	-	-	-	-	-
-	-	-	-	-	-	1	-	-	-	-	-	-	-	-
-	-	41	1	-	-	-	-	-	-	-	-	-	-	-
-	-	4	-	-	-	23	53	-	-	-	-	-	-	-
-	-	2	-	-	-	-	1	-	-	-	-	-	-	-
-	-	3	-	-	-	18	46	-	-	-	-	-	-	-
-	-	1	-	-	-	1	1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계	2,945	-	-	201	380	197	39	-	438	6
	주거용	889	-	-	116	285	155	14	-	92	2
	상업업무용	368	-	-	5	22	8	8	-	283	3
	주상복합용	207	-	-	24	60	32	16	-	61	1
	공업용	37	-	-	-	1	1	-	-	1	-
	전	695	-	-	49	9	-	1	-	-	-
	답	357	-	-	6	3	-	-	-	-	-
	임야	388	-	-	1	-	1	-	-	-	-
	특수토지	4	-	-	-	-	-	-	-	1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계	1,274	-	-	201	347	74	53	-	151	5
	주거용	501	-	-	141	219	49	23	-	34	-
	상업업무용	141	-	-	5	17	6	13	-	91	5
	주상복합용	169	-	-	21	89	19	15	-	23	-
	공업용	45	-	-	-	1	-	-	-	1	-
	전	273	-	-	30	19	-	-	-	-	-
	답	30	-	-	2	2	-	2	-	-	-
	임야	112	-	-	2	-	-	-	-	-	-
	특수토지	2	-	-	-	-	-	-	-	2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합계	1,397	-	-	37	615	23	65	-	213	-
	주거용	642	-	-	27	441	22	25	-	74	-
	상업업무용	126	-	-	-	23	-	10	-	79	-
	주상복합용	237	-	-	7	127	1	27	-	60	-
	공업용	36	-	-	-	1	-	2	-	-	-
	전	204	-	-	1	18	-	1	-	-	-
	답	69	-	-	1	5	-	-	-	-	-
	임야	79	-	-	1	-	-	-	-	-	-
	특수토지	4	-	-	-	-	-	-	-	-	-
경상남도 진주시	합계	5,530	-	-	67	1,069	22	40	-	399	2
	주거용	1,571	-	-	51	635	13	5	-	78	-
	상업업무용	387	-	-	1	84	7	27	-	232	2
	주상복합용	444	-	-	12	310	2	6	-	86	-
	공업용	82	-	-	3	-	-	2	-	-	-
	전	1,221	-	-	-	28	-	-	-	-	-
	답	1,073	-	-	-	8	-	-	-	-	-
	임야	744	-	-	-	4	-	-	-	-	-
	특수토지	7	-	-	-	-	-	-	-	3	-
경상남도 통영시	합계	2,892	-	8	50	525	14	34	-	149	4
	주거용	844	-	5	29	372	13	9	-	18	2
	상업업무용	178	-	-	1	32	-	11	-	114	1
	주상복합용	129	-	-	3	74	1	9	-	16	-
	공업용	47	-	-	-	9	-	1	-	-	-
	전	949	-	1	6	22	-	2	-	-	-
	답	350	-	1	11	14	-	1	-	1	1
	임야	385	-	1	-	2	-	-	-	-	-
	특수토지	6	-	-	-	-	-	1	-	-	-
공공용지	4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0	11	21	46	261	241	-	-	98	146	534	185	131
-	-	-	-	-	3	47	8	-	-	3	4	128	3	29
-	-	2	8	-	-	8	3	-	-	-	-	11	-	7
-	-	-	-	-	-	2	-	-	-	-	-	7	-	4
-	-	8	3	-	1	6	-	-	-	-	-	15	-	1
-	-	-	-	6	6	104	124	-	-	36	74	218	20	48
-	-	-	-	-	36	52	26	-	-	9	37	100	66	22
-	-	-	-	15	-	40	80	-	-	50	31	54	96	20
-	-	-	-	-	-	2	-	-	-	-	-	1	-	-
2	-	51	3	-	-	55	208	-	-	7	-	100	17	-
-	-	1	1	-	-	9	2	-	-	-	-	22	-	-
2	-	-	-	-	-	1	1	-	-	-	-	-	-	-
-	-	-	-	-	-	1	-	-	-	-	-	1	-	-
-	-	36	2	-	-	2	1	-	-	-	-	2	-	-
-	-	9	-	-	-	23	132	-	-	2	-	58	-	-
-	-	4	-	-	-	1	13	-	-	-	-	5	1	-
-	-	1	-	-	-	17	59	-	-	5	-	12	16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40	15	6	6	231	145	1	-	-	-	-	-	-
-	-	7	2	-	1	35	8	-	-	-	-	-	-	-
-	-	2	3	-	1	8	-	-	-	-	-	-	-	-
-	-	2	3	-	-	7	3	-	-	-	-	-	-	-
-	-	19	6	-	1	6	-	1	-	-	-	-	-	-
-	-	6	1	2	2	94	79	-	-	-	-	-	-	-
-	-	1	-	-	1	39	22	-	-	-	-	-	-	-
-	-	3	-	4	-	38	33	-	-	-	-	-	-	-
-	-	-	-	-	-	4	-	-	-	-	-	-	-	-
3	-	48	40	581	294	650	-	-	-	350	283	950	724	8
-	-	-	13	42	19	234	-	-	-	22	21	425	12	1
3	-	1	12	2	3	9	-	-	-	-	-	4	-	-
-	-	-	8	-	1	7	-	-	-	-	-	12	-	-
-	-	46	6	-	1	6	-	-	-	-	1	15	2	-
-	-	-	1	276	46	238	-	-	-	173	125	280	50	4
-	-	1	-	55	224	87	-	-	-	73	98	151	376	-
-	-	-	-	204	-	68	-	-	-	81	38	62	284	3
-	-	-	-	2	-	-	-	-	-	1	-	1	-	-
-	-	-	-	-	-	1	-	-	-	-	-	-	-	-
-	-	21	23	204	113	269	-	-	-	129	282	502	132	433
-	-	4	3	10	11	64	-	-	-	7	19	230	2	46
-	-	-	9	1	1	3	-	-	-	-	-	4	-	1
-	-	-	1	-	3	8	-	-	-	-	1	13	-	-
-	-	10	9	-	3	1	-	-	-	-	-	10	-	4
-	-	4	1	118	47	121	-	-	-	73	172	186	7	189
-	-	1	-	13	29	38	-	-	-	28	62	39	35	76
-	-	2	-	60	19	28	-	-	-	21	28	20	88	116
-	-	-	-	2	-	2	-	-	-	-	-	-	-	1
-	-	-	-	-	-	4	-	-	-	-	-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상남도 사천시	합계	3,878	15	-	382	271	1	37	-	282	12
	주거용	1,020	6	-	244	151	1	14	-	85	6
	상업업무용	280	-	-	21	44	-	13	-	148	5
	주상복합용	133	1	-	23	40	-	4	-	44	-
	공업용	55	-	-	1	1	-	-	-	-	-
	전	1,009	6	-	59	17	-	2	-	1	1
	답	947	1	-	29	15	-	2	-	1	-
	임야	420	1	-	5	2	-	1	-	1	-
	특수토지	9	-	-	-	-	-	1	-	2	-
	공공용지	5	-	-	-	1	-	-	-	-	-
경상남도 김해시	합계	4,198	-	4	560	643	25	106	5	230	8
	주거용	1,002	-	4	273	320	13	18	-	34	-
	상업업무용	490	-	-	50	124	7	53	5	163	8
	주상복합용	371	-	-	200	94	2	15	-	26	-
	공업용	389	-	-	3	24	-	6	-	1	-
	전	958	-	-	20	42	1	4	-	1	-
	답	535	-	-	12	29	2	8	-	4	-
	임야	425	-	-	2	10	-	2	-	-	-
	특수토지	16	-	-	-	-	-	-	-	1	-
	공공용지	12	-	-	-	-	-	-	-	-	-
경상남도 밀양시	합계	4,546	1	-	137	298	15	18	10	147	-
	주거용	1,008	-	-	112	186	13	5	2	34	-
	상업업무용	183	-	-	4	53	-	8	7	84	-
	주상복합용	113	-	-	4	49	2	3	1	28	-
	공업용	41	-	-	1	-	-	-	-	-	-
	전	1,519	1	-	11	8	-	1	-	-	-
	답	985	-	-	3	2	-	1	-	-	-
	임야	691	-	-	2	-	-	-	-	-	-
	특수토지	5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경상남도 거제시	합계	3,232	-	-	87	428	3	29	-	238	12
	주거용	896	-	-	45	260	1	7	-	70	1
	상업업무용	222	-	-	2	42	-	12	-	126	7
	주상복합용	175	-	-	6	81	1	7	-	38	3
	공업용	31	-	-	-	-	-	-	-	-	-
	전	642	-	-	13	12	-	-	-	2	-
	답	818	-	-	19	23	1	3	-	1	1
	임야	440	-	-	2	10	-	-	-	-	-
	특수토지	7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경상남도 양산시	합계	2,664	1	-	383	354	30	91	5	187	4
	주거용	675	1	-	187	206	19	27	-	30	1
	상업업무용	254	-	-	7	32	2	40	5	132	2
	주상복합용	190	-	-	74	53	5	20	-	20	1
	공업용	160	-	-	13	16	1	2	-	1	-
	전	609	-	-	63	32	2	2	-	2	-
	답	325	-	-	16	7	-	-	-	1	-
	임야	422	-	-	23	8	1	-	-	-	-
	특수토지	21	-	-	-	-	-	-	-	1	-
	공공용지	8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2	-	51	15	14	121	535	-	-	-	259	477	730	600	74
-	-	8	1	1	12	102	-	-	-	22	69	275	17	6
-	-	1	7	-	1	16	-	-	-	1	1	21	-	1
-	-	-	1	-	-	6	-	-	-	-	4	10	-	-
-	-	17	6	-	1	4	-	-	-	1	4	19	-	1
1	-	12	-	5	12	206	-	-	-	108	228	244	83	24
-	-	9	-	2	91	117	-	-	-	24	144	106	382	24
1	-	4	-	6	3	81	-	-	-	103	27	49	118	18
-	-	-	-	-	-	-	-	-	-	-	-	6	-	-
-	-	-	-	-	1	3	-	-	-	-	-	-	-	-
1	-	152	93	38	63	554	482	1	-	151	145	661	276	-
-	-	9	10	-	5	89	14	-	-	12	11	182	8	-
1	-	10	17	-	4	18	1	-	-	1	-	27	1	-
-	-	1	3	-	-	6	4	-	-	-	-	19	1	-
-	-	106	50	-	4	35	3	-	-	1	6	147	3	-
-	-	12	9	15	12	235	190	-	-	63	82	227	45	-
-	-	9	2	1	37	46	176	1	-	8	7	34	159	-
-	-	5	1	22	-	114	89	-	-	65	33	23	59	-
-	-	-	-	-	-	7	5	-	-	1	-	2	-	-
-	-	-	1	-	1	4	-	-	-	-	6	-	-	-
-	-	24	5	7	111	194	-	-	-	415	343	1,750	1,048	23
-	-	4	1	-	8	30	-	-	-	27	21	531	30	4
-	-	-	-	-	2	1	-	-	-	2	-	22	-	-
-	-	-	-	-	2	1	-	-	-	1	2	19	-	1
-	-	10	-	-	1	1	-	-	-	-	-	25	3	-
-	-	3	2	1	27	116	-	-	-	180	184	805	169	11
-	-	5	1	-	70	10	-	-	-	63	66	203	561	-
-	-	2	1	6	1	34	-	-	-	142	70	141	285	7
-	-	-	-	-	-	-	-	-	-	-	-	4	-	-
-	-	-	-	-	-	1	-	-	-	-	-	-	-	-
-	-	11	12	33	10	320	-	-	-	178	274	936	332	329
-	-	-	1	1	1	52	-	-	-	13	26	365	17	36
-	-	-	5	1	-	13	-	-	-	-	-	11	2	1
-	-	-	-	-	-	1	-	-	-	1	-	36	-	1
-	-	8	4	-	-	1	-	-	-	-	-	15	-	3
-	-	-	-	15	-	80	-	-	-	58	100	245	21	96
-	-	1	1	-	9	92	-	-	-	57	120	209	165	116
-	-	2	1	16	-	79	-	-	-	49	28	52	127	74
-	-	-	-	-	-	1	-	-	-	-	-	3	-	2
-	-	-	-	-	-	1	-	-	-	-	-	-	-	-
2	-	109	56	43	31	776	189	-	-	90	126	66	79	42
-	-	4	15	2	2	110	8	-	-	6	12	43	1	1
2	-	4	11	-	-	13	-	-	-	-	2	1	-	1
-	-	-	2	-	-	7	2	-	-	2	-	4	-	-
-	-	74	12	-	1	40	-	-	-	-	-	-	-	-
-	-	12	12	3	9	233	79	-	-	41	77	16	17	9
-	-	5	2	4	19	178	31	-	-	7	29	2	11	13
-	-	9	2	33	-	175	65	-	-	34	5	-	50	17
-	-	-	-	1	-	17	1	-	-	-	-	-	-	1
-	-	1	-	-	-	3	3	-	-	-	1	-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상남도 의령군	합계	2,587	1	-	113	11	-	3	-	57	-
	주거용	490	1	-	75	5	-	1	-	8	-
	상업업무용	54	-	-	11	1	-	-	-	34	-
	주상복합용	35	-	-	7	-	-	1	-	14	-
	공업용	14	-	-	-	-	-	-	-	-	-
	전	684	-	-	8	2	-	-	-	-	-
	답	835	-	-	12	3	-	1	-	-	-
	임야	473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경상남도 함안군	합계	2,925	-	-	60	154	-	9	-	73	5
	주거용	591	-	-	37	102	-	3	-	15	1
	상업업무용	73	-	-	5	6	-	4	-	39	3
	주상복합용	65	-	-	6	26	-	2	-	16	1
	공업용	104	-	-	2	-	-	-	-	-	-
	전	758	-	-	6	11	-	-	-	2	-
	답	896	-	-	4	9	-	-	-	-	-
	임야	431	-	-	-	-	-	-	-	-	-
	특수토지	4	-	-	-	-	-	-	-	1	-
경상남도 창녕군	합계	3,161	-	1	30	206	1	20	-	60	-
	주거용	693	-	1	20	133	1	4	-	10	-
	상업업무용	121	-	-	2	35	-	10	-	44	-
	주상복합용	50	-	-	3	21	-	4	-	3	-
	공업용	47	-	-	1	1	-	-	-	-	-
	전	959	-	-	2	7	-	-	-	-	-
	답	902	-	-	2	8	-	2	-	-	-
	임야	381	-	-	-	1	-	-	-	-	-
	특수토지	7	-	-	-	-	-	-	-	3	-
경상남도 고성군	합계	3,477	-	-	121	46	-	14	-	40	-
	주거용	692	-	-	92	36	-	5	-	5	-
	상업업무용	78	-	-	11	5	-	5	-	31	-
	주상복합용	56	-	-	17	4	-	4	-	4	-
	공업용	45	-	-	-	1	-	-	-	-	-
	전	914	-	-	-	-	-	-	-	-	-
	답	1,036	-	-	1	-	-	-	-	-	-
	임야	652	-	-	-	-	-	-	-	-	-
	특수토지	4	-	-	-	-	-	-	-	-	-
경상남도 남해군	합계	3,107	-	-	-	92	-	11	-	47	-
	주거용	732	-	-	-	68	-	7	-	10	-
	상업업무용	58	-	-	-	7	-	1	-	25	-
	주상복합용	77	-	-	-	15	-	3	-	11	-
	공업용	16	-	-	-	-	-	-	-	-	-
	전	826	-	-	-	-	-	-	-	-	-
	답	889	-	-	-	2	-	-	-	-	-
	임야	503	-	-	-	-	-	-	-	-	-
특수토지	6	-	-	-	-	-	-	-	1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1	1	1	33	71	-	-	-	288	430	906	655	6
-	-	1	-	-	2	8	-	-	-	24	13	339	13	-
-	-	-	-	-	-	1	-	-	-	1	-	6	-	-
-	-	-	-	-	-	1	-	-	-	-	-	12	-	-
-	-	4	1	-	-	-	-	-	-	1	-	7	1	-
-	-	3	-	-	5	37	-	-	-	124	179	291	33	2
-	-	2	-	-	26	8	-	-	-	63	171	185	363	1
-	-	1	-	1	-	16	-	-	-	75	67	65	245	3
-	-	-	-	-	-	-	-	-	-	-	-	1	-	-
-	-	39	17	1	80	129	23	-	-	437	382	862	642	12
-	-	2	1	-	11	23	-	-	-	34	30	311	21	-
-	-	-	2	-	-	2	-	-	-	-	1	10	-	1
-	-	-	-	-	-	3	-	-	-	-	-	11	-	-
-	-	23	11	-	-	2	-	-	-	2	3	59	2	-
-	-	4	1	-	3	55	8	-	-	200	171	254	42	1
-	-	5	2	-	65	26	6	-	-	63	140	161	411	4
-	-	5	-	1	-	17	9	-	-	137	37	53	166	6
-	-	-	-	-	-	-	-	-	-	-	-	3	-	-
-	-	-	-	-	1	1	-	-	-	1	-	-	-	-
-	-	27	11	-	53	259	-	-	-	482	306	994	688	23
-	-	-	1	-	1	47	-	-	-	56	31	364	22	2
-	-	-	1	-	-	6	-	-	-	1	1	20	1	-
-	-	-	-	-	-	3	-	-	-	2	-	14	-	-
-	-	5	7	-	-	2	-	-	-	1	1	25	4	-
-	-	8	-	-	4	110	-	-	-	254	139	358	70	7
-	-	10	2	-	48	57	-	-	-	60	107	134	467	5
-	-	4	-	-	-	32	-	-	-	108	27	77	124	8
-	-	-	-	-	-	2	-	-	-	-	-	2	-	-
-	-	-	-	-	-	-	-	-	-	-	-	-	-	1
-	-	24	-	6	40	101	-	-	-	316	390	1,270	879	230
-	-	2	-	1	5	21	-	-	-	20	36	420	33	16
-	-	-	-	-	-	2	-	-	-	-	1	21	1	1
-	-	1	-	-	-	3	-	-	-	-	1	22	-	-
-	-	7	-	-	-	1	-	-	-	2	2	24	2	6
-	-	5	-	2	2	45	-	-	-	117	148	433	88	74
-	-	4	-	1	33	14	-	-	-	53	134	211	511	74
-	-	4	-	2	-	15	-	-	-	124	67	137	244	59
-	-	1	-	-	-	-	-	-	-	-	1	2	-	-
-	-	-	-	-	50	101	-	-	-	354	876	1,007	381	188
-	-	-	-	-	5	29	-	-	-	24	110	454	16	9
-	-	-	-	-	1	1	-	-	-	-	4	18	-	1
-	-	-	-	-	2	-	-	-	-	1	3	42	-	-
-	-	-	-	-	-	-	-	-	-	2	4	9	1	-
-	-	-	-	-	1	35	-	-	-	109	352	248	19	62
-	-	-	-	-	40	21	-	-	-	85	309	194	189	49
-	-	-	-	-	1	15	-	-	-	133	94	37	156	67
-	-	-	-	-	-	-	-	-	-	-	-	5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경상남도 하동군	합계	3,698	-	-	10	94	-	9	-	41	-
	주거용	712	-	-	3	68	-	3	-	4	-
	상업업무용	90	-	-	2	11	-	5	-	26	-
	주상복합용	33	-	-	-	7	-	1	-	8	-
	공업용	23	-	-	-	-	-	-	-	-	-
	전	1,048	-	-	1	3	-	-	-	-	-
	답	950	-	-	4	4	-	-	-	2	-
	임야	840	-	-	-	1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경상남도 산청군	합계	2,682	-	-	50	33	-	7	-	29	1
	주거용	493	-	-	41	23	-	1	-	4	-
	상업업무용	49	-	-	1	6	-	4	-	18	1
	주상복합용	42	-	-	7	4	-	2	-	7	-
	공업용	21	-	-	-	-	-	-	-	-	-
	전	689	-	-	1	-	-	-	-	-	-
	답	830	-	-	-	-	-	-	-	-	-
	임야	557	-	-	-	-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경상남도 함양군	합계	2,755	-	-	27	119	3	-	-	59	-
	주거용	528	-	-	22	90	3	-	-	10	-
	상업업무용	58	-	-	1	5	-	-	-	28	-
	주상복합용	66	-	-	2	24	-	-	-	20	-
	공업용	18	-	-	-	-	-	-	-	-	-
	전	881	-	-	1	-	-	-	-	-	-
	답	712	-	-	1	-	-	-	-	-	-
	임야	487	-	-	-	-	-	-	-	-	-
	특수토지	5	-	-	-	-	-	-	-	1	-
경상남도 거창군	합계	3,423	-	-	66	211	1	8	-	61	-
	주거용	621	-	-	53	122	1	1	-	6	-
	상업업무용	91	-	-	1	25	-	6	-	43	-
	주상복합용	87	-	-	4	59	-	1	-	11	-
	공업용	31	-	-	-	-	-	-	-	-	-
	전	1,067	-	-	6	3	-	-	-	-	-
	답	835	-	-	2	2	-	-	-	-	-
	임야	685	-	-	-	-	-	-	-	-	-
	특수토지	6	-	-	-	-	-	-	-	1	-
경상남도 합천군	합계	4,185	-	-	95	44	-	7	-	53	-
	주거용	702	-	-	65	25	-	3	-	12	-
	상업업무용	62	-	-	4	6	-	1	-	27	-
	주상복합용	64	-	-	9	12	-	2	-	13	-
	공업용	17	-	-	-	-	-	-	-	-	-
	전	1,056	-	-	8	-	-	1	-	-	-
	답	1,299	-	-	8	1	-	-	-	-	-
	임야	983	-	-	1	-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6	5	-	28	60	-	-	-	697	303	1,493	856	86
-	-	-	-	-	3	17	-	-	-	68	18	491	32	5
-	-	-	4	-	1	-	-	-	-	2	-	38	1	-
-	-	-	-	-	-	-	-	-	-	1	-	16	-	-
-	-	5	-	-	-	-	-	-	-	1	3	11	3	-
-	-	2	-	-	1	28	-	-	-	292	129	476	90	26
-	-	5	1	-	23	7	-	-	-	140	77	227	446	14
-	-	3	-	-	-	8	-	-	-	193	76	234	284	41
-	-	1	-	-	-	-	-	-	-	-	-	-	-	-
1	-	2	2	1	11	59	-	-	-	265	250	1,293	651	27
-	-	-	-	-	1	14	-	-	-	21	6	363	16	3
1	-	-	-	-	-	-	-	-	-	2	1	15	-	-
-	-	-	1	-	-	1	-	-	-	-	1	19	-	-
-	-	2	1	-	-	-	-	-	-	2	3	12	1	-
-	-	-	-	-	-	31	-	-	-	79	114	398	57	9
-	-	-	-	-	9	6	-	-	-	55	86	304	366	4
-	-	-	-	1	1	7	-	-	-	106	39	181	211	11
-	-	-	-	-	-	-	-	-	-	-	-	1	-	-
-	-	3	7	1	37	134	-	-	4	223	553	988	554	43
-	-	-	3	-	1	19	-	-	-	18	39	309	11	3
-	-	-	-	-	-	3	-	-	-	1	2	17	-	1
-	-	-	1	-	-	-	-	-	-	2	2	14	1	-
-	-	3	2	-	-	1	-	-	-	1	1	9	1	-
-	-	-	1	1	2	50	-	-	1	94	271	382	70	8
-	-	-	-	-	34	40	-	-	2	25	151	147	312	-
-	-	-	-	-	-	21	-	-	1	81	87	108	158	31
-	-	-	-	-	-	-	-	-	-	1	-	2	1	-
-	-	9	1	4	96	132	-	-	-	820	138	1,125	716	35
-	-	-	-	-	7	18	-	-	-	27	6	368	8	4
-	-	-	-	-	-	-	-	-	-	2	-	13	1	-
-	-	-	-	-	-	1	-	-	-	-	-	11	-	-
-	-	8	1	-	-	1	-	-	-	7	-	13	1	-
-	-	1	-	1	15	71	-	-	-	393	56	417	90	14
-	-	-	-	1	72	25	-	-	-	121	59	184	358	11
-	-	-	-	2	2	16	-	-	-	270	17	114	258	6
-	-	-	-	-	-	-	-	-	-	-	-	5	-	-
-	-	-	-	-	22	125	-	-	-	497	486	1,811	1,007	38
-	-	-	-	-	3	16	-	-	-	19	22	514	20	3
-	-	-	-	-	-	3	-	-	-	2	2	16	1	-
-	-	-	-	-	1	3	-	-	-	1	-	23	-	-
-	-	-	-	-	-	-	-	-	-	1	2	13	1	-
-	-	-	-	-	1	52	-	-	-	175	182	581	45	11
-	-	-	-	-	17	23	-	-	-	98	158	412	579	3
-	-	-	-	-	-	28	-	-	-	201	120	251	361	21
-	-	-	-	-	-	-	-	-	-	-	-	1	-	-

● II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제주특별 자치도	합계	11,256	3	-	470	1,351	1	295	-	645	9
	주거용	2,942	3	-	335	1,046	1	129	-	136	1
	상업업무용	749	-	-	21	48	-	93	-	424	7
	주상복합용	435	-	-	39	133	-	72	-	81	1
	공업용	101	-	-	1	2	-	-	-	-	-
	전	4,941	-	-	72	122	-	1	-	2	-
	답	28	-	-	-	-	-	-	-	-	-
	임야	1,907	-	-	1	-	-	-	-	-	-
	특수토지	142	-	-	-	-	-	-	-	2	-
	공공용지	11	-	-	1	-	-	-	-	-	-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합계	6,591	3	-	309	769	-	198	-	414	7
	주거용	1,733	3	-	202	596	-	77	-	88	1
	상업업무용	473	-	-	20	30	-	70	-	271	5
	주상복합용	305	-	-	31	96	-	51	-	53	1
	공업용	79	-	-	1	2	-	-	-	-	-
	전	2,708	-	-	55	45	-	-	-	1	-
	답	18	-	-	-	-	-	-	-	-	-
	임야	1,201	-	-	-	-	-	-	-	-	-
	특수토지	71	-	-	-	-	-	-	-	1	-
	공공용지	3	-	-	-	-	-	-	-	-	-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합계	4,665	-	-	161	582	1	97	-	231	2
	주거용	1,209	-	-	133	450	1	52	-	48	-
	상업업무용	276	-	-	1	18	-	23	-	153	2
	주상복합용	130	-	-	8	37	-	21	-	28	-
	공업용	22	-	-	-	-	-	-	-	-	-
	전	2,233	-	-	17	77	-	1	-	1	-
	답	10	-	-	-	-	-	-	-	-	-
	임야	706	-	-	1	-	-	-	-	-	-
	특수토지	71	-	-	-	-	-	-	-	1	-
	공공용지	8	-	-	1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2	31	277	210	3,096	-	4	-	396	755	3,651	8	42
-	-	2	2	13	21	525	-	1	-	20	33	674	-	-
-	-	1	3	13	1	95	-	-	-	-	1	42	-	-
-	-	1	1	4	3	60	-	-	-	2	1	37	-	-
-	-	5	25	-	1	11	-	-	-	3	8	45	-	-
-	-	1	-	131	140	2,013	-	-	-	82	329	2,037	-	11
-	-	-	-	1	6	10	-	-	-	1	5	5	-	-
-	-	-	-	104	37	340	-	3	-	287	373	723	8	31
-	-	2	-	9	1	36	-	-	-	1	5	86	-	-
-	-	-	-	2	-	6	-	-	-	-	-	2	-	-
-	-	4	28	125	210	1,624	-	4	-	254	532	2,073	4	33
-	-	-	2	7	21	316	-	1	-	18	30	371	-	-
-	-	-	2	8	1	39	-	-	-	-	1	26	-	-
-	-	-	1	3	3	43	-	-	-	1	1	21	-	-
-	-	2	23	-	1	9	-	-	-	3	7	31	-	-
-	-	1	-	46	140	1,003	-	-	-	49	201	1,157	-	10
-	-	-	-	-	6	6	-	-	-	1	4	1	-	-
-	-	-	-	56	37	188	-	3	-	181	285	424	4	23
-	-	1	-	5	1	18	-	-	-	1	3	41	-	-
-	-	-	-	-	-	2	-	-	-	-	-	1	-	-
-	-	8	3	152	-	1,472	-	-	-	142	223	1,578	4	9
-	-	2	-	6	-	209	-	-	-	2	3	303	-	-
-	-	1	1	5	-	56	-	-	-	-	-	16	-	-
-	-	1	-	1	-	17	-	-	-	1	-	16	-	-
-	-	3	2	-	-	2	-	-	-	-	1	14	-	-
-	-	-	-	85	-	1,010	-	-	-	33	128	880	-	1
-	-	-	-	1	-	4	-	-	-	-	1	4	-	-
-	-	-	-	48	-	152	-	-	-	106	88	299	4	8
-	-	1	-	4	-	18	-	-	-	-	2	45	-	-
-	-	-	-	2	-	4	-	-	-	-	-	1	-	-

[별표2]

표준지 위치 표시 부호

구 분	전	답	대	임 야	기 타
부 호	⊕	⊖	○	⊗	⓪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표준지 선정 총괄표

시·군·구명:

(단위 : 필지수)

지역명	전년도 표준지수 (A)	조사연도 표준지 수				표준지 증감(△) (B-A= F)	교체율 (D/A)	증감률 (F/A)
		계(B) (C+E)	재선정 (C)	삭제(D)	신규(E)			
계								
○○읍 ○○면 ○○동								

※ 작성요령

1. “지역명” 란은 읍·면·동명을 기재한다.
2. “재선정” 란은 전년도 표준지 중에서 교체할 필요가 없는 표준지의 수를 기재한다.
3. “삭제”란은 전년도 표준지 중에서 조사연도 표준지로 선정되지 않은 표준지의 수를 기재한다.
4. “신규”란은 전년도 표준지가 아닌 토지 중에서 조사연도에 신규로 선정된 표준지 수를 기재한다.
5. “표준지증감(△)”란은 조사연도 표준지 수에서 전년도 표준지 수를 뺀 수를 기재한다.
6. “교체율”, “증감률”은 소수점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 기재한다.
7. 표준지선정총괄표의 계(B)는 표준지증감현황의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지목별 금년도 “계”란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8. 표준지선정총괄표의 삭제(D)는 표준지삭제사유별 내역 “계”와 삭제표준지 필지별 내역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9. 표준지선정총괄표의 신규(E)는 신규표준지 필지별 내역의 “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표준지 증감 현황

시·군·구명 :

○ 용도지역별 현황

(단위 : 필지수)

구 분		전 년 도 (A)	금 년 도 (B)	증 감 (C)	증감비율(%) (C/A)
계					
도시	소 계				
	주거지역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용도미지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토지이용상황별 현황

(단위 : 필지수)

구 분	전 년 도 (A)	금 년 도 (B)	증 감 (C)	증감비율(%) (C/A)
계				
주거/상업/공업				
전/답/임야				
특수토지 등				

○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수)

구 분	전 년 도 (A)	금 년 도 (B)	증 감 (C)	증감비율(%) (C/A)
계				
대				
전				
답				
임야				
기타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용도지역별 “계”, 토지이용상황별 “계”와 지목별 “계”는 일치되어야 한다.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표준지 삭제사유별 내역

시·군·구명 :

지역명	계	삭 제 사 유								비고
		① 행정 구역 개편	② 용도 지역 변경	③ 개발 사업 시행	④ 지적 사항 변경	⑤ 형질 변경	⑥ 토지 이용 상황 변경	⑦ 분포 밀도 조정	⑧ 기타	
계										
○○읍 ○○면 ○○동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작성요령

1. “지역명”란은 읍·면·동명을 기재한다.
2. “기타”란에는 숫자만 표기하고 구체적인 삭제사유는 별지로 첨부한다.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삭제 표준지 필지별 내역

소재지 및 지번	일련번호	지 목	토지이용 상황	용도지역	삭제사유
계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작성요령

1. “소재지 및 지번”란은 읍·면·동·리와 지번을 기재한다.
2. “일련번호”란은 해당 토지의 전년도 표준지 일련번호를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3. “삭제사유”란은 뒷면의 “삭제사유 작성요령”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뒷 면>

삭 제 사 유 작 성 요 령

유 형	사 유	작 성 예 시
①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표준지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행정구역 개편 (금산군이 대전광역시로 편입)
②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기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③ 개발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 도로사업 등으로 표준지 전부 또는 일부가 도로 등에 편입되어 교체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 (○○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도로에 편입)
④ 지적사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분할 등으로 면적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으로 표준지의 위치(지번변경 포함)가 변경되어 교체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으로 토지의 형상이 기형으로 변하여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지적사항 변경 (분할면적 : 20㎡) 지적사항 변경 (지번변경) 지적사항 변경 (분할로 형상 부적합)
⑤ 형질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개발사업 이외의 형질변경으로 당해 표준지가 대표성 등을 상실하여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 표준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형질변경 (임→전, 전→답, 전→대 등) 형질변경 (임→일부 전 등)
⑥ 토지이용상황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으로 대표성 등이 결여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토지이용상황변경 (가옥이 철거되고 전으로 이용)
⑦ 분포밀도 조정	표준지 분포기준에 따라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분포밀도 조정
⑧ 기 타	해당 시·군·구의 요청 등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유로 표준지가 교체되는 경우	기 타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신규 표준지 필지별 내역

시·군·구명 :

소재지 및 지번	일련번호	지 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선 정 사 유
계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작성요령

1. “소재지 지번”란은 읍·면·동·리와 지번을 기재한다.
2. “일련번호”란은 해당 표준지의 조사연도 일련번호를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3. “선정사유”란은 표준지로 신규선정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기재하며, 삭제사유외에도 대표성이 낮으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토지유형의 경우, 특수토지인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구, 일단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신규표준지로 선정한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III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1장 총칙	149
제2장 조사·평가절차	151
제3장 평가기준	158
제4장 용도별 토지의 평가	161
제5장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167
제6장 특수토지의 평가	171
[별표1] 상업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78
[별표2] 주택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80
[별표3] 공업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82
[별표4] 농경지대(전 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83
[별표5] 농경지대(답 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84
[별표6] 임야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78
[별표7] 후보지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78

국토교통부훈령 제1594호(2023.01.30.)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 제정 1996.12.24. 건설교통부훈령 제163호
- 개정 2000. 9.25. 건설교통부훈령 제296호
- 2003. 2.24. 건설교통부훈령 제403호
- 2004. 8.11. 건설교통부훈령 제479호
- 2005. 8.26. 건설교통부훈령 제549호
- 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 48호
- 2009. 8.24. 국토해양부훈령 제338호
- 2010.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
- 2012. 8.20. 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 2012. 9.21. 국토해양부훈령 제887호
- 2013. 5. 3. 국토교통부훈령 제186호
- 2014. 8.29. 국토교통부훈령 제415호
- 2014.12.29. 국토교통부훈령 제470호
- 2015. 8.18. 국토교통부훈령 제575호
- 2015.10. 6. 국토교통부훈령 제596호
- 2016. 9. 1. 국토교통부훈령 제746호
- 2017.10.25. 국토교통부훈령 제927호
- 2019.10.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5호
- 2021.8. 13. 국토교통부훈령 제1424호
- 2023. 1.30. 국토교통부훈령 제15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발이익"이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익사업의 시행, 그 밖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하게 받은 이익으로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
3. "일시적 이용상황"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으로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 임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용을 말한다.
4. "나지"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5. "특수토지"란 토지용도가 특수하고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를 말한다.
6. "택지"란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후보지"란 인근지역의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8. "인근지역"이란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격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9. "유사지역"이란 해당 토지가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10. "동일수급권"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와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11. (삭 제)

제3조(적용 범위)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및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제2장 조사·평가절차

제4조(조사·평가절차)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지역분석 등을 실시한 후에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공부조사
2. 실지조사
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4.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5.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6. 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7. 경계지역간 가격균형 여부 검토
8.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9.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청취
10. 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제5조(공부조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토지·임야 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환지계획·환지 처분 등 환지 관련서류 및 도면 등을 통해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소재지·지번·지목·면적
2. 공법상 제한사항의 내용 및 그 제한의 정도
3. 그 밖의 공부(公簿) 조사사항

제6조(실지조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한다.

1. 소재지·지번·지목·면적
2. 위치 및 주위 환경
3. 토지 이용 상황·효용성 및 공법상 제한사항과의 부합 여부

4. 도로 및 교통 환경
5. 형상·지세·지반·지질 등의 상태
6. 편익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7. 유해시설의 접근성 및 재해·소음 등 유해정도
8. 그 밖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7조(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①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거래사례, 평가선례, 보상선례, 조성사례, 분양사례, 수익사례 등과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의 자료인 것
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
3.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
4.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 등이 아닌 것
5.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

제8조(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① 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이하 "사정보정"이라 한다)한다.

②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로서 가격자료가 소재한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
2.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으로 시점수정

3. <삭 제>

4. <삭 제>

제9조(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① 수집·정리된 거래사례 등의 토지가

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요인만을 비교하고,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다.

②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는 표준지의 공법상 용도지역과 실제이용 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용도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대를 분류하고, 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행정적조건·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다.

1. 상업지대 : 고밀도상업지대·중밀도상업지대·저밀도상업지대

2. 주택지대 : 고급주택지대 · 보통주택지대 · 농어촌주택지대
 3. 공업지대 : 전용공업지대 · 일반공업지대
 4. 농경지대 : 전작농경지대 · 답작농경지대
 5. 임야지대 : 도시근교임야지대 · 농촌임야지대 · 산간임야지대
 6. 후보지지대 : 택지후보지지대 · 농경지후보지지대
- ③ 각 용도지대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조건 · 항목 · 세항목)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 ④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를 위한 인근지역의 판단은 토지의 용도적 관점에 있어서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지형 · 지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한다.
1. 지반 · 지세 · 지질
 2. 하천 · 수로 · 철도 · 공원 · 도로 · 광장 · 구릉 등
 3. 토지의 이용상황
 4. 공법상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등
 5. 역세권, 통학권 및 통작권역

제10조(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①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따라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하되,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로 선정된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주된 용도와 가치가 유사하거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주된 용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 ③ 표준지의 평가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유효숫자 세 자리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평가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네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가격의 유효숫자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경계지역간 가격균형 여부 검토) ① 제10조에 따라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인근 시·군·구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비교하여 그 가격의 균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가격균형여부의 검토는 용도지역·용도지대 및 토지이용상황별 지가수준을 비교하는 것 외에 특수토지 및 경계지역 부분에 있는 유사용도 표준지에 대하여 개별필지별로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의 가격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상호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평가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평가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표준지 소유자가 제시한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표준지의 필지별 가격 및 가격변동률, 용도지역별·지목별 최고·최저지가, 전년대비 가격변동이 현저한 표준지의 내역 및 변동사유, 표준지 위치표시도면 등 표준지의 평가가격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평가가격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그 평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서류(전자처리된 전자기록을 포함한다)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기준

제15조(적정가격 기준 평가) ① 표준지의 평가가격은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를 "적정가격"이라 한다)으로 결정하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표준지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한다.

② 특수토지 등 시장성이 없거나 거래사례 등을 구하기가 곤란한 토지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또는 임료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해당 토지를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보고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격에 그 용도적 제한이나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6조(실제용도 기준 평가)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7조(나지상정 평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18조(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평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 지역·지구·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9조(개발이익 반영 평가) ①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개발

이익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만, 그 개발이익이 주위환경 등의 사
정으로 보아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3. 그 밖에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반영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단계별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지가
수준과 비교하여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일단지의 평가) 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이하 "일단지"라 한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를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
의 승인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기 전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

⑤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가 조경수목재배지, 조경자재제조장, 골재야적장, 간이창고, 간이체육시설용지(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등)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⑥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등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제21조(평가방식의 적용) ① 표준지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의 3방식 중에서 해당 표준지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되, 다른 평가방식에 따라 산정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해당 표준지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평가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조사·평가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업용지 등 수익성이 있는 토지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③ 시장성이 없거나 토지의 용도 등이 특수하여 거래사례 등을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토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거나, 해당 토지를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보고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에 그 용도적 제한이나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토지가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원가법에 따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적정이윤)] ÷ 해당 토지의 면적 = 평가가격
- ⑤ (삭 제)
- ⑥ (삭 제)

제4장 용도별 토지의 평가

제22조(주거용지) ① 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를 포함한다)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주거의 쾌적성 및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로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
2. 상가와의 거리 및 배치상태
3. 학교, 공원, 병원 등의 배치상태
4. 거주자의 직업·계층 등 지역의 사회적 환경
5. 조망, 풍치, 경관 등 지역의 자연적 환경
6. 변전소, 폐수처리장 등 위험·혐오시설 등의 유무
7. 소음, 대기오염 등 공해발생의 상태
8. 홍수, 사태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
9. 각 획지의 면적과 배치 및 이용 등의 상태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는 그 지상에 있는 건물과 유사한 규모(층수·용적률·건폐율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상업·업무용지) ① 상업·업무용지(공공용지를 제외한다)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익사례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이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배후지의 상태 및 고객의 질과 양
2. 영업의 종류 및 경쟁의 상태
3. 고객의 교통수단의 상태 및 통행 패턴
4. 번영의 정도 및 성쇠의 상태
5. 해당 지역 경영자의 창의와 자력의 정도
6. 변화가예의 접근성

② 상업·업무용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임대동향 표본(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임대동향조사를 위하여 선정한 오피스빌딩 및 매장용 빌딩을 말한다)이 소재하는 경우 상업·업무용지는 임대동향표본을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비교가능한 적정 거래사례가 충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음(-)의 수익가격이 산출되는 등 임대동향표본을 활용한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공업용지) ① 공업용지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제품생산

및 수송·판매에 관한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로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의 판매시장 및 원재료 구입시장과의 위치관계
2. 항만, 철도, 간선도로 등 수송시설의 정비상태
3. 동력자원 및 용수·배수 등 공급처리시설의 상태
4. 노동력 확보의 난이
5. 관련산업과의 위치관계
6.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공해발생의 위험성
7. 온도, 습도, 강우 등 기상의 상태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업용지는 해당 토지 등의 분양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 이자 및 비용상당액과 해당 산업단지의 성숙도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양이 완료된 후에 상당기간 시일이 경과되어 해당 토지 등의 분양가격자료에 따른 평가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의 다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업용지의 분양가격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5조(농경지) ① 전·답·과수원 등 농경지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농경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간척지 등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로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토질의 종류 및 비옥도
2. 관개·배수의 설비상태
3. 한·수해의 유무와 그 정도
4. 관리 또는 경작의 편리성
5. 단위면적당 평균수확량
6. 마을 및 출하지와의 접근성

② 과수원은 그 지상에 있는 과수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임야지) ① 임야지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임야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1. 표고, 지세 등의 자연상태
2. 지층의 상태

3. 일조·온도·습도 등의 상태
4. 임도 등의 상태
5. 노동력 확보의 난이

② 임야지는 그 지상입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상입목을 임야지에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지상입목은 따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입목가격이 임야지가격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
2. 자연림으로서 입목도가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③ 「초지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조성된 목장용지는 인근지역 또는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초지는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에 해당 초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개량비를 포함한다) 상당액 및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
2.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지는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에 해당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 상당액 및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
3.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대" 부분은 목장용지로 보지 아니하며,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제27조(후보지) ① 택지후보지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택지조성 후의 토지가격에서 택지조성에 필요한 통상의 비용 상당액 및 적정이윤 등을 뺀 가격에 성숙도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택지화 등을 조장하거나 저해하는 행정상의 조치 및 규제정도
 2. 인근지역의 공공시설의 정비동향
 3. 인근에 있어서의 주택·점포·공장 등의 건설동향
 4. 조성의 난이 및 그 정도
 5. 조성 후 택지로서의 유효이용도
- ② 제1항의 규정은 농경지후보지의 평가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28조(도시·군계획시설 등 저축토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축되는 토지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축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저축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축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저축으로 인한 제한정도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축되는 경우에는 저축부분과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평균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축되는 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토지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단독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축된 것으로 본다.

③ 표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축되었으나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④ <삭제>

제29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 비율에 따른 평균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지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0조(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는 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다만, 공시기준일 현재 건설공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황도로로 보며, 건설공사는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 및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가 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제31조(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실제용도 또는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개축·재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를 포함하며, 형질변경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한다)는 건축이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3. 제2호 이외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목이 대인 토지는 현실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제32조(재개발구역 등 안의 토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구역·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시기준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등의 고시 전으로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제33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① 「도시개발법」 제28조

부터 제49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청산금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환지예정지의 위치,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면적, 형상, 도로접면상태와 그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인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형상,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이후에 택지로서의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해당 택지의 지정용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택지로서의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기 전인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공사의 시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법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

제35조(특정시설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등 안의 토지) ① 「문

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시설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등 안에 있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그 공법상 제한정도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삭제>

제6장 특수토지의 평가

제36조(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광천지"라 한다)는 그 광천의 종류, 질 및 양의 상태, 부근의 개발상태 및 편익시설의 종류·규모, 사회적 명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공구당 총가격은 광천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등의 가격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7조(광업용지) ① 광산 및 오석, 대리석 등 특수채석장의 용지(이하 이 조에서 "광업용지"라 한다)는 광물의 종류와 매장량, 질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광업용지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광산전체의 평가가격에서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등의 시설 및 광업권의 평가가격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③ 용도폐지된 광업용지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용도폐지된 광업용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용도폐지된 광업용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 토지의 가격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 및 용도전환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38조(염전부지) 염전시설의 부지(이를 "염전부지"라 한다)는 입지조건, 규모 및 시설 등의 상태, 염생산가능면적과 부대시설면적의 비율, 주위 환경 변동에 따른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가격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것으로 한다.

제39조(유원지) ① 유원지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유원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등 관리시설과 공작물 등의 가격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것으로 한다.

1. 시설의 종류·규모 및 그 시설물의 상태
2. 조망, 경관 등 자연환경조건
3. 도시지역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4. 시설이용의 편리성 및 쾌적성
5. 공법상 제한사항 및 그 내용
6. 그 밖에 사회적 명성 및 수익성

제40조(묘지) ① 묘지(공설묘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묘지가 위치한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해당 분묘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종중·문중묘지 및 법인묘지로서 제1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공작물 등이 토지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으로서 토지의 가치 자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지 아니한 관리시설 및 분묘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골프장용지등) ①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 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골프장용지는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의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프장용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경마장 및 스키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용지의 평가시에 준용한다.

제42조(종교용지등) 종교용지 또는 사적지(이하 이 조에서 "종교용지등"

이라 한다)는 그 토지가 위치한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가격을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그 용도 제한 및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그 종교용지등이 농경지대 또는 임야 지대 등에 소재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이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가격수준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에 따르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공작물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여객자동차·물류터미널 부지) ① 여객자동차·물류 터미널 부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여객자동차·물류 터미널 부지의 용도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물류 터미널의 구조 및 부대·편익시설의 현황, 여객자동차·물류 터미널 사업자의 면허(또는 등록, 허가, 신고 등)내용 및 해당 여객자동차·물류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자동차·물류운송사업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4조(공공용지등) ①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 도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철도, 하천, 위험·험오시설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이를 "공공용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다만, 토지의 용도에 따른 감가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철도, 하천, 위험·험오시설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그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

- ② 공공용지등이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 등이 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상업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포장
		보도			보도
		계통 및 연속성			계통 및 연속성
	가구(block)의 상태	가구의 정연성			
		가구시설의 상태			
접근 조건	교통수단 및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의 편의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의 이용 승객수			
		주차시설의 정비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규제의 정도 (일방통행, 주정차 금지 등)			
		관공서 등 공공 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상업 및 업무 시설의 배치 상태	백화점, 대형상가의 수와 연면적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전국규모의 상가 및 사무소의 수와 연면적			인근환경
		관람집회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부적합한 시설의 상태(공장, 창고, 주택 등)	지반, 지질 등		
		기타 고객유인시설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배후지의 인구			접면너비
		배후지의 범위			깊이
		고객의 구매력 등			부정형지

● III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환경 조건	경쟁의 정도 및 경영자의 능력	상가의 전문화와 집단화	획지 조건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등	삼각지
		고층화 이용정도			자루형획지
		고객의 통행량			맹지
	변화성의 정도	상가의 연립성		방위, 고저 등	방위
		영업시간의 장단			고저
		범죄의 발생정도			경사지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용적제한
		고도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별표2]

주택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포장
		보도			보도
		계통 및 연속성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	인근교통시설의 편의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교통시설의 도시중심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의 배치상태	인근상가의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의 품격			
공공 및 편익시설의 배치상태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				
환경 조건	기상조건	일조, 습도, 온도, 통풍 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사회환경	거주자의 직업, 연령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학군 등			
	획지의 상태	획지의 표준적인 면적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획지의 정연성			하수도
		건물의 소밀도			도시가스
		주변의 이용상황			변전소, 가스탱크, 우수처리장 등의 유무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상수도		위험 및 혐오시설 등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하수도			
도시가스 등					

● III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환경 조건	위험 및 험오시설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획지 조건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특별고압선 등의 통과 유무			접면너비
	재해발생의 위험성	홍수, 사태, 절벽붕괴 등			깊이
					부정형지
	공해발생의 정도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등	맹지				
접면도로 상태	방위				
	고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경사지
					각지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조건	기타	2면획지
					기타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조건	기타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조건	기타	기타
					기타

[별표3]

공업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포장
		계통 및 연속성			계통의 연속성
접근 조건	판매 및 원료 구입시장과의 위치관계	도심과의 접근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항만, 공항, 철도, 고속도로, 산업도로 등과의 접근성			철도전용인입선
		인근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전용부두
	노동력확보의 난이				
	관련산업과의 관계	관련산업 및 협력 업체간의 위치관계			
환경 조건	공공 및 처리 시설의 상태	동력자원	환경 조건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동력자원
		공업용수			공업용수
		공장배수			공장배수
	공해발생의 위험성	수질, 대기오염 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공장진출의 동향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별표4]

농경지대(전 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출하집적지와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기상조건	일조, 습도, 온도, 통풍, 강우량 등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경사의 방향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지세	경사도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관개의 양부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배수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배수의 양부				기타 재해의 위험성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기타 재해의 위험성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 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별표5]

농경지대(답 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출하집적지와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기상조건	일조, 습도, 온도, 통풍, 강우량 등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경사의 방향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경사도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관개의 양부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배수의 양부	배수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배수의 양부			기타 재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회치 조건	면적 등	면적	면적
		기타 재해의 위험성			경사	경사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별표6]

임야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인도의 배치, 폭, 구조 등			인도의 배치, 폭, 구조 등
		인근시장과의 접근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기상조건	일조, 기온, 강우량, 안개, 적설량 등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표고			표고
	지세 등	경사도		지세, 방위 등	방위
		경사의 굴곡			경사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행정상의 조장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별표기]

후보지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 조건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	인근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교통시설의 성격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교통시설의 도시중심 접근성			
	상가의 배치 상태	인근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상가의 품격			
	공공 및 편익시설의 배치 상태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	주변가로의 상태	주변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가로의 종류 등	
주변가로의 상태	주변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및 가로의 종류 등				
환경 조건	기상조건	일조, 습도, 온도, 통풍 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공공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치의 난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치의 난이
	인근환경	주변기존지역의 성격 및 규모		위험 및 혐오시설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시가화 정도	시가화 진행의 정도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도시의 규모 및 성격 등	도시의 인구, 재정, 사회, 복지, 문화, 교육시설 등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 III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환경 조건	위험 및 험오시설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접면도로상태
		특별고압선 등의 통과유무			방위
	재해발생의 위험성	홍수, 사태, 절벽붕괴 등		방위, 고저 등	경사
	공해발생의 정도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고저
택지 조성 조건	택지조성의 난이 및 유용성	택지조성의 난이 및 필요정도	택지 조성 조건	택지조성의 난이 및 유용성	택지조성의 난이도 및 필요정도
		택지로서의 유효 이용도			택지로서의 유효 이용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IV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 1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5호(2023.8.18.)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2008. 4.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059호
2009. 7.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21호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82호
2010. 7.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51호
2010. 8. 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97호
2011. 7. 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71호
2012. 8.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 9.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19호
2013.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22호
2015. 8.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1호
2016.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호
2017. 8.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4호
2018. 10.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0호
2019.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7호
2020. 7.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9호
2021. 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13호
2021. 8.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3호
2023. 8.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1. 선정기준일 직전 1년 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적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에 한한다) 또는 표준채무제표증명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을 선정기준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3. 심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심사부서에서 모든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사는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의뢰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표준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지역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해당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우선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5항 단서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
3. 골프장 등 업무난이도가 현저히 높은 표준지
4.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가 시·군·구별 표준지수의 90% 이상인 경우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읍·면·동의 표준지

제4조(공시전문평가법인)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공시전문평가법인"이라

한다)에게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토지, 7개 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의 조사·평가의 업무배정에 있어 우선 의뢰할 수 있다.

1. 주·분사무소별로 별표에서 정한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를 확보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
2. 제1호에 따른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의 인원을 두고 있는 분사무소를 5개 이상 설치한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4개 이상 사무소(수도권 이외의 1개 광역시·도에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도 1개 사무소로 인정)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보한 감정평가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의뢰를 받은 공시전문평가법인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경력이 3년 이상인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경력이 5년 이상인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70점(100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업무수행능력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확보할 때까지 공시전문평가법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준지공시

지가 조사·평가의 업무 배정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전체 감정평가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감정평가 실적 및 수행능력
2. 가격공시 성과 및 기여정도
3.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제6조(감정평가사 선정기준) 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1. 감정평가법 제49조와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2. 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사람
3. 자격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1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견책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선정기준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사람.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본다.
10. 법인의 대표자
11. 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및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 중인 사람 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

제7조(수탁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마련)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장은 위탁 받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과

● IV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물량 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한국부동산원장이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475호, 2023. 8.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부터 적용한다.

V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1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호(2021.01.06.)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정 2016.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9호

개정 2017.10.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2호

개정 2021. 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3.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4.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5.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 주택가격동향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제3조(개별공시가격의 검증 수수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 제17조제6항·제8항, 제21조

제6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부동산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7조제8항, 제21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9조에 따라 50퍼센트 이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 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지가 검증 대상 총 필지 수 ÷ 해당 시·군·구별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 해당연도 1표준지의 조사·평가 수수료
- 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가격 검증 대상 총 호수 × 해당연도 1표준주택의 조사·산정 수수료 × 12%
- 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검증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 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

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

- 가.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
- 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 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70%

나.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4. 가격정정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해당 시·군·구별 가격 정정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대상 부동산 수가 적어서 제1항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끝수정리)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천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특수토지의 평가방법



1. 서론	207
2. 평가방법	208

VI. 특수토지의 평가방법

I. 서론

가. 정의(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제2조)

- 토지의 용도가 특수하고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를 말한다.

나. 특징

- ① 비준표가 없어 특수토지의 개별지가 산정시 비준율은 “1”이 된다.
- ② 거래사례가 희소하며, 거래사례가 있더라도 사정보정, 개별요인 비교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③ 평가선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성이 강하여 비교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④ 시·군·구별로 특수토지가 적을 뿐 아니라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나,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다. 표준지 선정

- ① 특수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한다. 특수토지로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는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특수토지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이용상황별 가치구성을 달리하면 각각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고, 특수토지가 여러 개 있더라도 1개의 표준지로 개별지가 산정에 지장이 없다면 1개만 선정할 수 있다.
(예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 중인 경우 장래 이용계획, 사업진행정도 등에 따라 각각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II. 평가방법

1. 골프장 용지

가. 의의

-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회원제 골프장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 비회원제 골프장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 시설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1) 골프장(허가)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깍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2) 골프연습장(신고)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 연습용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골프장은 특수토지로, 골프연습장은 상업용으로 표준지 선정 및 조사·평가한다.

다. 평가방법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제41조제1항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함)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일단지 조사·평가방법(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제1항 및 제2항)

- 골프장용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서상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 용지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을 말함)으로 한다.
- ※ 현실적으로 지적공부상, 골프장용지로 등록된 부지면적전체가 체육용지로 지적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분등록 대상토지(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등록된 토지로서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정지,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원형보전상태에 있는 부분 등은 임야로 지적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에 **비회원제** 골프장이 병설되어 있는 경우,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의 등록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의 체육시설이므로 각각 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평가한다(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

2. 스키장

가. 의의

-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나. 시설기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하여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땅깍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 평가방법

- 골프장용지 등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3. 경마장

가. 의의

- “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

나. 시설기준(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

-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출주마가 경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 예시장, 마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 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4. 승마장

가. 의의

- 승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나. 시설기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 별표2

- 등록기관에 등록된 승용말 3마리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말의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갖추어야 한다.
- 마사, 관리사, 마장(가축운동장 등을 포함한다) 그 밖에 부속건물을 합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0.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갖추어야 한다.

■ 근거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야구장(실내 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 ·
탁구장·공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
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5.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라. 실외체육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다. 평가방법

- 유원지 평가 방법(「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9조)을 준용한다.

5. 터미널 부지

1.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가. 의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을 말한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호)

나. 평가방법

1) 표준지 선정 대상

상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공영 및 공용터미널만을 표준지로 선정한다.

※ 공영 및 공용터미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는 기능이 미미하거나 단순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부지는 특수토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평가방법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그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 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3조제1항 참조)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할 때 전체 건물 내에서의 자동차정류장시설이 차지하는 비율과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부대·편익시설의 현황,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의 면허 내용,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현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 물류터미널부지

가. 의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호)

< 참고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물류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사업

- 물류터미널 :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 (제2조 제2호)
- 물류터미널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제2조 제3호)

나. 표준지 선정 대상

- 상기 물류터미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만을 표준지로 선정한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따른 유통업무설비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시설 중 동 규칙 제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은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6. 공항

-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 항공 여객,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 부지를 말한다.(공항시설법 제2조)

- 표준지선정
 - ① 청사부지와 활주로 부지를 구분하여 표준지로 선정한다.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료 산정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 ② 군용비행장의 경우 청사부지만 표준지로 선정하고, 활주로 부지는 군용부지로 할 수 있다.
※ 사유 : 활주로 범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군시설 특성상 활주로 지하 활용 내역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출입제한에 따른 확인 불가능

7. 고속도로 휴게소

◦ 표준지 선정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의 표준지 선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시군구와 협의하여 한국도로공사 소유·민자 구분 없이 선정한다.

◦ 평가 방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 이용상황의 토지 거래사례 등 가격 자료에 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임대료 등을 고려한 수익환원법 및 조성공사비 등을 고려한 원가법 등을 통해 그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다.

8. 콘도부지

가. 의의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위해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나. 현황

- 1) 일반콘도 : 상업지대, 해안가 등에 일반적인 콘도
- 2) 스키장 연계 콘도
- 3) 골프장 연계 콘도
- 4) 스키장·골프장 연계 콘도

다. 기타

- 상업지대내 콘도는 상업용으로 할 수 있다.
- 콘도부지로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는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양어장·양식장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양식장 :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물고기나 해조, 버섯 따위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번식시키는 곳

10. 염전

가. 의의

- 바닷물을 끌어 올려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 올려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나. 평가방법

- 평가방법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8조)
- 염전부지는 입지조건, 규모 및 시설 등의 상태, 염생산가능면적과 부대시설면적의 비율, 주위환경 변동에 따른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 법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가격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것으로 한다.

◦ **일단지의 판단**

- 일단지의 범위는 “조사·평가시점의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염전지목”과는 다른 것으로서 염전, 유지, 잡종지, 구거 등이 염 생산에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의 조사·평가범위에 포함한다. 염전시설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염 생산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여 잡종지 상태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일시적인 상태는 제외한다)는 염 생산에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일단지의 조사·평가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규정**

※ 「소금산업 진흥법」제2조 -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같은법 시행령 별표2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으로 천일염의 경우에는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해주, 소금창고 및 용배수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공원묘지

가. 의의

- “공원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에 한한다.(공설묘지는 제외)

나. 시설기준

1) 묘지의 구분

- ① 개인묘지 ② 가족묘지 ③ 종중·문중묘지 ④ 법인묘지 ⑤ 공설묘지

2) 규모(법정)

종중·문중묘지 : 1,000㎡이하, 법인묘지 : 100,000㎡ 이상

다. 평가방법

1) 표준지 선정대상

표준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종중·문중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하며 공설묘지는 제외한다.

2) 평가방법

- ① 묘지는 그 묘지가 위치한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해당 분묘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②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 및 분묘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12. 광천지

가. 의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를 광천지라 하며,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제36조 참조)

광천지는 그 광천의 종류, 질 및 양의 상태, 부근의 개발상태 및 편익시설의 종류·규모, 사회적 명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래비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공구당 총가격은 광천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등의 가격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 (\text{공구당 총가격} \div \text{해당 광천지의 면적}) = \text{평가가격}$$

2) 공구당 총가격 산정방법

① 광천지 거래사래로 평가한 가격

사래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기타요인비교
 ≙ 광천지 공구당 총가격
 공시지가 = 공구당총가격 ÷ 면적

② 광천지 거래사래가 없는 경우 : 원가방식으로 평가함.(「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제21조 참조)

[조성전 토지의 소지가격 +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 적정이윤)]
 ÷ 면적 = 광천지 공구당 총가격 공시지가

13. 유원지

가. 평가방법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9조 참조)

- 유원지를 평가할 때는 시설의 종류·규모 및 그 시설물의 상태, 조망, 경관 등 자연환경 조건, 도시지역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시설이용의 편리성 및 쾌적성,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등 관리시설과 공작물 등의 가격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것으로 한다.
- 유원지로 지정·고시된 구역 내의 개발지와 원형보전지 등은 원칙적으로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나. 일단지의 판단

- 유원지는 일정한 구역에서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수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유기적인 시설을 갖추어 이용되므로 그 중 대표적인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유원지 전체 토지를 일단지로 본다.

14. 발전소 부지

- 수력발전소 : 물이 갖는 위치 에너지를 수차의 기계 에너지로 바꾸어 그것을 발전기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방식을 사용하는 발전소
- 화력발전소 : 석탄 또는 석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기관에 의하여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발전소
- 원자력발전소 : 원자핵이 붕괴할 때 생기는 열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전기를 얻는 발전소
- 발전소부지로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는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특수토지 기타

- 특수토지 기타는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로서, 토지이용상황 등을 세분화, 특정하기 곤란하여 개별지가 산정시 비준표에 의할 경우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VII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226

VII. 토지특성 주요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가. 토지이용상황(15)

1) 1989~1990년 이용현황

실제용도	표시방법	비 고
전	보통작물 특용작물	특용작물재배지 이외의 전 인삼, 관상수, 병나무, 약초 등 특용작물재배지
답	수 도 작 특용작물	수도작이외의 용도(미나리, 연, 왕골 등)
대	단독주택 주택상가 일반상가 아 파 트 공동주택 업무용빌딩 창 고 주 유 소 주 차 장 테니스장 교 회 · · · 나 지	순수주거 목적의 주택 주택과 상가용도가 비슷한 비중으로 이용되는 경우 예) 1층 : 상가 1층 : 상가, 주택 2층 : 주택 2층 : 주택 주된 용도가 상가로 이용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오피스빌딩
임 야	조 림 자 연 림	
공장용지	공 장 창 고 발 전 소	
유 원 지	유 원 지 골 프 장 수 영 장 민 속 촌 경 마 장 놀 이 터 · · ·	
과 수 원	과 수 원	
목장용지	목장용지	초지와 축사

2) 1991년 이용상황

실제용도	표시방법	비 고
전	보통작물 특용작물	특용작물재배지 이외의 전 인삼, 관상수, 뽕나무, 약초 등 특용작물재배지
답	수 도 작 특용작물	수도작 이외의 용도(미나리, 연, 왕골 등)
대	단독주택 주·상복합용	순수주거 목적의 주택 주택과 상가용도가 비슷한 비중으로 이용되는 경우 예) 1층 : 상가 1층 : 상가, 주택 2층 : 주택 2층 : 주택
	상 업 용	주된 용도가 상가로 이용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시장, 상가, 호텔, 여관, 휴게소, 유치원, 극장, 목욕탕, 병원, 주유소, 수영장 등)
	아 파 트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업 무 용 특수상업용	은행, 사무실(오피스텔) 등 업무용 건물부지 골프장, 스키장, 유원지 등
나 대 지	주거용나대지 상업용나대지 공업용나대지 녹지형나대지	주변토지 이용상황이 주거지역이나 빈터인 토지 주변토지 이용상황이 상업지역이나 빈터인 토지 주변토지 이용상황이 공업지역이나 빈터인 토지 주변토지 이용상황이 전·답 임야이나 빈터인 토지 ▶ 나지범위 : 일시적 이용상태인 조경수목재배지, 자재야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간이주차장 등 포함
임 야	조 림 자 연 림	
공장용지	공 업 용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공장부지나 창고부지와 발전소 부지 등
광 천 지 광업용지 염 전 운 동 장 도 로 공 원	광 천 지 광업용지 염 전 운 동 장 도 로 공 원	광산 채석장 등
과 수 원	과 수 원	
목장용지	목장용지	
기 타	기 타	묘지,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도축장 등의 혐오시설

3) 1992년 이용상황

구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단독주택용	주거용 단독주택 부지	1	단독주택
연립주택용	연립주택 부지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 주택부지	3	다세대
아파트용	아파트 부지	4	아파트
상업용	토지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의 부지	5	상업용
업무용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의 부지	6	업무용
주상복합용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비슷한 건축물의 부지	7	주상복합
특수상업용	골프장, 스키장 및 유원지	8	특수상업
공업용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공장, 창고 및 발전소용부지 단, 상업용과 공업용이 혼합되어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분류	9	공업용
주거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10	주거나지
상업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지역으로서 상업, 업무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11	상업나지
공업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역으로서 공업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12	공업나지
녹지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답 또는 임야로서 공지상태로 있는 토지	13	녹지나지
전(특용작물)	인삼, 관상수, 병나무, 약초 등 특용작물재배지	14	특용작물
전(보통작물)	보리, 감자, 옥수수, 채소 등 재배지	15	보통작물
답(특용작물)	미나리, 연, 왕골 등 특수작물 재배지	16	특용작물
답(수도작)	벼 재배지	17	수도작
임야(조림)	계획 조림지	18	조림
임야(자연림)	조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	19	자연림
목(농)장	목장 및 농장용지	20	목(농)장
과수원	「지적법」 시행령 제5조의 “과수원”과 동일	21	과수원
광천지	「지적법」 시행령 제5조의 “광천지”와 동일	22	광천지
광업용지	광산, 채석장 용지	23	광업용지
염전	「지적법」 시행령 제5조의 “염전”과 동일	24	염전
운동장	야외 체육시설용지 포함	25	운동장
도로		26	도로
하천		27	하천
공원	도시공원내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	28	공원
창고	물품의 저장·보관 등을 위한 시설물 부지	29	창고
종교시설	교회, 성당, 향교등 종교용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30	종교시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용 부지	31	학교
공공청사	근린공공시설 부지	32	공공청사
혐오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도축장 등의 부지	33	혐오시설
유지		34	유지
기타	갈대밭, 토취장 등 위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99	기타

4) 1993년 이용상황

구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단독주택용	주거용 단독주택 부지, <주택지대안의 소규모 점포가 있는 주택 포함>	1	단독주택
연립주택용	연립주택 부지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 주택부지	3	다세대
아파트용	아파트 부지	4	아파트
상업용	근린생활 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의 부지	5	상업용
업무용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의 부지	6	업무용
주상복합용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비슷한 건축물의 부지	7	주상복합
특수상업용	골프장, 스키장 및 유원지, 경마장 등	8	특수상업
공업용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공장, 창고 및 발전소용부지 단, 상업용과 공업용이 혼합되어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분류	9	공업용
주거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10	주거나지
상업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업무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11	상업나지
공업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역으로서 공업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12	공업나지
녹지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답 또는 임야로서 나지상태로 있는 토지	13	녹지나지
전(특작)	인삼, 관상수, 병나무, 약초 등의 특용작물재배지	14	특용작물
전(보작)	보리, 감자, 옥수수, 채소 등의 보통작물재배지	15	보통작물
답(특작)	미나리, 연, 양귀 등 특수작물 재배지	16	특용작물
답(수도작)	벼 재배지	17	수도작
임야(조림)	계획 조림지로 조림대장에 등재된 임야	18	조림
임야(자연림)	조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	19	자연림
목(농)장	목장 및 농장용지	20	목(농)장
과수원	「지적법」 시행령 제6조의 “과수원”과 동일	21	과수원
광천지	「지적법」 시행령 제6조의 “광천지”와 동일	22	광천지
광업용지	광산, 특수 채석장(오석, 대리석등 채석지)용지	23	광업용지
염전	「지적법」 시행령 제6조의 “염전”과 동일	24	염전
체육용지	「지적법」 시행령 제6조의 “체육용지”중 “특수사업용”에 기재된 용지를 제외한 체육시설용 토지	25	체육용지
도로		26	도로
하천		27	하천
공원	도시공원내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	28	공원
창고	물품의 저장·보관 등을 위한 시설물 부지	29	창고
종교용지	교회, 성당, 향교 등 종교용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30	종교용지
학교용지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31	학교용지
공공청사	공공의 청사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2	공공청사
혐오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도축장 등의 부지	33	혐오시설
유지		34	유지
기타	갈대밭, 투취장, 채석장, 사토장 등 위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99	기타

5) 1994년 토지이용상황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주 거 용			주 거 용
단독주택용	주거용 단독주택용지(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가 있는 주택 부지 포함)	11	단 독
연립주택용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동당 건축연면적 660m ² 초과)	12	연 립
다세대주택용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및 다중주택 용지	13	다 세 대
아 파트 용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용지	14	아 파트
주거용나대지	주거지대내의 나대지	15	나 대 지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지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16	기 타
상업·업무용			상업·업무용
상 업 용	상가,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 용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극장, 병원, 주유소 등	21	상 업 용
업 무 용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용지	22	업 무 용
상업용나대지	상업, 업무지대내의 나대지	23	나 대 지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상업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24	기 타
주상복합용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용지(다만, 주택가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봄)	30	주상복합용
공 업 용			공 업 용
공 업 용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조사	41	공 업 용
공업용나대지	공업지대내의 나대지	42	나 대 지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공업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43	기 타
전			전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특수작물(인삼, 관상수, 뽕나무, 약초 등) 또는 보통작물(보리, 감자, 옥수수, 채소 등)을 재배하는 토지	51	전
과 수 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52	과 수 원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또는 특수작물(미나리,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60	답

● VII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임 야			임 야
조 림	조림대장에 계획조림지로 등재된 임야	71	조 림
자 연 림	조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	72	자 연 림
토 지 임 야 (토 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73	토지임야
목 장 용 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 부지	74	목장용지
특 수 필 지			특수필지
광 천 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81	광 천 지
광 업 용 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82	광업용지
염 전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83	염 전
도 로		84	도 로
하 천		85	하 천
골 프 장	골프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6	골 프 장
스 키 장	스키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7	스 키 장
경 마 장	경마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8	경 마 장
기 타	기타 특수용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부지	89	기 타

6) 1995년 토지이용상황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주 거 용		10	주 거 용
단독주택용	주거용 단독주택용지(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가 있는 주택부지 포함), 다중주택용지	11	단 독
연립주택용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동당 건축연면적 660m ² 초과)	12	연 립
다세대주택용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13	다 세 대
아 파 트 용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용지	14	아 파 트
주거용나대지	주거지대내의 나대지	15	주거나대지
주거용기타	현재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지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종교용지, 학교용지 등	16	주거기타
상업·업무용		20	상업·업무용
상 업 용	상가,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용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극장, 병원, 주유소 등	21	상 업 용
업 무 용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용지	22	업 무 용
상업용나대지	상업, 업무지대내의 나대지	23	상업나대지
상업용기타	현재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상업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주거용지, 종교용지, 학교용지 등	24	상업기타
주상복합용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용지(다만, 주택가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봄)	30	주상복합용
공 업 용		40	
공 업 용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조사)	41	공 업 용
공업용나대지	공업지대내의 나대지	42	공업나대지
공업용기타	현재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공업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43	공업기타
전		50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특수작물(인삼, 관상수, 병나무, 약초 등) 또는 보통작물(보리, 감자, 옥수수, 채소 등)을 재배하는 토지(밭)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축사 등 부속시설물 부지	51	전
과수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52	과 수 원

● VII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또는 특수작물(미나리,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논)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축사 등 부속시설물 부지	60	답
임 야		70	
조 림	조림대장에 계획조림지로 등재된 임야	71	조 림
자연림	조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	72	자 연 림
토지임야 (토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토지임야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 부지		목장용지
특 수 필 지		80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81	광 천 지
광업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82	광업용지
염 전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83	염 전
도 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사도포함)	84	도 로
하 천	하천부지	85	하 천
골 프 장	골프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6	골 프 장
스 키 장	스키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7	스 키 장
경 마 장	경마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8	경 마 장
기 타	기타 특수용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부지 (※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89	기 타

7) 1996년 토지이용상황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주 거 용		10	주 거 용
단독주택 용지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또는 아파트 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및 다중주택용지 포 함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11	단 독
연립주택 용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동당 건축연면적 660㎡ 초과)	12	연 립
다세대 주택용지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13	다 세 대
아파트용지	5층이상의 공동주택 용지	14	아 파 트
주거용나지	주위환경이 주택지대로서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 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 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15	주거나지
주거용기타	* 주위환경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 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16	주거기타
상업·업무용		20	
상업용지	상가,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유치원,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 원, 주유소 등	21	상 업 용
업무용지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 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한다.	22	업 무 용
상업·업무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상업·업무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 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 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23	상업나지

● VII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상업용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24	상업기타
주·상복합용		30	
주·상복합용지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가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31	주 상 용
주·상복합용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32	주상나지
주·상복합용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33	주상기타
공업용		40	
공업용지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한다.	41	공업용
공업용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42	공업나지
공업용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43	공업기타
전		50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붕나 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축순을 재배하는 토지	51	전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2	과 수 원
전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53	전 기타
답		60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61	답
답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62	답 기타
임 야		70	
조 림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71	조 림
자연림	자연상태의 임야	72	자 연 림
토지임야 (토 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73	토지임야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74	목장용지
임야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75	임야기타
특 수 필 지	비교적 대규모 필지로서 거래사례가 극히 희소하고 일률적인 가치 측정이 어려운 토지	80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81	광 천 지
광업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82	광업용지

● VII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염 전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83	염 전
유원지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84	유 원 지
공원묘지	시설공원묘지에 한한다.	85	공원묘지
골프장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6	골 프 장
스키장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7	스 키 장
경마장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8	경 마 장
특수필지 기타	*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 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89	특수기타
공공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90	
도로 등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91	도로 등
하천 등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등)	92	하천 등
공원 등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93	공원 등
운동장 등	운동장, 광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94	운동장 등
주차장	주차장, 정류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95	주차장
위험시설	위험시설(변전소, 송전탑, 송유관, 가스 및 유류저장시설 등) ※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96	위험시설
유해 및 혐오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폐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도살장 등(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97	유해·혐오 시설
기 타		99	기 타

8) 1997~2024년 토지이용상황

구분		범 위	CODE	기재방법
주 거 용			100	주 거 용
단독주 택용지	'97 ~ 2000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또는 아파트 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및 「건축법」 상 다중 주택용지 포함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110	단 독
	2001 ~ 2006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 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 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 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2007	단독주택용지(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 함) ·단독주택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 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상 동		
	2008 ~ 2019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함)가 3개층 이하(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 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 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2020	단독주택용지(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 시설을 포함) ·단독주택 : 주택용지로서 연립·다세대·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바닥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 하인 것		

● VII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구 분		법	위	CODE	기재방법
주 거 용				100	주 거 용
단독주 택용지	2020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층 이하(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110	단 독
	2022	단독주택 용지(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 ·상 동			
연립주 택용지	'97 ~ 2000	동당 건축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120	연 립
	2001 ~ 2019	동당 건축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포함)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020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단지형 연립주택용지 포함)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구 분		법	위	CODE	기재방법
주 거 용				100	주 거 용
다세대 주택 용지	'97 ~ 2011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130	다 세 대
	2012 ~ 2019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의2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용지와「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용지 포함)		130	다 세 대
	2020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2개 이상의 동을 지하차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용지와「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원룸형 주택용지 포함)		130	다 세 대
아파트 용지	'97 ~ 2006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용지		140	아 파 트
	2007 ~ 2020	5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2013 ~ 2020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주거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150	주거나지
주거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160	주거기타
상업·업무용				200	상업·업무용
상 업 용 지	'97 ~ 2023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유치원,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 '98~2011년은 유치원이 삭제되어 주거기타·상업기타로 분류함		210	상 업 용
	2024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유치원,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전기차충전소(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			

● VII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구 분	범 위	CODE	기재방법
상업·업무용		200	상업·업무용
업 무 용 지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한다.	220	업 무 용
상업·업무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230	상업나지
상업용기타 ※2002년에 상업·업무용기타 로 개정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주상용건물(2002년 추가) ,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240	상업기타
주·상복합용		300	
주·상 복합용지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310	주상용
주·상 복합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320	주상나지
주·상 복합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 (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330	주상기타
공 업 용		400	
공업용지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한다.	410	공 업 용
공업용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420	공업나지

구 분	법	위	CODE	기재방법
공 업 용			400	
공업용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 시설 (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430	공업기타
태양광 발전소 부지 (2019년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따른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주변장치 등으로 구성된 일체의 토지 ※ 공장 등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440	태양광
전			500	
전	'97 ~ 2003 '2004 ~ 2018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제외한다)·약초·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510	전
과수원	'97 ~ 2003 '2004 ~ 2018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사과·배·밤·호도·곶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520	과수원
농업용 창고	'2017 ~ 2018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530	전창고
축사	'2017 ~ 2018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돈사·계사·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540	전축사
전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550	전 기타

● VII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구 분		범 위	CODE	기재방법
답			600	
답	'97 ~ 2003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610	답
	2004 ~ 2018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농업 용창고	2017 ~ 2018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620	답창고
축사	2017 ~ 2018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돈사·계사·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630	답축사
답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640	답 기타
임 야			700	
조 림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710	조 림
자연림		자연상태의 임야	720	자 연 림
토지임야 (토 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730	토지임야
목장용 지	'97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740	목장용지
	'98 ~ '99	낙농업을 목적으로 「초지법」 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였거나, 「초지법」 시행이전에 임의개간한 토지로서 초식가축 사육에 사용하는 토지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한다. ('98년 신설)		
	2000 ~ 2003	축산업을 목적으로 「초지법」 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였거나, 「초지법」 시행이전에 임의개간한 토지로서 초식가축 사육에 사용하는 토지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구 분		범 위	CODE	기재방법
임 야			700	
목장 용지	2000 ~ 2003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답인 축사 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로 조사한다.	740	목장용지
	2004 ~ 2018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 한다. * 지적공부상 ----- 조사한다.		
임야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750	임야기타
특 수 토 지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800	
광천지	'97 ~ 2003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810	광 천 지
	2004 ~ 2018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 제외한다.		
광업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820	광업용지
염 전	'97 ~ 2003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830	염 전
	2004 ~ 2018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831	양어·양식
양식장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물고기나 해조, 버섯 따위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번식시키는 곳		

● VII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구 분		법	위	CODE	기재방법
특 수 토 지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800	
유원지	'97 ~ 2002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840	유 원 지
	2003 ~ 2018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토지와 그 부속토지			
공원 묘지	'97 ~ 2001	사설공원묘지에 한한다.		850	공원묘지
	2002 ~ 2018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법」 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에 한한다.			
골프장	골프장	'97 ~ 2013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60	골프장
		회원제 대중제 간이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860	회원제
	2013 ~ 2019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861	대중제
	간이골프장업은 각 홀의 부지면적이 13,000㎡를 초과하고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82	간이	
회원제 대중제 간이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860	회원제	
		2020 ~ 2023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861	대중제
	간이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862	간이	
	2024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고 경영하는 골프장 부지	860	골프장	
스키장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70	스키장		
경마장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80	경마장		

구 분		범 위	CODE	기재방법
	콘도미니엄 (2011년 추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위해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91	콘도
	여객자동차 터미널 (2009~20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아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공영터미널 또는 공용터미널의 부지. 다만,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지역여건 및 도로교통의 변경등으로 인해 당초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가격균형 제고를 위한 특수토지로서의 선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공영터미널중 단순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부지는 특수토지 선정에서 제외	890	여객
	공항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 부지	892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자동차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주변에 승객과 운전자의 휴식, 차량의 정비등을 위한 편의시설 부지	893	휴게소
발전소	수력	물이 갖는 위치에너지를 수차의 기계에너지로 바꾸어 그것을 발전기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방식을 사용하는 발전소	895	발전소
	화력	석탄 또는 석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기관에 의하여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발전소		
	원자력	원자핵이 붕괴할 때 생기는 열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전기를 얻는 발전소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호)	896	물류
	특수토지 기타	*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 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다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주유소,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등은 상업용으로 조사한다.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899	특수기타
	공공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900	

● VII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구 분		범 위	CODE	기재방법
도로 등	'97 ~ 2002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910	도로 등
	2003 ~ 2020	도로(사도 포함), 철도, 녹지, 수도, 공동구		
하천 등	'97 ~ 2017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등)	920	하천 등
	2018 ~ 2020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공원 등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930	공원 등
운동장 등	'97 ~ '99	운동장, 광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940	운동장 등
	2000 ~ 2002	운동장, 광장		
	2003 ~ 2020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주차장	'97 ~ '99	주차장, 정류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950	주차장
	2000 ~ 2002	주차장, 정류장		
	2003 ~ 2018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위험시설	'97 ~ 2002	위험시설(변전소, 송전탑, 송유관, 가스 및 유류저장시설 등)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960	위험시설
	2003 ~ 2018	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구 분		범 위	CODE	기재방법
유해 및 혐오 시설	'97 ~ '99	화장장,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폐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도살장 등(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970	유해·혐오 시설
	2000 ~ 2001	화장장,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폐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도살장 등		
	2002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 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쓰레기처리장, 폐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도살장 등		
유해 및 혐오 시설	2003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 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970	유해·혐오 시설
	2004 ~ 2005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 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2006 ~ 2018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기 타	'97 ~ 2019		990	기타
	2020	'일반토지(주거,상업,주상,공업,전,담,임야)', '특수토지', '공공용지 등'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미분류 토지	990	기타

나. 지형지세 : 고 저(16)

연 도	내 용
'89년	평지 고지 및 저지 - 간선도로 기준 구릉지 - 지형의 굴곡이 있는 지역 계단식 완경사지 - 경사도 15°미만 급경사지 - 경사도 25°이상 보통경사지 - 경사도 15°이상 25°미만
'90년	계단식 - “논”의 경우
'91년	구릉지, 계단식, 보통경사지를 삭제 완경사지 - 경사도 15°미만에서 이하로 변경 급경사지 - 경사도 15°초과로 변경 평지, 고지 및 저지 - 변경사항 없음 완경사지 - 경사도 15°이하인 경우 급경사지 - 경사도 15°초과한 경우
'92년	① 지세는 간선도로와 비교하여 다음의 유형으로 기재한다(신설). ① 저지 - 간선도로면 보다 낮음 ② 평지 - 간선도로와 높이가 비슷한 수준 ③ 완경사지 - 도로보다 높고 경사도 15°이하인 경우(구릉지 포함) ④ 급경사지 - 도로보다 높고 경사도 15°초과한 경우 ⑤ 고지 - 급경사 이상의 높은 지대(신설)
'93년	변경사항 없음
'94년	완경사 및 급경사 판단시 “도로보다 높고”를 “간선도로보다 높고”로 변경
'95년	① '92년 ①항을 “토지의 지세(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주위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다음의 유형으로 기재한다”로 변경 ㉠ 저지, 평지, 고지는 변경사항 없음 ③ 완경사지 - 경사도가 15°이하인 경우(구릉지 포함) ④ 급경사지 -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연 도	내 용
'96년	㉠ '92년 ㉠항을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한다”로 변경 ① 저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② 평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한 지대의 토지 ③ 완경사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구릉지 포함” 삭제) ④ 급경사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⑤ 고지 - 급경사 이상의 높은 지대의 토지(변경없음)
'97년	② 평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로 변경 ⑤ 고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로 변경
'98년	변경사항 없음
'99년	㉠ '96년 ㉠항을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한다”로 변경
2000년~ 2020년	변경사항 없음
2021년	조사의 정확성 등을 위해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되,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경사도(측량자료 또는 수치지형도 등 기준)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
2022년~ 2023년	변경사항 없음
2024년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한다”는 내용 삭제하여 간선도로 기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삭제

다. 지형지세 : 형 상(17)

연 도	형상의 구분(토지의 모양은 다음 유형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	
'89년~'90년	정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부정형으로 구분	
'91년	위 형상의 자루형 신설	
'92년	장방형을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으로 구분	
	삼각형을 삼각형과 역삼각형으로 구분	
	각 형상에 대한 설명 부기	
	정방형	·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
	가로장방형	·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세로장방형	·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제형	·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삼각형	·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향하고 있는 토지	
역삼각형	· 삼각형 토지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향하고 있는 토지	
부정형	·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자루형	· 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93년~'94년	정방형을 양변의 길이 비율이 1 : 1.3 이하인 토지로 정함	
'95년	정방형을 “정사각형으로서 긴변과 짧은변의 길이가 비슷한 토지”로 변경	
'96년	정방형을 양변의 길이 비율이 1 : 1.1 내외인 토지로 정함	
'97년	제형을 사다리형으로 명칭 변경	
'98년~'99년	변경사항 없음	
2000년	변형사다리형은 사다리형으로, 역사다리형은 역삼각형 토지로 봄	
2001년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인접도로방향으로 조사함. 다만, 둘 이상의 도로가 인접한 경우 주된 도로방향을 기준으로 조사	
2002년~2011년	변경사항 없음	
2016년~2016년	사다리형은 변형사다리형, 다각형의 불규칙한 형상이나 그로 인하여 최유효이용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토지로 정의함 부정형중 다각형의 정의 수정	
2017년~2018년	형상 판단시 시군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2019년~2020년	변경사항 없음	
2021년	형상 세부특성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이 우려되는 바, 삼각형 및 역삼각형을 삭제하되, 사다리·부정형·자루형 정의를 다소 변경함	
	정방형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가로장방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세로장방형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사다리형	사다리꼴(변형사다리꼴 포함) 모양의 토지
	부 정 형	불규칙한 형상 또는 삼각형 토지 중 최소외접직사각형 기준 1/3 이상의 면적손실이 발생한 토지
자 루 형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겼거나 역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2022년~2024년	변경사항 없음	

라. 지형지세 : 방 위(18)

연 도	내 용
'89년	① 남향, 남동, 남서, 동향, 서향, 북향, 북동, 북서의 8방위로 기재 ② 대지와 임야의 경우만 표시
'90년	①,② 상동 ③ 대지의 경우는 지적도상 도로를 기준으로 표시함 ④ 임야의 경우는 경사방향으로 표시함
'91년	①,②,③,④ 상동
'92년	① 표준지 평가보고서상의 8방위로 표시(결과는 같음) ② 상동 ③ 대지의 경우는 진입로(대문)를 기준으로 표시 ④ 상동
'93년	① 방위는 표준지 평가보고서의 “지리적위치” 표시 예와 같이 8방위로 표시한다. ②,③,④ 상동
'94년	①,② 상동 ③ 대지의 경우는 진입로(대문) 또는 건물의 방향을 기준으로 표시 ④ 상동
'95년	① 상동 ② 방위는 토지이용상황(토지용도)이 주거용, 임야의 경우에만 표시 ③ 주거용은 주된 접면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로를 기준으로 한다. ④ 상동
'96년	상동
'97년	상동
'98년	상동
'99년	①,②,③ 상동 ④ 임야는 경사방향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인근 임야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주된 경사방향이라고 판단되는 방위를 조사하여 기재한다.
2000년~2024년	변경사항 없음

마. 도로조건 : 도로접면(20)

연 도	내 용		
'89년	① 도시계획구역과 비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 ② 사도에 관한 도로구분이 있었음 ③ 소로를 4m 이상 12m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④ 맹지에 관한 도로구분이 없음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94 510 609 741">도시계획구역</td> <td data-bbox="609 510 1283 741"> 광로(폭 40m 이상) 대로(폭 25m 이상 - 40m 미만) 중로(폭 12m 이상 - 25m 미만) 소로(폭 4m 이상 - 12m 미만) 세로(폭 4m 미만) 사도 </td> </tr> </table>	도시계획구역	광로(폭 40m 이상) 대로(폭 25m 이상 - 40m 미만) 중로(폭 12m 이상 - 25m 미만) 소로(폭 4m 이상 - 12m 미만) 세로(폭 4m 미만) 사도
	도시계획구역	광로(폭 40m 이상) 대로(폭 25m 이상 - 40m 미만) 중로(폭 12m 이상 - 25m 미만) 소로(폭 4m 이상 - 12m 미만) 세로(폭 4m 미만) 사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94 741 609 973">비도시계획구역</td> <td data-bbox="609 741 1283 973">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소로(폭 4m 이상) 농로(우마차, 경운기 이용정도의 도로) </td> </tr> </table>	비도시계획구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소로(폭 4m 이상) 농로(우마차, 경운기 이용정도의 도로)	
비도시계획구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소로(폭 4m 이상) 농로(우마차, 경운기 이용정도의 도로)		
'90년	'89년과 동일		
'91년	① 도로의 분류는 도로의 폭을 추정할 수 있는 도로차선을 기준으로 한다.(차선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도로폭에 따라 분류) ② 자전거전용도로나 버스전용 차선 등은 1차선으로 인정한다. ③ 건설공사중인 도로와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도 도로로 간주한다. ④ 종전, 도시계획구역과 비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 ⑤ 맹지에 대한 도로구분 신설(현재와 정의가 다름)		
	광 로 : 편도 6차선 이상(40m 이상) 대 로 : 편도 3차선 이상 5차선 이하(25 - 40m 미만) 중 로 : 편도 2차선(12- 25m 미만) 소 로 : 편도 1차선(6 - 12m 미만) 세 로 : 왕복 1차선 이하(6m 미만 도로 및 경운기 통과가 가능한 농로) 맹 지 : 지적도상 접근로가 없는 토지, 경운기 통과가 불가능한 도로, 사도로만 접근 할 수 있는 토지 고속국도 : 고속도로		

연 도	내 용
'92년	① 현재와 같은 12개 도로구분으로 변경. 다만, 광대한면은 편도3차선 이상, 중로한면은 편도 2차선 이상이라는 도로폭 이외의 제한이 있음 ②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함 ③ 종전의 광로와 대로를 통합하여 25m 이상 도로를 광대로로 함 ④ 도로구분중 고속국도 삭제 ⑤ '91년의 맹지 개념을 “리어카나 경운기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로 변경 ⑥ 광대로 또는 중로, 소로한면에 접하는 토지가 세로(불)에도 접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광대로 한면, 중로한면, 소로한면으로 봄
'93년	① 91년 ③항을 “건설공사중인 도로와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도 도로로 간주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로 변경
'94년	'93년과 변경사항 없음
'95년	① '91년 ①항을 “도로의 분류는 도로의 폭(인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로 변경 ② '94년까지 도로분류를 도로폭 외에 편도 몇차선 이상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함. 따라서 '91년 ②항의 내용은 필요없게 되었음 ③ '94년 ①항을 “건설공사중인 도로는 도로로 간주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로 변경함. 따라서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는 도로로 간주하지 아니함
'96년	① '95년 ①항을 “도로의 분류는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 부분은 제외한다”로 변경 ②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에정지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변이 부여된 경우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신설). ③ '95년까지는 소로를 6m 이상 12m 미만의 도로로 보았으나 '96년부터는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를 소로로 본다. ④ 세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소로인 계단도로는 소로로 본다(신설).
'97년	① 일단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를 1필지의 토지를 보고 토지특성(도로)을 조사하여 기재한다(신설). ② 동일노선의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조사한다(신설).
'98년	변경사항 없음
'99년	변경사항 없음

● VII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연 도	내 용
2000년	① '95년 ③항을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되는 도로와 건설공사 중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도로로 간주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도로로 보지 아니한다”로 변경 ② '92년부터 세로(불)과 맹지의 판단기준은 리어카나 경운기 통행 가능여부로 판단하여 왔으나, 2000년부터는 경운기의 통행 가능여부로만 판단함
2001년	① 이면가로획지를 각지로 판단하는 조항 신설 ② 준각지 판단기준 조항 신설
2002년	변경사항 없음
2003년	도로접면의 판단기준중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다만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함
2004년	도로접면의 판단기준중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인 표준지와 접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함
2005년~ 2011년	변경사항 없음
2016년~ 2017년	맹지의 정의 수정
2018년	보행자도로 조사기준 신설
2019년~ 2021년	변경사항 없음
2022년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사업지의 경우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의 부여 시점과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실공사(착공신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실공사를 의미함)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함
2023년	변경사항 없음
2024년	“도로접면을 판단함에 있어 주변의 도로접면 및 가격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변경

VIII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259
------------------	-----

VIII.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서울특별시	11000	동 작 구	11590
종 로 구	11110	관 약 구	11620
중 구	11140	서 초 구	11650
용 산 구	11170	강 남 구	11680
성 동 구	11200	송 파 구	11710
광 진 구	11215	강 동 구	11740
동대문구	11230	부산광역시	26000
중 랑 구	11260	중 구	26110
성 북 구	11290	서 구	26140
강 북 구	11305	동 구	26170
도 봉 구	11320	영 도 구	26200
노 원 구	11350	부산진구	26230
은 평 구	11380	동 래 구	26260
서대문구	11410	남 구	26290
마 포 구	11440	북 구	26320
양 천 구	11470	해운대구	26350
강 서 구	11500	사 하 구	26380
구 로 구	11530	금 정 구	26410
금 천 구	11545	강 서 구	26440
영등포구	11560	연 제 구	26470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수 영 구	26500	광주광역시	29000
사 상 구	26530	동 구	29110
기 장 군	26710	서 구	29140
대구광역시	27000	남 구	29155
중 구	27110	북 구	29170
동 구	27140	광 산 구	29200
서 구	27170	대전광역시	30000
남 구	27200	동 구	30110
북 구	27230	중 구	30140
수 성 구	27260	서 구	30170
달 서 구	27290	유 성 구	30200
달 성 군	27710	대 덕 구	30230
군 위 군	27720	울산광역시	31000
인천광역시	28000	중 구	31110
중 구	28110	남 구	31140
동 구	28140	동 구	31170
미추홀구	28177	북 구	31200
연 수 구	28185	울 주 군	31710
남 동 구	28200	세종특별자치시	36110
부 평 구	28237	경 기 도	41000
계 양 구	28245	수원장안구	41111
서 구	28260	수원권선구	41113
강 화 군	28710	수원팔달구	41115
웅 진 군	28720	수원영통구	41117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성남수정구	41131	용인처인구	41461
성남중원구	41133	용인기흥구	41463
성남분당구	41135	용인수지구	41465
의정부시	41150	파 주 시	41480
안양만안구	41171	이 천 시	41500
안양동안구	41173	안 성 시	41550
부천시	41190	김 포 시	41570
광 명 시	41210	화 성 시	41590
평 택 시	41220	광 주 시	41610
동두천시	41250	양 주 시	41630
안산시 상록구	41271	포 천 시	41650
안산시 단원구	41273	여 주 시	41670
고양덕양구	41281	연 천 군	41800
고양일산동구	41285	가 평 군	41820
고양일산서구	41287	양 평 군	41830
과 천 시	41290	충청북도	43000
구 리 시	41310	청주상당구	43111
남양주시	41360	청주서원구	43112
오 산 시	41370	청주흥덕구	43113
시 흥 시	41390	청주청원구	43114
군 포 시	41410	충 주 시	43130
의 왕 시	41430	제 천 시	43150
하 남 시	41450	보 은 군	43720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옥 천 군	43730	예 산 군	44810
영 동 군	43740	태 안 군	44825
증 평 군	43745	전라북도	45000
진 천 군	43750	전주완산구	45111
괴 산 군	43760	전주덕진구	45113
음 성 군	43770	군 산 시	45130
단 양 군	43800	익 산 시	45140
충청남도	44000	정 읍 시	45180
천안동남구	44131	남 원 시	45190
천안서북구	44133	김 제 시	45210
공 주 시	44150	완 주 군	45710
보 령 시	44180	진 안 군	45720
아 산 시	44200	무 주 군	45730
서 산 시	44210	장 수 군	45740
논 산 시	44230	임 실 군	45750
계 룡 시	44250	순 창 군	45770
당 진 시	44270	고 창 군	45790
금 산 군	44710	부 안 군	45800
부 여 군	44760	전라남도	46000
서 천 군	44770	목 포 시	46110
청 양 군	44790	여 수 시	46130
흥 성 군	44800	순 천 시	46150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나 주 시	46170	김 천 시	47150
광 양 시	46230	안 동 시	47170
담 양 군	46710	구 미 시	47190
곡 성 군	46720	영 주 시	47210
구 례 군	46730	영 천 시	47230
고 흥 군	46770	상 주 시	47250
보 성 군	46780	문 경 시	47280
화 순 군	46790	경 산 시	47290
장 흥 군	46800	의 성 군	47730
강 진 군	46810	청 송 군	47750
해 남 군	46820	영 양 군	47760
영 암 군	46830	영 덕 군	47770
무 안 군	46840	청 도 군	47820
함 평 군	46860	고 령 군	47830
영 광 군	46870	성 주 군	47840
장 성 군	46880	철 곡 군	47850
완 도 군	46890	예 천 군	47900
진 도 군	46900	봉 화 군	47920
신 안 군	46910	울 진 군	47930
경상북도	47000	울 릉 군	47940
포항남구	47111	경상남도	48000
포항북구	47113	창원의창구	48121
경 주 시	47130	창원성산구	48123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창원마산합포구	48125	제 주 시	50110
창원마산회원구	48127	서귀포시	50130
창원진해구	48129	강원특별자치도	51000
진 주 시	48170	춘 천 시	51110
통 영 시	48220	원 주 시	51130
사 천 시	48240	강 릉 시	51150
김 해 시	48250	동 해 시	51170
밀 양 시	48270	태 백 시	51190
거 제 시	48310	속 초 시	51210
양 산 시	48330	삼 척 시	51230
의 령 군	48720	홍 천 군	51720
함 안 군	48730	횡 성 군	51730
창 녕 군	48740	영 월 군	51750
고 성 군	48820	평 창 군	51760
남 해 군	48840	정 선 군	51770
하 동 군	48850	철 원 군	51780
산 청 군	48860	화 천 군	51790
함 양 군	48870	양 구 군	51800
거 창 군	48880	인 제 군	51810
합 천 군	48890	고 성 군	51820
제주특별자치도	50000	양 양 군	51830

IX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2023년 시·군·구별 표준지 수



2023년 시·군·구별 표준지 수	5
--------------------------	---

2023년 시·군·구별 표준지 수

(전국 560,000필지)

시·도	시·군·구	'23 표준지 수	시·도	시·군·구	'23 표준지 수
서울(25)	종로구	2,026	서울(25)	서초구	1,376
	중구	1,645		강남구	1,348
	용산구	1,220		송파구	1,065
	성동구	950		강동구	1,023
	광진구	1,074		중구	954
	동대문구	1,375	부산(16)	서구	1,143
	중랑구	1,136		동구	1,354
	성북구	1,955		영도구	1,134
	강북구	1,290		부산진구	2,109
	도봉구	780		동래구	1,088
	노원구	783		남구	1,159
	은평구	1,435		북구	839
	서대문구	1,363		해운대구	1,271
	마포구	1,343		사하구	1,177
	양천구	777		금정구	1,312
	강서구	1,304		강서구	1,817
	구로구	1,116		연제구	803
	금천구	751		수영구	689
	영등포구	1,248		사상구	842
	동작구	1,204		기장군	1,798
	관악구	1,337		대구(8)	중구

시·도	시·군·구	'23 표준지수	시·도	시·군·구	'23 표준지수
대구(8)	동구	2,622	대전(5)	서구	1,549
	서구	1,262		유성구	1,519
	남구	1,000		대덕구	1,092
	북구	1,807	울산(5)	중구	1,285
	수성구	1,516		남구	1,651
	달서구	1,484		동구	687
	달성군	2,938		북구	1,399
				울주군	4,240
인천(10)	종구	1,535	세종(1)	세종시	2,594
	동구	562		수원장안구	735
	미추홀구	1,709	경기(42)	수원권선구	884
	연수구	476		수원팔달구	773
	남동구	1,245		수원영통구	358
	부평구	1,312		성남수정구	1,041
	계양구	720		성남중원구	717
	서구	1,405		성남분당구	668
	강화군	2,841		의정부시	1,216
	옹진군	1,084		안양만안구	688
광주(5)	동구	1,474		안양동안구	441
	서구	1,258		부천시	1,502
	남구	1,379	광명시	823	
	북구	2,515	평택시	5,053	
	광산구	2,780	동두천시	1,002	
대전(5)	동구	1,855			
	중구	1,592			

시·도	시·군·구	'23 표준지수	시·도	시·군·구	'23 표준지수	
경기(42)	안산상록구	903	경기(42)	여주시	2,910	
	안산단원구	978		연천군	2,078	
	고양덕양구	1,495		가평군	2,318	
	고양일산동구	690		양평군	3,590	
	고양일산서구	488		춘천시	3,488	
	과천시	272	강원(18)	원주시	3,457	
	구리시	503		강릉시	3,652	
	남양주시	2,888		동해시	1,216	
	오산시	659		태백시	739	
	시흥시	1,403		속초시	973	
	군포시	555		삼척시	2,457	
	의왕시	519		홍천군	2,731	
	하남시	895		횡성군	2,175	
	용인처인구	2,825		영월군	2,136	
	용인기흥구	703		평창군	2,248	
	용인수지구	399		정선군	2,106	
	파주시	3,827		철원군	2,124	
	이천시	3,113		화천군	1,071	
	안성시	3,443		양구군	1,176	
	김포시	2,276		인제군	1,458	
	화성시	5,424		고성군	1,477	
	광주시	2,456		양양군	1,716	
	양주시	2,231		충북(14)	청주상당구	2,130
	포천시	3,398			청주서원구	1,284

시·도	시·군·구	'23 표준지수	시·도	시·군·구	'23 표준지수	
충북(14)	청주흥덕구	1,781	충남(16)	청양군	1,961	
	청주청원구	1,755		홍성군	3,151	
	충주시	4,019		예산군	2,777	
	제천시	2,889		태안군	2,800	
	보은군	2,063	전북(15)	전주완산구	1,864	
	옥천군	2,407		전주덕진구	1,882	
	영동군	2,814		군산시	3,670	
	증평군	728		익산시	5,097	
	진천군	1,805		정읍시	4,758	
	괴산군	2,321		남원시	3,958	
	음성군	2,538		김제시	3,946	
	단양군	1,829		완주군	3,062	
	충남(16)	천안동남구		2,373	진안군	2,496
		천안서북구		1,686	무주군	2,137
공주시		3,853		장수군	2,038	
보령시		3,437	임실군	2,515		
아산시		3,976	순창군	2,096		
서산시		4,132	고창군	3,602		
논산시		3,569	부안군	3,257		
계룡시		330	전남(22)	목포시	1,727	
당진시		3,889		여수시	5,145	
금산군		2,573		순천시	5,325	
부여군		3,085		나주시	4,560	
서천군	2,534	광양시		3,039		

시·도	시·군·구	'23 표준지수	시·도	시·군·구	'23 표준지수	
전남(22)	담양군	2,601	경북(24)	청도군	3,335	
	곡성군	2,386		고령군	1,942	
	구례군	1,843		성주군	2,672	
	고흥군	4,478		칠곡군	2,353	
	보성군	3,408		예천군	2,863	
	화순군	3,394		봉화군	2,299	
	장흥군	2,916		울진군	2,624	
	강진군	2,450		울릉군	382	
	해남군	4,479		창원의창구	1,932	
	영암군	3,281		창원성산구	654	
	무안군	3,128	창원마산합포구	2,945		
	함평군	2,424	창원마산회원구	1,274		
	영광군	2,829	창원진해구	1,397		
	장성군	2,777	진주시	5,531		
	완도군	3,027	통영시	2,893		
	진도군	2,327	사천시	3,878		
	신안군	3,611	김해시	4,196		
	경북(24)	포항남구	2,995	경남(22)	밀양시	4,546
		포항북구	3,653		거제시	3,231
		경주시	6,695		양산시	2,662
		김천시	4,684		의령군	2,587
		안동시	5,430		함안군	2,925
구미시		3,357	창녕군		3,161	
영주시		2,943	고성군		3,477	
영천시		4,331	남해군		3,107	
상주시		4,868	하동군		3,698	
문경시		3,025	산청군		2,682	
경산시		2,891	함양군		2,755	
군위군		2,371	거창군		3,423	
의성군		3,968	합천군		4,185	
청송군		2,068	제주시		6,590	
영양군		1,657	서귀포시	4,666		
영덕군		2,420	제주(2)			

※ 2024년 표준지 수는 시·군·구별 표준지 수 조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X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22, '23, '24)



1.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275
2. 특수토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292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2022, 2023, 2024)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서울	종로구	경일	노재수	가교	김우현	경일	노재수	대한	이상협	경일	노재수	대한	이상협
		하나	진우성	미래새한	이계심	사무소	홍진화	미래새한	이계심	하나	이영은	삼창	이석희
		나라	안기원	대화	김도윤	제일	김겸	대화	김도윤	제일	김겸	대화	김도윤
	중구	통일	최현섭	미래새한	양재영	통일	최현섭	미래새한	양재영	통일	최현섭	미래새한	양재영
		대화	김경훈	태평양	최혜민	대화	김경훈	태평양	최혜민	대화	김경훈	동인	김형규
		삼일	정신근	나라	김정혜	가람	박병우	나라	김정혜	가람	박병우	나라	김정혜
	용산구	대한	홍성구	미래새한	정채선	제일	안영	미래새한	정채선	대화	송종용	미래새한	정채선
		프라임	정은경	가온	권종춘	프라임	정은경	가온	권종춘	하나	최원준	가온	권종춘
	성동구	제일	김철홍	사무소	구수미	제일	김철홍	신진	이영훈	제일	김철홍	신진	이대주
	광진구	경일	백은경	가람	정희진	경일	백은경	공감	김진명	경일	백은경	공감	김진명
		중앙	이승열	사무소	최연순	중앙	이승열	사무소	최연순	중앙	이승열	사무소	최연순
	동대문구	미래새한	정인국	하나	노정현	미래새한	정인국	하나	노정현	미래새한	정인국	하나	노정현
		가람	조윤수	가온	김만진	가람	조윤수	가온	김만진	가람	조윤수	가온	김만진
	중랑구	가온	김태영	사무소	송충섭	대한	김정환	사무소	송충섭	대한	서현아	사무소	송충섭
		대화	조기군	나라	서동환	대화	조기군	대한	서현아	대화	조기군	대한	김정환
	성북구	가람	이태관	사무소	윤성희	가람	이태관	사무소	윤성희	중앙	박준채	사무소	윤성희
		대한	서해룡	태평양	신민우	나라	박진아	태평양	신민우	나라	박진아	태평양	신민우
	강북구	삼일	이이노	사무소	오현식	삼일	이이노	태평양	김윤지	삼일	이이노	태평양	김윤지
		정일	강호철	제일	임건중	정일	강호철	삼창	이정훈	세비알이 현	최미선	삼창	이정훈
	도봉구	대한	김기전	가람	이지수	태평양	임수연	가람	이지수	태평양	임수연	가람	양한승
노원구	나라	김정원	사무소	김재화	가온	최용희	사무소	김재화	가온	최용희	사무소	김재화	
은평구	가람	이경훈	사무소	하고운	가람	이경훈	사무소	박흥기	가람	이경훈	사무소	박흥기	
	대화	김종목	미래새한	양범식	대화	김종목	하나	강보미	삼창	정재엽	하나	강보미	
서대문구	사무소	황순창	나라	김향섭	사무소	황순창	통일	문성우	사무소	강선호	통일	문성우	
	대한	유종근	대화	이영은	대한	유종근	대화	이영은	대한	유종근	대화	이영은	
마포구	통일	윤영수	태평양	김승미	통일	윤영수	대한	이근호	통일	윤영수	대한	이근호	
	명문	신순숙	제일	김기윤	명문	신순숙	제일	허인영	명문	신순숙	제일	허인영	
양천구	하나	김은	삼창	정재엽	하나	김은	나라	정유진	하나	김은	나라	정유진	
강서구	중앙	손상혁	비결	곽동순	중앙	손상혁	태백	김우현	중앙	손상혁	에이원	이윤호	
	대일	서이삭	통일	문성우	대일	서이삭	가온	이상진	대일	서이삭	가온	이상진	
구로구	감동	이헌범	중앙	권대용	감동	이헌범	중앙	권대용	감동	이헌범	중앙	권대용	
	삼창	김상호	대일	강훈재	삼창	김상호	나라	원효식	삼창	김상호	나라	원효식	
금천구	삼창	김지윤	미래새한	이용현	삼창	김지윤	미래새한	이용현	더밸류	천은영	태평양	최용락	
영등포구	리얼티뱅크	금선영	하나	김정주	리얼티뱅크	금선영	하나	김정주	리얼티뱅크	금선영	대한	박동훈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서울	영등포구	삼일	최미경	대한	고병균	삼일	최미경	대한	고병균	미래새한	김정언	대화	조성국
	동작구	가온	이희수	제일	오윤숙	가온	이희수	정일	오창윤	가온	이희수	정일	오창윤
		나라	정주연	삼창	이경선	정원	신백호	삼창	이경선	정원	서윤선	미래새한	손지형
	관악구	경일	문창현	하나	유동연	중앙	고나연	태평양	최진혁	중앙	고나연	미래새한	유정근
		가온	배태훈	나라	이윤경	가온	배태훈	대한	김종현	가온	배태훈	대한	김종현
	서초구	대한	권현영	가람	유미리	대한	권현영	가람	유미리	태평양	류인혜	가람	유미리
		대일	이상윤	나라	황선영	대일	김희진	가온	김동기	나라	이상주	가온	김동기
	강남구	나라	박일훈	제일	김영순	나라	박일훈	대상	김금주	나라	박일훈	대상	김금주
대화		김예린	통일	이정기	대화	김예린	제일	김영순	대화	김예린	제일	김영순	
송파구	하나	최정곤	미래새한	이용삼	하나	최정곤	미래새한	이용삼	하나	최정곤	미래새한	이용삼	
	가온	이동수	대일	이성원	가온	이동수	대일	이성원	대일	권정희	경일	오영찬	
강동구	대일	이찬미	삼창	유정욱	대일	이찬미	삼창	유정욱	대일	이찬미	삼창	유정욱	
					가람	한창수	에이원	최상훈	가람	한창수	태백	김보성	
부산	중구	미래새한	김문웅	하나	정성원	대일	안승길	하나	정성원	대일	안승길	명문	노호원
	서구	가온	전태일	가람	신명호	가온	전태일	가람	신명호	가온	전태일	가람	신명호
		사무소	류상훈	가람	박숙경	사무소	류상훈	가람	박숙경	사무소	류상훈	가람	박숙경
	동구	대화	한기섭	하나	안영준	대화	한기섭	하나	안영준	나라	장제원	태평양	이대현
		가온	김태민	나라	윤성근	가온	김태민	경일	최병철	가온	김태민	신한	김종규
	영도구	삼창	추우성	대화	송지근	삼창	추우성	대화	송지근	삼창	추우성	대일	김종민
		경일	박윤탁	가온	김영진	경일	박윤탁	가온	김영진	대화	손규원	미래새한	배은빈
	부산진구	대일	황선용	중앙	조재완	대일	황선용	중앙	조재완	대일	황선용	중앙	조재완
		프라임	이인호	대화	한동욱	프라임	이인호	대화	한동욱	프라임	이인호	대화	한동욱
		사무소	이주영	대일	하성호	사무소	이주영	대일	하성호	에이원	신채익	대일	하성호
	동래구	대한	손규원	나라	서호근	대한	손규원	나라	서호근	대한	이민지	나라	서호근
		미래새한	구기욱	태평양	김덕욱	미래새한	구기욱	태평양	김현진	미래새한	구기욱	태평양	김현진
	남구	리얼티뱅크	권순봉	나라	손기석	대화	정경운	나라	손기석	대화	정경운	하나	손준영
		나라	황재린	대일	김용현	사무소	서찬교	대일	김용현	통일	서찬교	대일	김용현
	북구	대일	김종민	삼창	정우영	대일	김종민	삼창	정우영	대화	조재석	삼창	정우영
	해운대구	가온	김재욱	미래새한	이건호	가온	김재욱	에이원	김경도	미래새한	전종문	에이원	김경도
경일		황민선	삼일	나기영	경일	황민선	삼일	나기영	나라	윤성근	삼일	나기영	
사하구	대한	박찬용	대화	손인석	대한	박찬용	삼일	신종현	가온	김영진	삼일	신종현	
	중앙	소영수	하나	송민수	중앙	소영수	하나	송민수	중앙	소영수	하나	송민수	
금정구	나라	김규식	대한	최태윤	나라	김규식	대한	최태윤	나라	김규식	대한	최태윤	
	대한	현태승	삼창	장현수	대한	현태승	사무소	이동진	대한	현태승	사무소	이동진	
강서구	제일	조창호	가온	최수원	제일	조창호	삼창	정화생	제일	조창호	삼창	정화생	
	삼창	천주명	대일	안승길	삼창	천주명	제일	김문주	삼창	천주명	제일	김문주	
연제구	경일	윤서현	대화	황수진	경일	윤서현	대화	황수진	가온	정승훈	대일	성문기	
수영구	하나	최영호	삼일	이연종	하나	최영호	삼일	이연종	하나	최영호	삼일	이연종	

X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부산	사상구	미래새한	민광선	중앙	전용우	미래새한	민광선	중앙	전용우	삼성	신성호	중앙	전용우
	기장군	제일	이상근	사무소	유소희	제일	이상근	사무소	유소희	제일	이상근	사무소	유소희
		가람	이용훈	삼일	김영훈	가람	이용훈	동인	임준표	가람	이용훈	동인	임준표
대구	중구	대한	권창현	경일	이준석	대한	권창현	경일	이준석	대한	권창현	경일	이준석
		미래새한	김영철	태평양	권기란	미래새한	김영철	명문	최윤도	미래새한	김영철	명문	최윤도
	동구	가람	조현필	대한	이영수	나라	길민수	대한	이영수	나라	길민수	대한	이영수
		대일	조재익	제일	차영문	대일	조재익	제일	차영문	나라	김기석	제일	차영문
		중앙	최귀자	사무소	이창한	중앙	최귀자	사무소	이창한	중앙	최귀자	대일	채지혜
	서구	나라	김기석	가온	김봉식	태평양	박두양	가온	김봉식	태평양	박두양	가온	김봉식
		대화	김근태	제일	황희	대화	김근태	제일	황희	세종	이대하	제일	황희
	남구	태평양	강민우	미래새한	최국진	에이원	현영대	미래새한	최국진	대일	조재익	미래새한	최국진
	북구	프라임	조혜인	가온	정재웅	프라임	조혜인	가온	정재웅	프라임	조혜인	가온	정재웅
		태평양	홍수영	나라	이상현	나라	정대근	미래새한	두휘규	나라	정대근	미래새한	두휘규
	수성구	대일	이종수	대화	박진욱	대일	이종수	대화	박진욱	대일	이종수	대화	박진욱
		가람	박규창	대일	채지혜	가람	박규창	대일	채지혜	가람	조현필	제일	김현태
	달서구	대한	박정태	정일	강병준	대한	박정태	정일	강병준	대화	박준우	대한	강병준
		대일	이은영	통일	김민정	대일	이은영	통일	김민정	대일	이은영	통일	김민정
	달성군	제일	현찬호	가람	장혁수	제일	현찬호	가람	장혁수	제일	현찬호	가람	장혁수
삼창		이상규	하나	신윤섭	삼창	이상규	하나	신윤섭	삼창	이상규	하나	신윤섭	
나라		신동완	경일	정대한	나라	신동완	경일	정대한	나라	신동완	경일	정대한	
군위군										나라	정진욱	하나	심진수
										대화	박한동	사무소	변득규
										대일	김외석	세종	장용준
인천	중구	대한	박아람	나라	장동욱	하나	안미나	정원	임의순	하나	안미나	정원	임의순
		제일	김범중	가온	정용석	제일	김범중	가온	정용석	정일	이희철	미래새한	박창서
	동구	제일	이기호	대일	정지영	태평양	김종현	나라	정성규	태평양	김종현	나라	정성규
		미추홀구	대화	정해웅	하나	안희성	가람	윤운근	하나	안희성	가람	윤운근	가온
	연수구	태평양	김종현	가교	이정식	제일	서은철	통일	이인수	제일	서은철	통일	이인수
		가람	정채윤	중앙	김동열	사무소	나유식	삼창	민경춘	감동	유광석	삼창	민경춘
	남동구	대화	원강희	미래새한	설덕진	대화	원강희	중앙	김연지	가온	강철	중앙	김연지
		대한	김현식	티앤비	임지현	대한	김현식	티앤비	임지현	대한	김현식	우솔	문서영
	부평구	대일	박창서	경일	손규희	대일	박창서	경일	손규희	태평양	신균	경일	손규희
		사무소	하종욱	대화	곽승공	사무소	하종욱	대화	곽승공	사무소	하종욱	대일	황용택
	계양구	나라	이주희	가온	조재정	명문	김응섭	가온	조재정	명문	김서진	대화	장철호
	서구	대화	배해경	퍼스트	김현수	대화	배해경	퍼스트	김현수	하나	유동연	퍼스트	김현수
대화		정원정	제일	이창호	동인	한진희	제일	이창호	동인	한진희	제일	이창호	
강화군	경일	오형엽	삼창	이상윤	경일	오형엽	삼창	이상윤	경일	오형엽	삼창	이상윤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인천	강화군	미래새한 대한	안연수 구성환	경일 프라임	정희재 박문수	미래새한 대한	안연수 구성환	중앙 프라임	한준영 박문수	가람 대한	김문석 구성환	중앙 프라임	한준영 박문수
	옹진군	제일	노승환	공감	조규장	제일	노승환	공감	조규장	제일	노승환	공감	여지훈
광주	동구	사무소 가람	김병복 정다운	나라 나라	김동철 김수민	사무소 경일	김병복 김동수	대화 가온	송정선 성재현	사무소 경일	김병복 김동수	대화 가온	송정선 성재현
	서구	나라 대화	양성현 장재원	태평양 경일	박진택 양호진	나라 가온	양성현 안만순	태평양 경일	박진택 양호진	나라 가온	양성현 홍진석	삼창 경일	김소희 양호진
	남구	삼창 대일	임종민 전상민	태평양 프라임	김진환 조용기	나라 대일	홍윤민 전상민	태평양 프라임	김진환 조용기	나라 대일	홍윤민 전상민	태평양 프라임	김진환 조용기
	북구	경일 퍼스트 제일	정만대 김명원 최명근	중앙 나라 하나	윤영천 황운선 이광호	미래새한 퍼스트 제일	정재원 김명원 최명근	중앙 경일 하나	윤영천 정만대 이광호	미래새한 삼창 제일	정재원 복지수 최명근	중앙 경일 하나	윤영천 정만대 이광호
	광산구	대화 태평양 나라	조국형 김세환 박진수	가온 미래새한 명문	홍진석 김동준 신재홍	대화 태평양 미래새한	조국형 김세환 김동준	가온 중앙 명문	박성인 김현진 신재홍	대화 태평양 미래새한	조국형 김세환 김동준	가온 세종 대상	박성인 류중현 김미
	대전	동구	대한 하나	신대철 이은영	중앙 나라	안경환 조정현	사무소 대일	이명진 이은영	중앙 나라	안경환 조정현	사무소 대일	이명진 이은영	통일 나라
중구	사무소 프라임	조은철 신동준	중앙 미래새한	이상은 최재현	사무소 프라임	조은철 신동준	중앙 미래새한	이상은 최재현	사무소 프라임	조은철 신동준	미래새한 대화	김문기 김하림	
서구	미래새한 대일	이응기 김종래	대한 삼일	김태환 이석환	미래새한 대일	이응기 김종래	대한 삼일	김태환 이석환	씨브 중앙	김태형 오춘환	대한 삼일	김태환 이석환	
유성구	하나 대화	이상식 김하림	가람 하나	문홍기 문제상	하나 삼일	이상식 이기영	가람 하나	문홍기 김주현	하나 삼일	이상식 이기영	가람 하나	문홍기 김주현	
대덕구	가람	송좌현	통일	윤영배	가람	송좌현	통일	윤영배	가람	송좌현	통일	윤영배	
울산	중구	통일 삼창	송영주 김명희	프라임 태평양	박인석 이재원	통일 삼창	송영주 김명희	프라임 태평양	박인석 이재원	대일 나라	송영주 문슬	프라임 태평양	박인석 이재원
	남구	대한 중앙	심용찬 김성경	삼창 삼창	정순영 권희진	대한 태평양	심용찬 김영기	삼창 삼창	정순영 권희진	대한 태평양	심용찬 김영기	삼창 삼창	정순영 권희진
	동구	가온	강형규	경일	이선	미래새한	박형문	경일	이선	미래새한	박형문	경일	이선
	북구	대한 리얼티뱅크	채영석 박홍규	하나 가온	김호권 고영균	대한 리얼티뱅크	채영석 박홍규	하나 태평양	김호권 이수언	대한 해인	채영석 이창우	하나 태평양	김호권 이수언
	울주군	삼창 가온 공감 태평양 대화	최동림 김정훈 김명기 김태의 이려건	대화 대한 중앙 미래새한 제일	신명진 문의선 최선웅 김성진 남공식	삼창 에이원 미래새한 태평양 대화	최동림 성백준 이상욱 김태의 이려건	대화 대한 중앙 미래새한 하나	신명진 문의선 최선웅 김성진 오광택	삼창 대화 미래새한 태평양 대화	최동림 문의선 이상욱 김태의 이려건	정일 가온 중앙 미래새한 하나	하우명 성백준 최선웅 김성진 오광택
세종	대일 삼창	김희진 이상훈	나라 태평양	최지수 최현욱	대일 삼창	허성범 이상훈	이화 경일	김소영 김용운	대일 삼창	허성범 이상훈	이화 동인	김소영 김용운	

X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세종	세종	대일	이예주	가람	서윤석	사무소	박창준	제일	박성현	사무소	박창준	제일	박성현
경기	수원장안구	제일	권주혁	감동	전갑호	제일	권주혁	감동	전갑호	제일	권주혁	감동	전갑호
	수원권선구	제일	김남균	경일	이기승	가람	곽재혁	경일	이기승	사무소	박성은	경일	이기승
	수원팔달구	통일	박순민	그린	박우철	통일	박순민	가람	김선진	통일	박순민	가람	김선진
	수원영통구	통일	박순민	그린	박우철	통일	박순민	가람	김선진	통일	박순민	가람	김선진
	성남수정구	하나	이지훈	삼창	양진규	하나	이지훈	삼창	양진규	가람	김주용	나라	정서헌
	성남중원구	나라	김언수	비결	박민호	나라	김언수	비결	박민호	나라	김언수	비결	박민호
	성남분당구	가람	김예은	가온	이승희	정원	이효춘	하나	배상섭	정원	이효춘	하나	배상섭
	의정부시	가온	조성식	제일	윤동훈	가온	조성식	제일	윤동훈	가온	조성식	대일	최승구
		통일	송태영	사무소	신정미	경일	고은경	감동	김화주	경일	고은경	감동	김화주
	안양만안구	삼일	송연경	나라	김기현	삼일	송연경	사무소	김현철	삼일	송연경	사무소	김현철
	안양동안구/과천시	정일	이혜란	하나	박찬영	정일	이혜란	하나	박찬영	정일	이혜란	하나	박찬영
	부천시	리얼뱅크	최규열	나라	김은지	대화	성현영	가람	오재속	대화	성현영	가람	오재속
		하나	김도현	사무소	김수경	하나	김도현	사무소	김수경	하나	김도현	사무소	김수경
	광명시	대화	남시현	대한	박민중	대화	남시현	대한	박민중	대화	남시현	대한	박민중
	평택시	가온	주정훈	통일	김용배	가온	주정훈	통일	김용성	가온	주정훈	통일	김용성
		가온	류별희	신원	강상득	가온	류별희	신원	강상득	가온	류별희	중앙	최락필
		태양	김지혜	미래새한	이석조	태양	김지혜	삼창	김동진	태양	김지혜	삼창	김동진
		태평양	김태영	가온	최미화	나라	최준석	가온	최미화	나라	최준석	가온	최미화
		삼창	최영미	사무소	정기인	삼창	최영미	사무소	정기인	신원	강상득	사무소	정기인
	중앙	김정민	태백	이주영	중앙	김정민	사무소	전제니	중앙	김정민	사무소	전제니	
동두천시	나라	두원	명문	김승철	나라	두원	명문	김승철	나라	두원	명문	김승철	
안산상록구	나라	김완옥	사무소	이석규	나라	김완옥	사무소	이석규	대화	박필희	사무소	이석규	
안산단원구	대화	전진우	삼창	이우철	대화	전진우	대일	임수민	써브	우종현	대일	임수민	
고양덕양구	중앙	김득중	대일	빈수창	미래새한	정윤재	대일	빈수창	미래새한	정윤재	대일	빈수창	
	대한	정광원	해민	이준택	중앙	김득중	해민	이준택	써브	최용석	통일	서성준	
고양일산동구	삼일	김동완	대한	우광지	대화	채승훈	태평양	박희배	대화	채승훈	태평양	박희배	
고양일산서구	나라	정현우	사무소	황동열	나라	정현우	대상	박준혁	나라	정현우	대상	박준혁	
과천시									정일	이혜란	하나	박찬영	
구리시	제일	박재우	삼일	유광애	제일	박재우	경일	구본승	중앙	신동현	써브	구본승	
남양주시	하나	전현구	경일	이현종	하나	전현구	사무소	이동원	하나	전현구	사무소	이동원	
	대화	황준영	삼창	서은아	대교	이현주	삼창	서은아	해민	이현주	미래새한	김성철	
	대신	강우람	미래새한	전윤희	대신	강우람	미래새한	전윤희	호암	강우람	대화	황인석	
	제일	신요환	사무소	김태교	제일	신요환	모두	김원혁	제일	황기석	삼성	김상철	
오산시	경일	김용운	태백	엄성길	통일	이해승	태백	엄성길	통일	이해승	태백	엄성길	
시흥시	나라	이상현	사무소	안영미	나라	김은지	사무소	안영미	나라	김은지	우솔	박해득	
	나라	안소영	효성	이동현	삼창	오성호	나무	양해진	삼창	오성호	리얼티뱅크	천영석	
군포시	가교	김상철	경일	정우진	에이원	곽상학	경일	정우진	태백	곽상학	삼일	최미경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기	의왕시	중앙	박용호	리얼티뱅크	정문조	중앙	박용호	리얼티뱅크	정문조	미래새한	박재범	리얼티뱅크	정문조
	하남시	대일	양현곤	제일	이남빈	대일	양현곤	제일	이남빈	대화	원강희	나무	설재경
	용인치인구	대일	남재근	정일	김광현	대일	남재근	정일	김광현	대일	남재근	정일	김광현
		제일	류재용	사무소	김경희	삼창	정재엽	사무소	김경희	가온	김영기	사무소	김경희
		대일	유원돈	현산	전진후	삼창	주송하	현산	전진후	대화	윤종필	현산	전진후
	용인기흥구	중앙	이호영	삼일	이선영	중앙	이호영	삼일	이선영	태백	손민수	삼일	이선영
	용인수지구									하나	이우영	더밸류	장세은
	파주시	미래새한	조재항	통일	이광수	미래새한	조재항	통일	이광수	미래새한	조재항	중앙	김성규
		삼창	고명재	태평양	이석진	삼창	고명재	태평양	이석진	삼창	고명재	태평양	이석진
		태평양	남재승	프라임	이영창	대화	박중현	프라임	이영창	대화	박중현	프라임	이영창
		미래새한	김성철	삼일	지원배	신한	한인호	삼일	지원배	신한	한인호	삼일	지원배
	이천시	대일	정동찬	사무소	최장인	대일	정동찬	사무소	최장인	대일	정동찬	사무소	최장인
		가온	우동진	대한	목진원	대일	김종훈	동인	이재구	경일	사경선	동인	이재구
		삼일	김종진	예일	이남련	삼일	김종진	에이원	유원돈	삼일	김종진	에이원	유원돈
	안성시	미래새한	정산호	퍼스트	남경진	미래새한	정산호	퍼스트	남경진	미래새한	정산호	퍼스트	남경진
		제일	조준목	나라	이창남	제일	조준목	이화	전갑중	제일	조준목	이화	전갑중
		하나	김철수	공감	이성흠	삼일	유광애	공감	이성흠	삼일	유광애	공감	이성흠
	김포시	통일	정중해	하나	안미나	대한	이정호	가온	서주원	대한	이정호	미래새한	김준구
		효산	박종경	나라	장현귀	효산	박종경	나라	장현귀	효산	박종경	삼창	조진협
		태평양	최민석	사무소	송익현	태평양	최민석	사무소	송익현	대화	배해경	사무소	송익현
제일		김관창	프라임	김철홍	제일	김관창	프라임	김철홍	제일	김관창	프라임	김철홍	
화성시	미래새한	조일봉	하나	김해선	삼창	심성우	하나	김해선	삼창	심성우	가온	소민섭	
	정일	박찬우	중앙	염성호	정일	박찬우	제일	김정훈	정일	박찬우	제일	김정훈	
	통일	이정화	가람	김용철	통일	이정화	삼일	정신근	에이원	장세재	삼일	정신근	
	중앙	박아람	명문	김태훈	대화	정원정	명문	김태훈	대화	정원정	명문	김태훈	
	삼창	최영만	사무소	고윤정	삼창	최영만	사무소	고윤정	삼창	최영만	사무소	고윤정	
광주시	경일	정동희	사무소	김일욱	경일	정동희	사무소	김일욱	중앙	이호영	사무소	김일욱	
	통일	신현상	미래새한	주병석	통일	신현상	미래새한	주병석	다우에셋	장태수	미래새한	주병석	
	가람	윤수정	태백	황광연	가온	강철	태백	황광연	사무소	박덕용	삼창	임종민	
양주시	정일	박돌순	대화	장호근	사무소	전선호	대화	장호근	정원	장수선	대화	장호근	
	나라	이수민	프라임	김미래	중앙	최종천	프라임	김미래	미래새한	박영창	프라임	김미래	
포천시	제일	오승신	삼창	최희정	제일	오승신	대일	박한진	제일	오승신	대일	박한진	
	대일	박병준	경일	전성근	대한	박병준	유엔아이	조채윤	하나	김영준	유엔아이	조채윤	
	대한	김진명	사무소	윤지현	삼창	최희정	사무소	윤지현	대화	홍창연	사무소	윤지현	
여주시	통일	김현우	가온	권은주	통일	김현우	정일	박석필	통일	김현우	사무소	장대희	
	중앙	최재영	예일	최은영	중앙	최재영	예일	최은영	중앙	최재영	예일	최은영	

X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기	여주시	삼일	신지훈	태평양	조영구	삼일	신지훈	대일	신성원	삼일	신지훈	대일	신성원
	연천군	나라	김현태	태백	이승철	태평양	홍성철	태백	이승철	삼일	소순필	대교	이승철
		미래סה한	김후철	리얼티뱅크	엄정호	경일	문용철	리얼티뱅크	엄정호	경일	문용철	리얼티뱅크	엄정호
	가평군	사무소	김재유	대화	김정렬	사무소	김재유	대화	김정렬	사무소	김재유	대화	김정렬
	양평군	제일	이기종	가온	김소림	제일	이기종	가온	김소림	제일	이기종	가온	김소림
대화		이재호	미래סה한	박형석	대화	이재호	에이원	최길웅	대일	양현근	에이원	최길웅	
	삼창	가람	김상덕	김문숙	대한	하나	임주혁	태평양	장한승	사무소	송경섭	태평양	장한승
	가람	이창규	감동	박재만	제일	이창규	감동	박재만	제일	이창규	감동	박재만	감동
충북	청주상당구	제일	우춘식	대화	안재광	대일	임종필	대화	안재광	대일	임종필	대화	안재광
		정일	김태훈	삼일	명노철	정일	김태훈	삼일	명노철	정일	김태훈	삼일	명노철
	청주서원구	가람	김주양	대한	이미화	삼일	이충훈	대한	이미화	제일	김태용	대한	이미화
		하나	유영기	신한	권남규	하나	유영기	정원	신백호				
	청주흥덕구	삼창	최희정	대일	김재용	통일	김지성	중앙	채해성	가온	정병진	중앙	채해성
		대일	이홍규	태백	남궁윤	중앙	명성숙	태백	남궁윤	가온	이능규	태백	남궁윤
	청주청원구	사무소	박성현	경일	전상용	사무소	박성현	삼창	허강백	사무소	박성현	삼창	허강백
		중앙	이석원	태백	도시현	중앙	이석원	태백	도시현	가온	정덕교	리얼티뱅크	임재철
	충주시	삼창	김선중	태평양	백진이	효산	최희순	태평양	백진이	다우에셋	조원상	태평양	백진이
		미래סה한	이응진	해민	금각보	경일	김범식	해민	금각보	경일	김범식	해민	금각보
		가온	신동억	대신	하승현	가온	신동억	대신	하승현	가온	신동억	다안	유재현
		대한	권윤정	사무소	허재승	대한	권윤정	사무소	허재승	대한	권윤정	사무소	허재승
	제천시	나라	신정필	미래סה한	김승현	나라	신정필	미래סה한	김승현	나라	신정필	미래סה한	김승현
		대한	김무승	하나	오준교	가온	강성모	하나	오준교	가온	강성모	하나	오준교
		통일	노재수	사무소	최기연	통일	노재수	대교	이종은				
대교										이종은			
보은군	태평양	양인숙	대한	박영준	대일	김재용	대한	박영준	대일	김재용	대한	박영준	
	제일	김태용	나라	류재홍	제일	김태용	나라	류재홍	중앙	신호식	나라	류재홍	
옥천군	미래סה한	김창전	현산	윤장배	미래סה한	김창전	현산	윤장배	미래סה한	김창전	현산	윤장배	
	나라	박경락	하나	정규원	라인	유성일	하나	정규원	라인	유성일	가온	조정연	
영동군	경일	최용석	중앙	신호식	경일	최용석	중앙	신호식	미래סה한	오대윤	삼창	구민형	
	가온	장동오	통일	김종학	태평양	양인숙	제일	최준현	태평양	양인숙	제일	최준현	
	가람	박재현	가온	정덕교	가람	박재현	가온	정덕교	가람	박재현	현대	이호권	
													현대
진천군	나라	노총래	태평양	류지호	나라	노총래	삼창	황정숙	나라	노총래	중앙	박지용	
	삼일	신현기	대일	김소담	삼일	신현기	대일	김소담	삼일	신현기	대일	김소담	
괴산군	통일	권세중	미래סה한	이하양	통일	권세중	미래סה한	이하양	통일	권세중	미래סה한	이하양	
	하나	조영기	프라임	정용집	하나	조영기	프라임	정용집	하나	조영기	프라임	정용집	
음성군	정일	김경래	경일	홍경표	정일	김경래	대영	정상영	정일	김경래	대영	정상영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충북	음성군	중앙	송주호	대한	김주민	중앙 대상	송주호 정해근	대한	김주민	사무소	김선중	중앙 대상	송주호 정해근	대한	김주민	효산	박혜주
	단양군	리얼티뱅크 사무소	임재철 강학선	태평양 중앙	황창호 신지훈	리얼티뱅크 이화	임재철 김수민	태평양 중앙	황창호 신지훈	태백	김수민	태평양	황창호	태백	김수민	태평양	황창호
충남	천안동남구	삼일 대일	안병현 전득수	경일 가온	김신환 김재윤	삼일 대화	안병현 정채봉	경일 가온	김신환 김재윤	삼일	안병현 에이원	경일	김신환	삼일	안병현 정채봉	경일	김신환
	천안서북구	가람 대화	유재성 윤종필	대화 사무소	최태영 문희수	중앙 대일	김지혜 허찬범	에이원 사무소	이해미 문희수	중앙 삼창	김지혜 변희정	태인	김해원	사무소	문희수	문희수	문희수
	공주시	대한 제일 중앙	송태성 박용일 김고균	삼일 가온 하나	장기철 윤대중 정채봉	대일 제일 중앙	원병하 박용일 김고균	태평양 가온 하나	조유성 윤대중 조병돈	미래새한 중앙 대화 대일	이재형 신상훈 김해원 원병하	씨브	임윤혁	사무소	윤만중	조병돈	전윤호
	보령시	제일 대화 대한	정영록 김영민 김정환	가람 미래새한 정일	정찬호 송성준 김민수	제일 태평양 삼창	정영록 김관민 정우현	가람 동인 대화	정찬호 장해아 김민수	제일 태평양 삼창	정영록 김관민 정우현	가람 제일 대화	정찬호	김주영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아산시	나라 제일 태평양	송효섭 김종관 박유준	대화 가람 경일	김정식 박은영 이은한	나라 제일 통일 대일	송효섭 김종관 이희원 윤재석	대화 가람 대한 사무소	김정식 박은영 유인동 신정호	나라 제일 대일 삼일	송효섭 김종관 이현경 양주훈	다우에셋	이정형	가람	박은영	유인동	신정호
	서산시	하나 가온 경일 중앙	황정준 임재형 김민혁 구기풍	삼일 가람 대일 사무소	신동규 황선원 김복진 박종연	통일 가온 경일 중앙	임하경 임재형 김민혁 구기풍	삼일 경일 중앙 사무소	신동규 전성진 한윤숙 박종연	통일 가온 경일 중앙	임하경 임재형 김민혁 구기풍	삼일	신동규	경일	전성진	한윤숙	박종연
	논산시	하나 하나	박소연 유혜경	태백 통일	박광민 정주영	동인 하나	박소연 유혜경	태백 통일	박광민 정주영	동인 하나	박소연 유혜경	태평양	김대희	태평양	통일	정주영	정주영
	논산시(계룡시)	공감	김주영	태평양	한경희	제일	전주철	태평양	한경희	제일	전주철	태평양	한경희	한경희	한경희	한경희	한경희
	계룡시									제일	전주철	태평양	한경희	한경희	한경희	한경희	한경희
	당진시	경일 사무소 명문	한윤숙 안유라 정창식	삼창 미래새한 프라임	박래현 신동현 정상범	정일 사무소 명문 비결	김창진 안유라 서중권 이보람	삼창 미래새한 프라임 가람	박래현 신동현 정상범 이종현	정일 사무소 명문 비결	김창진 안유라 서중권 이보람	삼창	박래현	태인	차진영	정상범	이종현
	금산군	삼창 나라	이상원 이지연	하나 대한	송재완 육동우	태평양 하나	민병서 송재완	중앙 삼창	이은한 이상원	태평양 하나 가람	민병서 송재완 김건호	대화	허지은	삼창	사무소	박병호	박병호
	부여군	경일 미래새한	임한결 이재형	태평양 통일	김경표 김양태	경일 사무소 대한	임한결 정호순 정두환	삼창 태평양 통일	양준혁 김경표 김양태	경일 사무소 대한	임한결 정호순 정두환	삼창	양준혁	태평양	김경표	김양태	김양태
	서천군	나라	장승욱	하나	김재원	나라	장승욱	하나	김재원	나라	장승욱	하나	김재원	나라	장승욱	하나	김재원

X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충남	서천군	미래새한	정진수	공감	엄세연	미래새한	정진수	공감	김병주	미래새한	정진수	대화	이지혜
										공감	이정재	하나	정재훈
	청양군	나라 리얼티뱅크	최기훈 어정민	효산 대한	이명수 정태영	나라 리얼티뱅크	최기훈 어정민	효산 대한	이명수 정태영	나라 리얼티뱅크	최기훈 어정민	효산 대한	이명수 정태영
	홍성군	미래새한	문영식	가온	김홍철	신한	박승안	가온	김홍철	신한	박승안	가온	김홍철
		태백	김건욱	정일	채현동	태백	김건욱	정일	채현동	태백	김건욱	제일	박용일
	가온	황종현	경일	전성진	가람	김철순	경일	나두영	사무소	조창호	경일	나두영	
	예산군	대일	강태환	사무소	이종은	미래새한	노승을	사무소	이종은	중앙	최현욱	사무소	이종은
		가람	권기영	제일	김정훈	가람	권기영	제일	육동우	가람	권기영	제일	육동우
		감동	김원웅	사무소	문주완	감동	김원웅	사무소	문주완	감동	김원웅	사무소	문주완
	태안군	하나	석진호	미래새한	하영호	대화	최태영	미래새한	하영호	대화	최태영	미래새한	하영호
		태평양	정건목	가온	문정윤	감동	김원갑	가온	문정윤	감동	김원갑	가온	문정윤
		태평양	나병기	효산	김윤희	태평양	나병기	효산	김윤희	태평양	나병기	효산	김윤희
전북	전주완산구	대한	이옥선	통일	이찬중	대한	이옥선	통일	이찬중	대한	이옥선	명문	김상훈
		대한	이영복	태평양	윤수연	대한	이영복	가온	김동현	퍼스트	하늘별	가온	김동현
전북	전주덕진구	사무소	김성식	하나	김재희	사무소	김성식	대화	윤정주	사무소	김성식	대화	윤정주
		미래새한	이기영	삼일	소순필	태평양	이산하	삼일	소순필	태평양	이산하	가람	강희성
	군산시	제일	하동수	태평양	최민석	제일	하동수	태평양	최민석	제일	하동수	삼성	차혜원
		가람	이한택	나라	이남윤	가람	이한택	나라	이남윤	태백	홍진희	나라	이남윤
		대한	김원태	가람	이우철	대한	김원태	가람	이우철	가온	유보람	가람	이우철
		통일	이진환	공감	여지훈	삼창	김한규	공감	여지훈	통일	김현태	공감	김병주
	익산시	나라	김진문	대화	문성열	나라	김진문	대화	문성열	나라	김진문	대화	문성열
		리얼티뱅크	오해진	대한	김용덕	리얼티뱅크	오해진	대한	김용덕	리얼티뱅크	오해진	대한	김용덕
		태평양	이복철	대일	최영광	태평양	이복철	대일	최영광	태평양	이복철	대일	최영광
		경일	임익준	가람	유연일	경일	임익준	가람	유연일	경일	임익준	가람	유연일
정읍시	나라	조성근	대일	이경택	나라	조성근	대일	이경택	나라	조성근	대일	이경택	
	리얼티뱅크	박길남	경일	유영호	리얼티뱅크	박길남	경일	유영호	리얼티뱅크	박길남	경일	유영호	
	대한	김동욱	제일	도승하	대한	김동욱	제일	도승하	미래새한	홍성우	제일	도승하	
	미래새한	정희정	사무소	이영호	미래새한	정희정	사무소	이영호	미래새한	정희정	가온	이승희	
남원시	나라	진동민	태백	이혁제	나라	진동민	경일	이동진	나라	진동민	삼창	박진경	
	삼창	박진경	경일	이동진	삼창	박진경	정원	김영민	경일	이동진	중앙	장원	
	대한	김동일	미래새한	김상훈	대한	김동일	태백	이혁제	대한	김동일	태백	이혁제	
									프라임	정승열	삼창	김한규	
	김제시	가온	손인태	미래새한	김효원	가온	손인태	미래새한	김효원	가온	손인태	미래새한	김효원
		하나	이원철	대화	신정열	하나	이원철	태평양	오태열	하나	이원철	태평양	오태열
		대일	김동완	미래새한	박진수	대일	임창희	미래새한	박진수	대일	임창희	미래새한	박진수
	완주군	사무소	고지창	중앙	이정환	사무소	고지창	중앙	이정환	사무소	고지창	제일	박지훈
		나라	박세찬	경일	유시혁	나라	박세찬	경일	유시혁	써브	정대환	경일	유시혁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전북	완주군	대화	변상범	사무소	이병인	대화	변상범	사무소	이병인	대화	변상범	더밸류	박동순
	진안군	대화	이명현	프라임	김기승	경일	이의철	프라임	김기승	경일	이의철	프라임	김기승
		가온	장대진	삼창	김한규	정일	이상도	삼창	박민옥	정일	이상도	삼창	박민옥
	무주군	대화	이승호	하나	김창배	대화	이승호	하나	김창배	대화	이승호	하나	김창배
		태평양	장도현	가람	김길중	태평양	장도현	가람	김길중	태평양	장도현	대일	김경모
	장수군	미래세한	홍성우	가온	홍진혁	미래세한	홍성우	가온	홍진혁	써브	양해영	가온	홍진혁
		가람	강희성	하나	이석원	대일	정찬구	하나	이석원	대일	정찬구	태평양	이민경
	임실군	경일	주병길	가람	이혜미	경일	주병길	에이원	박지연	경일	주병길	가온	윤대중
		대일	하재철	대화	김재수	대일	하재철	대화	김재수	대일	하재철	대화	김재수
	순창군	대일	김현기	통일	윤재석	대일	양우진	가람	김양욱	대일	양우진	가람	김양욱
대일		김영화	나라	유경민	대일	김영화	나라	유경민	대일	김영화	나라	염문진	
고창군	삼창	이현철	가온	최순걸	삼창	이현철	가온	최순걸	삼창	이현철	프라임	황성원	
	하나	김상우	가온	육성민	하나	김상우	가온	육성민	하나	김상우	가온	육성민	
부안군	중앙	국정훈	통일	정치원	중앙	국정훈	통일	정치원	중앙	국정훈	통일	정치원	
	사무소	홍준표	삼일	이해승	사무소	홍준표	중앙	김정환	사무소	홍준표	중앙	김정환	
전남	목포시	삼창	조종천	중앙	김승욱	삼창	조종천	중앙	김승욱	삼창	조종천	중앙	김승욱
		태평양	오병훈	삼일	박승울	태평양	오병훈	삼일	박승울	태평양	오병훈	삼일	박승울
전남	목포시	경일	오영찬	프라임	임용구	가온	문세훈	하나	한상범	가온	문세훈	프라임	임용구
	여수시	미래세한	신춘일	리얼티뱅크	홍창우	미래세한	신춘일	리얼티뱅크	홍창우	나라	박진수	효산	김진용
		가온	김용문	통일	유우식	가온	김용문	통일	유우식	대일	김용문	세종	김대현
		나라	정두혁	대화	이덕권	명문	정창식	대화	이덕권	명문	김영경	대화	이덕권
		삼일	박재현	제일	윤여일	에이원	신용식	제일	윤여일	에이원	신용식	리얼티뱅크	조창범
	순천시	경일	한영섭	대화	김치암	경일	한영섭	대화	김치암	경일	한영섭	가람	이태문
		가람	정경준	나라	노광래	사무소	박제우	나라	노광래	태백	이성범	나라	노광래
	나주시	대화	강효성	나라	장철훈	에이원	김형선	나라	장철훈	에이원	김형선	나라	장철훈
		나라	박성구	태양	이규진	나라	박성구	경일	김창식	나라	박성구	경일	김창식
	광양시	중앙	문화성	미래세한	김응철	중앙	문화성	미래세한	김응철	중앙	문화성	미래세한	김응철
경일		정철기	중앙	김수영	하나	김기택	중앙	김수영	하나	김기택	중앙	김수영	
나주시	대화	이동철	사무소	박정웅	대화	이동철	사무소	박정웅	대화	이동철	명문	김상현	
	대한	백인철	가람	정지용	대한	백인철	가람	정지용	나라	정귀수	가람	정지용	
	대화	나향용	태평양	송재광	제일	김원철	프라임	박범중	제일	김원철	대한	송원태	
	가람	이강중	대화	박중현	가람	이강중	대화	박진	가람	이강중	대화	박진	
광양시	제일	오세리	사무소	강동채	대화	김창신	사무소	강동채	대화	김창신	사무소	강동채	
	하나	남충일	가람	오치훈	제일	류현승	중앙	김진복	제일	류현승	나라	김다희	
광양시	프라임	이재욱	가온	박석환	프라임	이재욱	가온	박석환	리얼티뱅크	김호성	가온	박석환	

X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전남	광양시	삼일	이지은	경일	최성길	삼일	이지은	경일	최성길	삼일	이지은	경일	최성길
	담양군	삼창	김범수	사무소	정규호	삼창	김범수	사무소	정규호	삼창	김범수	사무소	정규호
		경일	박동훈	나라	정귀수	경일	박동훈	제일	박영주	우솔	임성모	제일	박명주
		태백	김주한	하나	김남석	태백	김주한	하나	김남석	태백	김주한	하나	김남석
	곡성군	대일	김대규	가람	김범희	대일	박종호	가람	김범희	대일	박종호	가람	김범희
		미래새한	임영광	제일	이동훈	경일	김희석	제일	이동훈	경일	김희석	제일	이동훈
	구례군	태백	고영훈	삼창	김우정	태백	고영훈	삼창	김우정	태백	고영훈	제일	장승욱
		대일	김봉남	제일	장승욱	모두	김진용	제일	장승욱	대일	이경훈	삼창	김우정
	고흥군	태평양	송용채	나라	정재원	가온	박창현	나라	정재원	티앤비	김민석	가람	윤종환
		가온	박창현	티앤비	권기현	한국경제	박명수	티앤비	권기현	미래새한	조동진	한국경제	박명수
		티앤비	김민석	가람	윤종환	티앤비	김민석	태평양	김경문	하나	박정진	태평양	김경문
		대한	천종철	대화	김창신	대한	천종철	가람	윤종환	대한	천종철	티앤비	권기현
	보성군	미래새한	정석주	태평양	박재웅	미래새한	정석주	태평양	박재웅	미래새한	정석주	중앙	박재웅
		삼창	고병관	가람	최지현	삼창	고병관	가람	최지현	삼창	고병관	가람	최지현
		대일	추성관	삼창	윤현호	대일	추민수	삼창	윤현호	대일	추민수	삼창	윤현호
	화순군	제일	임보섭	대한	문창권	제일	임보섭	사무소	구완민	제일	임보섭	씨비알이 현	배국현
미래새한		손남석	중앙	강인태	미래새한	손남석	중앙	강인태	신진	이영훈	삼창	문용주	
대일		유창균	대한	김광천	가람	김다인	대한	김광천	가람	김다인	대화	강효성	
장흥군	대일	박태환	통일	김영빈	경일	고현	통일	김영빈	경일	고현	통일	김영빈	
	가온	조호림	태평양	오화평	정일	윤성종	태평양	오화평	대일	이신관	태평양	오화평	
	미래새한	김창현	하나	김승일	미래새한	김창현	하나	김승일	미래새한	김창현	하나	김승일	
강진군	나라	민정현	제일	윤대현	나라	민정현	제일	윤대현	나라	민정현	제일	윤대현	
	가온	안만순	사무소	조남철	하나	이지훈	사무소	조남철	하나	이지훈	사무소	조남철	
해남군	가람	김주리	대일	노권일	가람	김주리	대일	노권일	대교	황찬석	대일	노권일	
	경일	박재현	사무소	배주연	가온	이재원	사무소	배주연	정일	김황수	사무소	배주연	
	태평양	모성주	하나	서상업	태평양	모성주	하나	서상업	중앙	서영국	통일	전병규	
	나라	허필준	태평양	박현범	나라	허필준	태평양	박현범	하나	정재훈	태평양	박현범	
영암군	통일	송요상	대한	김덕진	통일	송요상	대한	김덕진	통일	송요상	가온	이두희	
	가온	배희숙	대화	이정택	가온	배희숙	대화	이정택	씨브	신경석	대화	이정택	
	통일	최동현	효성	정성진	통일	최동현	나라	이도경	통일	최동현	나라	이도경	
무안군	가온	이의권	미래새한	김규진	가온	이의권	미래새한	김규진	가온	이의권	미래새한	김규진	
	태평양	정하나	삼창	이동영	태평양	정하나	삼창	이동영	태평양	김경훈	하나	송화섭	
	통일	김경수	하나	이수미	통일	김경수	하나	이수미	통일	김경수	대한	이정욱	
함평군	대일	최희수	대한	최기영	대일	최희수	대한	최기영	제일	신정균	대한	최기영	
	대일	위재홍	가람	이용선	대일	위재홍	가람	이용선	대일	위재홍	가람	이용선	
					가람	박영학	사무소	오치훈	가람	박영학	제일	하태웅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전남	영광군	사무소	이길휴	태평양	박종희	중앙	최시은	태평양	박종희	대한	최윤석	태평양	박종희
		태평양	정현우	대한	최윤석	태평양	정현우	대한	최윤석	태평양	정현우	미래새한	이승우
		가람	조병혁	경일	배성환	가람	조병혁	경일	배성환	가람	조병혁	통일	김상균
	장성군	가온	홍순경	정일	황선영	가온	홍순경	정일	황선영	미래새한	한승민	정일	황선영
		나라	윤진상	제일	황승용	나라	윤진상	제일	황승용	나라	윤진상	제일	황승용
		리얼티뱅크	서상민	제일	김현중	리얼티뱅크	서상민	제일	김현중	리얼티뱅크	서상민	제일	김현중
완도군	제일	홍성민	대일	임완준	제일	홍성민	대일	임완준	제일	홍성민	대일	임완준	
	제일	노진형	삼일	김성일	제일	노진형	삼일	김성일	제일	노진형	삼일	김성일	
	미래새한	김영광	태평양	이정우	미래새한	김영광	태평양	이정우	미래새한	김영광	대화	김기석	
진도군	중앙	김성동	대한	황인규	중앙	김성동	대한	황인규	중앙	김성동	씨브	조성일	
	미래새한	박성민	하나	양시웅	미래새한	박성민	하나	양시웅	미래새한	김현기	하나	양시웅	
									씨비알이 현	신동윤	통일	신현상	
신안군	하나	한상천	대화	이동규	하나	한상천	대화	이동규	하나	한상천	대화	이동규	
	삼창	백승범	대한	민재식	삼창	백승범	대한	민재식	삼창	백승범	중앙	민재식	
	하나	오기탁	대화	조원빈	감동	김우영	대화	조원빈	감동	김우영	나라	김상윤	
	경일	장순석	통일	서성준	경일	장순석	통일	서성준	경일	장순석	통일	이해성	
경북	포항남구 (’22. ’23 울릉군)	가람	김영돈	제일	김원철	가람	김성환	사무소	정철유	가람	김성환	사무소	정철유
		중앙	정민철	제일	유창혁	중앙	정민철	하나	이수환	통일	전재현	하나	이수환
		가람	이웅	삼일	윤인규	가람	이웅	삼일	윤인규	가람	이웅	삼일	윤인규
		제일	김수한	가람	이인범	하나	부병현	가람	이인범	대한	김상규	가람	이인범
	포항북구	대한	윤종문	태백	최민석	대한	윤종문	태백	최민석	대한	윤종문	태백	최민석
		나라	김준모	대화	이종현	대화	이영준	중앙	이승화	대화	이영준	중앙	이승화
		가람	유남용	삼창	이지백	가람	유남용	삼창	이지백	가람	유남용	삼창	이지백
	경주시	미래새한	주원복	프라임	김상태	미래새한	주원복	프라임	김상태	미래새한	주원복	프라임	김상태
		통일	장용준	삼창	장대규	정일	허태규	삼창	장대규	정일	허태규	삼창	장대규
		퍼스트	김동환	태평양	문상욱	퍼스트	김동환	태평양	문상욱	퍼스트	김동환	태평양	문상욱
		가온	이원중	제일	김형식	가온	이원중	제일	김형식	제일	최규일	삼일	정민철
		가람	안능수	하나	이민복	가람	안능수	하나	이민복	대한	김세원	하나	이민복
	효산	이시운	삼일	이정훈	효산	이시운	삼일	이정훈	정일	김태환	삼일	이정훈	
김천시	대일	이용제	나라	곽대호	대일	이용제	대한	이현승	대일	이용제	씨브	임소연	
	가온	임현민	명문	신영돈	가온	임현민	대교	진규용	가온	임현민	세움	이완희	
	가람	이경민	경일	이서안	가온	임형근	삼창	김윤혁	가온	임형근	삼창	김윤혁	
	나라	송윤근	대화	석준영	나라	송윤근	대한	조영호	나라	송윤근	대한	조영호	
안동시	대한	유제혁	대화	윤정주	대한	유제혁	대일	장시만	대한	유제혁	대일	장시만	
	대일	박병호	사무소	양해창	대일	박병호	태양	이수진	대일	박병호	태양	이수진	
	대한	김도겸	가온	한명인	대한	김도겸	예일	안선종	대한	김도겸	예일	안선종	
	경일	이정호	삼창	김예지	경일	이정호	삼창	김예지	경일	이정호	삼창	김예지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북	안동시	미래세한	박희록	대일	여정상	가람	안중희	사무소	양해창	가람	안중희	나라	손창호
	구미시	나라	손열	가람	안성우	나라	손열	가람	안성우	나라	손열	가온	천영길
		통일	서영우	나라	정한석	경일	여운복	미래세한	유민재	경일	여운복	미래세한	유민재
		제일	구민영	대화	엄창우	제일	구민영	가온	천영길	제일	구민영	통일	최진호
	영주시	대화	허태규	대일	홍성하	유엔아이	성낙정	제일	윤성찬	유엔아이	성낙정	제일	윤성찬
		삼창	이석희	미래세한	유철훈	하나	박주형	미래세한	유철훈	하나	박주형	미래세한	유철훈
		제일	윤성찬	티앤비	임수정	한국경제	김석호	경일	문혜정	한국경제	김석호	경일	문혜정
	영천시	나라	오규만	감동	유광석	나라	오규만	에이원	전병규	대화	엄창우	티앤비	임수정
		대한	최재창	제일	장희재	대한	윤지훈	제일	장희재	대한	윤지훈	사무소	최상황
		가람	정한용	가온	서일옥	가람	정한용	가온	서일옥	미래세한	정한용	가온	서일옥
		경일	임소옥	대한	박성준	대화	엄창우	대한	박성준	대화	김대환	대한	박성준
	상주시	제일	허창길	대화	박준우	제일	허창길	대화	박준우	제일	허창길	다안	한기환
		대일	배주현	중앙	김준영	대일	배주현	사무소	이홍규	대일	배주현	하나	이병기
		경일	김동근	중앙	강돈혁	경일	정재영	중앙	강돈혁	경일	정재영	중앙	강돈혁
		태평양	안진영	미래세한	이준석	태평양	안진영	미래세한	이준석	현대	박종진	경일	김일남
	문경시	가람	조경목	경일	원주희	가람	조경목	경일	원주희	가람	조경목	경일	원주희
가온		김규태	정일	정두수	가온	김규태	가람	김성진	가온	김규태	가람	김성진	
경산시	대화	노승환	사무소	김대성	대화	노승환	사무소	김대성	태평양	배승민	대상	김동진	
	가온	채태영	프라임	차혜원	가온	채태영	프라임	차혜원	가온	채태영	명문	표은송	
	삼일	최연옥	미래세한	서상욱	삼창	박준현	미래세한	서상욱	삼창	박준현	미래세한	서상욱	
군위군	대일	김외석	제일	정욱진	나라	정진욱	제일	정욱진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변경				
의성군	대일	가람	최성범	삼창	김각수	대일	김외석	나무	이규호				
	제일	박종태	대한	류휘훈	제일	박종태	대한	류휘훈	제일	박종태	대한	류휘훈	
	삼창	강호민	하나	남경우	삼창	강호민	현산	이남련	삼창	강호민	현산	이남련	
	하나	신민경	가람	권병수	나라	박원득	가람	권병수	나라	박원득	가람	권병수	
청송군	태평양	김대형	통일	윤성현	태평양	김대형	대화	황수남	태평양	김대형	대화	황수남	
	가온	이한영	정일	홍상혁	가온	이한영	정일	홍상혁	가온	이한영	대화	홍상혁	
영양군	미래세한	정지용	리얼티뱅크	박치영	제일	김수한	리얼티뱅크	박치영	제일	김수한	리얼티뱅크	박치영	
	삼일	채혜성	나라	장문창	사무소	변득규	나라	장문창	써브	조진용	나라	장문창	
영덕군	삼창	이석진	대화	유승연	삼창	이석진	대일	장대연	삼창	이석진	대일	장대연	
	가온	이동재	중앙	정석환	가온	이동재	중앙	정석환	가온	이동재	중앙	정석환	
청도군	삼창	김호종	태평양	이동하	삼일	이승현	제일	정강희	삼일	이승현	제일	정강희	
	대한	강홍락	미래세한	이호영	대한	강홍락	태평양	이동하	대한	강홍락	태평양	정주암	
	제일	정강희	리얼티뱅크	유병민	중앙	기재우	리얼티뱅크	유병민	중앙	기재우	리얼티뱅크	유병민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북	고령군	미래세한 하나	우성하 심진수	태평양 경일	이성구 김석배	미래세한 태평양	우성하 권찬규	삼창 경일	신형철 김석배	미래세한 태평양	우성하 권찬규	삼창 경일	신형철 김석배
	성주군	대한 통일	차수길 예병철	미래세한 하나	김장우 여규환	대한 태평양	차수길 이국준	동인 하나	최근택 여규환	대한 태평양	차수길 이국준	동인 하나	최근택 여규환
	칠곡군	가람 중앙	정용우 윤정숙	사무소 하나	전경식 이상석	가람 중앙	정용우 윤정숙	사무소 하나	전경식 이상석	가람 중앙	정용우 윤정숙	사무소 하나	전경식 이상석
	예천군	하나 나라 경일	김돌근 이상원 김태호	대화 하나 삼창	홍창연 임수현 서귀성	하나 정원 경일	김돌근 여송 김태호	삼일 하나 삼창	박종찬 임수현 서귀성	대일 리얼티뱅크 경일	이동원 이준호 김태호	중앙 하나 삼창	박종찬 임수현 서귀성
	봉화군	대한 대일	선상배 이동원	통일 삼일	박태중 권상덕	중앙 통일	고재휘 박태중	대일 삼일	이동원 권상덕	중앙 통일	고재휘 박태중	세종 삼일	곽재혁 권상덕
	울진군	경일 통일	최월환 윤영범	태평양 가온	윤만규 임재철	경일 통일	최월환 윤영범	태평양 가온	윤만규 임재철	대화 중앙	윤다빈 김정원 최영태	태평양 삼일	윤만규 최기성 서상필
	울릉군									가람	이용	삼일	윤인규
	창원의창구	대일 하나	김장욱 장정익	경일 미래세한	이근성 남세일	에이원 하나	노기수 장정익	경일 미래세한	이근성 정동혁	태평양 하나	윤종웅 장정익	경일 미래세한	이근성 정동혁
	창원성산구	태평양	신승훈	프라임	이윤혁	태평양	신승훈	프라임	이규환	태평양	신승훈	써브	이치윤
	창원마산합포구	제일 미래세한 가람	김선태 이승록 엄혁	가람 사무소 제일	석금자 류한민 정재호	제일 미래세한 가람	김선태 이승록 엄혁	가람 사무소 제일	석금자 류한민 정재호	미래세한 감동	이승록 장주연 엄혁	가람 사무소 대한	석금자 류한민 윤정석
창원마산회원구	대일 태평양	조주남 정수원	통일 삼일	이상훈 최용림	대일 태평양	조주남 정수원	태평양 사무소	이상훈 장기영	나라 태평양	문준석 정수원	미래세한 신원	김현대 김경훈	
창원진해구	사무소 제일	백경희 김근수	나라 중앙	박효동 추준호	사무소 제일	백경희 김근수	통일 중앙	서선미 추준호	사무소 제일	백경희 김근수	통일 중앙	서선미 추준호	
진주시	가온 중앙 나라 대화 대일	김영석 권형근 신재영 김동하 장윤민	하나 미래세한 태평양 대한 삼창	김길용 유동문 홍성철 황인범 문명주	경일 중앙 하나 나라 가람	이혜숙 권형근 김길용 신재영 박종현	대일 미래세한 대화 대한 삼창	장윤민 유동문 김동하 황인범 문명주	대화 중앙 하나 나라 가람	손익경 권형근 이현재 신재영 박종현	대일 제일 대화 대한 미래세한	장윤민 구영돈 김동하 황인범 유동문	
통영시	통일 중앙 나무	이치윤 최종천 김재철	나라 통일 미래세한	이준혁 김찬용 김동완	동인 대한 나무	김태환 김정훈 김재철	나라 통일 가람	이준혁 김찬용 김재환	동인 대한 나무	김태환 김정훈 김재철	가람 통일 나라	임건우 김찬용 이준혁	
사천시	나라 중앙 대화	최종원 김준태 정겨운	삼일 경일 경일	문종열 강민규 이세호	나라 중앙 대화	최종원 김준태 정겨운	삼일 경일 경일	문종열 강민규 이세호	에이원 중앙 가온	이정화 김준태 곽도관	삼일 경일 써브	문종열 강민규 조태희	

X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남	사천시	가온	최창민	나라	박민호	가온	최창민	나라	박민호	사무소	최현규	나라	박민호
	김해시	공감	한석종	경일	황인찬	공감	한석종	대화	차현석	공감	한석종	대화	차현석
		사무소	장은진	중앙	조동욱	사무소	장은진	중앙	조동욱	사무소	장은진	중앙	정후영
		삼일	송상길	대화	차현석	삼일	송상길	나라	최종호	삼일	송상길	나라	최종호
		태평양	최지윤	대한	장은수	태평양	최지윤	대한	장은수	삼창	이수정	대한	장은수
		미래새한	조재균	정일	윤성우	미래새한	조재균	정일	윤성우	미래새한	조재균	신한	도지연
	밀양시	삼창	김철익	대한	정지혜	삼창	김철익	대한	정지혜	삼창	김철익	대한	정지혜
		하나	송진규	대일	김승주	하나	송진규	대일	김승주	대일	김기환	에이원	백일홍
		제일	김창년	중앙	주남극	제일	김창년	사무소	강양중	제일	김창년	효산	김원혁
		리얼티뱅크	하용민	대한	김보경	리얼티뱅크	하용민	대한	김보경	중앙	유찬영	통일	하용민
		삼일	조영섭	나라	박소영	삼일	양설영	나라	박소영	삼일	양설영	대일	김장욱
	거제시	가온	전문수	삼창	윤종한	가온	전문수	삼창	옥치홍	가온	전문수	대영	김양희
		삼일	천병기	제일	원종혁	삼일	천병기	제일	원종혁	삼일	천병기	제일	원종혁
		경일	진영훈	가람	정영호	경일	진영훈	가람	정영호	경일	진영훈	가람	정영호
		대일	임수원	경일	강성호	대일	임수원	경일	강성호	대일	임수원	경일	강성호
양산시	중앙	주현식	명문	장석규	가온	조규봉	명문	장석규	가온	조규봉	명문	장석규	
	태평양	이종찬	리얼티뱅크	김규승	태평양	이종찬	리얼티뱅크	김규승	태평양	이종찬	리얼티뱅크	김규승	
	중앙	강석주	대일	문창준	중앙	강석주	라인	윤소희	중앙	강석주	가람	정지욱	
의령군	가람	조근아	통일	김성재	가람	조근아	통일	김성재	가람	조근아	통일	김성재	
	제일	김성일	대한	남기춘	제일	김성일	태평양	최명석	대일	허태리	태평양	최명석	
함안군	삼창	윤성준	대일	조청제	삼창	윤성준	대일	조청제	삼창	윤성준	대일	조청제	
	하나	변지환	프라이م	박형국	하나	변지환	프라이م	박형국	대한	김보경	프라이م	박형국	
	삼창	황도웅	가온	심가영	삼창	황도웅	가온	심가영	삼창	황도웅	가온	심가영	
창녕군	미래새한	최영길	경일	배범수	미래새한	최영길	경일	배범수	미래새한	최영길	경일	배범수	
	대일	허태리	중앙	황재범	대일	허태리	중앙	황재범	정일	김성균	중앙	황재범	
	미래새한	안진우	중앙	김상진	미래새한	안진우	중앙	김상진	미래새한	안진우	중앙	김상진	
고성군	가람	정다연	태백	김상훈	가람	정다연	태백	김상훈	가람	정다연	태백	김상훈	
	중앙	강동석	대한	조영수	중앙	강동석	대한	조영수	중앙	강동석	대한	조영수	
	명문	심순보	대화	정승우	사무소	권준희	대화	정승우	하나	변지환	대화	정승우	
남해군	하나	구준수	미래새한	이윤우	하나	구준수	미래새한	이윤우	하나	구준수	미래새한	이윤우	
	삼창	박치정	정일	한상규	삼창	박치정	정일	한상규	삼창	유정준	정일	한상규	
	가온	김준영	중앙	박경종	사무소	목승혜	제일	박정우	사무소	목승혜	제일	박정우	
하동군	미래새한	송재원	태평양	안영찬	대상	류미숙	태평양	안영찬	대상	류미숙	태평양	안영찬	
	대화	이주윤	가온	최효열	대화	이주윤	사무소	한봉수	대화	이주윤	하나	송진규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남	하동군	미래세한	엄수봉	제일	권귀현	경일	오완석	제일	권귀현	경일	오완석	제일	권귀현
	산청군	하나	이원석	가온	이진혁	하나	이원석	가온	이진혁	하나	이원석	대한	이대성
	합양군	하나	김형중	나무	박정환	하나	김형중	대일	김지창	하나	김형중	대일	김지창
		대한	백상훈	대일	박유희	대한	백상훈	대일	박유희	대한	백상훈	삼창	오무궁
										가람	문이룡	호암	이현진
	거창군	삼창	조복만	하나	정준규	삼창	조복만	하나	정준규	삼창	조복만	하나	정준규
		미래세한	김규영	대화	손태정	사무소	박재우	대화	손태정	나라	김선중	대화	손태정
		가온	김민석	태평양	김영규	가온	김민석	태평양	김영규	가온	김민석	태평양	김영규
	합천군	대화	박중걸	통일	이명환	나라	문준석	통일	이명환	중앙	박경중	프라임	진승희
		대한	김대환	삼창	유제형	대한	김대환	삼창	유제형	대한	김대환	삼창	임주혁
		나라	문준석	가람	김현웅	통일	조보미	가람	김현웅	이화	윤영술	가람	김현웅
						대화	박중걸	사무소	이영기	대화	박중걸	리얼티뱅크	김준영
제주	제주시	하나	이철진	나라	박성수	하나	이철진	나라	박성수	정일	강정희	가람	차남수
		가온	김형근	가람	공무경	가온	김형근	중앙	고경현	가온	김형근	중앙	고경현
		가람	박명호	대화	오탁근	가람	박명호	대화	박철완	가람	박명호	대화	박철완
		삼창	한동규	나라	고병철	삼창	한동규	나라	고병철	삼창	한동규	나라	김영현
		대일	임수민	하나	홍승범	미래세한	김현진	하나	홍승범	미래세한	김현진	가람	고병철
		가온	정유진	태평양	고경현	가온	정유진	태평양	김경남	하나	김경훈	태평양	김경남
		경일	김현덕	대일	서영국	대일	김동규	삼일	김동열	대일	김동규	삼일	강용고
		태백	함기철	대한	부병현	태백	함기철	미래세한	유창환	태백	함기철	미래세한	유창환
	서귀포시	대화	최성우	나라	원윤경	대화	최성우	나라	원윤경	대화	최성우	나라	원윤경
		태평양	문석범	제일	홍수진	대한	고성표	제일	홍수진	대한	고성표	제일	홍수진
		중앙	고승우	경일	임병성	중앙	고승우	경일	임병성	중앙	고승우	경일	임병성
		제일	고대진	가온	강정희	제일	고대진	정일	강정희	제일	고대진	하나	홍승범
		중앙	김정민	태평양	김필호	삼창	홍성우	태평양	김필호	삼창	홍성우	태평양	김필호
강원	춘천시	그린	박명화	나라	정희용	대한	신민화	경일	경봉현	대한	신민화	경일	경봉현
		대화	차경은	중앙	임채성	대화	차경은	중앙	임채성	대화	차경은	중앙	최지혜
		경일	배지용	대한	이재훈	경일	배지용	대한	이재훈	사무소	오현식	대한	이재훈
	원주시	경일	우병화	사무소	정종익	경일	우병화	가람	이준희	경일	우병화	가람	이준희
		나라	양지훈	가람	조동현	삼창	심재국	태백	안민혁	삼창	심재국	태백	안민혁
		삼창	심재국	대일	김남균	미래세한	유재학	대일	김남균	미래세한	유재학	대일	김남균
	강릉시	미래세한	남상원	삼창	김형구	미래세한	남상원	삼창	김형구	미래세한	남상원	정일	서승호
		태평양	이화삼	대한	김상철	태평양	이화삼	대한	김상철	태평양	이화삼	대한	김상철
		가온	홍태의	제일	안재석	가온	홍태의	제일	안재석	나라	박정관	명문	이창수

X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시.도	시.군.구	2022년				2023년				2024년			
		A조		B조		A조		B조		A조		B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강원	동해시	나라	박민기	태평양	유경태	미래세한	곽승호	통일	이장우	미래세한	곽승호	통일	이장우
	태백시	경일	신용수	삼창	김명호	경일	신용수	삼창	김명호	경일	신용수	삼창	김명호
	속초시	미래세한	심용동	대일	김동우	사무소	연동호	대일	김동우	가온	류창범	미래세한	배세진
	삼척시	경일	박노식	하나	김용휴	경일	박노식	하나	김용휴	경일	박노식	하나	김용휴
		중앙	최상순	미래세한	곽승호	중앙	최상순	신진	최장준	중앙	최상순	신진	최장준
	홍천군	나라	김일권	대일	어두선	나라	김일권	대일	어두선	대일	김종완	리얼티뱅크	황혜원
		하나	이관희	효성	김재욱	하나	이관희	사무소	송재영	하나	이관희	써브	송백천
		중앙	김운	경일	이동경	중앙	김운	감동	황인호	중앙	김운	감동	황인호
	횡성군	미래세한	권병우	삼창	최흥열	미래세한	권병우	삼창	박종열	미래세한	권병우	삼창	박종열
		사무소	김경백	제일	박정화	사무소	김경백	제일	박정화	대일	성열훈	제일	박정화
	영월군	가람	류영준	미래세한	오대윤	가람	류영준	태평양	유경태	가람	류영준	태평양	유경태
		제일	곽명훈	대화	정혁철	제일	곽명훈	대화	정혁철	제일	곽명훈	대화	정혁철
	평창군	나라	박정관	대화	정집연	나라	박정관	대화	정집연	삼창	임동권	대화	정집연
		리얼티뱅크	이재홍	삼창	임동권	리얼티뱅크	이재홍	삼창	임동권	대한	김우진	삼일	이현석
	정선군	가람	이강민	제일	정상기	가람	이강민	제일	정상기	가람	이강민	제일	정상기
		태평양	강원혁	가람	이성호	태평양	강원혁	가람	이성호	태평양	강원혁	가람	이성호
	철원군	경일	심영민	제일	정희진	경일	심영민	제일	정희진	경일	심영민	제일	정희진
		가온	홍윤기	대한	표충식	가온	홍윤기	대한	표충식	우술	이정식	대한	표충식
					나라	박민기	삼창	백종철	나라	박민기	삼창	백종철	
화천군	가온	지성근	통일	최우진	가온	지성근	통일	최우진	가온	지성근	통일	최우진	
양구군	삼일	이학서	리얼티뱅크	이명주	삼일	이학서	유엔아이	최희영	삼일	이학서	유엔아이	최희영	
인제군	프라임	하세영	대한	장지영	프라임	하세영	대한	장지영	프라임	하세영	대한	장지영	
	하나	윤세봉	티앤비	강정구	하나	윤세봉	티앤비	강정구	하나	윤세봉	티앤비	강정구	
고성군	가온	김태리	가람	이우교	가온	김태리	가람	이우교	가온	김태리	가람	이우교	
	삼일	김귀수	가온	김현중	사무소	임근식	가온	김현중	세비알이 현	이승민	가온	김현중	
양양군	중앙	안성일	하나	장기홍	중앙	안성일	하나	장기홍	에이원	배준혁	하나	장기홍	
	가람	전근만	나라	고병남	대화	김원기	나라	고병남	대화	김원기	나라	고병남	

특수토지 표준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2023, 2024)

2023					2024												
권역	팀	시·군·구			A조	B조	권역	팀	시·군·구			A조	B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1	인천광역시	김포시	의왕시	장진실 대일	김미영 가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인천광역시	김포시	의왕시	이청용 경일	김정주 하나				
		부천시	안산단원구	화성시					부천시	안산단원구	화성시						
		시흥시	안산상록구	평택시					시흥시	안산상록구	평택시						
		고양덕양구	군포시	안성시					고양덕양구	군포시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동구							광명시								
	2	서울특별시	양주시	성남수정구	민경근 중앙	서동환 나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서울특별시	양주시	파주시	민경근 중앙	서동환 나라			
		연천군	포천시	성남분당구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파주시						가평군	양평군	의정부시					
		의정부시	양평군	구리시					용인기흥구	수원영통구	여주시	김호민 태평양	김미영 가은				
		남양주시	과천시	하남시						용인수지구	수원권선구			오산시			
	용인기흥구	수원영통구	여주시	용인처인구	수원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수원권선구	이천시	안양만안구													
	3	용인수지구	광주시	오산시	김호민 태평양	장연우 미래세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	안성시	성남수정구	성남분당구	장연우 미래세한	권오역 대화		
		용인처인구	과천시	하남시							안성시	성남수정구	성남분당구				
		안양만안구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과천시				
	4	고성군	동해시	태백시	이청용 경일	진현철 가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5	부산광역시	밀양시	창원진해구	김기태 제일	박창호 대화	
		속초시	삼척시	인제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합포구			
		강릉시	정선군	양양군								울산광역시	사천시	창원합포구			
													김해시	양산시	창원의창구		

2023						2024							
권역	팀	시·군·구			A조	B조	권역	팀	시·군·구			A조	B조
	5	양구군			김상구 제일	권오억 대화			거제시	의령군	창원마산 회원구		
		영월군	화천군	원주시					거창군	진주시	합천군		
		철원군	평창군	횡성군					고성군	창녕군	하동군		
		춘천시	홍천군						남해군	통영시	산청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6	대구광역시	안동시	성주군	여정상 대일	김경곤 대한	대구광역시	6	대구광역시	안동시	성주군	여정상 대일	김경곤 대한
		경주시	영덕군	포항 남구					경주시	영덕군	포항 남구		
		고령군	영천시	울진군					고령군	영천시	울진군		
		구미시	예천군	봉화군					구미시	예천군	봉화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김천시	청도군	울릉군					김천시	청도군	울릉군		
		문경시	칠곡군	영양군					문경시	칠곡군	영양군		
		상주시	포항 북구	영주시					상주시	포항 북구	영주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7	부산광역시	밀양시	창원 진해구	김기태 제일	박창호 대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7	강진군	완도군	영암군	이동영 삼창	김수인 태평양
		울산광역시	사천시	창원마산 합포구					나주시	진도군	순천시		
		김해시	양산시	창원 의창구					목포시	함평군	장흥군		
		거제시	의령군	창원마산 회원구					무안군	해남군	고흥군		
		거창군	진주시	합천군					영광군				
		고성군	창녕군	하동군					광주광역시	담양군	여수시		
		남해군	통영시	산청군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함양군	함안군						광양시	장성군	신안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충남	8	충청 남도			김병창 하나	유병재 중앙	대전 세종 충남	9	충청 남도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자 치시	최중성 대일	윤영범 통일
	9	충청 북도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박주현 대한	류재봉 경일		10	고성군	동해시	태백시	김귀수 삼일	진현철 가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0	나주시	진도군	순천시	박정갑 미래세한	서필기 태평양	강원도	속초시	삼척시	인제군			
		목포시	함평군	장흥군				강릉시	정선군	양양군			
		무안군	해남군	고흥군				영광군					
		영광군						영월군	화천군	원주시			
	광주광역시	담양군	여수시	철원군	평창군	횡성군							
11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광양시	장성군	신안군	11	춘천시	홍천군		김상구 제일	안성일 중앙	
전라북도	12	전라			김정국	임재남	전라북도	12	충청 북도			이성진 미래 새한	류재봉 경일
								13	전라			김정국	장충용

2023						2024							
권역	팀	시·군·구			A조	B조	권역	팀	시·군·구			A조	B조
		북도			나라	삼청			북도			나라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13	제주시	서귀포시		이기수 삼청	권해철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14	제주시	서귀포시		이기수 삼청	권해철 하나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 부록 -

인 쇄 : 2023년 9월

발 행 : 2023년 9월

발행처 : 국 토 교 통 부

한 국 부 동 산 원

비 매 품

주 소 : (우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인 터 넷: 국 토 교 통 부 <http://www.molit.go.kr/>

한 국 부 동 산 원 <http://www.reb.or.kr/>

편 집 : 김세중, 이준희, 정종일, 최정환, 이지형,

황민경, 홍나혜, 엄원용, 신예지